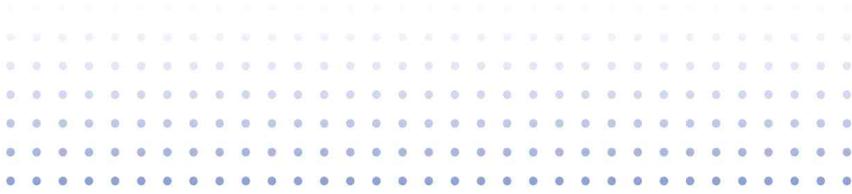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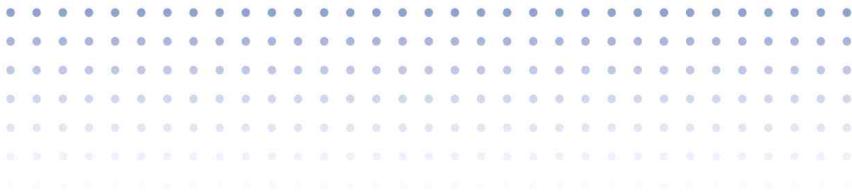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865-000003-10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MINIMUM WAGE COMMISSION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이용자를 위하여

- 본 책자는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별 수록된 내용은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매년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 본 책자는 매년 미흡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고 있으므로 발간연도별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최근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노사관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www.minimumwage.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 차



01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1. 조사 개요	3
	주요 내용	2. 국가별 최근 동향	5
		3.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10

02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유럽]	
		1. 그리스	19
		2. 네덜란드	31
		3. 독일	41
		4. 라트비아	53
		5. 러시아	59
		6. 루마니아	69
		7. 벨기에	81
		8. 스위스(제네바주)	95
		9. 스페인	103
		10. 슬로바키아	113
		11. 아일랜드	121
		12. 영국	131
		13. 체코	147
		14. 포르투갈	157
		15. 폴란드	167
		16. 프랑스	177
		17. 헝가리	187
		[아메리카]	
		18. 멕시코	197
19. 미국	209		
20. 브라질	225		



21. 아르헨티나	237
22. 칠레	245
23. 캐나다(온타리오주)	253
24. 코스타리카	263
25. 콜롬비아	273
26. 파라과이	281
[아시아]	
27. 대만	293
28. 말레이시아	303
29. 베트남	311
30. 우즈베키스탄	321
31. 이스라엘	329
32. 인도네시아	337
33. 일본	351
34. 중국	367
35. 캄보디아	385
36. 태국	395
37. 터키	411
38. 필리핀	421
[오세아니아]	
39. 뉴질랜드	433
40. 호주	445
[아프리카]	
41. 남아프리카공화국	463

01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주요 내용

1. 조사 개요
2. 국가별 최근 동향
3.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1 조사 개요

□ 목적

- 세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조사·제공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 및 정책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 근거: 최저임금법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조사기간: '22년 2~5월
- 조사방법: 외교부(각국 주재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자료수집
- 조사대상: 총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 + 비회원국 15개)

* 코스타리카('21년 가입)는 '22년부터 조사에 포함, 한국은 제외

※ 38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7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과 현지 주재대사관이 없는 4개국(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은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외

구분		국가명				
OECD	가입국(26)	그리스 멕시코 슬로바키아 체코 터키 호주	네덜란드 미국 아일랜드 칠레 포르투갈	뉴질랜드 벨기에 영국 캐나다 폴란드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프랑스	라트비아 스페인 일본 콜롬비아 헝가리
	비가입국(15)	남아공 베트남 중국	대만 브라질 캄보디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륙별	유럽(17)	그리스 루마니아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헝가리	독일 스위스 체코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메리카(9)	멕시코 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아시아(12)	대만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이스라엘 태국
	오세아니아(2)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1)	남아공				

□ 조사항목

- '22년 국가별 자료는 I. 제도의 개요, II. 제도의 주요 내용, III. 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 발전과정
2. 관련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 관련 협약 등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 특례 대상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기관 • 결정방법 및 절차 •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결정기준 • 결정단위 • 결정과정의 공개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유급주휴 여부
3. 최저임금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구분 적용기준 및 절차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방법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기관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벌 규정 • 형벌 규정 • 사법적 권리구제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최저임금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법령 개정사항
3. 최저임금 관련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현안 및 이슈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2 국가별 최근 동향

국가명	최근 동향
1.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663유로(3년 미만 사무직 근로자), 일급 29.62유로(3년 미만 노동 기술자)로 전년 대비 2.0% 상승 ○ '22.1월 정부는 5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4월 최종보고서 제출
2.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상반기 21세 이상 성인의 최저임금은 월급 1,725유로, 주급 398.1유로, 일급 79.7유로(전년 대비 1.4% 인상) ○ 정부는 연정협정문에서 '25년까지 최저임금 7.5% 인상 약속
3.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 '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82유로(上), 10.45유로(下)로 결정하였으나 '22.2월 최저임금 특별법을 내각에서 의결 후 하원에서 상반기 중 통과한다면 10월부터 시급 12유로로 인상 예정 ○ 인상을 과도 및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한 사측의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사회적 논란이나 반발은 미미
4.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전년 동결(월급 500유로)
5.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중앙정부 최저임금은 월급 13,890루블(전년 대비 8.6%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890루블은 '22.1월 \$187 상대가치를 가졌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3월 상대가치는 \$119로 하락 ○ '21.7월 정부는 '22년 최저임금을 6.4% 인상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8%대로 나타남에 따라 11월 8.6%로 인상 결정 ○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22년까지 정부에 최저임금 규모 및 산정방식 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여 '22.3월 즉각 발효
6.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2,550론(전년 대비 10.9% 인상) ○ '22년부터 학력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폐지 ○ '21.12월부터 계약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24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급을 법령화함
7.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국가 최저임금은 월급 1,691.4유로(전년 동월 대비 4.04% 인상) ○ '22.4월부터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연령·경력과 무관하게 단일금액으로 변경 ○ 경영계의 최저임금 자동 인상 중단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두 차례('21.9월, '22.1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이 자동 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적용 중단을 요구 - 정부의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국가명	최근 동향
8. 스위스* 제네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州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결정 방식 상이 - 제네바주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23.27스위스프랑(전년 대비 0.56% 인상) ○ 빈터투어시는 '22.3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최저임금을 도입할 자치단체는 점차 늘어날 전망
9.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000유로(전년 대비 5.3% 인상) ○ '22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사측을 제외한 정부와 노측이 2월 초에 합의하여 소급 적용 - 사측은 반대하였으나 정부와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연도 중에 확정하였고 2백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 예상 -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곤·성별에 따른 임금불균형 문제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10.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646유로, 시급 3.713유로(전년 대비 3.7% 인상) - 노사합의 실패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57% 수준에서 자동 결정 ○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사업자는 임금지급 시 당해 최저임금 및 노동강도를 반영하여 지급
11.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10.50유로(전년 대비 2.9% 인상) ○ '22.2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개시 전망 - (내용) 2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20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12.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23세 이상 국가생활임금은 시급 9.50파운드(전년 대비 6.6% 인상) - '21.3월까지의 적용연령이 '25세' ○ 정부(보수당)는 '24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수준까지 달성을 목표로 유지 - 저임금위원회는 '22년 1월 보고서를 통해 '24년 최저임금을 10.6파운드로 예상하며,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13.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6,200코루나(전년 대비 6.6% 인상) ○ 경제사회협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소비자물가 자동 연동 인상 필요에 합의
14.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705유로(전년 대비 6.0% 인상) ○ 정부(사회당)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19.4% 인상된 것은 EU 전체로 볼 때 그 폭과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
15.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3,010즈워티(전년 대비 7.5% 인상) ○ 정부(법과정의당)의 '24년 최저임금 목표는 4,000즈워티
16.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10.57유로(전년 대비 3.1% 인상) - 인상률 3.1%는 소비지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자동 조정분 2.2%와 최저임금 추가인상률 0.9%의 합

국가명	최근 동향
17.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200,000포린트(고졸 미만자, 전년 대비 19.5% 인상)
18.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 최저임금은 일급 260.31페소, 일반 최저임금 기타지역은 일급 172.71페소(전년 대비 22.0% 인상) - '22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독립회복금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북부 지대 25.45페소/기타 지역 16.9페소) ○ 연방노동법 개정('21.3월) - '최저임금 결정·개정 시 또는 적용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문구 추가
19.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최저임금은 '09년 이후 동결 - 일반근로자 시급 \$7.25, 팁크레딧 근로자 시급 \$2.13 ○ 정부는 연방 최저임금 시급을 \$15로 인상 추진하였으나 의회통과에 실패 -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15로 인상(기존 \$10.95) ○ 총26개 州 및 워싱턴D.C.가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고 캘리포니아州·뉴욕州·워싱턴D.C.는 이미 \$15보다 높음 - 일부 州도 \$15까지 최저임금 인상 예정
20.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연방최저임금은 월급 1,212헤알(전년 대비 10.18% 인상) -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이 금년도 공공지출에 40억 헤알의 영향을 준다고 발표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년 이후 전년도 공식물가상승률을 사용
21.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33,000페소, 시급 165페소('21.3월 대비 52.8% 인상) - '21년 들어 최저임금 인상 8회, 물가상승률 50.9% ○ '21.12월 최저임금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42% 수준 ○ '22.1월 IMF와 공공채무 상환 관련 재조정 협상을 통해 합의 도출
22.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350,000페소(전년 대비 7.2% 인상) ○ '21.7월 경제활동생산성지수 증가률이 3% 이상이면 35만 페소, 이하면 34.5만 페소로 최저임금 결정 - 지수 증가를 6.77%로 35만 페소,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재조정
23. 캐나다* 온타리오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州별로 최저임금 결정 - (온타리오州)'22년 최저임금은 시급 15캐불('21.1월 대비 5.3% 인상) ○ 온타리오州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기업(예:Uber)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시급 15캐불 검토 중
24.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326,254콜론(사무직, 업무숙련도下, 전년 대비 2.5% 인상) - 사무직 여부와 학력, 업무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국가명	최근 동향
25.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1백만 콜롬비아페소(전년 대비 10.1% 인상) ○ 노사정은 합의를 통해 '22년 최저임금 결정 - 지난 50년 동안 최고인상률은 두케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 것임 - 중앙은행과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로 인해 물가인상률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26. 파라과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2,289,324과라니(전년 대비 4.4% 인상)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임시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
27.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25,250NT\$, 시급 168NT\$(전년 대비 5% 인상) ○ '기본임금심의위원 남녀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3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 추가 ○ 정부는 '21.9~10월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기업 대상으로 심사 후 보조금 지원 예정
2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은 '20년 이후 동결(56개 도시 월급 1,200링깃) ○ 정부는 '22년 말까지 최저임금을 1,500링깃으로 인상 예정
29.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은 '20년 이후 동결(1지역 월급 442만 동) ○ 노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 '22.4월 강력한 방역의 여파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악화
30.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822,000숨(전년 대비 10.0% 인상)
31.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은 '18년 이후 동결(시급 29.12NIS, 월급 5,300NIS) ○ '21.11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25년까지 6,000NIS까지 인상 계획 발표
32.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4,641,854루피아(자카르타, 전년 대비 5.1% 인상) - 18개 지역 중 11곳 인상(0.06~5.1%) ○ 자카르타주 주지사는 '22년 인상률을 0.83%로 발표했지만 얼마 후 5.1%로 수정 발표 -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하고 규정위반에 대한 조사를 계획 ○ 노측은 개정 최저임금 산식이 예전에 비해 낮은 인상률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주장

국가명	최근 동향
33.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30엔(전년 대비 3.1% 인상) - 인상률 3.1%는 '02년 이후 최고인상률 ○ 정부는 사측 부담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한 사업자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용 일부 지원 등의 업무개선 조성금 제도 확충 예정 ○ 관방장관은 금년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르면 '25년까지 전국 최저임금 시급 평균액을 1천 엔 이상으로 인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3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2,320위안(북경, 전년 대비 5.5% 인상) - 32개 성·시 중 23개에서 최저임금 인상(인상폭 60~300위안) -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보험,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 예정
35.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봉제업 최저임금은 월급 194달러(전년 대비 1.0% 인상)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자국 경쟁력 저하를 감안하여 동결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향후 선거 등을 고려하여 인상 결정
36.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은 '20년 이후 동결
37.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월급 4,253TL(전년 대비 18.9% 인상) - 18.9% 인상되었지만 실질임금은 '21년에 비해 낮아짐
38.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은 '18년 이후 동결(월급 15,771페소, 수도권 지역) ○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측은 일급 750페소까지 인상 주장(현재 500~537페소, 수도권 지역) ○ 금년 5월 노동고용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마닐라)을 포함한 2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추진 동향이 있다고 밝힘
39.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21.20NZ\$(전년 대비 6.0% 인상)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과 사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를 주장했고 노측은 그간 요구해 온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함
40.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20.33호주달러, 주급 772.6호주달러(전년 대비 2.5% 인상) ○ 금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을 소비자 물가상승 수준(5.1%)에 맞춰 인상할 예정이라고 언급
41.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저임금은 시급 23.19란드(전년 대비 6.9% 인상) ○ '21년 3분기 실업률이 34.9%로 '08년 이후 최고 수준 ○ 정부는 3년간 공공임금을 삭감하고 중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연평균인상률을 0.8%로 유지하는 내용(공공임금의 사실상 동결)을 발표

* OECD 가입 26개국

※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제출 받은 일자 기준 작성(다만, 영국·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콜롬비아·남아공은 '22.2월, 필리핀·호주는 5월, 일본은 6월 제출)

3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국가명	'22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²⁾ (대표 지역 및 직종 등)	결정 기관 ³⁾	결정 기준	결정 고시 단위	구분 적용 ⁵⁾
1. 그리스 ¹⁾	2.0% (3년 미만, 사무직 근로자)	정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⁴⁾)	거시경제지표, 사회보장제도, 세율 등	직원: 월급 기술자: 일급	직종별 구분
2. 네덜란드 ¹⁾	1.4%	중앙정부 (사회고용부 장관)	정부중앙경제계획, 평균임금동향, 거시경제지표 등	월급·주급· 일급	전국 단일
3. 독일 ¹⁾	2.3% (국가최저임금)	노사전문가위원회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된 직종별 임금수준, 거시경제지표 등	시급	지역별· 산업별 구분
4. 라트비아 ¹⁾	전년 동결 ※동결 직전연도 인상률:16.3%	정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거시경제지표, 노동생산성, 근로자의 평균수입 및 세 부담 등	월급	전국 단일
5. 러시아	8.6% (중앙정부 최저임금)	의회 (노사정위원회 협의)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 1인당 중위소득 등	월급	지역별 구분
6. 루마니아	10.9%	노사정위원회	비공개	월급	전국 단일
7. 벨기에 ^{1),6)}	4.0% (국가최저임금)	·국가단위 노사위원회 (국가최저임금) ·산업별 노사위원회 (산업별 최저임금)	물가 연동,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된 보수기준	월급	산업별 구분
8. 스위스 ¹⁾ 제네바주	0.6% (제네바주)	노사정위원회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생활비 연동	시급	지역별· 산업별 구분
9. 스페인 ¹⁾	5.3%	·노사정 합의 ※ 별도 위원회 없음 ·정부	소비자물가지수, 국내 평균 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증가율, 거시경제지표 등	월급 (일급·연급 병기)	전국 단일
10. 슬로바키아 ¹⁾	3.7%	·노사 합의 ·(미합의 시)노사정위원회	거시경제지표, 평균 명목임금	시급·월급	전국 단일
11. 아일랜드 ¹⁾	2.9%	정부 (노사전문가위원회 권고)	거시경제지표, 세계 각국과 비교(특히 영국 및 북아일랜드), 고용 창출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등	시급	전국 단일

국가명	'22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²⁾ (대표 지역 및 직종 등)	결정 기관 ³⁾	결정 기준	결정 고시 단위	구분 적용 ⁵⁾
12. 영국 ¹⁾	6.6% (23세 이상 국가최저임금)	노사전문가위원회	주당 평균소득, 국민소득,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	시급	연령별 구분
13. 체코 ¹⁾	6.6%	정부 (노사정위원회 협의)	거시경제지표, 최저생활비, 사회보장비, 평균임금수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국내외 상황 비교 등	시급·월급	전국 단일
14. 포르투갈 ¹⁾	6.0%	정부 (노사정위원회 협의)	최저생계비, 거시경제지표,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시장 상황 등	월급	전국 단일
15. 폴란드 ¹⁾	7.5%	정부 (노사정전문가위원회 협의)	거시경제지표, 평균급여, 사회계층별 생활수준, 노동생산성, 국가예산, 고용수준 등	시급·월급	전국 단일
16. 프랑스 ^{1),6)}	3.1%	정부 (전문가집단 및 노사정위원회 의견수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구매력상승률, 근로자의 임금자료	시급 (월급 병기)	전국 단일
17. 헝가리 ¹⁾	19.5% (고졸 미만자) 18.8% (고졸 이상자)	정부 (노사전문가위원회 협의)	근무환경, 노동시장 상황, 거시경제지표 등	월급 (시급·일급· 주급 병기)	전국 단일
18. 멕시코 ¹⁾	22.0% (지역별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 (전문가 의견수렴)	경제성장 및 발전, 일자리, 임금구조, 지출분배상황, 생계비, 구매력지수, 빈곤 노동 동향 지수 등	일급	지역별· 직종별 구분
19. 미국 ^{1),6)}	2009년 이후 동결 (연방최저임금) ※동결 직전연도 인상률:10.7%	·의회(연방·州) ·지방정부 (카운티·市, 조례재개정)	별도 명시 기준 없음	시급	지역별 구분
20. 브라질	10.2% (연방최저임금)	의회 (정부안 제출)	의식주 및 위생·교통 등의 소요비용, 물가상승률	월급	지역별· 직종별 구분
21. 아르헨티나	52.8%	노사위원회	공개된 기준은 없으나 민간 정규 근로자 통계 및 소득분배, 소득 추이 참고	월급·시급	전국 단일
22. 칠레 ¹⁾	7.2%	의회 (노사정 의견수렴)	예산집행부 보고서, 경제활동생산성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 전망 등	월급	전국 단일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국가명	'22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²⁾ (대표 지역 및 직종 등)	결정 기관 ³⁾	결정 기준	결정 고시 단위	구분 적용 ⁵⁾
23. 캐나다 ^{1),6)} 온타리오주	5.3%	주 정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한 자동조정	시급	지역별 구분
24. 코스타리카 ¹⁾	1.9~3.2% (사무직) 2.1~4.5% (비사무직)	노사정위원회	국민생계비, 노사 및 관련 기관 제출 자료	일급, 주급, 월급	직종별 구분
25. 콜롬비아 ¹⁾	10.1%	·노사정위원회 (·미합의 시) 정부	물가상승률, 국가수입에 대한 임금기여도, 거시경제지표, 국민소득세 등	월급 (시급 병기)	전국 단일
26. 파라과이	4.4%	노사정위원회	기초생계비,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임금, 임금수준 등	월급 (일급 병기)	전국 단일
27. 대만	5.2%(월급) 5.0%(시급)	위원회 ※추후 확인 필요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생필품가격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월급·시급	전국 단일
28. 말레이시아	2020년 이후 동결 ※동결 직전연도 56개 도시 인상률:9.1%	노사정전문가위원회	소득빈곤선, 사용자 지불능력(임금중앙값),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실업률, 생산성증가율	월급 (일급·시급 병기)	지역별 구분
29. 베트남	2020년 이후 동결 ※동결 직전연도 인상률:5.5%	정부 (노사정위원회 권고) ※통상 위원회 권고안 수용	생계비, 거시경제지표, 노동시장 임금수준	월급	지역별 구분
30. 우즈베키스탄	10.0%	정부 (노동 의견수렴)	생계비 변화	월급	전국 단일
31. 이스라엘 ¹⁾	2018년 이후 동결 ※동결 직전연도 인상률:6.0%	의회 (노사 단체협약)	생계비, 물가지수, 임금·노동력통계, 실업률 등	시급·월급	전국 단일
32. 인도네시아	5.1% (자카르타)	주 지사 (노사정전문가위원회 권고) ※통상 위원회 의견 수용	1인당 평균 소비액, 적정생계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월급	지역별 구분
33. 일본 ¹⁾	3.1% (전국 가중평균)	지역노사전문가위원회	근로자의 생계비, 사업별 지급능력, 거시경제지표, 임금교섭 결과, 생활보호 지표, 영향률·미만율, 임금 등	시급	지역별· 산업별 구분
34. 중국	5.5% (북경)	중앙정부 (노사 의견수렴)	평균생활비용, 소비가격지수, 사회보험비용, 평균임금, 실업률 등	월급·시급	지역별 구분

국가명	'22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 ²⁾ (대표 지역 및 직종 등)	결정 기관 ³⁾	결정 기준	결정 고시 단위	구분 적용 ⁵⁾
35. 캄보디아	1.0%	정부 (노사정위원회 권고)	가족상황, 물가상승률, 생계비, 생산성, 국가경쟁력 등	월급	전국 단일
36. 태국	2020년 이후 동결 ※동결 직전연도 방콕 지역 인상률:1.8%	노사정위원회 (지방정부 요청)	(중앙임금위) 임금수준, 생계비, 물가, 노동생산성 등 (지역최임위) 근로자 생활비, 근로자소득 증가 능력, 거시경제지표	일급 (학생근로자:시급)	지역별·직종별 구분
37. 터키 ¹⁾	18.9%	노사정위원회	최저생계비, 소비자물가지수, 기업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일급	전국 단일
38. 필리핀	2018년 이후 동결 ※동결 직전연도 인상률:%	지역노사정위원회	생활임금 수요, 지불능력, 임금수준, 생산성, 지역별 여건, 분배 등	일급 (가사근로자:월급)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구분
39. 뉴질랜드 ¹⁾	6.0%	정부 (노사정 의견수렴)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실업률 등	시급	전국 단일
40. 호주 ^{1),7)}	2.5% (국가최저임금)	공정근로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노사정 의견수렴)	생산성, 기업경쟁력, 임금인상률, 생계비용, 임금수준 등	시급	산업별 구분
41. 남아프리카 공화국	6.9%	정부 (노사전전문가위원회 권고)	생계비, 임금수준, 단체협상결과, 노동생산성, 사용자들의 능력 등	시급	전국 단일

- 1) OECD 가입 26개국
 - 2) 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경우 대표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업별로 구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시함
 - 3) 결정기관: 최저임금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 기준으로 작성
 - 정부결정: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변경 가능
 - 위원회 결정: 최저임금을 위원회에서 결정(소속은 독립기구, 정부산하 등으로 다양)
 - 4) 의견수렴: 정부·위원회·자문위에서 주최하는 회의, 공청회 등이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관련 의견청취 내지 취합
 - 5) 구분 적용: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기관에서 함께 구분하여 결정하면 구분적용으로 분류하되, 산별 교섭 결과를 정부 내지 위원회가 추후 인정하는 경우도 산업별 구분 적용으로 분류
 - 6)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정 비율 상승하면 최저임금 자동 조정(다만, 미국은 일부 州·카운티·市에서 실시)
 - 7) 기업·개인별 최저임금 협약도 인정
- ※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제출 받은 일자 기준 작성(다만, 영국,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남아공 등 5개 국가는 '22.2월 제출)

12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유 럽】

【아메리카】

【아 시 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우 권



1. 그리스

국 명	그리스(Hellenic Republic)	
언 어	그리스어	
면 적	13만 km ²	
인 구	1,100만 명	
수 도	아테네(Athens)	
주 요 도 시	테살로니키, 파트라, 이라클리오, 라리사 등	
종 교	그리스정교(98%), 이슬람교(1.3%), 기타(0.7%)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초등 6년, 중등 3년)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828억 유로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17,622 달러(2020년) (출처: World Bank)
	GDP성장률	8.3%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399억 유로 수 입 642억 유로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12.8%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1.2%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gr-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세기 초에 이미 초기 형태의 근로자단체가 있었으며, 최초의 노동조합은 1879년, 그 첫 상급단체는 1918년 설립
- 1940년대 내전 이후 미국의 마셜플랜 원조를 바탕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근로자단체 입지 강화
 - 1955년 정부는 「노동분쟁해결에 관한 법률(Law 3239/1955)」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생계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도입

2) 발전과정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성 보장

- 군사정권시절(1967~1974) 정부의 자의적인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한 병폐를 교훈 삼아 군사정권 붕괴 이후 민정체제 아래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
- 1990년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Law 1876/1990)」 제정,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하도록 규정(정부개입 불허)
 - '11년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타결된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하는 역할만 수행

□ 재정위기 기간 중 구제금융 채권단의 영향

- '12년 재정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채권단(EU, ECB, IMF)과 제2차 구제금융협정을 체결, 최저임금 삭감, 노동권 제한 등 조치
 - '12.3월 개정된 노동고용법(Law 4046/2012)에 따라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22% 삭감
 - '17.1.1.부터 25세 미만(3년 미만, 미혼자)은 32% 삭감
- '12년 정부는 채권단의 요구로 중기재정조치법(Law 4093/2012)을 개정하고, 채권단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는 제도 시행
 -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전까지 최저임금 동결 및 단체계약, 노동분쟁 중재 등 노동법 규정 적용 배제

- '15.9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에서도 정부가 채권단과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

□ 재정위기 극복 후 최저임금 인상

- '18.8월 제3차 구제금융 종료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검토, '19.1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4241/127/2019)을 발표하여 최저임금을 월 586→650유로(3년 미만, 사무직, 미혼)로 64유로(11%) 인상 결정
 - ※ 전국근로자연합은 경제위기 전 수준인 751유로(28%)로 인상을 주장하였고, IMF 등 채권단은 소폭(2~4%) 인상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11% 인상 결정
- '19.1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에 의해 소득세 및 긴급재정조치법(Law 4172/2013 제103조) 개정
 - 25세 미만 연령별 구분 적용을 폐지하고 일부 수당 복원
- '21.7월 '22.1.1.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월 650→663유로(3년 미만, 사무직, 미혼)로 13유로(2%) 인상을 결정하고, 12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107675/2021) 발표
 - ※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은 현재 650유로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751유로(15.5%)까지 인상을 주장했으나, 중앙은행과 경제산업연구소(IOBE)는 코로나19로 인한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2 | 관련 법

-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Law 1876/1990)
 - 1990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 포함
- 노동고용법(Law 3864/2010)
 - 재정위기 이후 최저임금 삭감 등을 위해 개정(Law 4046/2012)
- 중기재정조치법(Financial Adjustment Act, Law 4093/2012)
 - '12.11월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
 - '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전국노동단체협약(National General collectiv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정부가 결정하고 관련 입법으로 최저임금을 조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외국인 및 비정규직 근로자,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 가사근로자(home workers) 포함

적용 제외: 없음

특례 대상

- 경력에 따른 가산
 -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7613/395/2019)은 최저임금과 근무기간에 따른 가산금액을 합산한 임금을 모두 고시하고 이는 실질적 최저임금으로 기능
 - 가산금액은 3년 경력* 기준으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12년까지 10%, '12년 이후 5%)
 - * 경력은 국립사회보장공단(EFKA, Ethniko Foreaj Koinoniki Asfalis)이 발행하는 건강보험증명서를 통해 입증 가능
- 혼인 여부에 따른 가산
 - 동일한 경력을 가지더라도 기혼직원은 미혼직원보다 추가로 일정 금액 가산('19.2월~'21.12월 월 65.0유로, '22.1.1.일부터 월 66.3유로)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단체와 협의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정부는 '19년 근로자 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발표했으며, '22년에는 근로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친 후 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 '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단체(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 간 협상에 따라 전국노동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 단체협약은 매 짝수년도 1.1.부터 노사단체 간 협상을 시작하여, 같은 해 3.31.까지 체결하고 향후 2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
 - 협상 결렬 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중재하여 협상을 재개할 수 있으며, 정부가 대신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경제상황이 악화된 경우 정부요청으로 차년도 임금을 동결한 경우도 있고, 총선이 개최되는 해에는 노조 등이 정치권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성사시키는 등 협상을 기본으로 함
 -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사회보장부에서 장관령으로 발표
- '12년 이후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관련 입법으로 최저임금을 조정
 - 중기재정조치법 개정을 통해 구제금융프로그램 종료('18.8월)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동결, 단체협약, 노동중재 등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일시중단하기로 하였으므로 '12~'19.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다만, 최저임금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

3) 갱신주기 및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 '12년 이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
 - '19.2월~'21년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정부는 '20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개시 시점을 3차례 연기
 - '20.2월 총리는 국회에서 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20.6월 중순 이후로의 연기를 제안하였다고 발표
 - '20.5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21. 1월 중순 이후로 재연기(Law 4690/2020)
 - '20.12월 정부는 Law 4674/2020(Law 4172/2013 제103조 수정)를 통해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21.3월 말로 3차 연기
- 정부는 '22.1.1.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21.7월에 결정하고, 12월에 공포

□ 결정시기: 관련법에 결정시기를 규정

- '21년은 3.26. 이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 논의를 진행한 후 각료 회의를 거쳐 7.26. 결정
 - '21.3.26. 최저임금 논의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논의 개시 통보
 - * 참여자: 중앙은행, 통계청, 인력관리공단(OAED),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 전문가·장인·상인연맹(GSEVEE), 경제산업연구소(IOBE), 경제연구센터(KEPE), 상공회의소(ESEE) 등
 - '21.4월 말까지 최저임금 논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
 - '21.5.11. 사회적 파트너*에게 보고서 초안을 송부하고, 최종 협의를 위한 결과보고서 작성
 - * 사회적 파트너: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GSEE), 사용자단체(SEV), 전문가·장인·상인연맹(GSEVEE), 상공회의소(ESEE), 그리스관광기업협회(SETE), 경영자총회(SVE)
 - '21.6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재무부장관 및 노동사회보장부장관에게 제출
 - '21.7.26. 각료회의를 거쳐 '22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
 - '21.12.27.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107675/2021) 발표

□ 시행시기: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음 최저임금 결정 전까지 적용

4) 결정기준

- '12년 구제금융협상 이전까지는 근로자단체(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단체 협상 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 경제지표 및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타협 시도
- '19년 최저임금 결정 시 △사회보장제도 예산 흑자 전망('19년 141백만 유로, '20년 42백만 유로), △중앙은행, 통계청, 인력관리공단, 전국노조연합 노동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 등을 참고
- '22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앙은행, 통계청, 인력관리공단, 전국노조연합 노동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세율 및 사회보장제 인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 결정단위

- 직원(employees): 월급 단위
- 장인(craftsmen): 일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미허용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개인 부담금(월급의 6.67%)
 - 매월 지급되는 고정상여금 등 현금급여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수당, 휴가비, 출장비,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현물급여
 - 법령에 규정된 크리스마스·부활절·휴가보너스
 -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5.1.~12.31. 근무 시 월급의 100%를 지급하고 이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Law 1082/1980)
 - 부활절 보너스는 1.1.~4.30. 근무 시 월급의 50%를 지급하고 이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Law 1082/1980)
 - 휴가 보너스는 월급의 50%를 넘을 수 없음(Law 4504/66)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은 없음
- 직원(employees)과 장인(craftsmen)을 구분하여 결정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관보에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령 고시
 - 직원(employees)은 월급, 장인(craftsmen)은 일급으로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없음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감독기관(SEPE, Soma EPitheorisis Ergasiaj)은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직속기구로써 1999.7.1. 발족되었고 중앙 및 지역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노동감독업무를 수행함
 - 권한 및 역할
 - 모든 민간기업의 노동 관련 법·제도의 충실한 이행 여부 감독
 - 노동법 위반, 불법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보호 여부 등 사례 적발, 조사, 행정적 제재 처리
 - 행정적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위반 시, 관련 기록과 확인서를 발행(제소는 피해자가 해야 함)
 - 노동에 기인한 질병, 업무 중 발생하는 증상 또는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 근로자의 고발 접수
 - 노동제도와 규정의 효과적인 적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권고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는 미지급 시 고용계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방문,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으로 고발 가능
 - 근로자 고발 시 감독기관이 조사를 실시하며, 근로자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의 조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공지 없이 언제든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위반의 정도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
- 노사 중재기관: Organism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OMED)
 -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사중재업무를 담당해왔으나, '12년 중기재정정책법에 의해 권한이 약화되어 현재 유명무실
 - 경제위기 이전에는 각종 소송에 대해 노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와 피고가 참여하는 사전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과반수로 의결하였음
 - '12년 법률 개정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으며,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행정제재: 고용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aw 3996/2011 24조
 - 위반의 정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500~50,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청이 결정하며, 사용자는 60일 안에 법원에 이의제기 가능
 - 임시 직장 폐쇄 또는 사업장 일부분의 임시 폐쇄 가능
 - 4년 내 위반사항이 반복 시 행정제재와는 별개로 3개월~3년까지 공공입찰에서 배제

2) 사법적 권리구제

- 형사처벌: 고용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aw 3996/2011 28조
 - 근로조건, 보수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형벌 부과 가능
 -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900유로 이상의 벌금, 또는 병과 가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원에 구제신청
 - 법원은 사용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부과

IV |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 최저임금 현황

1) 최근 최저임금 통계

- '22.1.1.부터 월급 663유로(3년 미만 직원), 일급 29.62유로(3년 미만 장인)
 - ※ 200%의 법정상여금(성탄절·부활절·휴가)을 포함하면 연간 9,282유로(663유로×14개월)로 매월 773.5유로(9,282유로/12개월)를 받게 됨
 - 경력에 따른 가산
 - (직원)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월 66.3유로 가산
 - ※ '17년 채권단 요구에 따라 25세 미만에 대해 32% 추가 삭감, '19년부터 연령별 구분적용이 폐지되어 모든 연령 동일하게 적용

- (장인) 경력이 3년씩 늘어날 때마다 최저임금에 일 1.48유로 가산
 - ※ '12.1.1.~'19.1.31. 구제금융협정에 따라 6년 이상 장인에 대한 경력 가산이 미적용됨('19. 2.1.부터 연령차별 폐지)
- 혼인 여부에 따른 가산
 - (직원) 동일한 경력을 가지더라도 혼인한 경우 월 66.3유로 가산
 - (장인) 동일한 경력을 가지더라도 혼인한 경우 일 2.96유로 가산

2) 직원·장인의 경력에 따른 최저임금

○ 직원(employees)

(단위: 월급, 유로)

적용기간 \ 경력	3년 미만	3~6년	6~9년	9년 이상
'22.1.1.~	663.00	729.30	795.60	861.90
'19.2.1.~'21.12.31.	650.00	715.00	780.00	845.00

○ 장인(craftsmen)

(단위: 일급, 유로)

적용기간 \ 경력	3년 미만	3~6년	6~9년	9~12년	12~15년	15~18년	18년 이상
'22.1.1.~	29.62	31.10	35.58	34.07	35.55	37.03	38.51
'19.2.1.~'21.12.31.	29.04	30.49	31.94	33.40	34.85	36.30	37.75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22.1월 미초타키스 총리는 '22.5.1.부터 최저임금을 추가로 2% 이상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노동사회보장부는 최저임금 논의 일정을 발표
 - '22.1월 최저임금 논의 참여자들*에게 서면으로 개시 통보
 - * 참여자: 중앙은행, 통계청, 인력관리공단,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 전문가·장인·상인연맹, 경제산업연구소, 경제연구센터, 상공회의소 등
 - '22.2월까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

- '22.3.15.까지 사회적 파트너*에게 보고서 초안을 송부하고, 최종 협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 * 사회적 파트너: 그리스노동조합총연맹, 사용자단체, 전문가·장인·상인연맹, 상공회의소, 그리스관광기업협회, 경영자총회
- '22.4.1.5까지 최종보고서를 재무부장관 및 노동사회보장부장관에게 제출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20년 - 9.0%였으나, '21년 2분기부터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연간 8.3% 성장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
- (실업률) '21년 상반기 16%대였으나 하반기 들어 관광 시즌 재개 등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13% 내외까지 하락('21.12월 12.8%)
- (물가상승률) '21.1~4월 하락했으나, 5월부터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11월 4.8%, 12월 5.1% 상승('21년 1.2% 상승)
- (무역) '21년 수출은 399억 유로(전년 대비 29.7% 증가), 수입은 642억 유로(전년 대비 31.5% 증가), 무역수지 적자는 243억 유로로 전년(180억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Minimum_wage_statistics
- EU 회원국 노사관계 <http://www.eurofound.europa.eu>
- 그리스 근로자연합: <http://www.gsee.gr>
- 그리스 근로자연합 노동연구소: <http://www.inegsee.gr>
- 노동사회보장연대부: <http://www.ypakp.gr>

(문 의) 주그리스대사관 민경신 참사관
(연락처) +30-210-698-4080, ksmin20@mofa.go.kr

* 제출일: '22.3.8.

2. 네덜란드

국 명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언 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리슬란드어, 파피아멘토어 등	
면 적	4.2만 km ² (내해수면 제외 시 면적: 3.4만 km ²)	
인 구	1,759만 명	
수 도	암스테르담(Amsterdam)	
주 요 도 시	헤이그(정부 소재지), 로테르담, 위트레흐트	
종 교	가톨릭교(24%), 개신교(15%), 이슬람교(5%) 기타(5%), 무교(51%)	
교 육	의무교육기간: 5~16세(12년) * 초등교육 9년(4~12세, 의무교육은 5세부터) * 중등교육 7년(12세부터, 직업학교(vmbo, 4년) * 일반중등학교(havo, 5년), 대학준비교육(vwo, 6년)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조 76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57,715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4.8% (출처: CBS)
	교 역	수 출 5,866 억 유로 (출처: CBS) 수 입 5,272 억 유로
	실 업 률	3.8 % (출처: CBS)
	물가상승률	2.7 % (출처: CBS)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nld.mofa.go.kr/kor/eu/nld/main/index.jsp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 결정 체계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발전과정

- 1940~50년대 임금은 중앙정부(당시 사회부)에서 정한 「임금인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사전 협상 후
 - 노사 협상안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
 - ※ 1945년 임금 지침상 하한선은 주 35길더(현재 15.9유로)였음
- 1963년 정부는 기존 임금정책을 폐지하고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1968년 의회와 국왕자문위원회(de Raad van State, Council of State)의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 같은 해 11.27. Juliana 여왕이 공포함으로써 1969년 법정 최저임금 도입

2 관련 법

-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수당에 관한 법
- 최저청년임금법령
- 단체노동협약(CLA)
 - 업종별로 상기 최저임금법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합의
 - ※ 근로자의 85%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 결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21세 이상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근로자에는 다른 사람과의 업무계약(a contract of assignment)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의 고용관계도 포함

적용 제외

- 가사근로자

특례 적용

- 15세 이상 21세 미만 근로자는 연령별 감액(청년최저임금) 적용

- 청년 근로자 중 직업훈련생(BBL) 근로자는 추가 감액 적용

(단위: 유로)

연령	최저임금 대비 비율(%)	월급	주급	일급
21세 이상	100	1,725.00	398.10	79.62
20세	80	1,380.00	318.50	63.70
19세	60	1,035.00	238.85	47.77
18세	50	862.50	199.05	39.81
17세	39.5	681.40	157.25	31.45
16세	34.5	595.15	137.35	27.47
15세	30	517.50	119.45	23.89

- 장애 원조수당(Wajong) 수급 근로자

- 해당 근로자는 사회보장국(UWV)의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음

※ 17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25% 이상의 근로능력 손상을 입은 65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75%까지 지급 가능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사회고용부 장관

2) 결정방법 및 절차

- 매년 초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경제계획(Central Economic Plan)과 부문별 노사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평균임금동향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을 사회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
 - 매년 7월에 발효되는 최저임금은 동년 상반기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 조정(전반기 대비 상향조정만 가능)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6개월
- 결정·시행시기: 매년 1.1.과 7.1.

4) 결정기준

결정기준

-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반기 최저임금은 전년도 거시경제지표(Macro-Economic Explorations)를, 하반기 최저임금은 당년도 상반기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결정

심의 참고자료

- 네덜란드 거시경제지표 및 국가계정
- 매년 초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경제계획과 경제분석 보고서
- 부문별 노사단체협약에서 합의된 평균임금 동향

5) 결정단위

- 월급, 주급, 일급 단위로 고시
 - 시급은 주급을 해당 산업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고시에서는 대다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36, 38,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안내
 - ※ 예: 시설재배원예업·요식업(주당 38시간), 슈퍼마켓(주당 40시간) 등
 - 기타 연령별·직업훈련생·시급 최저임금은 고시의 별도 해설에서 명시
- 시간제(part-time)의 경우 주급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및 자료 공개 여부: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 고정 성과상여금
 - 교대근무 및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추가 보수
 - 팁처럼 제3자가 제공하는 보수
 -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사용자와 합의되어야 함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휴가수당
 - 이익배당
 - 장기근로에 따른 적립금(연금, 저축에 대한 사용자 기여분)
 -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
 - 연말수당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의 부담분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최저임금의 구분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지역별·산업별 구분 적용 없음)

※ 단체노동협약(CLA)에 따른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음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사회복지부 장관 규정으로 월급, 주급, 일급을 공보에 고시

- 규정은 월급, 주급, 일급만 고시하며, 기타 연령별·직업훈련생·시급 최저임금은 공보해설에서 별도로 명시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최저임금 이행 감독은 노동감사원(Inspectie SZW)이 주관

- 노동감사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시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결정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행정벌

○ '17년 노동감사원은 500개 파견회사를 감사(사업장감독)하였으며, 위반이 발견된 131개 사업장에 총 130만 유로 이상의 벌금 부과

※ 특히 농업, 금속, 외식(케이터링), 소매, 건설, 청소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

○ 사용자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후 4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500유로의 벌금 부과

사법적 권리구제

○ 근로자는 위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지방법원 제소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1,725유로, 주급 398.1유로, 일급 79.7유로로 '21.7월 대비 1.41% 인상('22.1.1.)

(단위: 유로)

연도	전일제 기준 최저임금 고시			시간당 최저임금		
	월급	주급	일급	주 36시간	주 38시간	주 40시간
2022년 상반기	1,725.0	398.1	79.7	11.06	10.48	9.96

○ 정부는 '22.1월 경제정책기획국(CPB)의 연정합의문(coalition agreement) 관련 재정적 합의 분석보고서 발표 이후, 주당 근무시간(36, 38, 40시간)의 구분 없이 시간당 11.89 유로로 일괄 인상할 예정이라 발표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유로)

연도		전일제 기준 최저임금 고시			시급 최저임금*		
		월급	주급	일급	주 36시간	주 38시간	주 40시간
2022	상반기	1,725.00	398.10	79.70	11.06	10.48	9.96
2021	하반기	1701.00	392.55	78.51	10.91	10.34	9.82
	상반기	1,684.80	388.80	77.76	10.80	10.24	9.72
2020	하반기	1680.00	387.70	77.54	10.77	10.21	9.70
	상반기	1,653.60	381.60	76.32	10.60	10.05	9.54
2019	하반기	1635.60	377.45	75.49	10.49	9.94	9.44
	상반기	1,615.80	372.90	74.58	10.36	9.82	9.33
2018	하반기	1,594.20	367.90	73.58	10.22	9.69	9.20
	상반기	1578.00	364.15	72.88	10.12	9.59	9.11
2017	하반기	1565.40	361.60	72.32	10.05	9.52	9.04
	상반기	1551.60	358.05	71.68	9.95	9.43	8.96
2016	하반기	1537.20	354.75	70.95	9.86	9.34	8.87
	상반기	1524.60	352.00	70.40	9.78	9.27	8.80

* 주급을 기준으로 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개월은 약 4.33주, 주 5일, 일 8시간 근무기준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 최저청년임금법령 개정으로 '20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2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19.7.1.)
 - '16년 이전은 23세 이상, '17~'19년까지 22세 이상
- 최저임금 감액 기준 연령 조정 현황 (최저청년임금법령 개정)

연령	2017.7.1. 이전	2017.7.1. 이후	2019.7.1. 이후
23세 이상	100%	100%	100%
22세	85%	100%	100%
21세	72.5%	85%	100%
20세	61.5%	70%	80%
19세	52.5%	55%	60%
18세	45.5%	47.5%	50%
17세	39.5%	39.5%	39.5%
16세	34.5%	34.5%	34.5%
15세	30%	30%	30%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로자의 약 85%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보임
 - 최저임금 근로자 수: 44만 명(근로 인구의 5%)
- 따라서, 노사단체 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최근 현안 및 이슈

- 정부는 연정협정문에서 최저임금을 '25년까지 7.5%로 점진적 인상(1주 36시간 근로 기준)을 약속하고 있음
 - Rutte 총리는 최저임금과 각종 수당(benefits)과의 연계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노령연금(AOW)과의 분리를 시도하고 국회 상원은 기존의 연계 유지를 요청
 - ※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각종 수당도 상승함

□ 관련 홈페이지

- 정부 www.rijksoverheid.nl
- 통계청 www.cbs.nl
- 법률 wetten.overheid.nl/zoeken
- 노동감사원 www.inspectieszw.nl

(문 의) 주네덜란드대사관 이영주 연구원

(연락처) +31-06-1872-9142, yjolee19@mofa.go.kr

* 제출일: '22.3.10.

3. 독일

국 명	독일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언 어	독일어	
면 적	35.8만 km ²	
인 구	8,329만 명	
수 도	베를린(Berlin)	
주 요 도 시	함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종 교	구교 27.1%, 개신교 24.9%, 이슬람교 5%, 유대교 0.1%	
교 육	Primary Education (초등학교) Secondary I Education (인문고·실업고·하우프트슐레) Secondary II Education (인문고·실업고·직업교육) Tertiary Education (대학교)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조 5,706억 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1인당 GDP	42,918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GDP성장률	2.7% (출처: 연방통계청)
	교 역	2조 5,780억 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실 업 률	3.3% (출처: 연방통계청)
	물가상승률	3.1% (출처: 연방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de-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통일 전까지는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다수 기업들이 단체임금협약 적용의무를 벗어나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탈퇴 또는 가입 거부
 - 사용자단체 가입률이 통일 前.80%→後.50%로 하락하고 단체임금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비중이 舊.서독은 50%, 舊.동독은 35%까지 감소하는 등 노사 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 급증

2) 발전과정

□ 연방정부 참여 정당 간 제도 도입 합의

- '13년 말 대연정을 구성한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은 임금 불균형(Lohnungleichheit) 해소를 목표로 '15.1.1.자로 국가최저임금제를 시행기로 합의

※ 평균시급 비교('14년 기준)

△ 단체임금협상 적용 근로자 20.74유로 ↔ 비적용 근로자 17.52유로

△ 직원 1,000명 초과 기업 21.99유로 ↔ 소기업 12.39유로

△ 업종별: 에너지산업 27.80유로, 요식업 9.63유로

△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시급 10.22유로 미만

- 당시 정부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 구현을 도모했고 이를 위한 3대 전제조건은 △ 저임금근로자 대상 임금덤핑 방지, △ 정규직 근로자가 1일 8시간 노동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조리 철폐, △ 빈곤층의 감소

※ 노동의 대가는 전적으로 사회부조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 수준보다 최소한 높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 위헌 논란

- 사용자측은 국가최저임금제 도입이 기본법(헌법)*이 보장하는 임금자율권과 상충되며, 임금협상 및 조정은 노사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

* 기본법(헌법) 제9조 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국가의 개입 없이 노동환경 및 임금을 양자 합의하에 스스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임금자율권 보장

□ 임금자율권 강화법(통칭 최저임금법) 제정

- 정부는 위헌 주장에 대해 국가최저임금제는 '임금덤핑을 목적으로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기업들이 다시 가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사 간 임금자율권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반박
- 연방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임금자율권 강화법(Gesetz zur Stärkung der Tarifautonomie, 2015)」을 입안하였고, '14.7월 연방하원 인준, '15.1.1. 발효

2 | 관련 법

- 임금자율권 강화법(Gesetz zur Stärkung der Tarifautonomie, 2015)
 - ※ 통칭: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업종 및 지역 불문 모든 근로자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 적용

□ 적용 제외

-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시 첫 직장 근무기간 6개월
 - 직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 직업교육생
 - 학교 또는 직업훈련규정에 따른 실습
 - 3개월 미만으로 실행되는 자발적 인턴(수습) 및 자원봉사
 - 직업교육법에 명시된 직업교육 준비과정 참가 청소년
 - 명예직 종사자*

* 명예직 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방식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위원회(Mindeslohnkommission)
 - 노사 대표위원 각각 3인, 노사 대표들이 공동 추대하는 중립적 입장의 위원장 1인 및 표결권 없이 자문만 담당하는 학계 인사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임기는 5년
 - ※ 기본법(헌법)이 보장하는 임금자율권은 노사 외 제3자나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제도는 없음

2) 결정방법 및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방통계청이 월별 임금현황(시급)을 집계하여 작성한 임금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간 최소 3회 이상 회의 개최
 -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표결권을 가진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함
-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표결 시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나, 1차 표결에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2차 표결에 참여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시기: 2년마다 갱신("20년까지)
 - 짝수년 6월에 산정한 2년간의 최저임금은 각 연도 1.1. 적용
- 결정시기: 짝수년 6월에 향후 2년간 최저임금 결정("20년까지)
- 시행시기: 각 연도 1.1. 및 7.1.부터 각각 6개월간 적용("21년부터)

4) 결정기준

□ 결정기준

- 연방통계청 월별 임금현황(시급): 업종별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된 직종별 임금수준을 비교, △주당 40시간 근무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한 후, △해당 시급의 51% 수준을 국가최저임금으로 확정
- 경기현황 및 노동시장의 특별한 조건으로 인해 위원회 위원의 2/3가 연방통계청의 임금지표가 부적격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임금지표와 별도로 결정

- 독일이 생계비가 아니라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평균치를 기준으로 국가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제도의 지향성이 소득의 공정한 배분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
- 생계비는 '07년부터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세후' 실질임금이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부조인 하르츠 IV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하르츠 IV 추가지원(Harz IV Aufstocker) 제도'를 통해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
- 하르츠 IV는 '지원하되(fördern) 요구한다(fordern)'는 원칙하에 실직 1년을 넘긴 장기실업자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되 일자리센터가 요구하는 재교육 및 재취업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부조와 차별화
- 다만, '21.12월 출범정부는 연정협약서에서 하르츠 IV를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대체기로 합의, '22년 관련 입법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예정. 시민수당은 하르츠 IV와 달리 재교육/재취업 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재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재산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

□ 심의 참고자료

- 연방통계청 월별 임금현황(시급)
- 다양한 노사정단체 및 관련 연구소의 최저임금제 현황보고
- 사회 각 계층 전문가 초빙 청문회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위원회 회의 및 표결은 비공개(외부방청 불허)로 진행되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서는 연방노동사회복지부에 제출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
- 위원회 위원들은 제공된 정보 및 청문회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서약 의무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행해진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되는 기본급(Entgelt)과 '근로자가 행한 노동과 그 대가로써의 지급'이라는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의 기본급 외 수당은 산입
 - ※ 기본급 외 지급액은 모두 수당으로 △ 고용계약상 노동 외에 추가노동, 즉 야근, 휴일근무 등의 대가(초과근무수당) △ 상여금 성격의 특별수당(휴가수당, 성탄수당 등)으로 구분
 - 고용계약서상 업무와 직접 연관수당, △건설현장근무수당, △해외근무수당, △교통불편지역 근무수당, △일시불이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정기 지급하는 성탄수당 및 휴가수당(判例, '16.5.25.), △자녀수당 등은 산입
 - 단, 계절근로자(season worker) 고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숙식비, 교통비 등)은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 외국인 근로자 숙식 관련 연방정부지침에 따라 숙식비는 산입 상한선 규정(식비 월 246유로, 숙박비 월 226유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고용계약서상 업무와 연관이 없는 수당, △초과근무수당(휴일, 야간), △성과급, △위험수당, △기업연금지원금, △출장수당, △직능향상교육지원금 등
- 사용자가 '현금이 아닌 형태로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개요

- 국가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
 -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차등 인정

<단체협상을 통한 업종별 최저임금>

업종	기간	舊.서독지역	舊.동독지역
		시급(유로)	
폐기물 처리, 거리미화, 동계도로 제설	'21.10.01.~'22.09.30.	10.45	10.45
임시 직업소개소 활동	'22.04.01.~'22.12.31.	10.88	10.88
직업교육 재이수, 계속 교육	일 반 전문기술 보유	'22.01.01.~'22.12.31.	17.18
			17.70
건물 지붕	일 반	'22.01.01.~'22.12.31.	13.00
		'23.01.01.~'23.12.31.	13.30
	전문기술 보유	'22.01.01.~'22.12.31.	14.50
		'23.01.01.~'23.12.31.	14.80
전 기	'22.01.01.~'22.12.31.	12.90	
	'23.01.01.~'23.12.31.	13.40	
	'24.01.01.~'24.12.31.	13.95	
도축 가공	'22.01.01.~'22.11.30.	11.00	11.00
청 소	내부청소 및 유지보수	'22.01.01.~'22.12.31.	11.55
		'23.01.01.~'23.12.31.	12.00
	건물 외벽	'22.01.01.~'22.12.31.	14.81
		'23.01.01.~'23.12.31.	15.20
건축 비계 공사	'21.10.01.~'22.09.30.	12.55	12.55
	'22.10.01.~'23.09.30.	12.85	12.85
간 병	일 반	'22.05.01.~'22.08.31.	12.55
		'22.09.01.~'23.04.30.	13.70
		'23.05.01.~'23.11.30.	13.90
		'23.12.01.~'24.01.31.	14.15
	전문기술 보유	'22.05.01.~'22.08.31.	13.20
		'22.09.01.~'23.04.30.	14.60
		'23.05.01.~'23.11.30.	14.90
		'23.12.01.~'24.01.31.	15.25
	추가 자격	'22.05.01.~'22.08.31.	15.40
		'22.09.01.~'23.04.30.	17.10
굴뚝 청소	'21.01.01.~	13.80	13.80
석 공	'21.11.01.~'22.07.31.	12.85	12.85
	'22.08.01.~'23.09.30.	13.35	13.35

출처: 연방통계청('22.6월)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세관, 독일노총,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등에 시급 단위로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총괄적인 이행지도 주체는 연방노동사회복지부
- 법률해석 및 관련 상담은 세관(Zoll) 관할(최저임금법 제14조)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고용청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 이행
- 세관(Zoll) 내 불법노동방지 주무 세무기관(Finanzkontrolle Schwarzarbeit)들이 연방 노동공사(BA)의 지원하에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 현재 관리·감독 직원 수는 7,200명(15년 1,600명 추가채용)이나 독일노총은 더욱 철저한 감시를 위해 1만 명으로 증원 주장
- 사용자는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 요청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를 지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감독기관에 신고 가능(최저임금법 제6조)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제 위반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21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최대 3만 유로, 지속적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 유로)

□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제 관련 소송은 노동법원(연방·주·지방)에서 관할하며, 최저임금 지급 등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및 형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형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 연방내각은 '22.2.23. 국가최저임금을 10.1.부터 시급 12유로로 인상하는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상반기 중 연방하원을 통과하면 시행 예정
- 법안 통과 및 관련 준비작업을 위해 '22.10월 이전에 '20.10.28. 의결한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22.7.1. 시급 10.45유로로 인상
- 미니잡 임금*은 '22.10.1.부터 월급 520유로(주당 근로시간 10시간)로 인상
- * 정식 명칭은 저임금고용(geringfuegig entlohnte Beschaeftigung)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연도		시급 (유로)	인상률 (%)
결정시기	적용시기		
2014년	2015.1.1. ~ 2016.12.31.	8.50	
2016년	2017.1.1. ~ 2018.12.31.	8.84	4.00
2018년	2019.1.1. ~ 2019.12.31.	9.19	3.96
	2020.1.1. ~ 2020.12.31.	9.35	1.74
2020년	2021.1.1. ~ 2021.6.30.(상반기)	9.50	1.60
	2021.7.1. ~ 2021.12.31.(하반기)	9.60	1.05
	2022.1.1. ~ 2022.6.30.(상반기)	9.82	2.29
	2022.7.1. ~ 2022.12.31.(하반기)	10.45	6.42
2022년 2월(통과 시)	2022.10.1. ~ 2023.12.31.	12.00	14.83

출처: 독일노총 등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22.2.23. 연방내각은 국가최저임금을 시급 12유로(20% ↑)로 인상하는 특별법(최저임금 인상법, Mindestloohnerhöhungsgesetz)을 의결했으며, 연방하원 통과 시 10.1.부터 시행 예정
 - 연방하원 통과 시 시급 12유로는 '23.6.30.까지 유효(적용기간은 '23년까지)
 - 시급 12유로는 유럽에서 룩셈부르크(시급 13.05유로)에 이어 상위 두 번째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15년 최저임금제 실시 1년 후 중간평가 결과 저임금근로자 370만 명 소득 증가
 - 신규 일자리는 40만 개, 정규직 일자리는 60만 개 이상 증가
- '18.2월 연방통계청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Beschäftigungswirkungen des Mindestlohns)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도입 전후 노동시장 변동조사 실시
 - '12~'16년 모든 형태(정규직 등)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 최저임금 민감기업이나 둔감기업 모두 고용 증가
 - 저임금 고용에만 국한 시 최저임금 도입 후 고용 6.9% 감소('15~'16년)
 - 미니잡(월급 450 유로 이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고용 감소

< 최저임금 민감 업종의 제도 도입 전후 고용 변화 >

업종	민감도	변동률	비고
소매	48%	미니잡: -11%	도입 전 소폭 상승세 유지 도입 후 소폭 감소
요식	71%	미니잡: -5.7% 정규직: +3.6%	'14년과 '16년 고용 현황 동일
숙박업	63%	미니잡: -3.5% 정규직: +4.1%	업체 3곳 중 2곳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영향은 미미한 수준
택시	86%	미니잡: -17.9% 정규직: +9.6%	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감소율도 높음
제빵·제과	69%	미니잡: +2.7% 정규직: +5.0%	예상과 달리 전반적 고용 확대 추세

출처: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연방통계청, 2018)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21.12월 출범 정부는 연정협약에 따라 '22.10월부터 국가최저임금을 시급 12유로로 전년 대비 22% 인상 특별법안을 의결
 - 사용자단체의 인상률 과도 및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을 뿐 사회적 논란이나 반발은 미미한 상황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

□ 최저임금 영향률

- 연방통계청 및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뮌헨 IFO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제 5년 결산보고(20.4.15.)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최저소득층 근로자는 400만 명으로 근로자 전체의 11%
 - ※ 통계 발표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독일의 상황상 상기 영향률은 '16년 기준이나, 비중은 현재도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일반론
- 연방정부는 '22.10.1. 최저임금 인상(시급 12유로)에 따라 600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현황 및 예측치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1.1	-4.6	2.9	3.6
소비자물가 증가률	1.4	0.5	3.1	3.3
실업률(ILO기준, %)	3.0	3.6	3.3	3.1
정부재정수지(억 유로)	511	-1,452	-1,325	-805

출처: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례 경제전망 2022」, 연방통계청, 2021년 추계 공동경제전망 보고서 「Gemeinschaftsdiagnose」
 전망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폭 수정 가능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연방노동사회부
- 독일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감독 기관(연방세관)
- 연방통계청

(문의/연락처) 주독일대사관 강레나 실무관(+49(0)30260650, Inkang20@mofa.go.kr)

(문의/연락처) 주독일대사관 신동민 1등서기관(dmshin07@mofa.go.kr)

* 제출일: '22.3.17.

4. 라트비아

국명	라트비아(Republic of Latvia)	
언어	라트비아어	
면적	6.5만 km ² 단위	
인구	187만 명	
수도	리가(Riga)	
주요 도시	다우가브필스, 리에파야, 옐가바, 유르말라 등	
종교	루터교(37%), 카톨릭교(18%), 러시아정교(14%) 등	
교육	초·중등 의무교육(9년)	
화폐 단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29억 유로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1인당 GDP	17,481 유로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GDP성장률	4.8 %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교역	수출 164.9억 유로 수입 194.3억 유로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실업률	7.6%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물가상승률	7.4% (출처: 라트비아 중앙통계국)
대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lv-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 국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바람직한 근로조건,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2 관련 법

□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 노동법 제61조
- 총리령 563("16.8.18.):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요건을 규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모두 적용
 - 다만, Full time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40시간 미만 근무 시 임금에 비례하여 차감 가능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 결정기관: 총리실

□ 결정방법 및 절차

- 복지부는 매년 7.15.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 국립노사정협의회의 사회보장소위원회 (Social Security Sub-council of the National Tripartite Cooperation Council)에서 협의

- 위원회*에는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을 별도로 참여시킬 수 있음

* 재무부, 경제부, 노동조합, 사용자(기업인)단체 등으로 구성

- 회의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

- 최저임금 변동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총리령 2개월 내 수정안을 만들고 해당 부서는 3개월 내 필요 조치 계획안을 마련

갱신·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통상 10월경 차년도 최저임금 결정

○ 시행시기: 차년도 1월부터 시행

결정기준

○ 경제부 및 재무부 거시경제 지표, 노동생산성 등 전년도 경제상황 변동수치, 근로자의 평균 수입 관련 국세청 자료, 근로자의 세부담 등

- 중앙통계국(Central Statistical Bureau) 발표 거시경제 지표 등

결정단위: 월급 단위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최종 결정 회의만 공개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최저임금 결정 과정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결정 회의 전에 관련 규정 등의 기본 자료는 해당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기본급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보너스, 인센티브, 공제액 등

유급주휴(주휴수당): 미산입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 연령 등 어떠한 기준으로도 구분 적용하지 않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재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언론 보도문 발표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최저임금의 변동 관련 상세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안내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근로감독청(State Labor Inspectorate)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행정벌 규정

- 개인 사업자는 최저임금의 86~114배, 법인은 170~1,420배의 과태료 부과(노동법 제159조)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500유로(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유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월급	200	320	360	370	380	430	430	430	500	500

출처: 복지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백만 유로)	24,560	25,360	26,962	29,142	30,463	29,334	32,916
GDP 성장률 (%)	3.1	1.6	3.8	4.8	2.2	-3.6	4.8
1인당 GDP (유로)	12,421	12,943	13,890	15,129	15,923	-	17,481
물가상승률 (%)	0.3	2.8	2.0	2.6	1.8	-0.9	7.4
명목상 월 평균 임금(유로)	818	859	926	1,004	1,076	1,143	1,277
고용인원 (천명)	896.1	893.3	894.8	909.4	910.0	893.0	864.0
실업률 (%)	9.9	9.6	8.7	7.4	6.3	8.1	7.6

출처: 중앙통계국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관련 홈페이지

- 복지부 <https://www.lm.gov.lv>
- 고용청 www.nva.gov.lv
- 중앙통계국 www.csb.gov.lv
- 근로감독청 www.vdi.gov.lv
- 재무부 www.fm.gov.lv

(문 의) 주라트비아대사관 김소희 참사관

(연락처) +371-6732-4274, shkim92@mofa.go.kr

* 제출일: '22.3.4.

5. 러시아

국 명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언 어	러시아어	
면 적	1,700만 km ²	
인 구	1.46억 명(2021)	
수 도	모스크바(Moscow)	
주 요 도 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종 교	러시아정교(75%),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등	
교 육	의무교육 11년(무상)	
화 폐 단 위	루블(ruble)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48조 달러 (출처: 세계은행)
	1인당 GDP	10,127달러 (출처: 세계은행)
	GDP성장률	4.7% (출처: 통계청)
	교 역	수출 4,933억 달러 수입 2,961억 달러 (출처: 관세청)
	실 업 률	4.3%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8.4%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rus-moscow.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세기 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증가 및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결성 이후, 최초 「노동법(Labor law)」에 최저임금 개념 등장

□ 발전과정

- 1922년 소련 노동법에 직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규정
- 1997년 「최저생계비법(N134-FZ, 1997.10.24.)」 제정
 - 최저생계비*는 노동가능인구의 소비자 장바구니**와 공과금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하여 산출하도록 명기
 -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중앙과 연방주체별)로 다르게 산출하며, 현재는 통계청에서 분기별, 지역별, 전국(러시아)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 ** 소비자 장바구니(Consumer Basket)는 국민 생활·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과 그 외 교육, 의료, 육아 등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액을 말함
- 2000년 「최저임금법(N82-FZ, 2000.6.19.)」 제정
 - 기업의 임금수준 감독, 실업수당, 출산·육아수당, 기타 사회보장성 수당 책정용 최저임금과 장학금, 세금, 벌금 책정용 기본 최저임금(Basic minimum wage)으로 다원화
- 2001년 소련 붕괴 이후 「노동법(N197-FZ, 2001.12.30.)」 개정
 -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규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노동법 체계 재정립
- 2007년 「최저임금법(N82-FZ, 2007.4.20.)」 개정
 - 최저임금을 임금 및 일부 사회보장성 수당(실업수당, 출산·육아수당) 산정에만 적용하도록 변경
 - 이후 행정위반법 개정(N116-FZ, 2007.6.22.)에 따라 기본 최저임금을 행정벌금, 세금, 요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것이 금지됨
- 2020년 「헌법」 개정(제75조제5항, 2020.7.1.)
 -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장

- 2020년 「최저임금법(N473-FZ, 2020.12.19.)」 개정
 - '21년 최저임금은 '20년 중위임금의 42%로 결정
 -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끊어졌으나, 헌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수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간접적인 상관관계 유지
- 2020년 「최저생계비법(N134-FZ, 2020.12.29.)」 개정
 - '21년 최저생계비는 '20년 1인당 중위소득의 44.2%로 결정
 -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비율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 5년 1회 이상 변경
 - 해당연도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되, 전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2 | 관련 법

- 헌법('20.7.1.)
 - 중앙정부 및 연방주체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장(제75조제5항)
- 최저임금법(N82-FZ, '07.4.20.)
 - 매년 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
- 노동법(N197-FZ, '01.12.30.)
 - 최저임금 관련 사회노동관계조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기준, 연방주체별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의 구분 등을 규정(제35조, 제133조)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중앙·지방정부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 내·외국인 동일적용
- 적용 제외: 없음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은 사회노동관계 조정위원회와 사회노동전문가 실무회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서 결정

* 노동사회보장부 부국장급 3명 등 노사정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노사정 합의서 마련, 사회노동부와의 협업, 최저임금 관련 자료 준비 역할

□ 러시아 사회노동관계 조정위원회(The Russian 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social and labor relations, 이하 노사정위원회)

○ 구성: 전러노동조합연합(노), 전러사용자연합(사),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기관 1~30명 내에서 노사정 동수로 구성(전체 3~90명)

- 위원 임명은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임기는 3년

- 위원장 1명은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고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 기능: 단체협상, 노사정 합의문,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 고용분야 법률 자문 등

2) 결정방법 및 절차

○ 매년 노동사회보장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회노동전문가 실무회의에 제출하여 검토 요청

○ 사회노동전문가 실무회의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사회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 위원회는 검토 후 공개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재송부, 정부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

○ 하원 통과 후 상원에 이송

○ 상원에서 최종 결정 후 대통령 서명 및 고시

※ 중앙정부와 연방주체 책정 최저임금 결정방법 및 절차는 동일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12월경
- 시행시기: 매년 1.1.

4) 결정기준

□ 결정기준

- 전년도 2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
 - 전년도 2분기의 최저생계비가 기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기존 최저임금 유지, 최저생계비가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
 - ※ 중앙정부는 차년도 최저임금이 매년 9월경 결정되므로 가능한 최근의 최저생계비 자료를 이용하고 연방주체는 2분기 최저생계비 자료 확보를 위해 10월경 최저임금 결정

□ 심의 참고자료

- 「최저생계비법(N134-FZ)」에 의거 통계청이 발표하는 분기별 최저생계비 자료
 -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에 대한 정부 시행령(N56, '13.1.29.)

< 최저생계비 산출방식 >

= 노동가능인구의 최소한도 식품(소비자 장바구니) 총액 + 식품 외 제품(최소한도 식품 총액의 50%)
+ 서비스 및 공과금(최소한도 식품 총액의 50%)으로 계산

- 통계청 발표 분기별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인구 자료, 소득별 인구 자료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법정근로 주당 40시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일반 및 언론인 방청은 없으나, 필요시 전문가 및 학자 초청 가능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위원회 활동 전반을 언론에 공개, 회의 직후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상여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연차휴가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수당, 가족수당, 현물급여 등 기본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구분
 - 중앙정부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
 - 중앙·지방기관 및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연방주체 최저임금(Regional minimum wage)
 - 지방기관 및 해당 지역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연방을 구성하는 연방주체(85개 지역)는 각자 독자적인 법률을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규정 또한 연방주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음
 - 연방주체 최저임금이 중앙정부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어서는 안 됨
- 산업별 구분
 - 노동사회보장부가 산업별 최저임금 기준이 명시된 노동합의서를 공표하며, 해당 산업별 사용자연맹과 노조연합이 합의서에 동의 후 적용 가능
 - 산업별 구분 규정은 있으나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통상 산업별 최저임금도 중앙정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 고시방법
 - 월급 단위로 고시
 - 대통령 서명 후 7일 이내 공포, 공포 후 10일 이내 발효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노동고용청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관리감독 이행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용자는 1천~5천 루블, 법인은 3만~5만 루블, 재위반 시 5만~7만 루블의 행정벌금 부과
 - 개인사용자 및 법인은 최저임금 규정 미준수 기간 임금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

형벌 규정

-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형법 제14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10만~50만 루블(중범죄 20만~50만 루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중범죄 2~5년), 특정 직업종사 권한 박탈
 - ※ 형사사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차액과 위약금,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불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불가
 - 노동고용청에 신고를 하면 감독관(Inspector)이 현장 실사 후 구제 여부 결정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매년 1.1. 갱신하고 있으나,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 시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일부 인상해 옴
 - 정부는 '22년 최저임금을 6.4% 인상 계획('21.7월)이었으나,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8%대로 나타나 최저임금을 8.6% 인상 결정('21.11.18., 정부회의)
- '22년 최저임금은 월 13,890루블로 1월에는 \$187의 상대 가치를 보였으나(달러당 74.29루블, '22.1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3월에는 \$119로 감소(달러당 116.75루블, '22.3월)

적용개시일	루블	상대 가치 달러(월급)	관련 법령
2022.1.1.	13,890	187	N406-연방법 (2021.12.06. 개정)
2021.1.1.	12,792	172	N473-연방법 (2020.12.29. 개정)
2020.1.1.	12,130	196	N463-연방법 (2019.12.27. 개정)
2019.1.1.	11,280	168	N421-연방법 (2017.12.28. 개정)
2018.5.1.	11,163	177	N41-연방법 (2018.3.7. 개정)
2018.1.1.	9,489	166	N421-연방법 (2017.12.28. 개정)
2017.7.1.	7,800	140	N460-연방법 (2016.12.19. 개정)
2016.7.1.	7,500	115	N164-연방법 제1조 (2016.6.2. 개정)
2016.1.1.	6,204	85	N736-연방법 제1조 (2015.12.14. 개정)
2015.1.1.	5,965	106	N408-연방법 제1조 (2014.12.1. 개정)
2014.1.1.	5,554	170	N336-연방법 제1조 (2013.12.2. 개정)
2013.1.1.	5,205	171	N232-연방법 제1조 (2012.12.3. 개정)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최저임금법 개정(N421-FZ, '17.12.28.)
 - '19.1.1.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도 2분기 노동가능인구의 최저생계비로 정함
 - 최저임금법 개정(N463-FZ, '19.12.27.)
 - 최저임금 기준을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변경
 - 최저임금법 개정(N473-FZ, '20.12.19.)
 - 최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으로 변경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아레피예프 의원(경제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21.8.27.)
 - 최저임금은 시대착오적 제도로써 이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함
 - 골리코바 부총리('21.9.6.)
 -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복지수당* 산출과 연동되어 제도 전환이 쉽지 않으며, 폐지할 경우 사회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 * 병가수당, 출산휴가수당, 신생아(1.5세 미만) 육아수당
 - 對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인한 경제상황(환율급등,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2.12.31.까지 정부에 최저임금 규모 및 산정방식 조정권을 부여하는 법(N46-연방법) 제정('22.3.8. 즉각 발효)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사회보장부 <http://www.rosmintrud.ru>
 - 통계청 <http://www.gost.ru>
 - 법령 정보사이트 <http://www.publication.pravo.gov..ru>

(문 의) 주러시아대사관 김혜경 선임연구원

(연락처) +7-495-783-2727, hykkim17@mofa.go.kr

* 제출일: '22.3.14.

6. 루마니아

국명	루마니아(Romania)	
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독일어 등	
면적	24만 km ²	
인구	1,900만 명	
수도	부카레스트(Bucharest)	
주요 도시	클루즈-나포카, 콘스탄차, 이아시, 티미쇼아라 등	
종교	루마니아 정교 86.7%, 가톨릭교 4.7%, 개신교 3.2% 등	
교육	11년(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2년) *6~17세, 고등 4년 중 2년만 의무에 해당	
화폐 단위	론(RON)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754천억 달러 (출처: 국가전략위원회)
	1인당 GDP	11,870 유로 (출처: EU집행위)
	GDP성장률	5.6% (출처: 통계청)
	교역	수출 747억 유로 수입 983억 유로 (출처: 통계청)
	실업률	5.4%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8.2%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ro-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75년 ILO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131호)의 비준에 따라 국제법적 의무 준수 및 전반적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적 격차 감소 및 소득세 등 세입 예산 증대 목적

□ 발전과정

- 최초 노동법(1950년 「노동법 3/1950」)에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1972년 최초로 최저임금을 명시(「노동법 10/1972」*)
 - * 동법은 노동생산성 및 국민소득을 고려하여 지속 증가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필요 충족을 위해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최저임금을 확정한다고 명시
- 1975년 ILO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131호)을 비준
- 공산주의 붕괴(1989년) 후 1991년 최저임금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결정 -133/1991」을 채택하고 최저임금 결정*
 - * 당시 최저임금은 월 3,150론(월 170시간 × 시간당 18.55론)
- 2003년 「노동법 53/2003」 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

2 관련 법

- 헌법 제41조 제2항
 - 사용자의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
- 노동법(53/2003)
- 재정법(Declaration 112)
 - 사용자의 매월 근로자 소득세 신고 의무 규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외국인, 장애인, 수습근로자를 포함)
 - 당초 외국인에 더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가능 일자리를 제한하여 내국인 고용을 보호하는 효과를 의도했으나, '18.11월 노동법 개정 이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
- 적용 제외: 없음
- 특례 대상
 - 전일 근무하는 중증 이상의 장애인은 기본급에서 15% 인상된 급여를 받는 등 추가 조항을 적용(정부긴급명령 51/2017호)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노사정위원회(National Tripartite Council)
 - 구성: 경영인연맹 및 노동조합 대표, 관계 부처 대표(서기관급 이상), 국립은행 대표, 경제사회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
 -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Law on Social Dialogue no.62/2011)에 근거한 노동부 자문기구로, 총 12개의 경영인연맹* 및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음
 - * 전국(41개 주)에서 21개 주에 지사무소가 있는 경영인연맹('17년 3개 단체)
 - ** 근로자의 5%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17년 2개 단체)
 - 경영인연맹과 노동조합 대표는 각 단체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임명
 - 사회적 합의를 위해 수시 개최되는 위원회로 위원 명단은 의제 및 개최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고, 별도의 임기나 임명방식이 없음
 - 기능: 정부(노동·사회보장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초안을 확정

□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구성: 정부·의회 자문기구로 의장*·부의장을 포함 총 45명(경영인연맹, 노동조합, 시민단체별 각 15명)으로 구성, 4년 임기
 - * 의장은 위원회 내에서 4분의 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경영인연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집단 대표가 순차적으로 역임
 - 「경제사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법률」(no.248/2013)에 근거
 - 경영인연맹과 노동조합* 대표는 각 단체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임명되며, 시민단체 대표는 노동부 장관 추천하에 총리가 지명
 - * 노동조합 대표는 후보 수 과다 등 내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조합 투표를 통해 선출
- 기능: 국가노사정위원회가 확정하고 입법회의(Legislative Council)가 승인한 정부의 최저임금 초안에 대해 최종 승인과 공시
 - 입법회의는 국회와 무관한 정부 내 조직

2) 결정방법 및 절차

- 국가노사정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결정
 - 정부의 최저임금 초안 제시→국가노사정위원회 협의 후 정부 초안 확정→입법회의 승인→경제사회위원회 최종 승인→경제사회위원회가 관보(Official Gazette of Romania)에 최종안 공고
 - ※ 최저임금 결정에서 입법회의 및 경제사회위원회 승인은 형식적 절차
 - 진행 중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Government Ordinance)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연 1~2회
- 결정시기: 일반적으로 연말에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 총선 전후 집권 여당 주도하에 최저임금 인상 경향
- 시행시기: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 후, 차년도 1월부터 발효

4) 결정기준

- 결정기준은 비공개 사항이나 결정배경은 노동부에서 발표
 - 거시경제지표(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 기업환경, 1인당 노동생산성 등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주 40시간 기준)
 -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국가 총기본급을 월별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적용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불허, 자료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위험수당, 유해환경 근무수당,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
 -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최저임금 적용(예외: 건설업 근로자)
 - '22년부터 학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 폐지('21년까지 1년 이상 경력의 유관 분야 졸업자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최저임금 지급)
 - 예외: 건설업 근로자
 - 건설업은 근로자 처우가 열악하며, 대다수 건설업 근로자가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숙련근로자 보호 및 건설 산업 촉진을 위해 증액 적용
 - '19~'28년 소득세 면제(재정법/15), '20~'28년 월 최저임금 3천 원 동결(정부긴급명령, '18)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 정부의 관보 및 사법부 법령 고시 웹사이트에 게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Romanian Legislative Portal (Portal Legislativ) with the following content:

PORTAL LEGISLATIV

ACASĂ | DESPRE PROIECT | FACILITĂȚI OFERITE | LEGĂTURI UTILE

CUPRINS

+ Fișă act

CUPRINSUL ACTULUI

pentru stabilirea salariului de bază minim brut pe țară garantat în plată

Articolul 1

Articolul 2

PRIM-MINISTRU FLORIN-VASILE CÎȚU
 Contrasemnează: Ministrul muncii și protecției sociale, Raluca Turcan,
 Ministrul economiei, antreprenoriatului și turismului, interimar, Daniela Nicolescu,
 secretar de stat
 Ministrul finanțelor, Dan Vilceanu

Revenită în topul paginii.
 Forma printabilă

HOTĂRÂRE nr. 1.071 din 4 octombrie 2021
 pentru stabilirea salariului de bază minim brut pe țară garantat în plată

EMITENT **GUVERNUL ROMÂNIEI**

Publicat în **MONITORUL OFICIAL nr. 950 din 5 octombrie 2021**

În temeiul art. 108 din Constituția României, republicată, și al art. 164 alin. (1) din Legea nr. 53/2003 - Codul muncii, republicată, cu modificările și completările ulterioare,
 Guvernul României adoptă prezenta hotărâre.

Articolul 1

Începând cu data de 1 ianuarie 2022, salariul de bază minim brut pe țară garantat în plată, prevăzut la art. 164 alin. (1) din Legea nr. 53/2003 - Codul muncii, republicată, cu modificările și completările ulterioare, se stabilește în bani, fără a include sporuri și alte adaosuri, la suma de 2.550 lei lunar, pentru un program normal de lucru în medie de 167,333 ore pe lună, reprezentând 15,239 lei/oră.

Articolul 2

La data prevăzută la art. 1, Hotărârea Guvernului nr. 4/2021 pentru stabilirea salariului de bază minim brut pe țară garantat în plată, publicată în Monitorul Oficial al României, Partea I, nr. 40 din 13 ianuarie 2021, se abrogă.

PRIM-MINISTRU
 FLORIN-VASILE CÎȚU
 Contrasemnează:
 Ministrul muncii și protecției sociale,
 Raluca Turcan
 p. Ministrul economiei, antreprenoriatului și turismului, interimar,
 Daniela Nicolescu,
 secretar de stat
 Ministrul finanțelor,
 Dan Vilceanu

București, 4 octombrie 2021.
 Nr. 1.071.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중앙행정기관 노동감독관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형벌 규정

- 노동감독관은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에게 300~2,000원 벌금 부과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분쟁 발생 시 당사자(사용자, 근로자, 노조, 기타 법인 등)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노동분쟁재판의 심리권이 있는 법정에 제소 가능
 - 특히,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 시 근로자는 제소권이 있고 (위법행위 후 30일 내 행사), 그에 따른 손해배상권이 발생함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2,550원(일반근로자, 시급 15.24원×월 평균근로 167.3시간)
 - 건설업계 근로자: 월급 3,000원(시급 17.93원×월 평균근로 167.3시간)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 일반 근로자(2013~2022)

연도	적용기간	월 최저임금(원)	정부결정(HG)	전년 대비 인상률(%)
2022	1월~현재	2,550	HG 1071/2021	10.9
2021	1월 12일~12월	2,300	HG 4/2021	3.0
2020	1월~2021년 1월 12일	2,230	HG 935/2019	7.2
2019	1~12월	2,080	HG 937/2018	9.5
2018	1~12월	1,900	HG 846/2017	31.0
2017	2~12월	1,450	HG 15/2017	16.0
2016	5월~2017년 1월	1,250	HG 1017/2015	19.0
	1~4월	1,050		

연도	적용기간	월 최저임금(론)	정부결정(HG)	전년 대비 인상률(%)
2015	7~12월	1,050	HG 1091/2014	7.7
	1~6월	975		8.3
2014	7~12월	900	HG 871/2013	5.9
	1~6월	850		6.3
2013	7~12월	800	HG 23/2013	14.3
	2~6월	750		7.1
	1월	700		4.5

○ 건설업계 근로자(2019~2022)

연도	적용기간	월 최저임금(론)	정부긴급명령(OUG)	전년 대비 인상률(%)
2022	1월~현재	3,000	OUG 114/2018	해당 없음 (2028년까지 동결)
2021	1월 12일~12월	3,000		
2020	1월~2021년 1월 12일	3,000		
2019	1~12월	3,000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 계약기간 24개월 이상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 법령화

-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24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불(정부긴급명령, '21.12.18.)
- '22년 최저임금 인상일('22.1.1.)부터 적용되나, 그 이전에 체결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에도 소급 적용됨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근 현안 및 이슈

최근 3년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근로자/총근로자)

연도	최저임금 근로자(명)	총근로자(명)	영향률(%)
2022년	1,970,000	5,670,000	34.7
2021년	1,400,000	5,300,000	26.4
2020년	1,370,232	5,631,757	24.3

상기 통계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발췌한 것으로, 전년도 최저임금 근로자(영향률 포함)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명시되나, 매년 규칙적인 발표정보는 아님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 기록

- '22년 인상률은 10.9%로 '18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실수령액도 1,524론(307유로)로 전년 대비 138론 증가

에너지 수급 대란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급등

- 물가상승률은 8.4%(통계청, '22.1월)이며, 국립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2.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2%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최저임금이 '1인 가구당 생활 물가 지수'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

- '21.9월 옴부즈맨 조사지수가 2,708론(547유로)으로 '22년 최저임금 2,550론에 못 미친다고 비판
 ※ 근로자는 임금의 ▲사회보험료 25%, ▲건강보험료 10%, ▲소득세 10%를 납세하고, 사용자 또한 ▲사회보험료 4~8%, ▲근로보험료 2.25%를 납세해야 하는 바, '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 실질임금은 72론으로 약 14EUR 수준에 그침

EU 회원국 중 최저임금 수준 하위권

- 최저임금제 시행 EU 회원국(21개국) 중 19위로 하위권('22.1월)

EU 규범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변경 전망

- 정부는 「2021~2026 경제 회복 및 복원력 강화계획(PNRR)」에서 EU 회원국 간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하며, EU 차원의 일치된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 '24년 1분기부터 평균임금, 중위임금, 물가상승률을 적극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2)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경제성장률

- '21년 5.6%(EU집행위 6.3%, 세계은행 6.3%)
- '22년 전망치: 4.3%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21년 3분기 6.29%, 4분기 7.5%
- 물가상승률: '22.1월 8.4%
- '22년 전망치: 1분기 7.9~8%, 2분기 11%

무역

- 수출액: 747억 유로(전년 대비 20.1% 증가)
- 수입액: 983억 유로(전년 대비 22.1% 증가)
- 경상수지적자: 236억 유로(전년 대비 53억 유로 증가, GDP 대비 7%)

3)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사회보장부: <http://www.mmuncii.ro/j33/index.php/ro>
- 국가통계청: <http://www.insse.ro/cms/rw/pages/index.ro.do>
- 국가전략위원회: <http://www.cnp.ro/ro>
- EU 집행위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문 의) 주루마니아대사관 1등서기관 겸 영사 이수진
(연락처) +40-21-230-7198, sojlee19@mofa.go.kr

* 제출일: '22.3.4.

7. 벨기에

국명	벨기에(The Kingdom of Belgium)	
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면적	3만 km ²	
인구	1,100만 명	
수도	브뤼셀(Brussels)	
주요 도시	안트워프, 브뤼주, 리에주, 겐트, 몽스 등	
종교	카톨릭(75%), 유대교, 신교, 성공회, 정교회, 이슬람교 등	
교육	의무교육 12년	
화폐 단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5,218억 달러(2020) (출처: World Bank)
	1인당 GDP	45,159달러(2020) (출처: World Bank)
	GDP성장률	-5.7% (2020) (출처: World Bank)
	교역	전체 (수출) 4,198억 달러, (수입) 3,961억 달러 對韓 (수출) 27억 달러, (수입) 15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실업률	5.8% (출처: EU)
	물가상승률	3.2% (출처: EU)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be-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전통적으로 업종 및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을 설정해 온 벨기에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노조 미가입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1968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제도화하였으며,
 - 1975년부터 근로자·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Council)에서 협상을 통해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발전과정

- 1968년 「단체협약 및 분야별 연합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제도화
 - 해당 법률은 국가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노동위원회와 산업별 협상을 진행하는 산업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1996년 「고용증진 및 경쟁력 보호 법률」 제정을 통해 중앙경제이사회(The Central Economic Council)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보수기준(Wage Norm)을 정하도록 함
- '15년에는 국가최저임금과 관련하여 18~20세에 적용되었던 연령별 차등적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21세 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함
- '22년 4월부터는 18세 이상 근로자의 국가최저임금을 연령·경력과 무관하게 단일금액으로 변경

2 관련 법

□ 법적 근거

- 단체협약 및 분야별 연합위원회에 관한 법률(1968)
- 고용증진 및 경쟁력 보호 법률(1996)

□ 관련 협약 등

- 국가노동위원회는 국가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단체협약(CCT, 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며, 주요 협약*은 다음과 같음

* 18세 이상(No.43), 18세 미만 및 18~20세 중 학생근로계약자(No.50)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및 사용자

□ 적용 제외

- 가족기업 종사자
-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Seasonal workers 등)
- 샌드위치 코스(Sandwich courses)*로 일하는 청년
 - * 대학생 등이 학업과 현장, 회사 등의 일을 병행하는 코스

□ 특례 대상

- 국가최저임금을 16세 근로자는 67%, 17세 근로자는 73% 감액 적용('22.4월부터)
- 18세 이상 근로자
 - '22.1~3월은 연령·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 ① 18세 이상: 월 1,691.40유로
 - ② 19세 이상 + 경력 6개월 이상: 월 1,736.28유로
 - ③ 20세 이상 + 경력 12개월 이상: 월 1,756.23유로
 - '22.4월부터 연령·경력과 무관하게 단일금액으로 변경('21.7.15.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
 -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는 별도로 '22.4.1. 76.28유로→'24.4.1. 35유로→'26.4.1. 35유로가 각각 증액될 예정으로 '22.4월부터 18세 이상의 최저임금은 월 1,767.68유로가 될 것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있을 경우 추가 증액 가능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국가노동위원회

- 구성: 노사 각각 13명씩 총 26명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
- 주요 기능 및 역할
 - 국가최저임금 결정
 - 노사 의견을 정부·의회에 제안 또는 권고
 - 산업별 공동위원회의 분쟁 발생 시 조정 권고
 - 근로관계 및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 제안

산업별 공동위원회

- 구성: 중립적 입장의 위원장과 업종별로 노동조합(union)과 사용자단체연합(employers' federations)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에는 세부업종을 대표하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가 있음
 - * 현재 103개의 공동위원회와 224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주요 기능
 - 산업별 최저임금 결정
 - 임금 및 근로조건(Wages and general conditions of work) 결정
 - 산업별 업종분류 결정, 기업 단위 노동조합 대표 선출

2) 결정방법 및 절차

결정방식

- 최저임금(국가, 산업별)은 단체협약으로 결정

□ 결정절차

○ 국가최저임금

- 국가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위원의 각각 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미합의 시 현 수준을 유지하며, 기존 협약에 따라 자동 물가조정만 반영됨
 - ※ 일반적으로 물가조정만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산업별 최저임금

- 공동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해짐
- 보수기준은 미합의 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 단체협약 체결 시 정부 등록이 필요하며,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노사 양측이 참여하여 수정

○ 국가최저임금은 관보(Moniteur Belge)에 게시, 산업별 단체협약은 웹페이지에 공개, 사업장별 단체협약은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확인 가능

3) 갱신주기 및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 주기적 갱신: 2년마다 결정되는 보수기준에 따라 국가노동위원회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수시갱신: 매월 계산되는 건강지수(health index)의 전월 대비 변동률이 2%를 넘는 경우에만 수시갱신

□ 결정시기

- 국가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2년 주기로 보수기준을 통상 홀수 해 1월 중순까지 결정하나, 필요에 따라 수시 갱신
 - (최근 결정시기) '15.1.1., '16.6.1., '17.6.1., '18.9.1., '20.3.1., '21.9.1., '22.1.1.

□ 시행시기

- 시행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년마다 결정되는 보수기준이 결정된 이후 단체협약 합의를 통해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4) 결정기준

□ 물가 연동

- 1988.5.2. 단체협상에 따라 국가최저임금(GAMMI)은 '조정된 건강지수'(Smoothed Health Index, '15.4.23., 고용증진법)와 자동 연동
 - 조정된 건강지수 변동 폭의 최소화를 위해 해당 월과 직전 3월의 평균 인상률로 조정하여 산정, 이를 국가최저임금에 연계하여 조정
 - 조정된 건강지수는 매월 계산되지만 변동률이 2%를 넘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조정
 - ※ 건강지수는 휘발유, 알콜, 담배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지수, 조정된 건강지수는 3개월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
 - 1989.1.6. 국내기업경쟁력 보호법 이행을 위해 1993.12.24. 칙령으로 근거 수립 → 1994.3.30. 법 제정 → '15.4.23. 법 개정

<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최근 지수 >

(2013년 = 100 기준)	2021. 10월	2021. 11월	2021. 12월	2022.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14.20	115.63	115.74	118.32
물가상승(inflation)	4.16%	5.64%	5.71%	7.59%
건강지수(Health index)	113.94	115.20	115.60	118.21
조정된 건강지수 (smoothed health index)	110.53	111.27	111.97	113.42

출처: www.statbel.fgov.be/en/themes/consumer-prices/consumer-price-index#news

□ 보수기준(Wage norm)

- 보수기준은 매 2년마다 국가, 산업별, 사업장별 단체협약 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며, 임금인상률 및 최저임금 인상의 상한선 역할을 함
 - 「고용증진 및 경쟁력 보호를 위한 법」에서 정부개입 근거 마련
 - ※ 보수기준의 상한선은 1996년에 도입, 고임금으로 인한 노동경쟁력의 감소를 억제하고,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기준에 따라 임금인상률의 상한이 정해지고 이를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단체협약에서 이행하도록 제도화
- 중앙경제이사회는 2년마다 국가 단체협상 개시 전 하반기에 명목임금 상승한계치가 제시된 조사보고서 발간
 - 보수기준 협상이 진행되는 첫해 1월 말까지 보고서를 기본으로 단체협약 추진
 -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제안(중위값)으로 가능하고 제안 수용 시 단체협약 결과로, 불수용 시 칙령으로 결정

-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보수기준은 법률 규정은 아니었으며 정치적·윤리적 구속력만 가지고 있었으나,
 - '17.3.29.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수기준의 구속력이 강화됨

< 보수기준 현황 >

기간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2007~2008	2009~2010
인상률	5.90%	6.4~7%	5.40%	4.50%	5.00%	250유로
기간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2020	2021~2022
인상률	0.30%	0.00%	0.5%+0.3%	1.1%	1.1%	0.4%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주 38시간 기준)
 -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지급

6) 결정과정의 공개

- 법령에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므로 협상 과정은 미공개가 원칙이나 협상 결과는 국가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국가최저임금은 소득(income)으로 월급·보수(salary·wage)보다 넓은 개념
 - 정상적인 근무수행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현물급여, 고정·비고정 보수, 보너스, 급여(benefits) 포함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휴가급여(holiday pay), 보충수당(직장 사고 또는 직업병에 대한 보상), 스톡옵션 또는 회사에서 지급된 주식, 식사지원비, 초과근로수당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개요

- 국가 차원(national or inter-sectoral)의 최저임금과 산업별(sectoral) 또는 사업장별(enterprise)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으로 구분
 - 산업별·사업장별 최저임금은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최저임금을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국가최저임금은 고용부로 전달된 후 홈페이지와 벨기에 공식 저널(Belgian Official Journal), 관보에 월급 단위 최저임금으로 고시
- 산업별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홈페이지에 공개, 사업장별 단체협약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확인 가능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고용부의 사회법 통제국(General Directorate of Control of Social Laws) 감독관이 감시(1965.5.10., 1969.10.21. 칙령에 근거)
 - 근로감독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배타적 관할 사항
-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지급 받은 모든 고정 및 비고정 임금의 총합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
 -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월급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은 아래 식으로 계산하여 월수입으로 환산
 · [시간당임금 × 주근무시간(38시간) × 52주 ÷ 12]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별 규정

-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대부분 근로감독관을 통해 권리구제
- 임금 미지불 또는 적정 시기에 미지불 시 벌금* 부과(social penal code 162조, '10.6.6.)
 - * 행정벌금은 80~800유로로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 수를 곱하여 책정되며, 일정 조건에 따라 12배를 곱하여 산정함

□ 사법적 권리구제

- 행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 노동재판소(Le Tribunal du Travail)를 통해 제소

IV |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 최저임금 현황

□ 최근 연령별 국가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유로)

구분	18세 이상	19세+6개월 이상 경력	20세+12개월 이상 경력
2015. 1. 1.	1,501.82	1,541.67	1,559.38
2016. 6. 1.	1,531.93	1,572.58	1,590.64
2017. 6. 1.	1,562.59	1,604.06	1,622.48
2018. 9. 1.	1,593.81	1,636.10	1,654.90
2020. 3. 1.	1,625.72	1,668.86	1,688.03
2021. 9. 1.	1,658.23	1,702.24	1,721.79
2022. 1. 1.	1,691.40	1,736.28	1,756.23
2022. 4. 1.	1,767.68		

출처: 벨기에 통계('22.2월)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최저임금 체계 변경 및 입법화('21)
 - 최저임금 등의 개편방안 관련 사회적 합의안 도출('21.6.8.)
 -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안에 국가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단체협약(CCT No.43과 CCT No.50)의 개정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21.7.15.)
 - 이러한 사회적 합의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사회적 협약 이행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Law implementing the Social Agreement in the framework of inter-professional negotiations for the period of 2021~2022, '21.12.31.)
 - 최저임금 관련 주요 사회적 합의안
 - 단체협약 No.43을 개정하여 18세 이상의 최저임금을 연령 및 경력에 상관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으로 통합하고 '22.4.1. 76.28유로→'24.4.1. 35유로→'26.4.1. 35유로가 각각 증액 예정
 - 단체협약 No.50을 개정하여 '22.4.1.부터 16세는 67%(현재 70%)를, 17세는 73%(현재 76%)를 각각 감액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고용주에게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은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의 감면을 통해 부담 완화 예정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정규직 월 평균소득(Gross average monthly wages)

(단위: 유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3,182	3,258	3,320	3,356	3,471	3,502	3,540	3,608	3,699
여	2,863	2,995	3,079	3,137	3,252	3,289	3,354	3,424	3,511
전체	3,103	3,192	3,258	3,300	3,414	3,445	3,489	3,558	3,627

출처: 벨기에 통계('19.12월)

- 최저임금 미만을
 - Eurofound('18)에 따르면 '17년 기준 벨기에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의 비율은 3%
 - EU 전체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비율은 9%

□ 경영계의 최저임금 자동 인상 중단 요구

- '21년 이후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두 차례('21.9.1., '22.1.1.) 최저임금이 자동 조정되어 인상
- 경영계에서는 '21년 말부터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의 자동 조정을 없애기 위해 '지수조정 중단*(index jump)'을 요구하고 있음

* Index Jump: 주변 국가에 비해 급격하게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의 자동 인상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제도

□ 향후 절차 및 전망

- 경영계의 지속적인 '지수조정 중단' 요구에도 연방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21~2023 벨기에 경제전망(EU 발표)

- (경제성장률) '20년 경기침체(-5.7%)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제한조치 완화에 힘입어 광범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21년 6.0%, '22년 2.6%로 반등할 전망

<경제성장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예상)	2022(예상)	2023(예상)
벨기에	1.8	2.1	-5.7	6.0	2.6	1.9
유로존(19개국)	1.8	1.6	-6.4	5.0	4.3	2.4
EU(27개국)	2.1	1.8	-5.9	5.0	4.3	2.5

- (소비) 가계의 소비패턴이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면서 확장세 예상
 - '21년 5.1% → '22년 5.3% → '23년 2.4%
- (투자) 강한 기업 심리, 우호적 금융 여건, 회복 및 복원기금 집행 등에 힘입어 호조세 전망
 - '21년 10.5% → '22년 2.0% → '23년 1.6%
- (순수출) 국내수요, 수출, 관광업 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예상

- (실업률) '22년 6.3%로 '21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3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5.8%로 개선될 전망
 - 다만, 일부 지원조치의 만료, 그동안 잠재되었던 기업파산 증가 가능성은 성장과 고용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실업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예상)	2022(예상)	2023(예상)
벨기에	6.0	5.4	5.6	6.2	6.3	5.8
유로존(19개국)	8.2	7.6	7.9	7.9	7.5	7.3
EU(27개국)	7.3	6.7	7.1	7.1	6.7	6.5

- (소비자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
 - '22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점차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승도 일부 촉발하면서 2.3%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3년에는 물가의 일시적 급등이 진정되면서 1.6%로 낮아질 전망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예상)	2022(예상)	2023(예상)
벨기에	2.3	1.2	0.4	2.7	2.3	1.6
유로존(19개국)	1.8	1.2	0.3	2.4	2.2	1.4
EU(27개국)	1.8	1.4	0.7	2.6	2.5	1.6

□ 관련 홈페이지

- 벨기에 최저임금 emploi.belgique.be
- EU 최저임금 통계 ec.europa.eu/eurostat

(문 의)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정준섭

(연락처) +32-2-675-5777, jsjung20@mofa.go.kr

* 제출일: '22.3.5.

8. 스위스(제네바주)

국명	스위스 연방(Switzerland)		
언어	독어(62.1%), 불어(22.8%), 이탈리아어(8%), 로만쉬어(0.5%)		
면적	41,285km ²		
인구	870만 명		
수도	베른(Bern)		
주요 도시	취리히, 바젤, 제네바		
종교	구교 35.8%, 신교 23.8%, 이슬람교 5.3%, 기타 35.1%		
교육	의무교육기간: 약 11년 (초등-중등교육, 칸톤(州)별 상이) *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고/직업학교, 대학교		
화폐단위	스위스프랑(CHF)		
주요 경제 지표 (2021)	GDP	824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94,696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3.7%(잠정) (출처: 연방경제청)	
	교역	수출	2,595억 스위스프랑 (출처: 연방관세 및 국경보안청)
		수입	2,008억 스위스프랑
	실업률	3.0% (출처: 연방경제청)	
물가상승률	0.6% (출처: 연방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h-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연방 차원의 법정 최저임금 부재
 - 개인가정, 요양소, 병원, 숙박·요식업, 건물관리인 등의 '가정경제 직종'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포함한 표준근로계약(NAV) 도입(2010)
 - 표준근로계약은 州(canton)별 임금덤핑이 발생할 수 있는 직종에 적용
- 일부 업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
 -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할 경우 이민자 등 최하층만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
-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노동자 유인, 기업의 일자리 감축(실업 증가) 등에 대한 우려, 인위적인 최저임금 평준화라는 비판이 충돌
- 이러한 배경에서 26개 州 중 '17년 뉴샤텔州(시급 20.08CHF), 쥐라州(시급 20CHF), '20년 제네바州(시급 23CHF) 등은 州별 최저임금 도입 결정
 - '22.3월 빈터투어市(취리히州)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 결정(시급 21.60CHF)

□ 발전과정

- '14.5월 연방 차원의 법정 최저임금 시급 22CHF(월급 4,000CHF)을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반대 76%로 부결
 - 당시 제네바州도 동 헌법 개정안을 부결
- '20.9월 제네바州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급 23CHF*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찬성 58.2%), '20.11월부터 관련 개정 노동법을 발효함 ('22.1월부터 23.27CHF 적용)
 - * 주 40시간 기준 4,033.46CHF, 주 41시간 기준 4,134.30CHF
- '14년 국민투표에서 최저임금 도입이 부결되었으나, '20년 주민투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평가함

- 미용사, 청소용역, 요식업 등 약 2/3가 여성근로자이며, 총3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

2 | 관련 법

- 제네바주 근로감독 및 노동법(LIRT: 이하 노동법) 제39K al. 1조, 제39I조
 - 이미 단체협약이 시급 23CHF 미만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고용계약, 단체협약의 수정이나 변경할 필요가 없이 23CHF 적용 (개정 노동법 우선 적용)
 - 제네바주 정부 '22년 최저임금 법령 고시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제네바주에서 통상적 근무하는 근로자
 - 모기업의 소재지가 아닌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제네바주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 모기업이나 지사가 제네바주에 있으나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지가 다른 주일 경우는 최저임금 미적용

□ 적용 제외

- 연방법에 따른 직업교육(중등·직업학교)을 받는 견습생, 인턴
- 18세 미만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
 - 18세 이상 학생의 파트타임 근무는 △교육기관에 정식 등록, △학교 방학 중 근무, △매년 여름철(최대 60일)에만 파트타임 근무, △급여를 해당 (직업)합동위원회가 결정되는 것이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예외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결정기관

- 노동시장감독위원회*(CSME)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 노사대표, 州 정부 직원으로 구성

결정방법 및 절차

- 노동시장감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

갱신·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11월에 州정부가 채택
- 시행시기: 매년 1.1.

결정기준

-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생활비에 연동하여 매년 결정
 - 매해 전년도 1~8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검토(최저임금 인하는 불가)

결정단위

- 시급 단위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노동시장감독위원회에서 비공개 논의 후 결정된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구체적 최저임금 액수, 관련 개정법 해석에 대해 결정한 내용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13개월째 급여, 공휴일·휴가수당*
 - * 월급 근로계약일 경우에만 공휴일·휴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계산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시급 근로 계약일 경우 공휴일·휴가수당 별도(노동법 제39K조 al. 4)
 - 시급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으므로 공휴일수당(시급의 0.41%), 휴가수당(시급의 8.33%)을 추가로 지급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월급 근로 계약일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시급 근로 계약일 경우 별도 수당 지급

3 | 최저임금의 구분

- 업종별 구분
 - 농업, 화훼업 근로자는 제네바주 최저임금의 73.5%(17.10CHF) 지급
- 지역별 구분
 - 제네바주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제네바주 정부 홈페이지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주정부 노동청(OCIRT), 노사합동 기업감독관(IPE)이 공동으로 감독
 - 노사대표·주정부인사로 구성된 노동시장감독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마련, 감독권을 위임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행정벌 규정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만 CHF, 재위반 시 최대 6만 CHF 부과(노동법 제39N조 1항)
 - 공개입찰 참가 기업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6만 CHF, 최대 5년까지 모든 공개입찰 참가 금지 등 행정처분 가능 (노동법 제45조 1항 b, let c, al.2)
 - ※ '21년은 과도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원(Tribunal des prud'hommes) 제소 가능
- 제네바주 사법부(제네바 헌법재판소)에 항소 제기 사례 있음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23.27CHF(농업 및 화훼업 종사자는 시급 17.10CHF)
 - 주 45시간 근무 시 월급: 23.27CHF×45시간×4.33주=4,537.65CHF
 -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3.27CHF×40시간×4.33주=4,033.27CHF

□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통계

- '20.11월부터 제네바州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시작

(단위: 스위스프랑)

적용시기	모든 업종	농업	화훼업
2022.1.1.~	23.27	17.10	17.10
2021.1.1.~	23.14	17.00	15.60
2020.11.1.~	23.00	16.90	15.50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주요 쟁점

- 제네바州 미용업협회는 견습 종료 후 4년간 최저임금 미적용을 요청했으나 제네바州 사법부(제네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21.4.21.)
 - 최저임금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미용업으로 연방정부 자격증(CFC)이 없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30% 인상된 결과, 자격증이 없는 청년층을 풀타임(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시급)을 고용하는 문제 발생
 -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 업종은 주간 아이돌봄 서비스업(임금 50% 상승)이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업종(청소업, 소매업, 요식업 등)도 있음

□ 향후 절차 및 전망

- 제네바州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점차 늘어날 전망

* 뉴샤텔州, 쥐라州, 티치노州, 바젤시티州 빈터투어市(기초자치단체)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제네바 州정부 www.ge.ch

(문 의) 주대사관 스위스 대사관 김현주 전문관

(연락처) +41-31-356-2442, hjookim15@mofa.go.kr

* 제출일: '22.3.25.

9. 스페인

국 명	스페인 왕국(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언 어	스페인어(까스띠야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까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등이 해당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면 적	50.6만 km ²			
인 구	4,733만 명			
수 도	마드리드(Madrid)			
주 요 도 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사라고사			
종 교	카톨릭(국교는 아니지만 인구 70% 이상이 카톨릭 신자)			
교 육	의무교육 6~16세 (초등 및 중등교육)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20조 유로	(출처: 스페인통계청)	
	1인당 GDP	25,410 유로	(출처: 스페인통계청)	
	GDP성장률	5%	(출처: 스페인통계청)	
	교 역	수 출	3,166억 유로	(출처: 스페인산업통상관광부)
		수 입	3,428억 유로	
	실 업 률	13.3%	(출처: 스페인통계청)	
물가상승률	7.4%	(출처: 스페인통계청)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es-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1963년 최저임금 최초 시행
 - 농업·서비스업 등 업종·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
- 1980년 노동법(Estatuto de los Trabajadores)에 최저임금제도 규정
 -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지
 - 16세 이상~17세 미만, 17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 근로자의 3단계 차등 적용
- 1990년 연령별 차등 적용 단계 축소
 - 연령별 차등 적용 기준을 16세 이상~18세 미만과 18세 이상 근로자의 2단계로 축소
- 1998년 단일 최저임금 적용
 - 18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8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

2 관련 법

- 노동법
 - (제27조 제1항) 정부는 노사대표와 협의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확정
 - (제27조 제2항)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
 - (제11조 제2항) 대학생 인턴, 견습 계약의 경우에도 상호 합의된 실질적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 가사도우미
 - 특별고용관계를 규정하는 국왕령(Real Decreto 1620/2011)에 의거, 별도 결정·적용
- 적용 제외: 없음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노사정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국무회의 의결)
- 노사정회의는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정부측),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 스페인중소기업협회(CEPYME) 대표(이상 사측) 및 근로자위원회(CCOO), 근로자총연합(UGT) 대표(이상 노측)로 구성

2) 결정방법 및 절차

- 3년마다 4개 단체는 「고용협약 및 단체교섭(AENC)」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상승률 등에 관한 기준 정립
-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고용사회보장부 고용국(Dirección General de Empleo)에서 임금보장기금(FOGASA), 공공고용서비스국, 사회보장관리국, 노동시장분석부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저임금 기준 초안 작성
- 최저임금 기준 초안을 12월 노사정회의에 상정, 최저임금 기준에 관한 협의 실시
-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은 12월 국무회의에 노사정합의안(최저임금 기준안)을 제안,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
- 통과된 최저임금은 국왕령으로 관보에 고시되며, 차년도 1.1.부터 시행
 - 해를 넘겨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경우 1.1부터 소급 적용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다만,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2차례 갱신
- 결정시기: 매년 12월
 - '22년 최저임금은 사측을 제외한 노정대표만 2월 초에 합의
- 시행시기: 매년 1.1.
 - 해를 넘겨 결정되는 경우 1.1.부터 소급 적용

4)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주로 아래의 4가지 경제변수 고려

- ① 소비자물가지수
- ② 국내 평균 생산성
- ③ 국민소득 내 노동참여 증가율(노동소득분배율 증가율)
- ④ 전반적인 경제 상황

※ 분석 가능한 경제변수(①~③)는 통계청(INE) 자료 활용

※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통계청의 분기별 GDP 성장률, 거시경제전망, 노동시장 주요지표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평가

- 다만, 실질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전 전망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은 반기별 재검토를 거쳐 수정 가능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로 결정하며, 일급 단위와 연봉도 병기

6) 결정과정의 공개

- 결정과정에 대한 외부방청은 별도로 허용하지 않으며 회의 자료는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두 차례의 법정상여금
 - 크리스마스 및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달(통상 하계휴가 직전)에 두 차례 법정상여금 (월 기본급의 100%)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기본급 및 법정상여금을 제외한 추가수당*

* 개별수당(근속수당, 특별상여금), 위험수당, 근무시간수당(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교대수당, 시간외수당 등), 직무(직책)수당, 성과수당

- 현물급여(주거, 식사제공 등)
 - 예외적으로, 주거 및 식사를 제공 받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현물급여는 양측의 합의하에 총 임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22년 월급 최저임금은 1,000유로인데 일급은 33.33유로이므로 근로일은 30일. 주5일 근무를 고려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주스페인대사관)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국왕령으로 관보(BOE)에 일급, 월급, 연봉으로 고시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사회경제부 산하 노동·사회보장감독국(Inspección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ITSS)은 최저임금법 준수를 비롯한 노사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
 - 근로감독은 노동·사회보장감독법에 따라, 근로·사회보장감독 고등공무원(Cuerpo Superior de Inspectores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과 근로·사회보장부감독공무원(Cuerpo de Subinspectores Laborales)이 수행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임금 미지급이나 반복적인 연체는 국왕령에 의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행정벌금(행정처벌)이 6,251~187,515유로 부과

□ 사법적 권리구제

- 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분쟁조정위원회(SMAC)에 조정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동사회경제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관련 권한을 부여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 실패 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 노사소송(Juicio Laboral) 제기
 - ※ 스페인 소송 종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노사소송으로 구분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전일 정규직 근로자
 - 일급 33.33유로, 월급 1,000유로, 연봉 14,000유로*
 - * '22년 월 최저임금 1,000유로 × 14회(12개월+법정보너스 2회)
 - 월 최저임금은 1,000유로이나 이를 총 14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국가와 비교를 위해 12로 나눌 경우 월급은 1,108.33유로임
-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
 - 최저임금 외에 주말수당 및 두 차례의 법정보너스에 대한 비례배분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급 47.36유로 미만일 수 없음
- 시간제 가사도우미: 실질근무 시급 7.82유로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유로)

연도	성인 및 청소년 최저임금			인상률(%)
	일	월	연	
2022	33.33	1,000.00	14,000.00	3.63
2021.9~12.	32.16	965.00	13,510.00	1.58
2021.1.~8.	31.66	950.00	13,300.00	동결
2020				5.5
2019	30.00	900.00	12,600.00	22.3
2018	24.53	735.90	10,302.60	4.0
2017	23.59	707.70	9,907.80	8.0
2016	21.84	655.20	9,172.80	1.0
2015	21.62	648.60	9,080.4	0.5
2014	21.51	645.30	9,034.2	동결
2013				0.6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정부와 노측이 연중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측 반대에도 예외적으로 인상 결정
- '22.2월 정부와 노측은 월 최저임금을 965→1,000유로 인상(3.63%)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후 관보 게재
 - '22.1.1.부터 소급 적용되며, 2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 예상
- 폴란드 제2부총리 겸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이 지난 4년간 30% 이상 크게 인상되었다고 강조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빈곤 및 성별에 따른 임금불균형 문제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 노동부 장관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강조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회복을 늦춘다는 사측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부언
- 노측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측은 현재 스페인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겨우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상승과 생산성 하락을 가져와 경제회복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기업이익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향후 기업들의 경제활동 및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
- '18.6월 이후 집권 여당인 사회당('20.1월부터 친노조 성향의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은 일관되게 최저임금 인상 추진
 - '18년 월 735유로→'22년 월 1,000유로로 인상되어 지난 4년간 36% 인상
 - '21.9월 최저임금 합의 후 '23년 중위임금의 60%(월 1,050유로) 수준의 인상을 노조 측에 약속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노사와 합의 없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3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
 - 최저임금 결정에서 '21년 9~12월에 이어 금년에도 사측이 합의에 불참하는 등 인상을 두고 정부·노측↔사측 갈등 지속

□ 관련 홈페이지

- 고용사회보장부 www.empleo.gob.es
- 노동·사회보장감독국 www.empleo.gob.es/itss
- 각 자치주 관할 노동국 www.empleo.gob.es
- 통계청,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현황 www.ine.es

□ 관련 법령 원문

- 노동법 www.boe.es
- 2022년 최저임금법 Real Decreto 152/2022
- 사회질서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에 관한 국왕령 5/2000
-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법령

(문 의) 주스페인대사관 윤일웅 서기관

(연락처) 34-91-353-2006, iwyo07@mofa.go.kr

* 제출일: '22.3.11.

10. 슬로바키아

국 명	슬로바키아 공화국(Slovak Republic)	
언 어	슬로바키아어	
면 적	4.9만 km ²	
인 구	546만 명	
수 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주 요 도 시	질리나, 코시체, 니트라	
종 교	카톨릭(63%), 개신교(8.2%), 그리스정교(3.8%) 등	
교 육	초등학교 9년(1~4학년 1등급, 4~9학년 2등급), 고등학교 4년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0)	G D P	971억 유로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15,660유로 (출처 Eurostat)
	GDP성장률	3.0%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883억 유로 (출처: 통계청) 수 입 866억 유로
	실 업 률	6.8%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3.2%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sk-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91년 이후

□ 발전과정

- 1991년 체코슬로바키아에 최초로 법적 효력이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어 1991. 3.25.~1992.2.10. 적용
- 1992.2.11. 최저임금제도를 개정, 1993.1.1. 체코와 분리된 이후에도 최저임금제도는 1996. 3.31.까지 적용
- 이후 1996년, 2000년, 2007년, 2020.10월 재개정

2 관련 법

- 「헌법」(제36조 제2항)
 - 모든 근로자는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노동법」(제120조 최저임금 청구)
 - 총 8개 항목으로 구성, △단체협약 미가입 사용자 및 근로자 간 최저임금 지급 규제,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업무강도별 최저임금 수준 구분 등 명시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 및 적용시기, 결정방법 등 최저임금 관련 전반적 사항 명시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월급 및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
- 적용 제외
 - 없음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 결정기관
 - 매년 노조대표와 경영자대표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 불발 시 정부대표, 노조 대표, 경영자대표로 구성된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상을 통해 결정
 - 경제사회이사회(일명 노사정위원회)
 - 근거: 국가 차원의 3자 협의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 목적: 경제 및 사회발전, 고용 개발을 다루는 민주적 수단으로 국가와 사용자, 고용인 간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 및 평화를 촉진
 - 구성: 총21명(3개의 노조협회측, 3개의 경영자협회측, 정부측 대표 각각 7명씩)
 - 대표 자격: 노조협회(최소 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경영자협회(최소 1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5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협회)
- 결정방법 및 절차
 - 매년 3월까지 경영자대표와 노조대표 간 최저임금 협상 관련 일시, 장소 등을 결정 후 공지해야 하고, 4.1.~7.15. 최저임금 논의 시작
 - (합의) 7.31.까지 노동부에 보고하여 결정(정부는 중재자 역할)
 - (미합의) 7.31.까지 미합의 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차년도 최저임금은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57%로 자동 결정

-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므로 차년도 최저임금은 이전 연도 12.31. 이전에 결정
- 결정기준
 -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나, 지연 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57%로 자동 결정
- 결정단위
 - 월급(약 174시간) 및 시급 단위(주 40시간 근무기준)
- 결정과정의 공개
 - 노사 양측 간 또는 경제사회이사회 내 논의과정 모두 별도의 외부방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협상 직후 기자회견 또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별도 규정 부재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퇴직금, 출장비, 주말·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초과·야간 근무 및 고위험 환경 근무에 대한 임금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개요
 - 노동강도별 구분 적용
- 구분 적용 기준 및 절차
 - 최저임금 적용 관련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별도 기준은 없음
 - 다만,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경영자는 임금지급 시 당해 최저임금 및 노동 강도를 반영하여 지급

노동강도	노동강도 내용	최저임금 크기(배)
1	정확한 절차·지시에 따른 보조, 준비 업무	1.0
2	간단한 공예·수리, 보건 분야의 위생업무, 반복적·제어 가능한 행정업무	1.2
3	창작 공예, 어려운 수리, 타인의 건강·안전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업무	1.4
4	대규모 시설 관리, 타인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업무 제공	1.6
5	대규모 시설 관리, 타인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전문적 업무 수행	1.8
6	보건 분야 등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업무	2.0

예) 노동강도 3의 업무 수행 시 최저임금(단위: 유로)

$$('22년\ 최저임금 - '20년\ 최저임금) + '20년\ 최저임금 \times 1.4 = (646 - 580) + 580 \times 1.4 = 66 + 812 = 878$$

4 | 최저임금의 홍보

홍보방법

- 확정 시 언론 및 노동부, 경영자협회, 노조협회, 각종 기관 등에 공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슬로바키아 법률 온라인 포털에서 확인 가능

별도의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는 없음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국립근로감독청(National Labor Inspectorate)

- 노동부 소속으로 노동법 변경 및 근로자의 근무·해고, 전반적인 임금 조건 등을 포함한 노동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독
- 경영자의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감독청에 이를 신고하고 감독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사 또는 정기조사(방문) 실시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경영자가 노동법 위반 시 근로감독청은 심각성 및 결과, 문제 발생 횟수, 빈도 등을 판단하여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 부과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 행정구역 소재 법원에 제소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646유로, 시급 3.713유로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월급	337.2	352	380	405	435	480	520	580	623	646
시급	1.941	2.023	2.184	2.328	2.5	2.759	2.989	3.333	3.58	3.713

출처: 통계청 및 노동부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 최저임금법 개정사항
 - 2018년
 - 토요일, 일요일 및 평일 야간근무(저위험/고위험)의 시간당 수당은 최저시급의 각각 50%, 100%, 40%, 50% 추가 지급
 - 2019년
 - 최저임금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은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60%로 자동 결정

- 2020년
 - 최저임금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57%로 조정(기존 60%)
 - '21.1.1.부터 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무, 당직 시간당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고 일정 금액 지급
 - 단, '21년 추가 시간당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인상되고(야간근무 1.43유로, 토요일 1.79유로, 일요일 3.58유로, 당직 0.72유로) '22년은 '2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노동부 장관은 '22년 최저임금은 양측 합의 실패로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57% 수준으로써 '21년보다 23유로 인상된 646유로로 발표('21.8.23.)
- 노조협회(KOZ)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30만 명으로 주거비(350~400유로)를 제외할 경우 생활유지가 어렵다면서 '22년 최저임금이 2년 전 평균 명목임금의 60% 수준(679.8유로)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21.8.28.)
- '22년 최저임금은 EU회원국(27개)에서 최저임금제 실시 국가(21개) 중 16위, V4 회원국(폴란드 655유로, 체코 652유로, 슬로바키아 646, 유로 헝가리 542유로) 중에서 3위(Eurostat)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부: www.employment.gov.sk/sk
- 노동사무소: www.upsvr.gov.sk
- 국립근로감독청: www.ip.gov.sk/home
- 법률 온라인 포털: www.zakonypreludi.sk

(문 의)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윤종석 1등서기관 겸 영사
(연락처) +421-2-3307-0711, jsyoon07@mofa.go.kr

* 제출일: '22.3.5.

11. 아일랜드

국 명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	
언 어	영어, 게일어	
면 적	7만 km ²	
인 구	5백만 명	
수 도	더블린(Dublin)	
주 요 도 시	코크(Cork), 골웨이(Galway), 리머릭(Limerick), 케리(Kerry)	
종 교	가톨릭(78%), 기타(12%), 무교(10%) (2016)	
교 육	6세부터 15세까지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4,283억 유로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85,467유로 (출처: 통계청)
	GDP성장률	13.5% (출처: 통계청)
	교 역	수출 1,652억 유로 수입 1,026억 유로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16.1%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2.4%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ie-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IT 붐과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1990~2000년대 중반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
 - 이로 인해 2000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져 임금 격차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 발전과정

- 2000년 이후 14번의 인상, 1번의 인하* 등 총 15번의 최저임금 조정이 있었음
 - * '11.1월 아일랜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도입 이래 최초로 시급 8.65→7.65유로로 하향 조정했으나, '11.7월 기존 임금수준으로 재인상함

2 관련 법

-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
 - 최저임금 관련 기본법으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변경 행정명령 권한 부여
- 저임금위원회 설치 및 고용관계법령 위반 분쟁 등의 해결·조정·재정을 규정한 노동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 2015)
 - 기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가 최저임금 자문기관인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설치
- 사회보장 및 연금법(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11)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 외국인, 장애인 차등 적용 없음

□ 적용 제외

- 사용자의 가까운 친척인 근로자
 - 직계존비속, 이복형제, 의붓자녀 등 포함
- Industrial Training Act(1967) 또는 Labour Services Act(1987)의 적용을 받는 견습생(Apprentices)
- 교도관 감독하에 수감자가 참여하는 비상업적 활동
- 사용자에 대한 적용 면제
 - 사용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며, △(강제로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노동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일정 기간(3~12개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가능

□ 특례 적용

- 연령별 감액 적용
 - 2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저임금위원회의 권고 및 기업통상고용부장관의 수용으로 확정되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비율로 계산하여 19세, 18세, 18세 미만에게 각각 적용되는 최저임금 확정

(단위: %)

근로자 연령	최저임금 지급 비율	근로자 연령	최저임금 지급 비율
20세 이상	100	19세	90
18세	80	18세 미만	70

출처: 정부 홈페이지(www.gov.ie)

- 청소년근로보호법(Protection of Young Persons Employment Act 1996)에 의거, 청소년들의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고용가능 연령, 최대 노동시간, 18세 미만 야간근로 금지* 등을 규정
 - * 16세~17세 청소년은 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능(단, 6~22시까지)
 - * 16세 미만 아동은 전일제 직원으로 고용 불가(단, 14~15세 아동들은 학교 공휴일에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최소 공휴일 21일은 보장 필요)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 결정기관

-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결정
-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 '15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8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임은 불가
 - 위원 중 3명은 근로자 관련, 3명은 사용자 관련, 2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며, 성별 비율에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위원장은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며, 위원은 공무원 채용기관인 공공 임명서비스(Public Appointment Service)와 기업통상고용부가 협의하여 선발하고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임명

□ 결정방법 및 절차

- 저임금위원회는 1년간 약 10차례 회의를 갖고 합의를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며, 소수의견(minority report)이 있는 경우 권고안에 표시
 - 합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수시로 외부인사를 초청해 회의 개최
-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수용/변경수용/불수용 결정
- 권고안을 변경수용 또는 불수용 시 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저임금위원회에서 고려했던 요건들을 모두 검토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저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재작성할 의무는 없음
- 변경수용 또는 불수용하거나, 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변경하는 행정명령 가능

□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21.10.12.
 - '22년 최저임금은 '21.6월까지의 최신 자료를 고려하여 10월 결정
- 시행시기: '22.1.1.

□ 결정기준

- 저임금위원회는 권고안 작성 시 다음 요건을 고려해야 함
 - 소득변화, 환율변화, 소득분배, 실업률, 고용률, 생산성
 - 세계 각국, 특히 영국 및 북아일랜드와의 비교
 - 고용 창출의 필요성
 - 최저임금 변경 행정명령이 고용·실업 수준, 생계비*,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
- * 생계비는 실태생계비로써 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지표(월세, Eurostat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등)를 감안하여 검토하고,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1인 기준

□ 결정단위

- 시급 단위

□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불허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저임금위원회의 합의 과정은 회의록으로 작성되나 이는 내부용으로 대외 비공개이며 최저임금 최초 및 최종 권고안은 공개됨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총임금(과세 전)
 - 기본급(basic salary), 교대 근무수당(shift premium), 상여금(bonus), 서비스료(service charge) 등
- 숙식 제공 시, 아래 계산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산입('22년 적용요율)
 - 식사만 제공되는 경우, 근무시간당 0.94유로(시간율로 계산)
 - 숙박만 제공되는 경우, 주당 24.81유로 또는 일당 3.55유로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 임금(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됨), 직무수당, 팁, 호출근로수당, 병가수당, 퇴직금, 숙식 및 교통비 이외의 현물수당, 당직수당, 직원 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법(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 1997)상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정부 홈페이지(www.gov.ie)에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TV·라디오 등 매체 활용 홍보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WRC)
 - 사용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및 노동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상 설치된 노동관계위원회에 온라인(workplacerelations.ie)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위원회 조사관(Inspector)에게 최저임금 지급 여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에게 6개월분 월급명세서를 받아 위원회 재판관(Adjudicator)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형벌 규정(Workplace Relations Act 2015 등)

- 노동관계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재판에 회부됨
 - 즉결 심판(summary conviction)에서는 1,500파운드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병과 가능)
 - 기소(indictment)에 따른 유죄판결(conviction) 시 10,000파운드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원(Labour Court)
 - 노동관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분쟁조정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원으로 항소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됨
 - 노동법원 판결에 항소 시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넘어가나, 고등법원에서는 노동법원의 법률해석 등의 올바른 적용 여부만을 판단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0.50유로(20세 이상 기준)

- 저임금위원회는 '22년 최저임금 권고 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
 - 코로나19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관광업 등의 저임금 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회복에도 수년이 소요
 - '22년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저임금위원회가 이전에 권고한 최저임금 격차는 줄였으나 고용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조사된 점

- Hard Brexit은 피한 것과 아일랜드 물가상승률이 '22년 1.9%로 전망되는 점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20세 이상 기준)

(단위: 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급	8.65	8.65	8.65	9.15	9.25	9.55	9.80	10.10	10.20	10.50

출처: 정부 홈페이지(www.gov.ie)

2 | 최근임금 관련 참고사항

○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향후 관련 논의 개시 전망('22.2.15.)

- 개정안에는 현행 20세 미만 청년 근로자에게 연령별 차별적으로 할인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20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내용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저임금위원회: www.lowpaycommission.ie

○ 국회 법령집: www.irishstatutebook.ie

○ 노동관계위원회: www.workplacereleation.ie

○ 시민정보위원회: www.citizensinformation.ie

○ 중앙통계청: www.cso.ie

(문 의) 주아일랜드대사관 참사관 김찬우

(연락처) +353-(0)1-660-8800, cwkim02@mofa.go.kr

* 제출일: '22.3.8.

12. 영국

국 명	영국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언 어	영어	
면 적	24.5만 km ²	
인 구	6,600만 명	
수 도	런던(London)	
주 요 도 시	런던(London), 에딘버러(Edinburgh), 카디프(Cardiff)	
종 교	기독교(59.3%), 없음(25.1%), 이슬람교(4.8%), 힌두교(1.5%) 등	
교 육	학제 구성: 초등(6) - 중등(5) - 후기중등(2) - 대학(3) 의무교육: 5~16세, 총 11년 (초등 6년, 중등 5년)	
화 폐 단 위	파운드(Pound Sterling)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11조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4.62만 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6.7% (출처: IMF)
	교 역	수출 6,190억 파운드 수입 6,477억 파운드 (출처: 영국 통계청)
	실 업 률	4.1% ('21.10.~12. 기준) (출처: 영국 통계청)
	물가상승률	5.4% ('21.12. 기준) (출처: 영국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gb-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주의, 노사자치에 따라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 19세기 이래 노동조합이 없는 업종의 여성근로자, 연소근로자 등 저임금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도입

2) 발전과정

□ 산업별 최저임금제도 시행(1909~1945)

- 1909년 일부 산업에 임금위원회(Trade Boards)를 설치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임금위원회법'이 제정되며 산업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됨
 - 1911년 봉제업, 종이상자, 레이스, 어망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39년에는 제빵, 가구제조, 고무제조 등의 산업까지 확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강제중재 제도가 도입되며 유명무실화됨

□ 임금심의회 시대(1945~1993)

- 1945년 임금심의회법(Wages Councils Act 1945)에 의해 임금위원회보다 큰 권한과 결정범위를 가진 임금심의회로 재편
- 1978~79년 파업 급증 등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당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기조에 따라 임금심의회의 역할을 축소
- 1993년 메이어 정부는 노동조합 개혁·고용권리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 Act, TURERA)에 따라 2개의 농업 임금심의회를 제외한 26개의 임금심의회는 폐지

□ 저임금위원회 시대: 국가최저임금제도 시행(1999~2016.3.)

-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LPC)를 설치, 국가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99.4월부터 국가최저임금 실시

※ 노동당 정부는 저임금층의 임금수준 적정화와 이를 통한 사회보장지출의 축소 및 세금·사회보험료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국가최저임금 제도를 도입

-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NLW) 시행('16.4. ~)
 - 기존 21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성인 최저임금의 연령구간을 '21세 이상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으로 나누고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구분
 - '21.4월부터 국가생활임금 적용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3세 이상'으로 변경

2 | 관련 법

- 국가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 매년 국가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 및 기타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연도별 최저임금규칙(행정명령) 공포
- 최저임금 행정규칙(National Minimum Wage Regulations 2021)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6세 이상 모든 근로자(worker)
- 적용 제외
 - 의무 학업 연령 내에 있는 자
 - 근로자는 '의무 학령(school age)'을 벗어나는 16세부터 최저임금 적용
 -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자영업자(self-employed people), 회사 대표
 - 자원봉사자, 정부 고용프로그램 참가자(예: 정부근로), 군인
 - 정부의 예비도제(견습생) 과정(pre-apprenticeships schemes)에 있는 자, 고용센터 시범 근로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용자의 가족으로서 가내 거주자, 오-페어(Au pairs)*
 - * 외국인 가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대가로 숙식과 일정 급여를 받고, 자유시간에는 어학공부를 하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 고등교육 혹은 보습교육 학생으로 1년 이내 연수 중인 학생
- 어획 수입을 할당받는 어부 근로자(share fishermen), 죄수, 종교인 등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확정·공표
 - 국세관세청(HMRC)이 최저임금을 운용 및 집행
- 저임금위원회
 - 구성: 총 9명(의장 1명, 공익 2명, 노측 3명, 사측 3명)으로 구성되며 공개경쟁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임명됨
 - 임명권자: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 위원 임기: 2년

【참고】 저임금위원회 사무국(Secretariat)

- ▶ 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11인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
 - 사무국장(1명), 행정 및 언론, 정책분석, 경제·통계 각각 2~4명
- ▶ 직원 총원은 공석이 된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하며(통상 BEIS 출신 임명),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 가능
- ▶ 경제 및 통계 등 전문분야 근무자는 해당 분야 대학전공자 요구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최저임금액 권고안은 저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
 -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회의에서 전원합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토론 진행
 - ※ '11년 이후 전원합의 권고안 결정까지 통상 2일 소요

□ 결정절차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매년 4월 저임금위원회에 차년도에 적용될 국가생활임금과 국가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의하도록 정부 업무요청(Government remit)
-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0월까지 조사·협상·회의·심의를 거쳐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에 권고안 제출
 - 서면 및 대면 협의(연 1회), 위원의 현장 방문(연 10회)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이해관계자와 사무국 간 정기회의(연 100회)
 - 최저임금 작용방식, 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근거 설명
 - 최저임금 도출을 위한 위원 간 합의
 - ※ 사용자 및 근로자 출신 위원들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차년도 1월까지 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검토한 후, 국가생활임금과 국가최저임금을 확정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12월
- 시행시기: 차년도 4.1.(1~3월: 홍보를 통한 준비)

4) 결정기준

- 통계청의 '근로시간 및 소득에 관한 연차조사(ASHE)', '주당 평균소득(AWE)', '노동력 조사(LFS)' 등이 주요 자료원이며, '국민소득', 각종 '근로자 직업 조사' 등도 활용되고 있음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국세관세청 등 정부 자료
 - 관련 국제정세 자료(필요시 해외공관 활용)

- 미디어 모니터링 및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용역 자료 등

※ 저임금위원회에서는 국가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변화,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고용, 실업 등),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이윤, 생산성 등)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 특히, 최저임금 권고안을 결정하는 최종회의(final negotiation meeting)는 외부인 참석이 배제된 장소에서 개최되며, 기록도 남기지 않음(secret and no record is kept)

○ 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서베이, 경제지표 및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공개(publish)되며, 저임금위원회의 연보에 수록됨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인센티브(incentive pay) 및 상여금(bonus)

- 인센티브, 판매 수당(sales commission), 공로수당(merit) 혹은 성과연동 임금체계(performance-related pay scheme) 등을 포함

-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이 실제 지급된 월급에 산입

○ 피고용인의 소득세와 국민보험료

○ 벌과금의 공제 및 지급금

○ 임금 선급금의 상환을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주식 또는 증권 매입 대금의 공제 및 지급금

○ 오류로 인한 임금 초과지급액을 반환하기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자발적인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 근로자가 지불하는 금액

○ 사용자에 의해 공제되지만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 금액*

* 근로자의 고용과 연계되어 지급이 요구되거나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노동조합비나 연금기여금과 같이 근로자가 원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함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상한선 이내의 숙박비
 - 현물급여는 국가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유일하게 숙박 제공은 고시된 상한선 내에서 산입 가능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박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로, 공제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선 이내의 금액만을 산입할 수 있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대부 금액 및 대부 상환을 위한 공제 및 지급금
 - 임금 선급금, 연금 수령액,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
 - 해고수당, 직원 제안 제도에 의한 포상금
 - 추가수당(추가, 휴일근무), 특별수당(위험수당, 특정 근무지수당 등)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비, 도구, 작업복 등 구입 비용, 사용자의 필요 혹은 편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 지출한 금액
 - 모든 유형의 팁, 봉사료 등
 - 휴가비(holiday pay)
 - 숙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현물급여
 - 식권, 연료(fuel), 차량, 보육시설 이용권(child care vouchers)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연령별 국가생활임금 및 국가최저임금 구분 적용
 - '21.4월부터 23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국가생활임금이 적용되며, 23세 미만에 대해서는 21~22세, 18~20세, 16~17세, 견습생으로 나뉘어 국가최저임금이 적용됨

< 2022년 국가생활임금 및 국가최저임금 >

(단위: 시급, 파운드)

국가생활임금		국가최저임금							
23세 이상		21 ~ 22세		18 ~ 20세		16~17세		도제(견습생)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9.50	6.6%	9.18	9.8%	6.83	4.1%	4.81	4.1%	4.81	11.9%

□ 국가최저임금 구분 적용

-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이나 근무 기간이 12개월 내인 도제(apprentice, 견습생) 근로자는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
 - '04년 16~17세 대상 국가최저임금 도입, '10년 도제 대상 국가최저임금 도입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최저임금과 제도변경 사항을 거쳐 임금규칙(행정명령)으로 공포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국세관세청

- 국세관세청의 감독관(compliance officer)은 최저임금 위반에 관해 사용자에 대한 출입검사, 체불임금 및 벌금 고지, 최저임금 미이행 사용자에 대한 형사소추 의뢰 등 수행
- 국세관세청의 주요 감시 수단은 '전화상담(Confidential Helpline)'
 - 국세관세청 중앙정보팀(Central Information Unit)은 Helpline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당사자 혹은 제3자의 민원 접수
 - 조사 필요시 전국최저임금 감독팀(NMW Compliance Team)에 사건 배부
 - 최저임금 이행감독관(NMW Compliance Officer)이 민원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조사 실시
 - 과소지급 통지서(Underpayment Notice) 및 위반사용자 명단공표(Naming) 등 행정적 제재
- 국세관세청은 최저임금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조사하여 형사상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위반의 정도가 높은 사용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유죄판결 시에 해당 사용자는 15년간 대표 자격이 상실됨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과소지급 통지서 발행 및 과태료 부과

- 국세관세청은 과소지급이 인정되면 최대 6년분까지 소급하여 이에 이자를 더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최대 미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최대 2만 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16.4월 이후)
- 전화 민원 접수 → 전국최저임금 감독팀에 사건 배부 → 최저임금 이행감독관이 민원 제기된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과소지급 통지서 및 위반 사용자 명단공표 등 행정적 제재

2) 형벌 규정

- 국세관세청은 최저임금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조사하여 형사상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할 수 있음
- '08년까지는 감독관이 사업장 내 현장에서만 조사가 가능하였고, 치안판사법정(Magistrates, 하급법원)에서만 사건이 다루어졌으나,
- '09년부터 감독관이 사업장 밖으로 기록이나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도 재판이 가능해짐
- 위반의 정도가 높은 사용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유죄 판결 시에 해당 사용자는 15년간 대표자격이 상실됨

3) 사법적 권리구제

- 사용자가 임금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거나, 과소지급 통지서상의 의무 이행 등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원(Employment Tribunals)에 제소하거나, 군(郡)법원(민사법원)에 직접 제소가 가능
- 국세관세청의 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 사용자가 '저임금통지서' 등 국세관세청이 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관세청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바,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표하여 민사 혹은 노동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음
 - 소송을 통해 국세관세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대한 채권을 판결로 확정하며, 사용자의 이행 지연 시 압류(distraint) 조치 등을 시행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노동법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반하는 불법 임금공제' 혹은 '근로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을 들어 제소
 - (지방법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위반'을 들어 제소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현황

- 국가생활임금 9.50파운드('21.4월부터 23세 이상 성인 대상)

(단위: 시급, 파운드)

구분	국가생활임금	국가최저임금			
	23세 이상	21~22세	18~20세	16~17세	도제(견습생)
'22년 4월~	9.50	9.18	6.83	4.81	4.81
~'21년 3월	8.91	8.36	6.56	4.62	4.30
인상률	6.6%	9.8%	4.1%	4.1%	11.9%

출처: 저임금위원회 보고서('22.1월)

□ 정부, 주요 정당 및 노사단체 반응

- (정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여러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정(現.집권당은 보수당)
- (노동당) 시간당 최저임금 10파운드 이상을 주장해왔으며, 최근 15파운드의 최저임금을 지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독립소매연맹) 대부분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무시간이 노동자는 감소하고 사용자는 증가할 것임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시급, 파운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세 이상*	6.31	6.50	6.70	7.20	7.50	7.83	8.21	8.72	8.91	9.50
21~22세				6.95	7.05	7.38	7.70	8.20	8.36	9.18
18~20세	5.03	5.13	5.30	5.55	5.60	5.90	6.15	6.45	6.56	6.83
16~17세	3.72	3.79	3.87	4.00	4.05	4.20	4.35	4.55	4.62	4.81
건설생	2.68	2.73	3.30	3.40	3.50	3.70	3.90	4.15	4.30	4.81

출처: 저임금위원회 보고서('22.2월)

* '16년부터 25세 이상에 대해 국가생활임금이 적용되었으며, '21년부터 대상이 23세 이상으로 변경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6년간(2016~2021) 법령 개정사항

- 국가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행정규칙에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
 - '16.4월부터 '25세' 이상에 대해 국가생활임금 신규 도입되어, 최저임금이 종전보다 7.5% 인상

※ 연구보고서 '국가생활임금 도입 영향(경제사회연구소)'

-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고용 및 근로시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소매업 근로자 및 시간제 여성근로자에게는 일부 있었으나, 노사 및 전문가들은 미미하다는 의견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15년 49%→'16년 53%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가생활임금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동의

- '21년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23세' 이상으로 낮춤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물가와 임금 간 악순환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4%까지 상승하며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 관련 우려가 증가
 - 최근 Financial Times('22.2월)는 물가와 임금이 악순환으로 상호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제기

○ '24년까지 최저임금 달성 목표 유지

- 보수당(現.집권당)은 '24년까지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⅔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지난해('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18%로 목표 유지에 의문 제기
- 저임금위원회는 '22.1월 보고서를 통해, '24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⅔인 10.6파운드를 예상하며, 금년 최저임금 인상은 이를 반영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GDP 성장률) 코로나19로 '20년 - 9.8%였으나 '21년 6.7%로 빠르게 회복
- (소비자물가지수) '21.12월 5.4%
- (실업률) '21년 4분기 4.1%로 전년 대비 1%p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저임금위원회: www.lowpay.gov.uk
- 정부 통합 홈페이지: www.gov.uk
- 통계청 통계포털: www.statistics.gov.uk
- 국세관세청: www.hmrc.gov.uk

【참고】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

- 비영리단체인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매년 11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 산정·발표
 - (현행 적용액 발표시기/대상) 2021년 11월 / 18세 이상 근로자
 - (시급) 2021/2022년 런던 지역 11.05파운드, 기타 지역 9.90파운드
 - * 생활임금재단은 국가생활임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주장하는 단체이며,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질 생활임금과 관련해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실질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단인증을 부여하고 있음(영국 100대 기업 중 40%가 참여 중이며 수혜 근로자는 20만 명)
 - * 2003년부터 런던 지역 실질생활임금이 발표되었으며, 2011년부터 런던 지역과 기타 지역(전국)을 구분하여 발표
- 생활임금재단의 실질생활임금은 국가생활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법적 성격(의무적용 여부), 산정방법 및 산정기관, 적용대상 및 지역구분 등에서 국가생활임금과 전혀 다른 개념

<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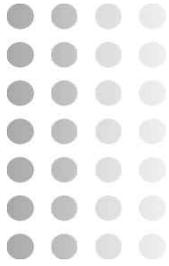
연도	런던 지역	기타 지역(전국)	국가생활임금
2003/2004	£6.40	-	£4.50
2004/2005	£6.50	-	£4.85
2005/2006	£6.70	-	£5.05
2006/2007	£7.05	-	£5.35
2007/2008	£7.20	-	£5.52
2008/2009	£7.45	-	£5.73
2009/2010	£7.60	-	£5.80
2010/2011	£7.85	-	£5.93
2011/2012	£8.30	£7.20	£6.08
2012/2013	£8.55	£7.45	£6.19
2013/2014	£8.80	£7.65	£6.31
2014/2015	£9.15	£7.85	£6.50
2015/2016	£9.40	£8.25	£6.70
2016/2017	£9.75	£8.45	£7.20
2017/2018	£10.20	£8.75	£7.50
2018/2019	£10.55	£9.00	£7.83
2019/2020	£10.75	£9.30	£8.21
2020/2021	£10.85	£9.50	£8.72
2021/2022	£11.05	£9.90	£8.91
2022/2023			£9.50

< 국가생활임금과 실질생활임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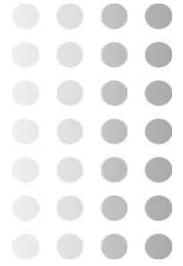
구분	국가생활임금 (National Living Wage)	실질생활임금 (The real Living Wage)
법적 성격	법정(法定)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대상)	자발적인 권고사항
현행 시금	2022년 4월 1일부터 9.50파운드	런던 지역 11.05파운드/기타 지역 9.90파운드
산정 방법	중위임금 대비 일정 비율 * 저임금위원회에서 시장 여건상 수용이 가능한 금액을 감안하여 인상을 산정 (단, 2020년까지 중위임금의 60%를 목표)	근로가구의 최소 생계비 (cost of living) * 매년 11월 생활임금재단이 런던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근로가구의 최소 생계비 필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
적용 대상	23세 이상 모든 근로자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
적용 지역	전국 단일 금액 적용 (연령별 구분)	런던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산정 기관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

(문 의) 주영국대사관 1등서기관 김성환
(연락처) +44 (0)20-7227-5545, cupid333@korea.kr

* 제출일: '22.2.22.



13. 체코



국 명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	
언 어	체코어	
면 적	7.8만 km ²	
인 구	1,068만 명	
수 도	프라하	
주 요 도 시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프루젠, 리베레츠, 올로모츠	
종 교	무교(47.7%), 가톨릭(7%), 기타(0.5%), 무응답(30%)	
교 육	초등5년과 초기중등 4년의 9년제(6세부터 9년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코루나(CZK)	
주요 경제 지표 (2021년 잠정치)	G D P	2,435억 달러 (출처: 체코 통계청)
	1인당 GDP	22,762달러 (출처: 체코 통계청)
	GDP성장률	3.3% (출처: 체코 통계청)
	교 역	수 출 1,352억 달러 수 입 1,416억 달러 (출처: 체코 통계청)
	실 업 률	3.5% (출처: 체코 통계청)
	물가상승률	3.8% (출처: 체코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z-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도입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1945~1989)은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최저임금제도는 미도입
 -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1989년 이후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991년 최저임금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래, '07년 법제화 완료
 - 노동법(Labour Code No. 262/2006 Coll.)은 '06.6.7. 제정되었고 '07.1.1.부터 시행
 - '07년 노동법 및 최저임금제 도입 후 '12년까지 청소년과 일부 특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50~90% 수준으로 감액 적용하였다가,
 - '13년에 청소년 근로자, '17년에 장애인 연금수령자에 대한 감액 적용을 폐지

2 관련 법

- 노동법(Labour Code No. 262/2006 Coll.)
- 최저임금 등에 관한 정부령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
- 적용 제외: 없음
- 특례 대상: 8개 직군별 보장임금
 - 노동법에서 '최저임금(minimum wage)'과 별도로 '보장임금(guaranteed wage)'을 규정하고 보장임금을 직군별로 구분
 - '보장임금'은 고용계약이나 기업내규 등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임금(wage) 또는 급여(salary)를 의미

- 보장임금의 최저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직군별 보장임금의 최저수준 또한 함께 조정되어 고시됨(최저임금 관련 정부 법령에 함께 명시)
- 직군별 보장임금의 최저수준은 업무의 복잡성(complexity), 업무에 수반하는 책임의 정도(responsibility), 난이도(strenuousness)에 따라 8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산정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경제사회협의회(Council of Economic and Social Agreement)

- 총 21명으로 정부(노동사회부)측 대표 7인, 노측 대표 7인 및 사측 대표 7인으로 구성
 - 정부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리(경제사회협의회장), 노동부·재무부·교통부·지역개발부·산업통상부·농업부 장관으로 구성
 - 노측위원은 체코-모라비아 노동조합연맹 추천 6인, 독립노동조합협회 추천 1인으로 구성
 - 사측위원은 체코산업연맹 추천 4인, 체코경영인·사업가협회연맹 추천 3인으로 구성
- 위원들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협의회를 구성할 때마다 노사측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경제사회협회의 합의를 거쳐 정부(노동사회부)에 보고 후 내각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

- 노동사회부가 최저임금 조정안을 마련, 경제사회협의회에서 폭넓은 토론 및 협상을 통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조사, 의견청취, 회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
 -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각 측의 의견을 명기하여 정부(노동사회부)에 보고
 - 정부(노동사회부)에 보고된 조정안을 내각에서 다수결로 최저임금 결정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갱신주기

- 통상 매년 초(1.1.)에 1회 변경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치적 논의를 거쳐 수시 결정도 가능

결정시기

- 전년도 8월 협의 개시, 11월 결정 공표

시행시기

- 정부 법령에 명시하며 통상 매년 초에 시행

4) 결정기준

-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소비자물가, 경제 상황, 최저생활비 및 사회보장비, 평균 임금수준 등
 - 국내외 상황 비교, 국제관행 준수 여부 등
-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5) 결정단위

- 월급 및 시급 단위(주 40시간, 월 167시간 기준)
 - 휴일과 월별 날짜 차이에 따라 한 달 중 근로일이 4주간 160시간을 조금 상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

6) 결정과정의 공개

외부방청 허용 여부

- 경제사회협의회는 비공개로 개최되고 서면으로 기록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결과는 합의에 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되고 이후 노동사회부,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단체(체코경영인·사업가협회연맹 등) 홈페이지 등에 게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상여금, 성과급 등 급여 대부분 포함
 - 식사 바우처 등 현물급여도 포함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수당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 '07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청소년은 '13년, 장애인은 '17년에 각각 감액규정 폐지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월급 및 시급 최저임금을 정부령으로 고시
- 별도의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는 없음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국가근로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과 지역근로감독청이 근로감독법(Labour Inspection Act No. 251/2005)에 의거하여 감독
 - 감독관(Inspector)은 감독청 소속 공무원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별 규정
 -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법 제13조에 의해 최대 2백만 코루나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형벌 규정: 없음
- 사법적 권리구제
 -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16,200코루나(시급 96.40코루나)로, '21년보다 1,000코루타 증가(6.58%)하였고, 같은 해 3분기 평균임금(32,979코루나)의 49.12% 수준('21.11.5.)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 최저임금 현황(2013~2022) >

(단위: 코루나, %)

연도별	구분	성인	인상률
2022		월 16,200 (시간당 96.40)	6.58
2021		월 15,200 (시간당 90.50)	4.11
2020		월 14,600 (시간당 87.30)	9.36
2019		월 13,350 (시간당 79.80)	9.43
2018		월 12,200 (시간당 73.20)	10.91
2017		월 11,000 (시간당 66.00)	11.11
2016		월 9,900 (시간당 58.70)	7.61
2015		월 9,200 (시간당 55.00)	8.24
2013.8. ~ 2014.12.		월 8,500 (시간당 50.60)	-

1주 40시간, 연간 252일 2,106시간 근로 기준

< 8개 직군별 최저보장임금 >

(단위: 코루나)

분류	직군	주요 사례	최저보장임금 (시급)	최저보장임금 (월급)
1그룹	Unqualified (자격요건 없음)	주방보조, 청소, 배달 등	96.40	16,200
2그룹	Simple Specialized Work (단순 특수 작업)	가정부, 위생관리, 작업인부 등	106.50	17,900
3그룹	High Specialization (고급기술 특화)	웨이터, 바텐더, 열관리 등	117.50	19,700
4그룹	Expert Work (전문 작업)	간호사, 가이드, 요리사 등	129.80	21,800
5그룹	Expert Specialized Work (전문적인 특수 작업)	버스기사, 회계사, 시장분석가 등	143.30	24,100
6그룹	System Specialized Work (시스템 특수 작업)	판매관리자, IT 네트워크 관리자 등	158.20	26,600
7그룹	Creative System Work (창조적 시스템 작업)	재무관리, 의사, 약사 등	174.70	29,400
8그룹	Creative System Work, psychologically demanding (창조적 시스템 작업, 감정노동 직업군)	경영분석가, 금융브로커, 과학자	192.80	32,400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정부는 최저임금이 소비자물가에 자동 연동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최근 경제사회협의회에서 합의 도출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재무부는 올해 전망치를 4.1%→3.1%로 하향 조정('22.1.)하고 중앙은행도 3.5%→3%로 하향 조정('22.2.)
- (물가상승률) 올해 8.5%로 전망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1분기 물가상승률을 10%대로 예상
- (실업률) EU 회원국(27개) 중 최저실업률을 기록 중으로 '22년 2.3%로 전망

관련 홈페이지

- 노동사회부: <http://www.mpsv.cz/cs/870>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명시: <http://www.mpsv.cz/minimalni-mzda>
- 통계청: <http://www.czso.cz/>

(문 의) 주체코대사관 선임연구원 최민국
(연락처) +420234090426, mkchoi17@mofa.go.kr

* 제출일: '22.3.4.

14. 포르투갈

국 명	포르투갈(Portuguese Republic)	
언 어	포르투갈어	
면 적	9.2만 km ²	
인 구	1천34만 명	
수 도	리스본(Lisbon)	
주 요 도 시	포르투, 코임브라, 브라가	
종 교	천주교 81%, 개신교 3.3%, 기타 종교 0.6%	
교 육	3~6세 유아교육, 6~8세(1~12학년, 초중고에 해당)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114억 유로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2 0 2 0)	18,100 유로 (출처: 통계청)
	GDP성장률	4.9%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634억 유로 수 입 825억 유로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6.6%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2.7%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pt-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60년대 말 소득분배 관련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열띤 논쟁과 사례에 영향을 받아 최저임금제도 도입

2) 발전과정

- 1974년 산업·서비스분야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제도 도입
 - 1977년 1월 산업·서비스분야보다 감액하여 농업분야에 확대 적용
 - 1988년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감액 적용(최저임금의 75%)
- 1991년 산업·서비스 및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을 단일화하였고, 가사서비스업은 독립적으로 책정
 - 1998년 연령별 특례제도를 없애고, 모든 연령에 대해 전면 적용
 - 2004년 월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방법, 시간당 최저보수, 월 최저임금 인하 및 소득과 물가정책 기준에 적절한 월 최저보수의 현실화 등을 규정

2 관련 법

- 노동법
 - '03년 노동법 제266조에 월 최저보수 명시
 - '09년 노동법(제7/2009호) 제273~275조에 월 최저보수 상세 규정
- 최저임금 고시 명령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의 근로자(외국인 포함)

적용 제외: 없음

특례 대상

- 실습생, 견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는 20%까지 감액 적용할 수 있음
 - 단, 감액 적용기간은 동일직종 근무기간(타 사업장 재직기간 합산)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기술직 수료자에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제한된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기본 근로능력 근로자와의 능력 비율만큼 감액 적용
 - 제한된 근로능력이란 기본 근로능력의 10~50% 범위로, 이에 관한 판단 및 증명은 국립 고용·직업훈련센터 또는 보건시설이 수행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사회협의상임위원회

- 구성 및 기능
 - 구성: 총12명으로 정부대표 4명(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 농업해양장관), 노조대표 4명(근로자총연맹, 근로자총연합), 사용자대표 4명(산업연맹, 상업서비스연맹, 농민연맹, 관광연맹)
 - 기능: 노사정 3자 협의기구로 최저임금 결정 등 사회적 합의내용을 협상·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사회협의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 총리가 사회협의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상임위원회는 매년 10~11월 최저임금을 심의, 총리에게 제출
- 상임위원회는 생계비, 물가상승률, 기업의 경쟁력 등 제반 경제지표를 정리한 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
 - 합의가 안 될 경우 각료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파업을 한 사례는 거의 없고,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관행이 정착
- 이의신청은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장관에게 함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연 1회
- 결정시기: 매년 10~11월
- 시행시기: 차년도 1.1.

4) 결정기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보장(생계비)
 - 단신 근로자(단순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4인 가족)가 모두 취업하여 4인 가족구성원 중 2명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부부 모두 단순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 전반적인 경제상황
 - 소비자 물가상승률, GDP성장률
 - 노동생산성, 노동시장 상황, 유사근로자 임금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
 - 노동법 제203조에 따라 최대근무 시간은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하지 않으며 자료는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숙박비, 식사비 등 현물급여(현물급여 평가액의 산입 비율은 50%)

- 고정적 상여금(휴가수당과 성탄휴가수당 등 연 2회)
 - 월 기본급의 200%가 고정상여금으로 법제화되어 있어, 연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 × 14개월」로 계산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등
 - 변동적 상여금과 성과급(노사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여부를 결정)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 업종, 지역, 연령에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정부는 매년 새로운 법령*을 대통령령 관보를 통해 공포
 - * 전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법령을 폐지한다는 조항을 포함
- 별도의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는 없음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최저임금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직속기관인 근로조건감시청(ACT)에서 관할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도 근로조건감시청에서 관할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피해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조건감시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감시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내 조사서를 작성, 과태료 규모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과태료(행정처벌)를 근로조건감시청에 지불해야 함

2)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 시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노동법 제273조)
 - 근로조건감독청(ACT)에 민원 제기 또는 고발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2년 최저임금
 - 월 705유로(법령 109-B/2021, de 7 de dezembro)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월급	485	485	505	530	557	580	600	635	665	705

출처: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미만율

연도	비율	전체 근로자 수(천명)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비율 (%)	최저임금 미만율(%)
2019		5,260	22.4	8.1
2018		5,184	22.3	7.8
2017		5,218	22.8	7.8
2016		5,211	25.3	7.6
2015		5,195	20.6	8.1
2014		5,226	13.2	7.7
2013		5,285	11.7	7.4
2012		4,635	12.7	7.4
2011		5,350	9.8	7.9
2010		4,978	9.4	8.4

출처: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 최근 현안 및 이슈

○ '15~19년 EU 회원국의 최저임금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중하위 수준 (EU통계청)

- 집권당인 사회당은 지난 5년간 월 최저임금을 557('17)→665('21)유로로 인상했으나, 그 폭과 영향력은 EU 전체를 봤을 때는 미미하다는 의견

○ '22.1.31. 보도에 따르면, '22.1월 EU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월 1천 유로 미만인 국가는 포르투갈(월 823*유로)을 포함 총 13개국으로 포르투갈은 이들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EU전체로 볼 때 여전히 하위권에 해당

* 상기 언급된 월 823유로는 '월 705유로*14개월(기존 월급 외 휴가수당 및 성탄휴가수당 200% 추가)/12개월'의 계산 결과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경제사회위원회: www.ces.pt
-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전략기획국: www.gep.msess.gov.pt
- 사회결속고용사회보장부 고용노사관계국: www.dgert.msess.gov.pt
- 경제부 전략연구실: www.gee.min-economia.pt
- 근로조건감시청: www.act.gov.pt

(문 의) 주포르투갈대사관 한지현 전문관

(연락처) +351-21-781-7156, jhyhan18@mofa.go.kr

* 제출일: '22.3.3.

15. 폴란드

국 명	폴란드 공화국(THE REPUBLIC OF POLAND)	
언 어	폴란드어	
면 적	31.3만 km ²	
인 구	3천8백만 명	
수 도	바르샤바(Warsaw)	
주 요 도 시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카토비체 등	
종 교	가톨릭(95%), 신교, 희랍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교 육	의무교육 8년(초등, 중학교)	
화 폐 단 위	즈워티(ZLOTY, PLN로 표기)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6,553.3억 달러 (출처: 세계은행)
	1인당 GDP	15,165 달러(2020) (출처: 폴란드통계청)
	GDP성장률	5.7% (출처: 폴란드통계청)
	교 역	수 출 3,393억 유로 수 입 3,397억 유로 (출처: 폴란드통계청)
	실 업 률	5.9% (출처: 폴란드통계청)
	물가상승률	5.1% (출처: 폴란드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pl-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1956년 최저임금에 관한 내각시행령
- 1974년 노동법에 최저임금 근거 규정
- 1988년 사회보장노동부 결정사안으로 규정하였다가, 2004년 사회경제3자위원회 합의 사안으로 변경
- 2015년 사회경제3자위원회는 사회문제협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2 관련 법

-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02.10.10.)
-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 관한 법령('15.7.24.)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체류허가, 노동비자를 소지하며 정식 근로계약을 토대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 적용 제외: 없음
- 특례 대상
 -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최소 80% 금액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사회문제협의위원회

○ 구성: 총 64명

- 총리실 및 정부측 11명, 노측 24명(NSZZ, OPZZ, FZZ 등 3개 단체 각 8명), 사측 25명(폴란드 사용자연맹 5명, 레비아탄연맹, 제조업협회, 기업가연맹, 기업가·고용주연맹, Business Center Club 등 5개 단체 각 4명), 자문가 4명 등
- 정부측 대표위원에 대해서는 총리가 임면권을 가지고, 노조 및 사측 대표위원은 노사단체의 후보 추천을 받아 총리가 임명(해임 시 노사단체의 동의 필요)
- 위원장은 총리가 국무위원 중 1명을 지명
- 11개 위원회와 1개 실무그룹에서 협의

- 분과위원회(7개):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위원회, 노동법위원회, 사회문제협의발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예산·임금·보조금위원회, 국제업무위원회
- 소위원회(3개): 공공행정근로자 소위원회, 노동시장정책개혁 소위원회, 세금행정 소위원회
- 자문위원회(1개): 건강보호 자문위원회
- 실무그룹(1개): 유럽사회협의 그룹

○ 기능

- 노사정 3자 대표들이 사회 통합, 경제 발전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현안을 협의, 방안 마련, 정부 최저임금 수준(안)에 대한 협의

2) 결정방법 및 절차

사회문제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

- 정부가 매년 6.15.까지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수준(안)을 제출
- 사회문제협의위원회는 7.15.까지 정부안에 대해 심의하고 합의안을 도출
- 기한 내 사회문제협의위원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 이 때 최저임금은 당초 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낮을 수 없음
- 국무회의는 9.15.까지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국무회의 시행령)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9.15.까지 결정 및 고시
- 시행시기: 차년도 1.1.부터 시행

4) 결정기준

- 실질경제성장률
 - 당해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급여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연도 실질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2/3 추가 반영
- 물가상승률, 평균급여, 사회계층별 생활수준
- 기타 국가예산, 경제환경,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등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월급 전액 지급(부족 노동시간은 이후 정산)
- 시급 단위: 실제 근로시간 기준 지급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원칙: 비공개
 - 일반인 방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언론기자 등 외부인사는 본회의 시작 전 퇴장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사회문제협의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회의록 작성
 - 회의 후 가족사회정책부, 사회문제협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

2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직종별 각종 수당, 연수 수당(연수생)

- 근로계약에 의한 정기적인 보너스
- 석탄, 전기, 식료품 등 현물 구입을 위한 현금 지급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추가수당
 - 근속수당(일정 기간 이상 근무에 대한 일시불 보상), 위험수당, 유해환경 근무수당
 - 사측에 의해 제공되는 근무 중 식비
 - 식비 외 교통비, 주택수당, 팁 등의 산입 여부 관련 규정 없음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월급 및 시급 단위로 최저임금으로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가족사회정책부, 사회문제협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노동청(National Labour Inspectorate)
 - 작업장의 안전, 위생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사용자의 위법 적발 시 벌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 권한 보유

- 노동청은 하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하원의장이 노동청장을 임명 및 해임 권한 보유(임기 4년)
- 전국 16개주 주도(州都)에 지방노동청 소재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사업장 방문조사(법정 근로계약, 근무시간, 급여 규정 준수 여부)
 - 노동법 위반 적발 시 검찰 고발, 행정지도 및 1천 즈워티(234달러)~3만 즈워티(7,240달러) 과태료 부과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3,010즈워티(시급 19.70즈워티)로 관보 공시('21.9.15.)에 따라 '22.1.1.부터 시행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즈워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급	11	11	12	13	14	15	17	17	18.30	19.70
월급	1,600	1,680	1,750	1,850	2,000	2,100	2,250	2,600	2,800	3,010

출처: 통계청

<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전체 근로자 수	최저임금 근로자 수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2020		16,555	1,563	9.4
2019		16,120	1,485	9.2
2018		16,617	1,465	8.8
2017		15,720	1,521	9.6
2016		15,293	1,465	9.5
2015		14,830	1,357	9.1
2014		14,560	1,364	9.3
2013		14,240	1,337	9.3
2012		14,170	1,300	9.1

출처: 통계청(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통계청 발표가 아닌 대사관 제출치, 2021년 통계는 미발표)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근 현안 및 이슈

-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총선('19.10월), 대선('20.5월) 등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4년에는 '19년(2,250즈워티) 대비 78% 인상된 4,000즈워티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을 확정
 - 최저임금 4,000즈워티는 월 평균임금의 60% 규모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

2)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 시중은행들은 경제성장률을 3.5~4.0% 전망(작년 대비 1.0~1.5%p 감소)
 - 물류 지연, 에너지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관련 공공지출 등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

□ 실업률

- '22.1월 기준 5.5%
 - 지역별로 △마조비에츠키에주 4.7%, △돌노실롱스키에주 4.9%, △실롱스키에주 4.3%, △비엘코폴스키에주 3.2% 등
 - ※ 폴란드는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

□ 물가상승률

- '01년 이후 1~2%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발현한 '19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1년부터 급상승
 - '22.1월은 9.5%, 2월은 8.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 ※ 정부는 '22.2~7월 식료품 및 에너지(유류, 가스, 전기)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시행될 것이라 전망

3)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가족사회정책부: www.gov.pl/family
- 노동청: www.pip.gov.pl
- 사회문제협의위원회: www.dialog.gov.pl/en

(단위: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급	1.98	2.16	2.16	3.39	3.39	3.93	4.47
월급	350	380	400	555	607	642	730

(문 의)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김찬수 전문관

(연락처) +48-22-559-2900~4, koremb_waw@mofa.go.kr

* 제출일: '22.3.19.

16. 프랑스

국명	프랑스(France)	
언어	불어	
면적	76만 km ²	
인구	6,781만 명('22.1)	
수도	파리(Paris)	
주요 도시	Paris, Lyon, Marseille, Toulouse, Bordeaux	
종교	가톨릭·기독교 52%, 이슬람 3%, 유대교 1% 등	
교육	총의무교육 기간 : 3-18세 유치원(3~5세), 초등학교(6~11세), 중학교(11~15세), 고등학교(15~18세)	
화폐 단위	유로(Eur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조 3,029억 유로('21 잠정치)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46,691달러 (출처: OECD)
	GDP성장률	7% (출처: 통계청)
	교역	수출 5,856억 유로 수입 5,009억 유로 (출처: 관세청)
	실업률	7.4%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1.6%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20세기 초까지 노사 개별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노사 임금계약 붕괴로 정부개입 필요성이 증가하여 정부 임금결정 방식(등급별 결정) 도입

□ 발전과정

- 1950.2.11. 노사 협상방식에 의한 임금결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정부 임금결정 방식을 폐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전직종 최저임금제(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시행
- 1945~75년 번영기를 구가하게 되면서, 전직종 최저임금제의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인식에 따라, 번영기의 혜택을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70년 법정 최저임금제(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로 제도 변경
- 1967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논란이 발생, 1968년 최저임금을 35% 인상
 - 1968~80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 대비 39%→50%로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구매력은 상승하였으나, 실업률도 급격히 상승(1968년 2.5%→1980년 6.8%)
- '01.1.19. 「Aubry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법정 최저임금제 근로자에게 현재의 월 급여 수준을 유지(최저보장월급, GMR: Garantie mensuelle de Rmuneration)함으로써 11.4%의 임금인상 효과를 부여
- '03.1.17. 「Fillon법」은 '05.7.1.까지 최저보장월급을 폐지하기 위해, 총 3회('03~'05년 연 1회)에 걸쳐 법정 최저임금제 시급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 * 물가상승률,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 정부재량 등
- '08.12.3. 「노동임금법(loi du 3 decembre 2008 en faveur des revenus de travail)」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제 법령 개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법정 최저임금제 결정절차에 참여
 - 새로 책정된 법정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0년부터 기존 7.1.에서 매년 1.1.로 변경

※ 기업 및 산업별 임금 협상에 해당연도 법정 최저임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조정

○ 법정 최저임금제 결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13.2.7. 행정명령(Décret) 2013-123으로 법정 최저임금제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없음

2 | 관련 법

□ 「노동법」L3231-2, L3231-3(원칙)

○ 최저임금은 수입이 가장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 △구매력, △국가 경제성장 활동 참여를 보장

○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에서 예상임금의 결정 및 수정을 위해 최저임금의 준거화 또는 연동화 금지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

○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

- 외국인: 장기체류자로서 근로를 허가하는 체류증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 적용

□ 적용 제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외판원 등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VRP, Voyageur représentant placier)

□ 특례 대상

○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연령과 계약기간에 따라 감액

- 고용된 분야에서 6개월 미만 경력자 중 17세 이상 18세 미만은 최대 90%(9.51유로)를, 17세 미만은 최대 80%(8.46유로)를 지급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노동부 장관이 '단체협상, 고용 및 전문직업교육 국가협의회(CNCEFP, 이하 단체협상 국가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단체협상 국가위원회 구성
 - 노동부 장관, 농업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가자문위 사회위원장(Le président de la section sociale du Conseil d'Etat), 사용자 대표 6명, 근로자 대표(직업군별 노조대표) 10명
 - 사용자 대표 6명은 기업인협회, 중소기업총연합, 소상공인연합 단체별 대표 각각 2인으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
 - 근로자 대표 10명은 5대 주요 노조(CGT, CFDT, CGT-FO, CFTC, CFE-CGC) 대표 각각 2인으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

2) 결정방법 및 절차

- 독립적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이 매년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와 정부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 분석 및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 제출
- 노동부는 단체협상 국가위원회를 소집하여 노사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
- 노동부는 △행정명령 2013-123에서 규정한 통계지표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종합, 국무회의에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법정 최저임금은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
- 소비자 물가지수(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가 직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최소 2% 상승하였을 경우, 동 비율로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조정

【참고】 독립적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

- 경제·사회 분야의 경험 및 역량을 갖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노동부, 고용부, 경제부 장관들의 추천에 근거해서 총리가 지명(4년 임기)
- 전문가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당국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비밀 준수 유지
- 업무수행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경제분석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필요시 외부기관에 연구요청 가능(Decret 2009-552)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소비자물가지수가 일정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동 갱신
- 결정시기: 매년 12월 중순
- 시행시기: 매년 1.1.

4) 결정기준

- 행정명령 2013-123 및 노동법 L3231-2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
 - 소비자물가지수: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를 대상*으로 담배를 제외하고 매월 측정
 - * 근로자(ouvriers)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employés)도 대상에 포함
 -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의 1/2: 근로자 기본 시급의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감한 수치로 노동부에서 분기별로 측정
 - ※ 소비자물가지수 및 구매력 산출 시 통계청(INSEE) 또는 고용통계국(Dares) 통계를 활용
 - 정부 재량에 의한 인상률(coup de pouce):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근로자 임금조사 자료를 활용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월급 단위는 참고용)
 - 월급은 주 35시간 근로법 규정에 따라 환산된 참고 금액으로, 실제 월급은 근로시간만큼 지급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정부 결정절차로 외부방청 가능성은 부재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경제부 홈페이지에 정부와 단체협상 국가협의회에 제출된 전문가그룹 보고서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현물급여(식사, 자동차, 주택 등)
 - ※ 매월 지급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에 산입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 기본급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타 수당(상여금, 연월차 휴가수당, 실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변상 등)
- 팁, 매상고에 대한 커미션
- 개인 성과수당 및 팀별 성과수당, 생산수당 및 생산성수당
- 연말 보너스, 휴가비
 - ※ 연말보너스, 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만 해당
- 다목적 수당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근로자가 미리 부담한 실경비의 변상(교통비 포함)
- 외식비, 공구비, 세탁비, 출장비 등
-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할증수당
- 연공수당, 개근수당
- 지역수당(섬나라, 댐 공사현장, 건설현장 등) 및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추위수당, 비위생수당 등)
- 기업의 총생산, 생산성 및 성과에 따른 집단 성과급
- 근로자들을 기업 번영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여금 및 기업의 이윤 분배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업종·지역 등 구분 없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노동부가 행정명령(Décret)으로 해당연도 법정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공공서비스 사이트,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Urssaf)에 게재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부 산하 기업·경쟁·소비·노동국 내의 노동감독관이 사용자들의 근로법 준수 여부를 감독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근로자 본인 또는 직원위원회*를 통해 노동감독관에게 문제 제기
 - * 11인 이상 사업장에 존재하는 직원단체
 - 기업·경쟁·소비·노동국은 노동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
 - 기소 시 경찰법원 또는 경범죄 법원에서 판결
 - 사법처리 부재 시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4,000유로 과태료 부과
 - ※ 1년 내 재발 시 50% 추가 과태료, 2년 내 재발 시 두 배로 부과

□ 형벌 규정

- 노동법 R3233-1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 미만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 1명당 1,500유로 벌금 부과(재적발 시 최대 3,000유로 벌금)

□ 사법적 권리구제

-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법원인 노동분쟁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제소
- 노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 실패 시 재판
 - 피해자는 최대 3년 미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10.57유로, 월급 1,603.12유로(주 35시간 기준)
 - '22년 인상률 3.1%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자동갱신 2.2%와 정부재량 0.9%의 합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유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급	9.43	9.53	9.61	9.67	9.76	9.88	10.03	10.15	10.25	10.57
월급	1430.22	1445.38	1457.52	1466.62	1480.27	1498.47	1521.22	1539.42	1554.58	1603.12
인상률	-	1.06%	0.8%	0.6%	0.9%	1.2%	1.5%	1.2%	0.9%	3.1%

출처: 통계청 (당국 최저임금은 시급 및 월급으로 발표)

□ 관련 홈페이지

- 공공서비스 사이트: www.service-public.fr
-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Urssaf): www.urssaf.fr
- 노동부: travail-emploi.gouv.fr

(문의/연락처) 주프랑스대사관 김예나 2등서기관(+331-4753-6961, ynkim18@mofa.go.kr)

(문의/연락처) 주프랑스대사관 심고우리 연구원(+331-4753-6664, gorshim10@mofa.go.kr)

* 제출일: '22.3.7.

17. 헝가리

국	명	헝가리(Hungary)				
언	어	마자르어(헝가리어)				
면	적	9만3천 km ²				
인	구	962만 명				
수	도	부다페스트(Budapest)				
주	요	도시				
		데브레첸, 세게드, 미슈콜츠, 페치				
종	교	가톨릭(39%), 개신교(14%), 그리스정교(0.1%), 유대교(0.1%)				
교	육	초중등 8년, 고교(전문기술고 포함) 4년, 학사 3년, 석사2~3년 (의무교육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16세로 '11년부터 하향)				
화	폐	단				
		위 포린트(Forint)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809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18,527 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7.6%	(출처: IMF)			
	교	역	수출 1,194억 유로 수입 1,170억 유로	(출처: 헝가리 통계청)		
	실	업	률	4.1%	(출처: IMF)	
	물	가	상	승	률	5.1%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hun.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1932년 ILO 협약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를 비준하고 이를 법령으로 공포
- 1951년 노동법에서 최저임금제도 폐지
- 1971년 최저임금제도 부활
 - 전국노조연맹과 전국협동조합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참여 보장
- 1989년 말 시장경제사회 전환 후, 1992년부터 노사정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 '11.7.1. 「노동규정에 관한 2012년 법 I」을 개정
 -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재계·노동계·학계·종교계·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경제사회위원회(NESC: National Economy and Social Council)와 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도록 제도 변경

2 관련 법

- 노동규정에 관한 2012년 법 I
 - 제69장 제153조에 최저임금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위임
- 의무적 최저임금과 최저보장임금에 대한 정부시행령 No.430/2016(XII.15)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적용 제외
 -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 특례 대상
 - 정부지정 공공 근로자(1년 미만 단기채용, 고졸 미만 단순 노무직, 환경미화원 등)

- 고졸 미만자 최저임금의 50% 지급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강제 최저임금과 중등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보장 최저임금으로 구분

※ 정부는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11.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일시적 고용을 위한 공공근로 제도를 도입

< 정부지정 공공근로자의 최저임금 현황 >

(단위: 포린트)

구분	월급 (일 6시간 근무)	월급 (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대비 비율
2022.1월~	-	100,000	50.0%
2021.1월~	-	85,000	50.8%
2020.1월~	-	81,530	50.6%
2019.1월~	-	81,530	54.7%
2018.1월~	-	81,530	59.1%
2017.1월~	-	81,530	64%
2016.1월~	-	79,155	71.3%
2015.1월~	59,366	79,155	75%
2014.1월~	57,975	77,300	76%
2013.1월~	56,625	75,500	77%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중앙정부 내각

○ 국가경제사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결정

국가경제사회위원회

○ 구성(총 39명)

- 사용자 대표(12명): 10개 전국경영자조직 대표, 상공회의소장, 농업협회장

- 근로자 대표(6명): 법으로 인정된 6개 전국노조 대표

- 학계 대표(8명): 과학원 원장 등 4인, 대학총장협회 협회장 등 2인, 경제학협회 2인
- 종교계 대표(4명): 4개 종교단체(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유대교) 대표
- 시민단체 대표(5명): 국가협력기금 대표 등 4인
- 예술계 대표(4명): 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4인
- 임기는 4년이며, 재임 가능, 별도 보수는 없음
- 운영방식
 -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 4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정례회의에 소관 부처 장관들과 장관 추천 정부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장 및 부청장 상시 참석
- 위원장: 위원회의 각계 대표들이 3개월마다 교대하여 담당

2) 결정방법 및 절차

- 정부 대표(재무부 장관)와 민간(6개의 전국노조 대표)이 상설포럼을 통해 실질소득, 기업의 경쟁력 및 이윤창출,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수립한 후, 국가경제사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 결정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당해 12.31.까지 결정
- 시행시기: 차년도 1.1.부터 적용

4) 결정기준

- 근무환경에 필요한 조건, 국가 노동시장의 특징, 국가경제 상황, 산업 각 분야와 지리적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해당 연도의 제반 경제적 여건 및 각종 관련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활용하나 조사·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미공개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주 40시간 기준)
 - 월급을 정한 후 주급(월 4.35주), 일급(주 5일), 시급(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함께 고시

6) 결정과정의 공개

- 국가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녹취 의무도 없으나 회의록은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근로소득세, 연금, 의료보험, 고용시장 기여세 등 세전 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성과급, 숙박비, 교통비 등 기본급 외 임금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지역·업종별 구분 없음)
- 학력에 따른 구분
 - 고졸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고졸 미만자/고졸 이상자)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 고시방법
 - 총리가 정부령(Government decree)으로 관보에 고시
 - 월급, 주급, 일급, 시급으로 고시
 - 고졸 미만자와 고졸 이상자의 최저임금 구분 병기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국가경제부 내 고용정책 담당 차관실에서 총괄·관리하며 지역별로 노동검사관실 (Hungarian Labour Inspectorate)에서 실무를 담당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별 규정

-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역 노동검사관실에 온라인 신고 (본인 납세번호와 사용자 사용자등록번호 등 기입)
 - 노동검사관이 감독 후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수 미지급분 지급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에 따라 부당해고 및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지방법원 제소 가능
 - 다만, 노동법 관련 소송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패소했을 때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송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17년 12,667건 → '19년 4,615건)
 - '12년 노동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12개월치의 월급을 보상받을 수 있음(퇴직금, 미지급된 월급은 보장되지 않음)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고졸 미만자와 고졸 이상자 구분 적용

(단위: 포린트)

		월급	주급	일급	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고졸	미만자	200,000	45,980	9,200	1,150	19.5%
	이상자	260,000	59,780	11,960	1,495	18.8%

출처: 통계청

월 최저임금을 정한 후 월 4.35주, 주 5일, 일 8시간 기준으로 시급, 일급, 주급으로 환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고졸 미만자)

(단위: 포린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월급	98,000	101,500	105,000	111,000	127,500	138,000	149,000	161,000	167,400	200,000
주급	22,560	23,360	24,160	25,550	29,310	31,730	34,260	37,020	41,850	45,980
일급	4,510	4,670	4,830	5,110	5,870	6,350	6,860	7,410	8,370	9,200
시급	564	584	604	639	733	794	857	926	1,046	1,150

출처: 통계청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경제지표 동향

연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2021년	7.6%	5.1%	4.1%
2020년	-5.1%	3.3%	4.1%
2019년	4.6%	3.3%	3.4%
2018년	5.4%	2.8%	3.7%
2017년	4.4%	2.3%	4.2%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통계청(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 www.ksh.hu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www.kormany.hu

(문 의) 주헝가리대사관 강지오 서기관

(연락처) +36-1-462-3085, jokang10@mofa.go.kr

* 제출일: '22.3.5.

아메리카



18. 멕시코

국 명	멕시코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196만 km ²	
인 구	1억2,601만 명(2020)	
수 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	
주 요 도 시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등	
종 교	가톨릭	
교 육	기본교육: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의무교육) 중등교육: 중학교 3년(의무교육) 중고등교육: 고등학교 3년 고등교육: 대학 4~5년 (국공립은 무료, 사립은 유료)	
화 폐 단 위	페소(Pesos, MXN)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조 2,900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9,970 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5%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4,177억 달러 ('20) (출처: 경제부) 수 입 3,832억 달러 ('20)
	실 업 률	4.1% (출처: IMF)
	물가상승률	7.36%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mx-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10년 혁명 이후 1917년 새로 제정된 헌법에 노동권이 국민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로 규정되었고, 최저임금제도 최초 명시
 - 노동 관련 조항은 1906~1908년 노동운동에서 광산, 섬유, 철도근로자들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구들을 반영

□ 발전과정

- 1931년 연방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을 담당하는 특별지방자치위원회 설치
 - 지역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재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근로자나 사용자들의 과반이 요청하고 특별지방자치위원회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1963년 국가최저임금위원회와 111개의 지역위원회를 설치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국가최저임금 설정과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감독
- 1981년 농업종사자 최저임금 폐지, 지역별 구분적용 경제구역 3개로 축소
- 1986년 지역위원회를 해체하고 지역별 최저임금도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 '12년 경제구역은 2개로 축소, '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은 폐지하였다가 '19.1.1.부터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지역, 2개로 구분하여 적용

2 관련 법

- 1917년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123조(노동·사회복지)
 - 최저임금의 의미와 조건, 최저임금 설정 방식 등
-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 제6장 제90조~제97조에 최저임금 관련 규정
-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제26조, 제99조, 제131조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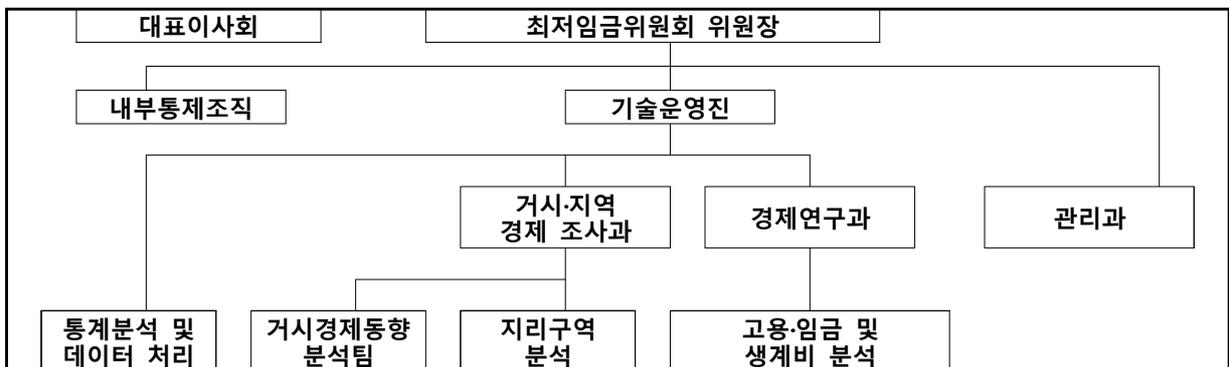
- 적용 대상
 - 민간분야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 적용 제외
 - 공무원 및 공공분야 근로자는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위원회(CONASAMI)
 - 대표이사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위원장(대통령),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2명의 고문, 정부·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로 구성(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는 각각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동수)
 -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는 4년마다 선출되며, 노동계·경영계에서 지정이 없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
 - 기술운영진(Technical Direction)
 - 노동부에서 임명하는 1명의 대표와 기술자문·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들이 임명하는 동수의 보조기술자문으로 구성되며, 통계분석, 고용·임금 및 생계비 분석 등 실시
 - 기관 조직도



○ 자문위원회(Comisiones Consultivas)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표이사회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기술운영진은 자문위의 조사활동 및 기술적 업무를 지원
- 자문위는 자문위원장(1명), 기술서기관(1명),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3~5명) 및 최저임금위원회장이 지정하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와 동수의 기술자문과 전문가로 구성
- 자문위는 필요시 조사와 연구를 직접 진행하며, 이를 위해 기술운영진이 조사하는 자료¹⁾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 사용자 연합단체 및 모든 공공기관과 민영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수령할 수 있음

2) 결정방법 및 절차

- 기술운영진은 매년 11월 말까지 대표이사회에 경제행동보고서(presentaciones de los informes sobre el comportamiento de la economía) 제출
 - 연방노동법 제562조 제5항에 따라, 기술위원회는 1년 동안 근로자 및 사용자들의 제시자료와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 대표이사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연구조사에 기초한 기술지침보고서 분석
- 매년 12.31.까지 대표이사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위원회 결의안 발표
- 결의안이 승인되면 즉시 위원장이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1.1.~12.31. 적용되나, 경제상황 요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중 상시 재검토 가능

□ 결정시기

- 12.31. 이전('22년 고시일: '21.12.8.)

□ 시행시기

- 차년도 1.1.~12.31

1) ①국내 일반 경제상황, 경제활동에서 관찰되는 주요 변화, 가정별 생계비 변동, 노동시장 및 임금체계조건, 가정별 필요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 조사, ②최저임금근로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연방, 지방, 공공기관, 경제연구기관, 노조, 상공회의소, 산업계 등에 경제와 관련된 자료 요청, ③근로자 및 사용자들이 제출하는 자료, 제안 수집 및 이들이 제출한 연구나 조사를 통한 보고서 제작

4) 결정기준

- 일반 최저임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인 기본 필요를 충족하고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직종별 최저임금은 이에 더해 각각의 경제활동의 상이한 조건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함(헌법 제123조)
- 최저임금은 국가의 경제성장, 경제활동의 발전, 일자리 제안, 과거 임금구조, 근로자의 생계비* 및 기타 요소 등을 반영
 - * 2년마다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전국가구소득-지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되는 생계비를 반영
- 최저임금 결정에는 또한 다음 요소가 고려됨
 - '21년 일반 최저임금(기타지역 141.7페소)
 - '22년 독립회복금액: 북부 25.45페소, 기타지역 16.9페소
 - '21년 최저임금과 '22년 독립회복금액의 합계의 9.0% 인상분

<독립회복금액(MIR, Monto Independiente de recuperacion)>

- 최저임금의 구매력 회복을 위해 일정한 액수로 추가하는 금액
- 직종·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22년 최저임금에는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지역에 차등 적용
- 예) '21년 일반 최저임금(기타지역 141.70페소)에 '22년 MIR 25.45페소(북부), 16.90페소(기타)를 더한 후 인상을 9.0%를 적용하면 '22년 최저임금은 260.36페소(북부), 172.87페소(기타)가 되며 이때 실질인상율은 22%

- 심의 참고 통계자료
 - 국가지리통계연구소(INEGI): 15일마다 기본식료품 가격지수, 계층 1(최저임금근로자)을 위한 인플레이션 등의 소비자가격 변동을 발표하고 2년마다 전국가구소득-지출 조사(ENIGH)를 통해 가구의 지출분배상황을 발표함
 -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 최저소득근로자의 구매력 관련 지수, 빈곤 노동동향지수(ITLP: 기본식료품 총가치(금액)의 월별 변동(최소복지선) 지수), 농어촌 및 도시환경에서의 빈곤 측정을 위해 기관이 이용하는 복지선(수준) 등

5) 결정단위

- 일급 단위(일 8시간 기준)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 방청 불허
 - 대표이사회는 구성원만이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월간 정기회의 결과는 경제추이 관련 월간 보고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적으로 지정된 연 상여금(연말 1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상여금, 휴가비 등) 및 기타 혜택(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급여가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 그 기준은 각각 7일과 30일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구분
 - '19.1.1.부터 미국과의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ZLFN, Zona Libre de la Frontera Norte)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의 최저임금이 기타지역보다 높음
 -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는 6개 주의 총 25개 도시로 구성
- 직종별 구분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전문 직종별 최저임금을 설정('21년 61개 직종)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을 연방공보(Federation Official Diary) 등에 고시
 - 매년 말 연방공보,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이행지도의 주체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기관
 - 연방노동법(제523조)은 근로규정 적용에 대한 감시는 각각의 관할기관에 있다고 명시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부처는 노동부
 - 연방 및 지방정부는 근로감독관(Inspeccion del trabajo)을 통해 최저임금 이행 감시
 - 연방노동법(제527조)은 노동법(최저임금법 포함) 준수 여부 감시를 위한 연방 및 지방정부(주·시 자치단체) 간 권한의 분배 규정
 - 해당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활동과 기업감시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음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노동부에서 수시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
- 근로자가 각 주 정부, 노동부 또는 노동중재센터에 최저임금 지급 불이행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신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

<노동중재센터>

- 연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법률 단계 전 조정, 국가 노동조합 등록, 단체계약, 사업장 내규 등에 대한 중재를 담당, 각 지방 노동중재센터 또는 연방 노동중재센터에서 최대 45일간의 재판 전 조정 단계를 가지며, 이는 의무사항임

2) 형벌 규정

- 노동법 제16장(책임 및 제재) 제1004조
 - I. 누락된 금액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 최저임금 한 달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개월~3년의 금고형 및 연방노동법 제992조에 의거한 UMA(멕시코 벌금, 과징금, 과태료의 단위금액)의 최대 8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 ※ '21년 기준 UMA: 일 89.72페소, 월 2,724.45페소, 연 32,693.35페소
 - II. 누락된 금액이 UMA의 30배를 초과하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일반 최저임금 3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개월~3년의 금고형 및 연방노동법 제992조에 의거한 UMA의 최대 1,6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 III. 누락된 금액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3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4년의 금고형 및 UMA의 최대 3,200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3) 사법적 권리구제

- 구제 절차(일반적인 노동법 위반 시와 동일)
 - 노동청 신고 후 내부 심사 및 감독관의 업체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제재(필요시 형사입건)
- 노동법원
 - 중재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쪽 이해당사자는 지방·연방노동법원에 제소 가능
 - 노동법원에 제소할 경우, 직종에 따라 지방·연방노동법원에 소장 접수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일반 최저임금(지역별, 일급 기준)

(단위: 일급, 페소)

연도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ZNFL)		ZNFL 외 기타지역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2022	260.34	22.0%	172.81	22.0%

출처: 멕시코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직종별 최저임금(일급 기준)

- ZNFL: 최고 387.09페소(일간신문 기자 및 사진사), 이 외 모두 260.34페소
- 기타지역: 최고 387.09페소(일간신문 기자 및 사진사), 최저 173.86(가금류 농장관리)

(단위: 일급, 페소)

	전문영역	ZNFL	기타지역		전문영역	ZNFL	기타지역
1	미장공	260.34	199.42	31	농업 일용직 근로자	260.34	195.43
2	약제상	260.34	176.28	32	주유원	260.34	180.44
3	불도저운전	260.34	208.91	33	가금류 농장관리	260.34	173.86
4	계산원	260.34	179.34	34	농기구 운전	260.34	200.41
5	바텐더	260.34	183.01	35	목공기계 운전	260.34	191.61
6	목수	260.34	199.42	36	자동차 정비	260.34	205.96
7	가구제작 및 수리	260.34	196.14	37	신발조립 기술자	260.34	181.24
8	요리사	260.34	201.95	38	미용사	260.34	187.34
9	메트리스제작 및 수리	260.34	184.82	39	자동차 도색	260.34	192.92
10	타일 시공	260.34	195.44	40	건물 도장공	260.34	191.61
11	건축근로자, 석고시공	260.34	186.12	41	세탁업	260.34	179.34
12	신발 제조업	260.34	181.24	42	배관공	260.34	191.95
13	재봉사	260.34	179.08	43	무선 통신 기구 수리	260.34	198.97
14	재택 침봉사	260.34	183.78	44	호텔 청소부	260.34	175.77
15	주차안내원	260.34	187.34	45	자동차 용품점	260.34	182.04
16	화물트럭 운전	260.34	203.52	46	가정 전기기구 수리	260.34	189.50
17	화물벤 운전	260.34	197.75	47	일간신문 기자	387.09	387.09
18	크레인 운전	260.34	190.22	48	일간신문 사진사	387.09	387.09
19	준설선 운전	260.34	210.84	49	제과제빵사	260.34	199.42
20	가구제조 및 수리	260.34	198.97	50	재택 재봉사	260.34	200.41
21	전기기구 설치 수리	260.34	195.44	51	비서	260.34	205.55
22	자동차 전기기사	260.34	197.34	52	용접공	260.34	197.34
23	전동기 및 발전기 수리	260.34	190.22	53	정육점	260.34	187.34
24	곤돌라 직원	260.34	175.77	54	자동차 시트 제작	260.34	190.22
25	창고 관리	260.34	182.04	55	천/가죽가구 제작	260.34	190.22
26	철물점 직원	260.34	185.67	56	가정근로자	260.34	187.92
27	보일러공	260.34	191.61	57	사회복지업	260.34	222.67
28	주유소 직원	260.34	179.08	58	우유 기계유축사	260.34	175.77
29	대장간	260.34	192.92	59	야간경비	260.34	179.08
30	자동차 수리 판금공	260.34	196.14	60	가정용 가전제품 소매판매	260.34	183.78
				61	신발 수리업	260.34	181.24

출처: 멕시코 최저임금위원회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2012년~2015년

연도	A지역		B지역		C지역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2015	70.10	4.20	66.45	4.20	-	-
2014	67.29	3.90	63.77	3.90	-	-
2013	64.76	3.90	61.38	1.34	-	-
2012	62.33	4.20	60.57	4.20	59.08	4.20

2015년 이후

(단위: 일급, 페소, %)

연도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ZNFL)		ZNFL 외 기타지역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2022	260.34	22.0	172.81	22.0
2021	213.39	15.0	141.70	15.0
2020	185.56	5.0	123.22	20.0
2019	176.72	-	102.68	16.21
연도	전국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	
2018	88.36		10.4	
2017	80.04		9.59	
2016	73.04		4.19	
2015.10	70.10		2.59	

출처: 멕시코 최저임금위원회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최근 5년간('17~'21) 법령 개정사항

○ 연방노동법 개정

- '21.3.3. 하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90조 개정안 승인
- 최저임금 특성을 명시한 제90조에 최저임금 설정 또는 개정 시, 최저임금 적용 유효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찰된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될 수 없다는 문구추가

○ '21년부터 직종별 최저임금에 2개 직종(가정근로자, 농업일용직 근로자) 추가

3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출처: 통계청)

○ 경제성장률(%)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 대비
-8.2	-3.8	19.9	4.5	1.0	4.8

○ 월별 실업률(%)

2021년												20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4.6	4.5	4.4	4.6	4.1	4.0	4.1	4.0	3.9	3.9	3.8	3.8	3.6

○ 물가상승률: 7.07%(‘22.1월)

□ 관련 정보 및 통계 참고 제공 홈페이지

- 노동부 : www.gob.mx
- 연방관보: dof.gob.mx
- 최저임금위원회: www.gob.mx/conasami
- 통계청: www.inegi.org.mx
- 중앙은행: www.banxico.org.mx

(문 의) 주멕시코대사관 박정오 참사관

(연락처) +52-55-5202-9866, jopark03@mofa.go.kr

* 제출일: '22.3.26.

19. 미국

국 명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언 어	영어	
면 적	982만 km ²	
인 구	3억 3,260만 명('20.4.)	
수 도	워싱턴 D.C(Washington, D.C)	
주 요 도 시	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종 교	기독교 42%, 천주교 21%, 무교 28%, 기타 9%	
교 육	대부분의 주에서 12년제의 의무교육 실시	
화 폐 단 위	US달러(USD, \$)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2조 9,958억 달러 (출처: 경제분석국)
	1인당 GDP	63,543달러 (출처: WB)
	GDP성장률	5.7% (출처: 경제분석국)
	교 역	수출 2조 5,285억 달러 (출처: 경제분석국) 수입 3조 3,877억 달러
	실 업 률	3.9% (출처: BLS, '21.12.)
	물가상승률	7.0% (출처: BLS, '21.12.)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12년 최초로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저임금법령을 제정, 연소자(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안의 적용(non-compulsory)
- 1913년 3개 주(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1923년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최저임금법령을 제정하였으나
 - 연방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임금선택권과 사용자의 임금계약체결권을 제한한다는 근거로 위헌 판정

□ 발전과정

-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
-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국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1935년 연방대법원 위헌 판정
-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1937년 연방대법원은 워싱턴주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최초로 합헌으로 판정
- 1938년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 연방 최저임금을 규정

2 관련 법

-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FLSA)
 - 연방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등을 규정
- 각 주·카운티·시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연방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최저임금 관련 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주의 근로자
- 최저임금을 연방보다 낮게 정한 주의 근로자 중 연방법 적용 대상* 근로자

*** 연방법 적용 대상**

- ▶ 2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총매출 또는 거래규모가 \$50만을 초과하는 사업체(businesses or organizations)
- ▶ 연매출 및 거래규모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사업장
 - 병원, 사회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
 - 지방·주·연방정부 등 정부기관
- ▶ 사업체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States) 간의 통상(서로 다른 주 간의 물품의 거래 및 생산, 사람이나 물품 등의 운송 등과 관련된 산업, Interstate commerce)에 종사하는 근로자
- ▶ 가정부, 전일제 아이돌보미, 요리사 등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동법의 적용 대상임
- ▶ 연방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라도 주 최저임금을 높게 정한 경우 주 최저임금이 우선 적용됨

○ 주·카운티·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최저임금을 연방보다 높게 정한 주의 모든 근로자
- 최저임금을 연방보다 낮게 정한 주의 근로자 중 연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

적용 제외

- 연방법의 비적용 대상이며 주·카운티·시 최저임금이 없는 주의 근로자
- 계절적인 놀이 및 여가시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규모 농장 근로자, 어업 종사자 및 외국선박의 선원
- 임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신문 배달원 및 소규모 신문사 종사자, 배전반 교환원 등

□ 특례 적용 대상

○ 연소자(Youth Employees)

- 20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고용 후 최초 90일간(근로일이 아닌 달력일)은 연소자 최저임금(\$4.25) 적용 가능

○ 직업훈련생(Student-learners, Vocational education students)

- 16세 이상의 직업훈련생이 근로자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정규학생(Full-time students)

- 소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설, 농업,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정규학생이 근로자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의 85%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장애근로자(Workers with disabilities)

- 사용자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손상된 생산성 등에 비례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이 가능

○ 팁크레딧 적용 근로자(Tipped employee)

- 근로자가 ①팁과 임금의 합이 최저임금 이상, ②팁을 전액 수령,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팁크레딧(tip credit)*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고지, ④매월 \$30 이상의 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2.13을 적용 가능

* 팁을 받는 직원은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팁과 임금의 합이 연방최저임금(\$7.25)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Ⅱ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연방의회(연방최저임금) 또는 주 의회(주 최저임금)
 - 카운티 또는 시에서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 일반적인 법 개정절차에 따름
 - 연방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심의하여 개정이 승인된 후 대통령 서명으로 결정됨
 -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통상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상·하원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여타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으나 최근 행사된 사례는 없음
 - 각 주도 주 의회에서 위와 유사한 절차를 통해 개정
 - 다만, 카운티·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조례(ordinance)를 제·개정하여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관련 법 개정에 따름

4) 결정기준

- 의회가 주로 물가상승이나 생계비 증가 등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을 통해 결정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법에 별도의 결정 기준이 있거나 고시 방법, 갱신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주·카운티·시에서 관련 법이나 조례 제·개정 시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증가하도록 정한 경우도 있음

5) 결정단위(연방 최저임금)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므로 공개 청문회(public hearing)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회 입법과정도 공개(Congress.gov)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연방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등의 비용
 - 식사, 숙박 또는 기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직원식당 등)에 소요된 비용(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 팁(팁크레딧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산입 가능, 관련 조건 충족 시)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 초과근로수당
 - 그 외 각종 수당 및 비정기적 급여
- 유급주휴(주휴수당)
 - 연방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유급주휴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동계약을 통해 결정

3 | 최저임금의 구분

- 연방법에 의한 연방 최저임금, 주법에 의한 최저임금, 카운티(Counties) 또는 시(Cities)의 조례(Ordinances)에 의한 최저임금으로 구분
 - 연방 최저임금은 업종별, 규모별, 연령별 구분 없음
 - 30개 주 및 워싱턴D.C.에서는 주법으로 연방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적용
 - 15개 주는 주법으로 연방최저임금과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
 - 2개* 주는 주법으로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 적용
 - * 조지아주(\$5.15), 와이오밍주(\$5.15)는 주법으로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경제활동이 해당 주 내에서만 이뤄지는 경우에만 한정. 이외에는 주법으로 연방최저임금을 적용함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5개 주는 주 최저임금 없이 연방최저임금 적용

연방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주	주법으로 연방과 동일한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없이 연방법 적용
알래스카	아이다호	앨라바마
애리조나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아칸소	아이오와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캔터키	테네시
코네티컷	뉴햄프셔	
델라웨어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노스다코타	
하와이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메인	텍사스	
매릴랜드	유타	
메사추세츠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	
미네소타	와이오밍*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레건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D.C.		

구분 적용기준 및 절차

① 지역별·사업장 규모별 구분(뉴욕주)

○ 뉴욕주는 '16년부터 주 예산법안을 통해 지역 및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조치 시행 중

지 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뉴욕시(NYC) - 11인 이상 사업장	\$11.00	\$13.00	\$15.00			
뉴욕시(NYC) - 10인 이하 사업장	\$10.50	\$12.00	\$13.50	\$15.00		
Long Island 및 Westchester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그 외의 뉴욕주 근로자	\$9.70	\$10.40	\$11.10	\$11.80	\$12.50	

* 그 외의 주 내 지역에서는 주 노동부 장관이 '21.10월까지 매년 인상률을 발표

② 사업장 규모별 구분(시애틀시)

- 시애틀시는 시 조례를 통해 '19년부터 대규모(50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애틀시 최저임금 적용
 - 시애틀 노동기준사무소(Office of Labor Standards)는 매년 9.30.까지 차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하며, 차년도 1.1.부터 효력 발생
 - 대규모 사업장은 '20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 조례에 정해진 계획에 따른 상승되었음
- '22년 최저임금
 - 501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시간당 \$17.29
 - 5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시간당 \$15.75

③ 사업장 규모별 구분(캘리포니아주)

- 캘리포니아주는 주법을 통해 '17.1월부터 연차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시키고 있음
 - 26인 이상 사업장은 '22.1월 \$15에 도달하게 되며, 그 이하의 사업장은 '23.1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단위: 시급, 달러)

적용 시기	25인 이하 사업장	26인 이상 사업장
2023.1	15.00	-
2022.1	14.00	15.00
2021.1	13.00	14.00
2020.1	12.00	13.00
2019.1	11.00	12.00
2018.1	10.50	11.00
2017.1	10.00	10.50

- 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외부 판매사원, 사용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주 기준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견습생(apprentice)에게는 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음
- 주 최저임금명령(Minimum Wage Order)에 따른 예외
 -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에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험이 없는 직종에서 고용되는 수습 근로자(learners)는 첫 160시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85%만 지급 받을 수 있음
 -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과 장애 근로자를 고용하는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s)이나 갱생기관(rehabilitation facilities)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게는 예외가 인정되며, 다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주 노동감독부서의 특별 인증이 필요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연방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청 홈페이지에 연방/주별 최저임금 게시
 - 주 및 하위 자치단체도 연방과 유사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연방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청 홈페이지에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게시
 - 아울러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관련 포스터를 근로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주 및 하위 자치단체도 연방과 유사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연방)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청(The Wage and Hour Division: WHD)

-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유지해야 할 각종 기록 등을 점검할 권한이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감독관의 방문을 거부할 경우, 청장은 사용자에게 강제 구인장(subpoena) 발부 가능
 - 최저임금 위반을 조사하고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습근로자 또는 풀타임 학생 등 부분적인 법 적용 예외를 승인함
 - 전국에 지청을 두고 있으며, 감독관(Inspector)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여 임금을 확인함으로써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판단
- ※ 주 또는 자치단체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독은 각 주나 자치단체의 근로감독 담당 부서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소급 지급분의 임금을 추정하여 합의 시도
 - 통상 위법을 적발하는 감독관들이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액수를 추정하고, 사용자는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의 확인 기회를 가짐
 - 추정된 임금에 대한 합의 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면 합의금 관련 통지가 근로자에게 발송
- 과태료(Civil penalty)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반복적이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1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전방지를 위해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음(근로자는 신청 불가)
 - 이를 통해 최저임금 조항 등 공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주(州) 간의 통상을 금지할 수 있음

2) 형벌 규정

- 형사상 소추
 - 공정근로기준법의 의도적인 위반 시, 법무부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상 소추 가능
 - 유죄판결 시 \$1만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 가능

3) 사법적 권리구제

민사소송

- 사용자가 체불 최저임금 지급 거부 시 노동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제소 가능

손해배상소송

- 근로자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소 가능

특별 제척기간

- 최저임금 위반 등에 기인한 공정근로기준법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 적용되지만,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년이 적용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연방정부

- 일반근로자 \$7.25(시급), 팁크레딧 적용 근로자는 \$2.13
- '0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정근로기준법 개정이 없었음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시급, 달러)

구분	2012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
연방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앨라바마	-	...	-	-	-	-	-	-	-	-
알래스카	7.75	...	8.75	9.75	9.80	9.84	10.19	10.19	10.34	10.34
애리조나	7.65	...	8.05	8.05	10.00	10.50	12.00	12.00	12.15	12.80
아칸소	6.25	...	7.50	8.00	8.50	8.50	9.25	10.00	11.00	11.00
캘리포니아	8.00	...	9.00	10.00	10.00	11.00	12.00	12.00	13.00	14.00 (25인 이하 ~15.00)
콜로라도	7.64	...	8.23	8.31	9.30	10.20	12.00	12.02	12.32	12.56
코네티컷	8.25	...	9.15	9.60	10.10	10.10	11.00	12.00	12.00	13.00
델라웨어	7.25	...	8.25	8.25	8.25	8.25	9.25	9.25	9.25	10.50
플로리다	7.67	...	8.05	8.05	8.10	8.25	8.56	8.56	8.65	10.00

구분	2012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
조지아	5.15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하와이	7.25	...	7.75	8.50	9.25	10.10	10.10	10.10	10.10	10.10
아이다호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일리노이	8.25	...	8.25	8.25	8.25	8.25	9.25	10.00	11.00	12.00
인디애나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아이오와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캔자스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캔터키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루이지애나	-	...	-	-	-	-	-	-	-	-
메인	7.50	...	7.50	7.50	9.00	10.00	12.00	12.00	12.15	12.75
매릴랜드	7.25	...	8.25	8.75	8.75	10.10	11.00	11.00	11.75	12.50
메사추세츠	8.00	...	9.00	10.00	11.00	11.00	12.75	12.75	13.50	14.25
미시건	7.40	...	8.15	8.50	8.90	9.25	9.65	9.65	9.65	9.87
미네소타	5.25~ 6.15	...	7.25~ 9.00	7.25~ 9.50	7.75~ 9.50	8.04~ 9.86	8.15~ 10.00	10.00	10.08	10.33
미시시피	-	...	-	-	-	-	-	-	-	-
미주리	7.25	...	7.65	7.65	7.70	7.85	9.45	9.45	10.30	11.15
몬타나	4.00~ 7.65	...	8.05	8.05	8.15	8.30	8.65	8.65	8.75	9.20
네브라스카	7.25	...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네바다	7.25~ 8.25	...	7.25~ 8.25	7.25~ 8.25	7.25~ 8.25	7.25~ 8.25	7.25~ 8.25	8.00~ 9.00	8.00~ 9.00	9.75
뉴햄프셔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뉴저지	7.25	...	8.38	8.38	8.44	8.60	11.00	11.00	12.00	13.00
뉴멕시코	7.50	...	7.50	7.50	7.50	7.50	9.00	9.00	10.50	11.50
뉴욕	7.25	...	8.75	9.00	9.70	10.40	11.80	11.80	12.50	15.00
노스 캐롤라이나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노스다코타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오하이오	7.70	...	7.25~ 8.10	7.25~ 8.10	8.15	8.30	8.70	8.70	8.80	9.30
오클라호마	2.00~ 7.25	...	2.00~ 7.25	2.00~ 7.25	2.00~ 7.25	2.00~ 7.25	2.00~ 7.25	2.00~ 7.25	2.00~ 7.25	7.25
오레건	8.80	...	9.25	9.75	9.75	10.75	11.25	12.00	12.00	12.75
펜실베이니아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로드아일랜드	7.40	...	9.00	9.60	9.60	10.10	10.50	11.50	11.50	12.25
사우스 캐롤라이나	-	...	-	-	-	-	-	-	-	-
사우스다코타	7.25	...	8.50	8.55	8.65	8.85	9.30	9.30	9.45	9.95
테네시	-	...	-	-	-	-	-	-	-	-
텍사스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유타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버몬트	8.46	...	9.15	9.60	10.00	10.50	10.96	10.96	11.75	12.55

구분	2012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
버지니아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11.00
워싱턴	9.04	...	9.47	9.47	11.00	11.50	13.50	13.50	13.96	14.49
웨스트 버지니아	7.25	...	8.00	8.75	8.75	8.75	8.75	8.75	8.75	8.75
위스콘신	7.25	...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와이오밍	5.15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5.15
워싱턴D·C	8.25	...	10.50	11.50	11.50	13.25	14.00	15.00	15.00	15.20

출처: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청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미만율

- 노동부 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년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16세 이상 근로자는 7,33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5.5%를 차지
 - 시급 근로자 중 연방최저임금(\$7.25)을 받는 근로자는 24.7만 명이며, 연방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는 86.5만 명
 - 따라서 연방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11.2만 명으로, 이는 전체 시급 근로자의 1.5%에 해당함('19년 1.9%→'20년 1.5%, 0.4%p 하락)
 - ※ '20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자 중 25세 이하 근로자는 48%를 차지하며, 여성·흑인·고졸 미만자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노동부 통계국, '21)
- 시급 근로자 중 연방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 비율은 해당 자료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9년 13.4%에서 점차 감소 추세('11년 5.2%→'20년 1.5%)

< 연방최저임금 이하 시급 근로자 비율 추이 >

(단위: 달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방최저임금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7.25
비율	5.2	4.7	4.3	3.9	3.3	2.7	2.3	2.1	1.9	1.5

출처: BLS Reports(2020), Characteristics of Minimum Wage Workers

□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동향

- 바이든 정부는 올해 연방최저임금을 \$15(시급)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 통과에는 실패
 - 다만,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건물관리인, 경비원, 보육종사자 등 37만 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로 '21년(\$10.95) 대비 37% 인상
 - * 연방정부 노동자 7만 명과 연방정부의 계약업체 노동자 30만 명

< 추진 경과 >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연방최저임금(시급 \$7.25→\$15.00) 인상을 주장하였고, '21.1월 입안하였으나(1.9조원 경기부양패키지) 공화당 반대(기업의 인건비 부담)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총26개 주 및 워싱턴D.C.가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 등은 이미 최저임금 \$15를 넘긴 상황이며, 코네티컷 등 일부 주도 \$15까지 최저임금 인상 예정
- 연방정부, 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15 이상을 지급 중
 - ※ 아마존은 지난해 9월부터 창고와 운송 담당 신입직원(12.5만 명)에게 시급 \$18, 코스트코는 지난 10월부터 \$17, 월마트(56.5만 명)는 \$16.40, 티모바일(7.5만 명)은 \$20을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슈퍼마켓 근로자 평균임금은 처음으로 \$15를 넘어섬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http://www.whitehouse.gov>
- <http://www.dol.gov/WHD/minimumwage.htm>
- <http://www.bls.gov>
- <http://www.minimum-wage.org>
- <http://www.census.gov>

(문 의) 주미대사관 고용노동관 최영범

(연락처) +1-202-939-5664, ybchoi21@mofa.go.kr

* 제출일: '22.3.8.

20. 브라질

국 명	브라질연방공화국(Brazil)	
언 어	포르투갈어	
면 적	851만 km ²	
인 구	2억 133만 명	
수 도	브라질리아(Brasilia)	
주 요 도 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벨로리존찌, 꾸리찌바	
종 교	천주교 65%, 개신교 22%, 기타 13%	
교 육	의무교육: 4~17세 * 유아학교(Infant School): 2년 / 4~5세(만) * 초등학교(Fundamental School1): 5년 / 6~10세(만) * 중학교(Fundamental School2): 4년 / 11~14세(만) * 고등학교(Middle School): 3년 / 15~17세(만)	
화 폐 단 위	헤알(Real, R\$)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722조 달러('22.3.) (출처: 지리통계원)
	1인당 GDP	8,057달러('22.3.) (출처: 지리통계원)
	GDP성장률	4.6% (출처: 지리통계원)
	교 역	수 출 2,808억 달러 (출처: 경제부) 수 입 2,194억 달러
	실 업 률	13.2% (출처: 지리통계원)
	물가상승률	10.06% (출처: 지리통계원)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br-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30년 취임한 바르가스 대통령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적용하고자 노동법 개정과 노동조합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제도 마련
- 재임 시기 1934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개념(근로자들이 그들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최초로 도입

□ 발전과정

- 1936년 대통령 법령(Decree-law) 185 시행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일상적 필요(식료품, 주택, 의복, 위생 및 교통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22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결정
- 1940.5.1. 국민의 기본 삶의 질 향상과 남녀 간 형평성 있는 급여 지급을 위해 최저임금제 관련 법령 2162 제정
- 1946년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인적 기준 확대(근로자 개인→근로자 가구원)
- 1988년 민주주의 헌법(군부독재 종식 후 개정)에서 최저임금을 행정입법이 아닌 의회입법에 의해 결정되도록 규정
 -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폐지, 전국 단일최저임금제 도입
 - 최저생계 기준에 의식주 외 교육, 여가, 사회복지 등 추가
- 200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정부가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개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승인
- 2011년 최저임금 모델은 지우마 정부 때 변경되었던바, 전년도 인플레이션 수치와 과거 2년 치 GDP 성장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 보장정책 구상
 - 이 정책은 '12~'19년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전년도 공식물가상승률만 반영 중

2 | 관련 법

- 1988년 연방헌법(제2편 제2장 사회적 권리)
- 1940년 법령 2162
- 1993년 법령 8716
- 2012년 통합노동법(CLT)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와 기업 및 사업장(헌법 제7조, 통합노동법 제76, 78, 117, 118조)
 - 장애인, 수습근로자(최대 90일 근무),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 포함)에게도 적용

적용 제외

- 인턴십은 통합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제도가 미적용되며, 별도의 법령('08년 법령 11788)* 적용 대상

* 인턴십은 학생의 교육 혹은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하여 헌법과 통합노동법상 일반 근로자(기본적 필요충족의 수단으로써의 근로)와 구분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연방의회

- 경제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인상안을 작성하여 의회로 전달
 - ※ '19년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노동사회보장부가 폐지되면서 새로 설립된 정부부처로 대부분의 노동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21.7월 노동사회보장부가 다시 설립 후 경제부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업무 진행

주의회: 지역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이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바, 지역 최저임금은 결정주체가 연방의회가 아닌 주의회에서 결정, 다만 방법과 절차는 연방 최저임금과 동일(대통령 → 주지사, 의회 → 주의회, 연방관보 → 주관보에 게재)

특정 직업의 최저임금은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으로 결정

- 변호사, 의사, 제약업, 엔지니어, 약사 등

2) 결정방법 및 절차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결정

- 상·하원 각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인상안 작성 시 경제부와 노동사회보장부는 인상률(물가인상지수 등), 정부예산 등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합동위원회에 제공하며, 이후 의회 상정

- 의회는 상하원 및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최소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하되, 노사는 참여시키지 않음

매년 8월 말까지 전달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하원 → 상원 순으로 승인

-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에 전달되고 미통과 시 하원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원에 전달됨

상원 승인 결정안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고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갱신주기 및 결정시기

- 매년 8월 말까지 전달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하원 → 상원 순으로 승인 후 대통령 비준을 거쳐 12월까지 연방관보에 공고

시행시기

- 연방관보에 공고 지정년도 1.1.~12.31. 시행

4) 결정기준

헌법과 통합노동법에서 명시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비용

-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구원의 기본적 필요 충족(의식주 및 위생과 교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지리통계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공식물가상승률(INPC)*
 - * 최하위 소득인구의 생필품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기존 국가소비자가격지수도 포함하고 있어 측정범위가 확장됨
- 보우소나루 정부는 '19년부터 적용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30일 기준, 하루 최대* 8시간, 주간 최대 44시간)
 - 「통합노동법」 제64조 시급 산정은 월 급여를 1일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초과 금지)과 30일**로 나누어 산정,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는 해당 달의 실제 근무 일자를 고려하여 산정
 - * 1일 또는 주간 최대 시간만 있고, 최소 시간은 정하지 않았음
 - ** 판례: 월 만근을 30일로 하고 있으며, 매월 같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단위: 해알)

연도	연방 최저임금(월급)	연방 최저임금(일급)	연방 최저임금(시급)
2022	1,212	40.4	5.51
2021	1,100	36.6	5.00
2020	1,095	34.60	4.97
2019	1,039	33.20	4.72
2018	998	31.80	4.53

- 월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또는 일급 계산법은 아래와 같음
 - 최저임금(시급)=최저임금(월급)÷220시간*
 - * 주간 최대 근무시간(44시간, 헌법 명시)÷6일(일주일에 하루 법정휴무)×30일(한 달)=220시간
 - 최저임금(일급)=최저임금(월급)÷30일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허용(단, 방청자 발언 금지)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통합노동법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정보와 그에 따른 자료는 의무적 공개
 - 최저임금 관련 논의내용, 회의록 등 해당 사이트(상·하원)에 상세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복리후생성 급여(식대, 숙박, 교통비 등) 및 현물
- 유급주휴(주휴수당)
 - 헌법 제7조 제15항에 의해 주당 1일의 유급주휴가 보장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됨

3 | 최저임금의 구분

1) 지역별 구분

- 지역별 구분 적용
 - '00년 헌법에 따라 州정부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가능
 - 현재 5개 州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22개(브라질리아 특구 포함) 州는 연방 최저임금을 따름
 - ※ 전반적으로 연방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공식물가상승률 외에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도 고려
 - '22년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월급, 헤알)

지역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
연방	1,212	리우그란데두술(예정치)	1,306
상파울루	1,164	산타카타리나(미정)	1,281
리우데자네이루(미정)	1,238	파라나(예정치)	1,600

2) 직종별 구분

- 1988년 헌법 제7조 근로자의 권리 중 최저임금(제4항)과 특정 직업에 따라 급여 하한선(제5항)이 구분됨
 - 특정직업 임금은 전국에 적용되지 않고 노조와 사용자 간 협의로 결정되며(헌법 제7조, 통합노동법 제611조), 변호사, 의사, 계약업, 엔지니어 등 직업의 특수성이 분명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직업군이 이에 해당

- 브라질은 주별 단수노조만 허용하므로, 특정직업 임금은 같은 직업이라도 다른 주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노조는 각 지역 단위로 관할권이 정해지고 산업별로 나뉘지 않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법률 공포의 방식으로 공고
- 별도의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는 없음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기관: 지역별 고용노동청 및 노동검찰청
- 노동사회보장부는 지역별 고용노동청을 통해 통합노동법(최저임금 포함)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외 노동검찰청(연방검찰청 소속)도 노동법 등의 위법 여부를 감시하고, 과태료도 부과 가능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근로자는 지역별 노동검찰청과 연방법원에 신고·고발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이 법정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확인
- (근로자 대상) 그간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그에 따른 13번째 보수, 휴가비용 및 근속 연수보장기금(FGTS) 등 수령 조치
- (사업장 대상)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부과

2) 형벌 규정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과

- 서류 위조,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 사항이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 가능 (별도의 형사소송 제기 가능)

3) 사법적 권리구제

노동법원

- 노동사건 전담의 노동법원이 존재하며, 권리·이익분쟁 등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원칙(통합노동법 제651조)
- 노동소송은 근로자의 소송비용이 낮거나 면제되어 근로자 제소가 보편화되어 있음
- 사용자 패소 시 과태료 납부나 시정조치에 더해 제소 범위 내에서 요구된 사항들을 추가로 시행해야 함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연방 최저임금

월급 1,212헤알

- '22년 연방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적용된 공식물가상승률은 10.18%
- 전년('21년) 대비 112헤알 증가(10.18% ↑)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헤알,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월급	678	724	788	880	937	954	998	1,045	1,100	1,212
인상률	-	6.78	8.84	11.68	6.48	1.81	4.61	4.71	5.26	10.18

출처: 경제부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1)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 임금상승률 보장('12~'19년 실시)
 - 지우마 정부는 '11년부터 법령 제12.382에 따라 새로운 최저임금제도를 설정, 전년도 인플레이션과 과거 2년 치의 GDP성장률을 더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결정하는 계산식 도입
- 물가상승률 반영('20년~현재)
 - '20년 이후 별도 계산식이 없이 헌법의 최저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개념에 따라 전년도 공식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산정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근 현안 및 이슈

- '22년 최저임금(월급)을 1,212헤알로 결정(10.18% 인상)
 -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이 금년도 공공지출에 40억 헤알의 영향을 준다고 발표
 - 최저임금은 퇴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 복지 혜택 규모의 결정 기준

2)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4.6%('21년, 지리통계원)
 -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이 -3.9%로 위축되었던 '20년 경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평가
 - 특히 서비스 부문(4.7% ↑)와 산업 부문(4.5% ↑)에서 회복
- 실업률: 13.2%('21년, 지리통계원)
 -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실업률 지속
- 물가상승률: 10.06%('21년, 지리통계원)
 - '15년 이후 최고치, 정부 예상치보다 두 배가량 기록
 - 연료, 전력, 커피, 주거용 가스, 쇠고기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 무역('21년, 경제부)

- 무역규모: 35.9% 증가('20년 3,687억 달러→'21년 5,000억 달러)
 - 무역수지: 21.1% 증가('20년 509억 달러→'21년 612억 달러)하였으나 경제부 예측치(709억 달러)에는 미달
 - 수출은 2,806억 달러(전년 대비 34.2% 증가), 수입은 2,194억 달러(전년 대비 38.2% 증가)
- 경제부는 '22년 무역규모가 4,892억 달러, 무역수지는 794억 달러로 예상(전년 대비 30.1% 증가)

□ 환율

- 1달러=5.39헤알('21년 평균환율, 중앙은행)
 - 공공예산 악화(코로나19 대응 공공예산 7,500억 헤알 적자)가 달러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사회보장부: www.gov.br/trabalho-e-previdencia
- 경제부: www.gov.br/economia
- 지리통계원: www.ibge.gov.br
- 중앙은행: www.bcb.gov.br/en

(문 의) 주브라질대사관 조영미 2등서기관
(연락처) +55-61-3321-2500, emb-br@mofa.go.kr

* 제출일: '22.3.4.

21. 아르헨티나

국 명	아르헨티나 공화국(República Argentina)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279.2만 km ²	
인 구	4,623만 명	
수 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주 요 도 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로사리오 등	
종 교	가톨릭(92%), 기독교(2%), 유태교(2%), 기타(4%)	
교 육	초등 7년, 중고등 5년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페소(pes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4,355억 달러(예상) (출처: IMF)
	1인당 GDP	9,929달러(예상) (출처: IMF)
	GDP성장률	10% (출처: IMF)
	교 역	수 출 779억 달러 (출처: 통계청) 수 입 632억 달러
	실 업 률	10%(예상) (출처: IMF)
	물가상승률	50.9%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arg.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근로자 복지를 강조하는 페론주의(Peronism)
 - 후안 페론 대통령 집권기 '사회정의와 자립경제'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임금인상의 필요성 인식
 - 이와 함께 내수 진작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저소득층 임금의 20% 인상을 목표로 최저임금제 도입

□ 발전과정

- 1945년 법령에서 최저임금 개념 최초 규정(대통령령 33302/45)
 -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임금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Wage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 1946년 보통선거로 당선된 후안 페론 대통령은 이전 군사정권의 제도 인수를 반대하였고, 1964년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않음
 - 다만,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1956년 대통령령(326호)에 의해 규정
- 1964년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Council) 설립·최저임금 최초 시행(법률 16,459)
- 1976년 노동계약법(법률 20744 116~120조) 및 1991년 고용법(법률 24013 135~142조)에 최저임금제도 명시
 - 농업근로자 최저임금은 법 22248에 의해 설립된 농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설정 불가

2 관련 법

- 헌법 제14(bis)조
- 고용법(법령 24013 제135~142조)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과 결정방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 노동계약법(법령 20744 제116조~120조)
 - 최저임금의 기준, 지급 대상과 조건 등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민간 및 공공분야의 18세 이상 모든 근로자(내·외국인 동일 적용)와 모든 사용자 (고용법 24013 제135~제140조)

적용 제외

- 18세 이하 근로자(고용법 제126조)
- 심각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
- 실습생 및 시간제(part-time) 근로자
- 공무원, 농업근로자, 가사노동종사자

※ 농업근로자는 법 22248호(국가농업노동체제), 가사노동종사자는 대통령령 326호(가사노동종사자에 대한 혜택·의무·권리)에 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규정함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기관명: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장 1명(노동부 임명), 경영자단체 대표 16명, 노조 대표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
- 위원회는 3분의 2의 다수결로 의결
-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 실업급여의 최소·최대 금액 결정, 고용 및 훈련정책에 대한 권고 등 기능 수행
- 설립 근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필요(음식, 건강, 주거)를 충족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음(법률 16459)

2) 결정방법 및 절차

- 위원회에서 비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노동부와 통계청이 수집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단체교섭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위원 2/3의 찬성 필요
 - 2번의 회기 이후에도 진전이 안 된다면 위원장이 결정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해진 갱신주기는 없음
 -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해도 있고, 연간 2회 이상 최저임금 변경 사례도 있음

4) 결정기준

-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공식적으로 공개된 기준은 없음
- 위원회는 노동부가 집계하는 민간부문 정규 근로자에 대한 통계치와 통계청이 가계 단위로 조사하는 소득분배 및 소득 추이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5) 결정단위

- 월급 및 시급 단위(월 200시간, 25일 기준)

6) 결정과정의 공개

외부방청 허용 여부

- 회의(plenary session)는 비공개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회의록 작성
 - 회의 참석자, 회의 시작 및 종료시간, 논의 의제, 회의 시 발언자 명단
 - 의제별 투표 결과 및 결정 사항
 - 회의록은 위원장 및 노사 측 각 2명(총 5명)의 서명 필요
- 공개여부 및 범위
 - 회의록은 전체 회의 개최 2~3일 후 관보에 게재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임금
 - 고용계약법 제116조에 의해 법정 정규근무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현금성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시간외수당, 현물급여, 가족수당, 보조금 등 기본임금 외 임금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 지역별 구분
 - 최저임금법을 승인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는 관할 범위 내의 공공행정임금에 관해 독자적인 기준 설정 가능하며, 이 경우 연방 최저임금과는 다를 수 있음
 - 다만, 농업종사자와 가사노동종사자의 최저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따로 정함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관보에 월급 및 시급 기준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명의로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일 또는 결의안 채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효

III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법령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이행지도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법 25877 제29조에 따르면 노동관계 모든 법령의 감독은 노동부 소관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형벌 규정

- 법 25212(Annex II 제5항)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위법 시 최저임금의 30~200%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시 벌금 가중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법이나 법령에는 구제 관련 규정 없음
 - 관련 법에 구제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노동소송을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33,000페소(월 25일), 시급: 165페소(월 200시간)

최근 최저임금 통계

(단위: 페소, %)

연도	월(1일 발효)	최저임금		
		월급(시급×200시간)	시급	인상률
2022	2	33,000	165	3.1
2021	10	32,000	160	2.9
	9	31,104	145.8	10.8
	8	28,080	140.4	3.2
	7	27,216	136.1	6.4

연도	월(1일 발효)	최저임금		
		월급(시급×200시간)	시급	인상률
	6	25,572	126.4	4.8
	5	24,408	122.0	3.6
	4	23,554	117.7	9.0
	3	21,600	108	4.9
2020	12	20,588	102.9	22.0
2019	10	16,875	84.4	35.0
	3	12,500	62.5	10.6
2018	12	11,300	56.5	5.6
	9	10,700	53.5	-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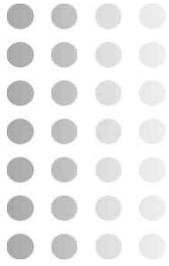
- '22.2월 최저임금은 월 33,000페소로 지난 1년간 52.8% 상승하였고, 이는 '21년 인플레이션(50.9%)과 유사한 수준
 - 통계청에 따르면 '21.12월 최저임금은 32,000페소로 '21년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76,146페소)의 42% 수준이고, '21.6월 빈곤율은 40.6%
- 경제 상황
 - '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9.9%였으나, '21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여 전년 감소량을 모두 회복(10%)
 - IMF와 440억 달러의 공공채무 상환조건 및 기일 연장 등의 재조정 협상을 하였고 '22.1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협상 진행 중
 - * 정부재정 건전성 강화, 공식/비공식 환율 간 격차 축소, 통화발행 축소 등
 - 인플레이션(50.9%), 실업률(10%), 빈곤율(40.6%)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21.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여 정부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22년 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

□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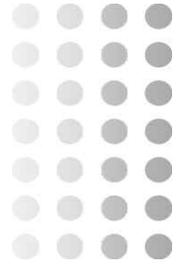
- 노동부: <http://www.argentina.gob.ar/>

(문 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장진우 2등 서기관
(연락처) +54-11-3670-6623, jwjang19@mofa.go.kr

* 제출일: '22.2.19.



22. 칠레



국 명	칠레 공화국(Republica de Chile)	
언 어	스페인어	
면 적	76만 km ²	
인 구	1,970만 명	
수 도	산티아고(Santiago)	
주 요 도 시	발파라이소, 콘셉시온, 푼타아레나스	
종 교	가톨릭(54%), 개신교(14%), 무교(25%), 기타 종교(7%)	
교 육	초등학교(6년) 중·고등학교(6년)	
화 폐 단 위	페소(Peso)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312.5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1인당 GDP	16,799달러 (출처: KOTRA)
	GDP성장률	11.5% (출처: 중앙은행)
	교 역	수 출 921억 달러 수 입 875억 달러 (출처: 국제경제차관실)
	실 업 률	7.2%('21.4분기) (출처: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7.2% (출처: 중앙은행)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cl-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1930년대부터 특정 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제도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87년에 법률 제18620호를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 적용
- 1970년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 및 제135호에 서명 후, 1999년 비준

□ 발전과정

- 1860년부터 초석산업이 발전하면서 1934년 질산염 생산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도 적용
 - 이후 공무원 등(1937), 농업근로자(1953) 및 산업·사업부문근로자(1956)로 적용 확대
- 1973년 사회당 Allende 대통령 집권 이후 모든 근로자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

2 관련 법

- 노동법 제44조
 - 급여의 지급 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임금(월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 특례 적용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74.6% 지급 가능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의회

- 의회 구성: 상원 43명, 하원 155명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의회를 통해 법률형식으로 결정
 - 매년 개정되거나 몇 해에 한 번 개정하는데 그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액과 다음 개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 ※ 가장 최근 개정된 법령('21.7월 공포, 법률 제21360호)은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였음
 - 해당 법에는 가족수당·모성보호수당 등도 함께 규정

□ 결정절차

- 노동부 장관은 노동총연맹, 상공인연합회 및 관련 부처(재무부, 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 제출기한은 이전의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규정
- 의회의 상·하원은 의결 절차를 거침

3) 갱신·결정·시행시기

- 갱신·결정·시행시기는 관련 법률에 규정
- 연 1회 또는 다년에 1회
 - 다년에 1회 개정되더라도 법률로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명시

4) 결정기준

- 정치적 및 사회적 논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재무부 산하 예산집행부(DIPRES)의 보고서, 중앙은행의 경제활동생산성지수(IMACEC), 물가지수, 경제성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비공식적으로 상황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노동생산성도 고려 가능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외부방청 허용(직접 또는 온라인 참석)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정보, 심의, 투표 및 보고서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통상적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연말 상여금, 연차휴가 보상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식사, 숙박 등 현물급여
- 유급주휴(주휴수당): 확인 불가능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구분 적용 없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전국 단일의 월 단위 최저임금으로 고시(법률로 공포)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차관실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인 노동조합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국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노동부 노동국 조사과에 신고
 - 담당 조사과는 신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소환장 발송
 - 조사관은 사실 심리 후 위반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보상하라는 결정 통보
 -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 10 UTM 이하의 벌금
 - 종업원 50~200인 미만 업체: 40 UTM 이하의 벌금
 - 종업원 200인 이상 업체: 60 UTM 상당 벌금
 - ※ UTM: 중앙은행이 과세를 위해 매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폐소로 발표하는 수정 화폐단위 (1UTM = 70달러, '21.2월)
 - 조사과 결정에 따른 경우 사건은 최종 확정되며, 불복할 경우 제1심 법원에 제소하여 심리 절차 진행
-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 관련사건을 독점적으로 심리하는 노동법원이 있으며, 형벌규정이 없어 민사처벌만 가능함
 - 노동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은 노동법 제415조~502조의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35만 페소

- '21.11월 경제활동생산성지수의 증가(6.77%)를 반영하여 '22.1.1.부터 시행(소급적용 포함)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페소)

기간	18~65세	18세 미만, 65세 초과 (최저임금의 74.6% 지급)	전년 대비 인상률
2022.1 ~ 2022.3	350,000	261,092	7.2
2020.9 ~ 2021.12	326,500	243,561	2.4
2020.3 ~ 2020.8	319,000	237,966	6.0
2019.3 ~ 2020.2	301,000	224,539	4.5
2018.9 ~ 2019.2	288,000	214,841	4.3
2018.1 ~ 2018.6	276,000	205,889	2.2
2017.7 ~ 2017.12	270,000	201,413	2.3
2017.1 ~ 2017.6	264,000	196,938	2.5
2016.7 ~ 2016.12	257,500	192,089	3.0
2016.1 ~ 2016.6	250,000	186,494	3.7
2015.7 ~ 2015.12	241,000	179,780	7.1
2014.7 ~ 2015.6	225,000	167,844	-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매년 법률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 '19.10월 소요사태(원인: 생활비용과 불평등)를 시작으로 최고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고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회는 '20.3월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급 법안」(법률 제21218호) 승인

- 동법은 '20.4월에 공포되었으며, 월급 30만 페소(세후)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

- '21.7월 법률(제21360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경제활동생산성지수 증가율이 3% 이하이면 34.5만 페소, 이상이면 35만 페소로 정하기로 함
 - 생산성지수는 '21.5월 115.6 → '21.11월 123.4로 증가(6.77%)하여 35만 페소로 결정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19년 최저임금은 연 4,816달러로 1인당 GDP의 30% 수준(세계은행)
 - 인구의 50%가 월급 40만 페소 이하 급여를 수령(통계청, '19년)
- 칠레는 OECD 내에서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고, 가장 부유한 10%가 가장 가난한 10%보다 13.6배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
 - '19년 소요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좌우 정파 간 논쟁 가열
 - '21.7월 재난지원금 등의 특별재정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최저임금 재조정

□ 경제성장률

연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2016	1.67	2.7	-0.1
2017	1.27	2.3	-0.9
2018	4.02	2.6	1.4
2019	1.1	3.0	-0.3 ~ 0.0
2020	-5.87	3.0	-0.7
2021	11	7.2	-

출처: 중앙은행, 통계청, 생산성위원회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사회보장부 www.mintrab.gob.cl

(문 의) 주칠레대사관 이유라 전문관

(연락처) +56-9-6818-4026, yrlee21@mofa.go.kr

* 제출일: '22.3.3.

23. 캐나다(온타리오주)

국	명	캐나다(Canada)		
언	어	영어, 불어		
면	적	997만 km ²		
인	구	3,844만 명		
수	도	오타와(Ottawa)		
주	요	도시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종	교	카톨릭 39%, 개신교 28%, 이슬람교 3.2% 등		
교	육	의무교육(1~12학년, 만 6~17세)		
화	폐	단		
		위		
		캐나다달러(Canadian Dollar)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조 1,898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56,740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4.6%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6,370억 달러
			수 입	6,310억 달러
	실	업	률	7.5%
물	가	상	승	
			률	
			3.4%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can-ottawa.mofa.go.kr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며, 주별로 결정 방식이 상이하고 이하에서는 최
대경제권(캐나다 GDP의 35.4%, 2021)인 온타리오주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함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캐나다 역사상 남성들은 협상을 통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여성들은 협상력이 없었던 상황
 -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18년 브리티시 콜롬비아 및 마니토바주를 시작으로, 1920년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사스캐추완주, 1960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준주에서 최저임금제도 도입

□ 발전과정

- 1937년 남성의 가구생계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여성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남성최저임금법(Men's Minimum Wage Act)」 도입
- 1950년대 캐나다 전역으로 평등임금원칙이 확산되어, 1974년 「남성최저임금법」 폐지
- 8캐나다달러(이하 캐불)이던 최저임금을 「온타리오 규정 285/01」 개정을 통해 '07~'10년까지 매년 0.75캐불씩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
- '10.3.31.부터 4년간 최저임금을 10.25캐불로 동결하였다가 '14.6.1.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11캐불로 인상
- '14.11.20. 고용기준법 개정을 통해 '15.10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을 자동 인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인상
 - 단,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인하 불가
- '17.11.27. 「공정한 사업장과 개선된 일자리에 관한 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
 - * 동법은 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근로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1995) △직업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18.1.1.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14캐불은 '19.1.1.일부터 15캐불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 주정부 정권 교체('18.6월) 후 '18.11.21. 「온타리오 기업개방법(Making Ontario Open for Business Act)」('18)이 통과되면서 '20.9.30.까지 14캐불로 동결
- 이후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은 「고용기준법」상 기준인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20.10.1.부터 14.25캐불로 인상

2 | 관련 법

- 노동법(Canada Labour Code, Division II Minimum wages §178~§181)
-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최저임금 관련 규정(Ontario Regulation) 285/01, 294/07, 31/14 등(2000)
- 「공정한 사업장과 개선된 일자리에 관한 법(The 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2017)
- 「온타리오 기업개방법(Making Ontario Open for Business Act)」(2018)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 주거 건물의 관리인
- 어린이 캠프, 자선단체 운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세 미만의 학생
-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 프로그램에 고용된 자
- 대학교 실무 경험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고교 이상 졸업자
- Ontario Works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참여자
- 특정 전문가 직종(실습생 포함)
 - 건축가, 엔지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교사 등
- 작업 또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수감자와 형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일하는 범죄자
- 노동조합 선출 간부, 농장 직원, 어부, 여행판매자, 부동산중개인

특례 대상

- 사냥·낚시 가이드, 야외 활동 근로자
 - 1975년에 도입, 1시간 단위가 아닌 '구간 단위의 시간(blocks of time)'으로 최저임금 적용
 - 일 5시간 미만 근무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5시간 이상 근무 시 최저임금의 200% 지급
 -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예: 날씨 등)에 적절한 보상을 위해 마련

○ 재택근로자

- 1994년 도입, 집에서 유급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복제조업체를 위한 의복 봉제, 콜센터 전화 응답 또는 첨단기술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 등)에게 적용
- 사용자의 간접비용(사업장의 조명, 난방 비용 등)을 재택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10% 가산

< 직종별 최저임금(적용시기: '22.1.1.~9.30.) >

(단위: 시급, 캐불)

직 종	내 용
일반 근로자	15.0
청소년 근로자	14.1 (최저임금의 94%)
사냥·뉘시 가이드, 야외 활동 근로자	15.0 (5시간 미만) / 30.0 (5시간 초과, 최저임금의 200%)
재택근로자	16.5 (최저임금의 110%)

- 실적제(commission)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나, 일부 산업의 경우 특별 규정을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온타리오주)

1) 결정기관

- 온타리오 노동부(Ministry of Labour,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2) 결정방법 및 절차

-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자동 조정
 - CPI가 하락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결
- 결정 산식

금년 최저임금(10월 1일 현재)

$$= \text{지난해 최저임금(9월 30일 현재)} \times \frac{\text{지수A (직전연도 CPI)}}{\text{지수B (2년전연도 CPI)}}$$

3) 갱신주기 및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1월 결정하여 당해 4.1.(조정 전 6개월)까지 고시
- 시행시기: 6개월간 조정을 거쳐 10.1. 시행

4) 결정기준

-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
 - ※ 소비자물가지수는 캐나다(연방정부) 통계청에서 발표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비공개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숙식 제공 등

< 숙식제공에 대한 임금 산입액 >

(단위: 캐불)

구분	개인실	비개인실	비개인실 (가내 근로자)
방 (1주 기준)	31.70	15.85	-
방 및 식사 (1주 기준)	85.25	69.40	53.55
식사 (1회 기준)	2.55 (1주 기준한도: 53.55)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금전적 보상(주식 옵션 등), 팁, 수수료, 보너스, 여비, 지출경비(expense allowance), 사용자에 의한 사회보장(benefit plan) 급부, 휴가비, 연장근무수당 등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연방최저임금은 없고 각 주별로 최저임금 결정
 - 결정방식 또한 상이함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온타리오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온타리오주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 직장의 보건 및 안전 등에 대해 사용자를 감독
 - 노동부는 토론토 본부를 포함한 19개의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관한 민원은 지방민원센터(Provincial Claims Centre)가 관장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적 권리구제
 - 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해결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해결 시 △유선, △서면, △사업장 방문 또는,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공식적인 조사 개시
 - 노동부가 사용자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는 30일 이내로 노동부에 재심 요청 가능
 - 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30일 이내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노동부의 명령을 기한 내에 미이행 시 노동부는 △시정 명령, △벌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강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법적 권리구제

- 고용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시정명령, 행정명령 또는 다른 적법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5만 캐불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법인은 10만 캐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온타리오주) 시급 15.00캐불('22.1.1.부터)

- 온타리오주는 「고용기준법」에 의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 자동 산출

< 최근 10년간 특례 대상 최저임금 >

(단위: 시급, 캐불)

연도	구분 일반	청소년 (18세 미만 학생, 주 28시간 미만)	주류 서빙	사냥·낚시 가이드		재택근로자
				5시간 미만(일)	5시간 이상(일)	
2022.1.1.~	15.00	14.10	15.00	75.00	150.05	16.50
2021.10.1.~	14.35	13.50	12.55	71.75	143.55	15.80
2020.10.1.~	14.25	13.40	12.45	71.30	142.60	15.70
2018.1.1.~	14.00	13.15	12.20	70.00	140.00	15.40
2017.10.1.~	11.60	10.90	10.10	58.00	116.00	12.80
2016.10.1.~	11.40	10.70	9.90	56.95	113.95	12.55
2015.10.1.~	11.25	10.55	9.80	56.30	112.60	12.40
2014.6.1.~	11.00	10.30	9.55	55.00	110.00	12.10
2010.3.31.~	10.25	9.60	8.90	51.25	102.50	11.27

출처: 온타리오주 노동부(2022년 기준)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17.11.27. 「공정한 사업장과 개선된 일자리에 관한 법」발효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
 - '18.11.21. 「온타리오 기업개방법」(2018)가 통과되면서 '20.9.30.까지 14.00캐불로 동결한 이후 '20.10.1.부터 14.25캐불로 인상
 - '22.1.1. 「고용기준법」(2000)을 일부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주요 쟁점
 - 온타리오 주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근로자 기업(예: Uber)과 계약직(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5캐불(시급) 지급 검토 중
- 주별 최저임금 미만율(2018년 기준)

주	구분	최저임금(캐불)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수(천명)	비율(%)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브리티시 컬럼비아		12.65	138.6	8.5	6.8
알버타		15.00	160.8	9.8	8.3
사스캐추완		11.06	14.2	0.9	3.0
마니토바		11.35	31.0	1.9	5.6
온타리오		14.00	926.0	56.6	15.1
퀘벡		12.00	295.8	18.1	8.0
뉴브런즈윅		11.25	22.5	1.4	7.2
노바스코샤		11.00	28.6	1.7	7.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1.55	4.9	0.3	7.6
뉴펀들랜드 라브라도		11.15	13.2	0.8	6.4
캐나다 전체(준주 제외)		-	1,635.5	100.0	10.4

출처: 통계청('18년 기준)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준금리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3.2	2.0	1.9	-5.3	4.6
물가상승률	1.6	2.3	1.9	0.7	3.4
기준금리	1.0	1.75	1.75	0.25	0.25

- 실업률 및 고용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업률(%)	7.0	6.3	5.8	5.8	9.5	7.5
-청년(15~24세)	13.1	11.6	11.1	11.0	20.1	13.5
-청장년(25~54세)	6.0	5.4	4.9	4.7	7.8	6.2
고용률(%)	61.1	61.6	61.6	61.9	58.0	60.2
-청년(15~24세)	55.4	56.5	56.3	57.5	49.5	55.2
-청장년(25~54세)	81.4	82.3	82.7	83.3	79.5	82.3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통계청: www.statcan.gc.ca
- 온타리오주 노동부: www.labour.gov.on.ca
- 고용사회개발부: srv116.services.gc.ca
- 온타리오 고용기준법 가이드: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

(문 의) 주캐나다대사관 김정기 상무관

(연락처) +1-613-244-5018, jkkim20@mofa.go.kr

* 제출일: '22.3.9.

24. 코스타리카

국명	코스타리카공화국(Republic of Costa Rica)	
언어	스페인어	
면적	5만 1,100km ²	
인구	510만 명	
수도	산호세(San José)	
주요 도시	알라후에라, 에레디아	
종교	카톨릭교 76%, 개신교 14%	
교육	의무교육 9년, 초등 및 중등교육(나이제한 없음)	
화폐단위	콜론(Colón)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643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1인당 GDP	12,451달러 (출처: 중앙은행)
	GDP성장률	7.6% (출처: 중앙은행)
	교역	수출 146억 달러 수입 170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실업률	13.7% (출처: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3.3% (출처: 중앙은행)
대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r-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세기 말, 유럽계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이주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 1893년 카톨릭 교회는 정부에 노동자 권리구제(공정한 임금보장, 노동환경 개선)를 위한 서한 송부
- 1902년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 9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1904년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
- 1920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1924년 산업재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승인

2) 발전과정

- 1933년 최저임금법 최초 제정
 - 제1조 ‘코스타리카에서 근로하는 성인 노동자의 일급은 1콜론 이하여서는 안 된다.’
 - 노동사회보장부(MTSS)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생계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직군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의무가 있음
 - 고용자 및 노동자 대표 각각 3인으로 구성된 사업주 및 노동자위원회(Consejo de Obreros y Patrones)를 창설하여 노동사회보장부가 책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의무화
- 1942년 집행명령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1→2.5콜론)
- 1949년 최저임금 및 국가임금법(No.832) 제정
- 1996년 국가임금에 대한 규칙(No.25619-MTSS) 제정

2 관련 법

1) 법적 근거

- 1995년 최저임금 및 국가임금위원회법(No.7510)
 - 1949년 최저임금 및 국가임금위원회법 제정 후, 총 4차례 개정

- 2011년 국가임금에 대한 규칙(No.25619-MTSS)
 - 1996년 이후 총 4차례 개정

2) 관련 협약 등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규칙 수립에 관한 협약(1930.6.14. 발효)
- 농업종사자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규칙에 관한 협약(1953.8.23. 발효)
- 개도국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1972.4.29. 발효)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법의 결정은 모든 근로자의 복지와 품위유지를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 적용 제외: 없음
- 특례 대상: 없음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임금위원회(Consejo Nacional de Salarios)
 - 근로자 권리보장을 담당하는 노동사회보장부와는 별개의 자치위원회로 행정부 임명(9명)과 국가 대표(3명), 사업주 대표(3명), 근로자 대표(3명)으로 구성

2) 결정방법 및 절차

- 국가임금위원회, 노동사회보장부
 - 국가임금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액과 근거에 대한 보고서 접수

- 위원회가 최종 공청회 후 15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동사회보장부에 통보
- 노동사회보장부는 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서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노동사회보장부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산정액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에 송부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하반기
- 시행시기: 매년 1.1.

4) 결정기준

- 국민생계비
 - 국가임금위원회는 국민생계비를 기준으로 노사 및 관련 기관들이 요청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고려해야 함
 - 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최저임금 결정 관련 서류의 요청 권한이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5) 결정단위

- 일급, 주급, 월급 단위
 - 법정최소 근로시간은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 운영
 - 사업주는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하루 최대 4시간의 추가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 하루 최소 1시간의 의무휴식 시간을 제공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국가임금위원회, 노동사회보장부, 노사 간 공청회는 외부방청을 허용하지 않으며, 최종 최저임금을 관보(La Gaceta)에 게재하고 노동사회보장부가 보도자료 배포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국가임금위원회 명단, 공청회 회의록 및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조정안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및 추가수당
 - 판매 건수 등에 따라 추가수당이 발생하는 직군은 사업주가 일급·주급·월급과 추가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책정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초과근로수당
- 유급주휴(주휴수당): 포함

3 | 최저임금의 구분

- 사무직/비사무직으로 구분
 - 사무직은 월급으로 구분하되 업무숙련도 및 학력에 따라 상이
 - 업무숙련도(하, 중, 고, 특수), 학력(기술, 고급기술, 학위수료, 학사, 고급학사)
 - 비사무직은 일급으로 구분하되 업무숙련도 및 전문분야에 따라 상이
 - 업무숙련도(하, 중, 고, 특수)
 - 기타: 가정도우미(월급), 커피 수확(바구니 수), 농산물 수확(kg) 등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관보를 통해 고시하고 노동사회보장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로 교육 및 홍보 실시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1) 근로감독 기관

노동사회보장부 임금관리청(MTSS Departamento de Salarios)

- 최저임금제도 불이행 신고접수 시 개별 사업장 조사 담당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행정벌: 과태료 부과 및 근로계약 종료 여부 결정

-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관리청에 사업장을 신고하면, 임금관리청은 조사결과 위반 경중에 따라 사업주에게 기본급의 최대 23배까지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주 6일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준수 시 사업주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도록 조치
- 근로자는 사업주에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관리청에 행정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형벌 및 사법적 권리구제: 없음

Ⅳ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관보('21.12.23.) 고시(단위: 콜론)

사무직(월급)		비사무직(일급)	
업무숙련도(하)	326,254	업무숙련도(하)	10,875
업무숙련도(중)	351,965	업무숙련도(중)	11,826
업무숙련도(고)	367,059	업무숙련도(고)	12,139
업무숙련도(특수)	416,802	업무숙련도(특수)	14,205
학력(일반기술)	384,651	기타 직종	

사무직(월급)		비사무직(일급)	
학력(고급기술)	474,041	가정도우미(월급)	214,231
학력(학위수료)	511,982	커피수확(바구니당)	1,035
학력(학사)	580,708	농산물 수확(Kg당)	0.0746
학력(고급학사)	696,874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사무직(월급, 단위: 만 푼돈)

구분	업무숙련도				학력				
	하	중	고	특수	일반기술	고급기술	학위수료	학사	고급학사
2013	25.1	27.1	28.5	32.5	30.3	37.4	40.3	45.8	54.9
2014	26.7	28.8	30.3	34.5	32.2	39.7	42.9	48.6	58.4
2015	28.4	30.5	32.1	36.0	33.6	41.5	44.8	50.8	60.9
2016	28.8	31.0	32.6	36.6	34.2	42.1	45.5	51.6	61.9
2017	29.3	31.5	33.2	37.2	34.7	42.8	46.2	52.4	62.9
2018	30.0	32.3	34.0	38.1	35.6	43.9	47.4	53.7	64.5
2019	30.9	33.3	35.0	39.3	36.6	45.2	48.8	53.3	66.4
2020	31.7	34.1	35.8	40.3	37.6	46.3	50.0	56.7	68.1
2021	31.8	34.2	36.0	40.4	37.7	46.4	50.2	56.9	68.3
2022	32.6	35.2	36.7	41.7	38.5	47.4	51.2	58.1	69.7

비사무직(단위: 푼돈)

구분	업무숙련도(일급)				기타			
	하	중	고	특수	가정도우미(월급)	기자(월급)	커피 수확(바구니 당)	농산물 수확(Kg당)
2013	8,417	9,164	9,341	11,195	148,992	676,388	801	
2014	8,945	9,739	9,927	11,897	158,335	718,802	852	
2015	9,509	10,341	10,531	12,421	169,142	750,481	905	
2016	9,663	10,508	10,701	12,622	172,610	762,611	920	
2017	9,822	10,681	10,877	12,830	178,704	775,162	935	
2018	10,061	10,940	11,142	13,141	183,940	793,998	958	0.0691
2019	10,359	11,264	11,472	13,530	190,377	817,500	968	0.0711
2020	10,621	11,549	11,762	13,873	199,761	838,183	1,011	0.0729
2021	10,652	11,584	11,797	13,914	205,048		1,014	0.0731
2022	10,875	11,826	12,139	14,202	214,231		1,035	0.0746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없음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경제성장률

- '21년 세계적 경제회복에 따라 수출, 투자,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21년 7.6% 기록('20년 - 4.1%)
 - 7.6%는 중앙은행의 '21.7월(3.9%)과 10월(5.4%) 예측치를 크게 상회

실업률

- 생산 부문의 호조로 고용이 늘고 있으나 '21.12월 13.7%로 코로나19 이전(12.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노동시장 수요는 높은 상황이나, 노사 간 기대임금 차이 존재

물가

-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해상운송비 상승 등으로 '21.12월 생산 부문 제조원가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0년 0.89%→'21년 3.3%로 상승
 - 물가상승 원인으로 대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재화 및 서비스 수요 증가, 기후변화(식량) 등으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지속된 점과 국내적으로는 현지화의 가치 하락, 소비 증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무역

- '21년 수출은 145.6억 달러, 수입은 15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7.3%, 16.2% 증가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사회보장청: <https://www.mtss.go.cr/>

(문 의) 주코스타리카대사관 전상훈 3등서기
(연락처) +506-2588-0852, shjeon@mofa.go.kr

* 제출일: '22.2.28.

25. 콜롬비아

국 명	콜롬비아 공화국(República de Colombia)	
언 어	스페인어, 영어, 크리올 등	
면 적	114만 km ²	
인 구	5천만 명	
수 도	보고타(Bogota)	
주 요 도 시	메데진, 칼리, 바랑키야, 카르타헤나 등	
종 교	가톨릭(58%), 개신교(33%), 기타(9%)	
교 육	의무교육(초중등교육)	
화 폐 단 위	콜롬비아 페소(COP)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990억 달러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5,858달러 (출처: 통계청)
	GDP성장률	10.6% (출처: 통계청)
	교 역	수출 412억 달러 수입 611억 달러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13.7%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5.62%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co-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사회 경제적 균형을 통해 공정함을 실현하고, 임금정책을 수립해 근로자 및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2) 발전과정

- 1945년 법(Ley) 제6호: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1949년 최초 최저임금 시행
- 1963년 시행령(Decreto)
 - 제236호: 지역별 및 규모별 구분
 - 제240호: 16세 이하 미성년자 및 농업종사자 최저임금 결정
- 1972년 국가·지역별·규모별로 각 분야(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원자재업 등)의 최저임금을 결정
- 1983년 시행령 제3506호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실시
- 1996년 법 제278호: 노동 및 급여정책 조정 상임위원회(La Comisión Permanente de Convertación de Políticas Salariales y Laborales)의 설립

2 관련 법

- 1945년 법 제6호(LEY 6 DE 1945): 최저임금제 규정(제4조)
- 1996년 법 제278호: 노동 및 급여정책 조정 상임위원회의 설립과 역할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적용 제외: 없음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기관명: 노동 및 급여정책 조정 상임위원회
 - 구성: 정부대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각각 5명, 총 15명
 - 정부대표: 노동부(회의 주재), 재무부·상공관광부·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또는 대리인(차관), 국가기획처 처장 또는 대리인(부처장)
 - 사용자대표: GDP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수준에 따라 사용자 연합회에서 임명하는 5명의 대표
 - 근로자대표: 대표성 있는(가입원 수 기준) 노조연합 3명, 연금수급자협회 1명, 실업자 연합회 1명 등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 가능
 - 기능: 임금정책 수립, 최저임금 설정, 정부발의 입법안 준비, 국제협약·기구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자문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노동 및 급여정책 조정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미합의 시 정부가 결정
- 결정절차
 -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직전 연도 12.15.까지 확정 필요
 - 12.30.까지 합의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중앙은행, 국가기획처(DNP), 통계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청취가 가능하며,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도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동의하지 않는 측은 48시간 내 부동의 사유에 입장을 정해야 함
 - 12.30.까지 결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매년 갱신
- 결정시기: 12.15.
- 시행시기: 1.1.

4) 결정기준

- 물가상승률(중앙은행 이사회)이 중요한 결정 기준으로 활용
 - '21년 주요 산출 근거: 당해 연도 물가상승률 5.62%
 - 국가 수입에 대한 임금의 기여도, 생산성, 국민소득세, GDP 성장률 고려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일 8시간 근로, 30일 기준)
 - 일 8시간 이하 노동자 시급은 고시금액을 240시간(8시간 × 30일)으로 나누어 산출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과정 회의록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각종 수당, 사회보장세 등 기본급 외 임금
 - 교통지원금
 - 임금이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휴가비, 연장근무수당, 현물급여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1951년 시행법규 및 1990년 법50(Ley 50 de 1990)에 의해 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부여
 - 법령에 산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월급 기준이 30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간주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없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전국 단일의 월 단위 최저임금으로 고시
 -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관보(Diario Oficial)에 고시
- 별도의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는 없음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이행 지도를 담당하며, 소속 감독기관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이 최저임금 지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노동환경 등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사법적 권리구제
 - 근로자는 노동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최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 사회보장세 미수령분 지급, 임금의 상향 조정 등을 사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 필요시 노동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100배의 벌금을 부과함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1백만 콜롬비아 페소(약 254달러)

- 소비자물가지수, 중앙은행(Banco de la Republica)이 설정한 내년도 인플레이션 목표율, GDP 증가율, 국가소득 대비 임금 비율, 경제 생산성을 반영해 산출하며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시행연도	시행령	결정 방식	최저임금 (콜롬비아 페소)	증가율(%)
2013	시행령 2738	정부결정	589,500	4.02
2014	시행령 3068	합의	616,000	4.50
2015	시행령 2731	정부결정	644,350	4.60
2016	시행령 2552	정부결정	689,455	7.00
2017	시행령 2209	정부결정	737,717	7.00
2018	시행령 2269	합의	781,242	5.90
2019	시행령 2451	합의	828,116	6.00
2020	시행령 2360	정부결정	877,803	6.00
2021	시행령 1785	정부결정	908,526	3.5
2022	시행령 1724	합의	1,000,000	10.07

출처: 각 연도 시행령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미만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1.~10.
최저임금 미만율(%)	58.0	56.6	60.8	63.8

출처: 통계청

□ 최근 현안 및 이슈

- 정부는 노사정 간 오랜 협의를 거쳐 '22년 최저임금을 1백만 콜롬비아 페소로 확정 ('21.12.25.)
 - 이는 지난 50년 동안 최고인상률(10.07%)로, 두케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선공약 실현
 - 다만, 중앙은행을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금년도 물가인상률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부: <http://www.mintrabajo.gov.co>
- 중앙은행: <http://www.banrep.gov.co>
- 통계청: <http://www.dane.gov.co>

(문 의) 주콜롬비아대사관 고혜영 전문관

(연락처) +57 3142631636 (ext.228), hyko20@mofa.go.kr

* 제출일: '22.2.24.

26. 파라과이

국명	파라과이 공화국(República del Paraguay)	
언어	스페인어, 과라니어	
면적	40만 km ²	
인구	706만 명	
수도	아순시온(Asunción)	
주요 도시	시우다드델에스테, 엔카르나시온, 페드로후안카바예로	
종교	가톨릭(88.2%), 기독교(9.2%) 등	
교육	의무교육: 유치원(Pre-School)부터 고등학교까지 9~3학제: 초중등학교(1학년~9학년), 고등학교(10학년~12학년)	
화폐 단위	과라니(Guarani)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57억 달러(2020) (출처: 중앙은행)
	1인당 GDP	4,984달러(2020) (출처: 중앙은행)
	GDP성장률	5% (출처: 중앙은행)
	교역	수출 105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실업률	6.5% (출처: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6.8% (출처: 중앙은행)
대사관 웹사이트	pry.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43년 모리니고 대통령은 성별, 국적 상관없이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해결, 위생, 이동, 문화여가를 위한 기본급과 관련해 최초로 법령제정

2) 발전과정

- 1936년 내무부 국립노동국(Departamento Nacional de Trabajo) 설치
- 1943년 모리니고 대통령은 최저임금제 최초 도입(대통령령 620호)
- 1961년 제정된 노동법(Codigo de Trabajo)에 최저임금 조항 포함
- 1993년 노동법에 최저임금 정의, 최저임금 결정기관 및 방법, 적용 대상 등 명시
- 2000년 이전까지는 공무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었으나, 2000.12월 공무원법을 별도 제정
- 2019년 가내근로자도 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 지정
 - 기존에 가내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60%만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시행령 제정으로 가내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100% 지급 및 사회보장제도(IPS) 가입을 의무화

2 관련 법

- 헌법(Ley Constitucional 1992)
 -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명시
- 노동법(Código Laboral)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

적용 제외

-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용자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사적 친분에 따라 자원해 근무하는 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업하는 사용자
- 공무원, 주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특례 대상

- 수습 근로자(Período de Prueba)
 -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60일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급여 책정이 가능
- 직업 훈련생(Contrato de Aprendizaje)
 - 청년층(18~28세) 또는 근로 비경험자가 특정직업 경험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최대 40%를 감액하여 급여 지급 가능
- 청소년 근로 특례
 -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상이하며(14~16세: 일 최대 4시간, 16~18세: 최대 6시간), 최저임금의 최대 40% 감액된 급여 책정 가능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최저임금위원회(Consejo Nacional de Sueldo Mínimo)

- 구성
 - 정부(위원장 포함)·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3명(총 9명)
 - 정부 대표는 노동고용부 노동국장,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노조연합과 파라과이 제조·산업·상업협회가 각각 내부투표를 거쳐 추천

- 위원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를 한정하지 않음
- 기능: 매년 6월 최저임금 인상 여부 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30. 이전에 노조의 임금인상 요청,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고용부에 송부
 -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노동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제출하면, 대통령은 경제각료 회의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공포
 -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
 - ※ 통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정부측과 인상률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음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갱신주기

- 최저임금은 2년간 유효
 - 지역 또는 산업의 중대한 경제적 변화 또는 최소 10% 이상 생계비 변동이 있는 때에, 노동 행정당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정(노동법 제255조)

결정시기

- 매년 6월 인상 여부를 결정하여 발표

시행시기

-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 즉시 적용(통상 7.1.부터 시행)

4) 결정기준

결정기준

- 노동법 제250조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경제적 측면: 기초생계비,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
 - 사회적 측면: 근로자 평균연령, 직업의 성격·성과, 국가 또는 지역의 임금수준

□ 심의 참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재가격(IPC),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 통계와 통계청의 가계 통계 등을 참고

5) 결정단위

- 월급 및 일급 단위(일 8시간, 주 48시간, 월 26일 근로 기준)
 - 기준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6) 결정과정의 공개

- 회의는 외부방청은 불허하고 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며,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요약본만 대중에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통상임금(연차휴가비, 출산휴가비, 연말상여금 등)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야근수당, 특근수당, 숙식비 및 현물급여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 지역별·직종별 구분 적용 없음

- 매년 국가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노동고용부에서 직종별 임금 가이드 라인을 노동고용부 결의안(Resolucion Ministerial)으로 고시

- 직종별 임금은 최저임금('22년 228.9만 과라니)과는 별개로 노동고용부가 자체 책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

해양운송 관련 직종	임금(만 과라니)	기타 직종	임금(만 과라니)
해양소방관,선원,해상주점종사자	228.9	요리사	228.9
운항사	240.1	제과사	262.3
보트기술공(내연/증기)	270.7	제화공	231.6
3급 항해사/조타수/조타수 장	246.6/228.9/246.6	가구공장 노동자	231.5
2급 항해사/항해사	268.8/279.0	자동화공장 노동자	251.9
카보타주 선장/도선사/갑판장	304.1/292.6/257.5	기계작업장 노동자	256.9
화물선 선장/도선사	316.2/292.6	석공,목수	260.7
정박/하선노동자	325.1/348.9	은행(행원/서비스직원)	369.9/297.5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월급 단위 최저임금을 대통령령(Decreto)으로 고시하며, 일급 단위 최저임금을 병기
 - 대통령실 및 노동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노동고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 또는 홍보는 미시행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최저임금을 포함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감독은 노동고용부의 노동관리국에서 담당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 미지불 등 노동법 위반 시 지역 노동관서는 조사를 하고 미지불 시 사용자에게 벌금으로 최저임금(일급)의 30배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적발 시 벌금은 2배로 증가

2) 사법적 권리구제

-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발생 시 노동관리국에서 1차 중재를 통해 합의하도록 하나, 결렬 시 제소 가능
- 근로 분쟁은 해당지역 관할 노동법원에 민사소송 제소(노동소송법 제39조)
 - 노동법(Código Laboral 213/93호) 및 노동소송법(Código Procesal del Trabajo 742/1961호)에 따라 근로관계 규정
 - 노동분쟁은 노동고용부 또는 산하 노동관리국에서 담당하며, 관할 노동법원에 제소 가능(노동소송법 제39조)
- ※ 소송법에서 명시되지 않을 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름(노동소송법 제2~6조)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2,289,324과라니('21.7.1.)

- 결정기준: 기초생계비, 물가상승률(연평균 포함),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평균 연령층, 전국 급여 지급 수준, 직종별 경기 등
-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나 별도 산출식은 없음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과라니)

적용시기	구분	최저임금	특례 근로자 최저임금 (직업훈련생, 청소년 등)	인상률(%)
'21.7월 ~ 현재		2,289,324	1,373,595	4.4
'19.7월 ~ '21.6월		2,192,839	1,315,704	3.8
'18.7월 ~ '19.6월		2,112,562	1,267,537	3.5
'17.6월 ~ '18.6월		2,041,123	1,224,674	3.9
'16.6월 ~ '17.5월		1,964,507	1,178,704	7.7
'15.6월 ~ '16.5월		1,824,055	729,622	-
'14.6월 ~ '15.5월		1,824,055	729,622	9.9
'13.6월 ~ '14.5월		1,658,232	663,293	-
'12.6월 ~ '13.5월		1,658,232	663,293	-
'11.6월 ~ '12.5월		1,658,232	663,293	9.9

출처: 중앙은행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최근 비공식 노동(Trabajo Informal)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비공식 경제활동 및 노동이 경제발전에 장애요소임을 인식하고, 근절방안을 모색 중
 - '18.12월 정규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고용정규화 전략 수립 및 재무부, 노동 고용부, 교육부, 공공사업통신부, 외교부,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국가전략위원회 구성(대통령령 818/2018호)
 - '19.7월 근로시간이 주 48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의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6339/2019호)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주재국 사회보장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임시휴업 중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
- 관련 홈페이지
 - 노동고용부 www.mtess.gov.py
 - 통계청 www.dgeec.gov.py

(문 의) 주파라과이대사관 김지만 1등서기관
(연락처) +59521605606, jmnkim07@mofa.kr

* 제출일: '22.3.3.

아시아



27. 대만

국 명	대만(Taiwan)	
언 어	Mandarin(중국 표준어), 민남어(閩南語)	
면 적	3만 6천 km ²	
인 구	2,335만 명(행정원 주계총처)	
수 도	타이베이(Taipei)	
주 요 도 시	타이중, 가오슝	
종 교	민속신앙(49.3%), 불교(14%), 도교(12.4%), 기독교(5.5%), 무교(13.2%) 등 (2019)	
교 육	국민기본교육 12년(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	
화 폐 단 위	신 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 NT\$)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7,747.9억 달러 (출처: 행정원 주계총처)
	1인당 GDP	33,004달러 (출처: 행정원 주계총처)
	GDP 성장률	6.45% (출처: 행정원 주계총처)
	교 역	수출 4,464.5억 달러 수입 3,811.7억 달러 (출처: 행정원 주계총처)
	실 업 률	3.95% (출처: 행정원 주계총처)
	물 가 상 승 률	1.96% (출처: 경제부 통계처)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tw-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 대만은 최저임금과 동일 개념의 '기본임금(기본급여)' 용어를 사용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국민당 정부는 1930년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에 따라 1936.12월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을 제정 및 공포했으나, 당시 국민당은 항일전쟁 상황으로 법안의 시행명령 보류
- 1949년 장제스 총통은 중화민국 정부를 타이베이로 이전한 이후 경제산업 성장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법 시행을 연기해오다 1986.12월 총통령으로 폐지
- 1955.11월 국민당 의회에서 월소득이 300NT\$(신 타이완 달러)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결의, 1956년부터 월소득 300NT\$를 기본임금으로 명시, 1964년부터 450NT\$로 인상
- 1968.3월 행정원은 '기본임금임시판법(基本工資暫行辦法)'을 최초 시행하여 월 기본임금을 600NT\$로 결정
- 1988년 행정원 노공위원회*(勞工委員會, 현재의 노동부)는 '기본임금심의판법'을 통과시키고, 최저임금 관련 정책(기본임금심의위원회, 기본임금 결정기준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본임금을 조정
 - * 대만은 사법원, 입법원, 행정원, 고시원, 검찰원 등 5개 원으로 분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노공위원회(행정원 산하)가 1987년 출범, '14년 노동부로 승격
- '10.8월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분쟁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정부측 인사 중심에서 노사정 대표를 포함한 21명(노동부 1명, 경제부 1명, 국가발전위원회 1명, 근로자 대표 7명, 회사 대표 7명, 학계 4명)으로 변경
- '14년 노동부는 기본임금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각계 학자들로 구성된 업무소조(싱크탱크 역할)를 구성
- '21.5월 노동부는 기본임금심의판법에 기본임금심의위원(21명)의 남녀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3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2 | 관련 법

- 노동기준법 (1984.7.30. 공포, '20.6.10. 최종개정)
 - 법 제3장에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기본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기본임금심의관법 (1985.3.21. 공포, '21.5.3. 최종개정)
 - 노동기준법 제21조 3항에 근거
-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 '18.11.29. 노동부에서 초안 제출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노동기준법 제3조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광업, 토석 채취업, △제조업, △건설업, △수도, 전기, 석탄가스업, △운송, 저장 및 통신업, △대중 언론매체, △기타 노동부가 지정한 사업 등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적용
- 국립학교의 근로장학생,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공공 임시근로자, 사립학교 근로장학생에도 최저임금 적용
- 외국인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나 전문직 종사 외국인은 '17.8월 노동부가 공고한 직업별 임금조사에서 공업 및 서비스업 전문직 평균 월급이 47,971NT\$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적용 제외

- 노동기준법 제3조에 명시된 8개 산업 외에는 적용 제외
 - 8개 산업에 포함되더라도 경영형태, 관리제도, 근무특성 등을 이유로 적용에 어려움이 확실 시 되는 자 등은 적용 제외
 - 노동부가 지정하여 발표한 사업* 및 해당 근로자는 적용 제외
- * 노동기준법 미적용 업종으로 농업수리연합회, 국제조직 및 외국기구, 미분류된 기타 요식업(산업표준분류 제6판 기준), 가사서비스업

Ⅱ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기본임금심의위원회(기본임금심의관법 제2조)
 - 노동부에 기본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노동부장(노동부 장관)이 주임위원을 겸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노동부장이 위촉
 - 기본임금심의위원회에 집행비서 1명을 두되, 노동부 '노동조건 및 취업평등사(司)' 사장이 겸임하며 해당 부서에서 사무업무를 처리

2) 결정방법 및 절차

- 매년 3/4분기에 노동부가 기본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 기본임금심의위원회 회의는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토의를 통해 합의 도출
- 기본임금심의위원회가 합의하면 노동부가 행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3/4분기
- 시행시기: 매년 1.1.

4) 결정기준

- 기본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 17종 주요 생필품(고기류, 야채류, 개인 위생용품 등 포함)의 연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참고자료 (7개 항목)
 - 국가 경제발전 현황,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국민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업종별 노동생산력 및 취업상황, 업종별 근로자 임금, 가계수입지출 조사통계

5) 결정단위

- 월급 및 시급 단위
 - 월급 기본임금은 30일(최대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시급제 근로자는 연말상여금 등의 복지가 없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급 최저임금은 월급 최저임금의 시급환산액보다 높게 책정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회의에서 언급된 요지를 기재한 회의록과 회의에서 사용된 관련 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기본임금 산입항목
 - 임금 정의에 속하는 명목급여(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주휴수당)
- 기본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기본임금에 정상 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발생한 보수가 아닌 연장근무, 휴일 근무에 따른 초과급여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비는 미산입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노동기준법에 주 2일의 유급주휴를 규정하고 있고 월급 기본임금을 30일(최대 240시간) 기준으로 책정

3 | 최저임금의 구분

- 단일 기본임금 적용(지역별·산업별 구분 적용 없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월급 및 시급 기본임금을 홈페이지에 공고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노동부에서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고, 지자체 노동 담당부서에서도 홈페이지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부 혹은 지역별 노동행정기관(지방정부 노동 혹은 사회부서)이 담당
- 사용주의 지급임금이 기본임금에 못 미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의 명칭, 주소 및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노동행정 주관기관에 신고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근로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행정 주관기관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한 업체명, 대표자 성명 및 처분일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등을 공고

2) 형벌 규정

- 노동기준법 제79조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20만~100만 NT\$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 제21조 제1항 임금은 노사 간 양측이 정하는 것이나, 기본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3) 사법적 권리구제

- 사법원은 '18년 근로자, 사용자의 권익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사건법」을 제정, '20.1.1.부터 시행하여 법원마다 노동전문법정을 개설하고 노동조정위원회를 발족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관련 통계

○ 월급 25,250NT\$, 시급 168NT\$

(단위: NT\$)

적용연도	월급(인상률)	시급(인상률)
2022	25,250(5.2%)	168(5.0%)
2021	24,000(0.8%)	160(1.3%)
2020	23,800(3.0%)	158(5.3%)
2019	23,100(3.2%)	150(7.1%)
2018	22,000(4.7%)	140(5.3%)
2017	21,009(5.0%)	133(10.8%)
2016	20,008(3.8%)	120(4.3%)
2015	19,273(1.2%)	115(5.5%)
2014	19,047(1.4%)	109(5.8%)

월급 기본임금은 월 30일(최대 240시간 근로) 기준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미만을

○ '21년 기본임금 미만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1%

< 2021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는 근로자 수 및 비중 >

구분	해당자(명)	비중(%)
전체 근로자(노동보험 가입자 기준)	10,741,647	100
24,000NT\$ 미만	1,942,800	18.1
24,000NT\$ 이상	8,798,847	81.9

출처: 노동부 노동보험국('21.12월)

□ 최저임금 영향률

○ '22년 기본임금(24,000→25,250NT\$) 인상으로 245만 명(월급제 194만 명+시급제 51만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현안 및 이슈

- 노동부는 '21.10.8. 기본임금심의위원회에서 기본임금 인상을 결정, '22.1.1.부터 적용
 -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매년 기본임금 인상('17년~)
- 정부는 기본임금심의판법(법규명령)에서 최저임금법(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저소득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기대
- 경제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체 또는 기본임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2년 상반기에 보조금 지원 계획
 - 경제부는 '21년 9~10월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업체를 선별하고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예정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부 <https://www.mol.gov.tw/>
 - 노동보험국 통계: <https://www.bli.gov.tw/ReportMonth/109>
- 경제부 통계처: <https://dmz26.moea.gov.tw/>
- 법무부 법령정보센터: <https://law.moj.gov.tw/>

(문 의) 주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 양정숙 대표보

(연락처) +882-2-2758-8320 #58, jyang11@mofa.go.kr

* 제출일: '22.3.18.

28. 말레이시아

국 명	말레이시아(Malaysia)	
언 어	말레이시아어, 영어	
면 적	330.3km ²	
인 구	3,270만 명	
수 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주 요 도 시	페낭, 말라카, 콰탄, 코타키나발루 등	
종 교	이슬람교(국교)	
교 육	초등 6년, 중등 5년, 대입준비과정 2년, 대학 3~4년	
화 폐 단 위	말레이시아 링깃(Ringgit Malaysia, RM)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590억 달러(추정치)
	1인당 GDP	11,124달러(추정치)
	GDP성장률	3.6%(추정치)
	교 역	5,417억 달러(추정치)
	실 업 률	4.3%(추정치)
	물가상승률	2.5%(추정치)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my-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10.3월 신경제모델(New Economy Model, NEM)의 목표인 '20년까지 고소득경제로 진입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 '12.4월 나집 총리는 최저임금령(Minimum Wages Order)을 발표하였고 '13.1.1.부터 시행
 - 시행 초기에는 종업원 6인 이상 업체와 일부 전문직종 업체(병원, 법률회사, 자문회사 등)에 적용되었으나, '13.7.1.부터는 5인 이하 업체까지 확대
 - 다만,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영세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개인기업에 대해 '13년 말까지 시행 유보
- 이후 2년 주기로 최저임금액 조정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해 왔으며,
 - 현재 '최저임금시행령 2020'을 '20.2.1.자로 시행 중

2 관련 법

- 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Act 2011)
- 고용법(Employment Act 1955)
-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
- 최저임금령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imum Wages Order 2012)
- 고용규칙(Employment (Part-time Employees) Regulations 2010) 등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국내에서 고용계약을 맺는 모든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
- 적용 제외
 - 가정부, 요리사, 경비, 정원수, 개인운전사 등 가정에 고용된 근로자(Domestic Servants), 2년 미만 견습생(Apprentices) 등은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임금자문위원회(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인적자원부)가 결정
- 국가임금자문위원회 구성
 - 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의장, 부의장, 서기, 고용자대표(최소 5인), 근로자대표(최소 5인), 공공부문대표(최소 5인, 정부공무원), 학계·경제학자·NGO대표(최소 5인) 등으로 구성(최대 29인)
 - ※ 의장, 부의장, 학계·경제학자·NGO대표는 공무원, 사용자,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 인력·산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로서 장관이 임명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 가능
 - 기능: 최저임금 관련 지역별·업종별 자료조사·분석, 최저임금 심의 및 자문 등
 - ※ 위원회는 연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가져야 하며, 주요 역할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 제언, 국민에게 상담 제공, 임금에 관한 자료 수집, 분석 및 연구, 최저임금 실시에 따른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최저임금 시행령 검토(격년) 등을 수행

2) 결정방법 및 절차

- 국가임금자문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정부(인적자원부) 승인 후 확정하고 장관령(최저임금령)으로 공포
-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2/3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2년
-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지침에 따라 최저임금령을 재검토

4) 결정기준

- 최저임금률은 △소득빈곤선('09년 기준 800링깃), △사용자의 지불능력(임금중양값),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실업률, △생산성 증가율의 5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

< 최저임금 산출식 >

$$= \text{평균값}(\text{소득빈곤선} \div \text{가계당 평균 근로자수} + \text{임금중양값}) \times [1 + (\text{지역별생산성증가율} / 100) + (\text{지역별소비자물가상승률} / 100) + \{(\text{지역별실제실업률} - \text{자연실업률}(4\%)) / 100\}]$$

- 「최저임금령 2020」에서는 월, 일, 시간별 최저임금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정
 - 일 기준 최저임금률 = (월 최저임금률 × 12개월) ÷ (52주 × 주당 근무일)
 - 시간기준 최저임금률 = 일기준 최저임금률 ÷ 근무시간(8시간)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를 기본으로 일급과 시급을 같이 고시
 - 월급은 주 6일 근로, 1일 8시간 기준

6) 결정과정의 공개

-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며, 국가임금자문위원회에서 초청한 인사에게만 자료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고용법상 임금 중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고용법상 임금 중 기본급 외의 현금 지급분
 - 주거지원비, 퇴직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여비,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연간 보너스 등은 임금에서 제외
 - 출장경비, 음식·연료·전기·물 제공, 의료비용 등 각종 수당 및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각종 연금 납입액 중 사용자 부담분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지역별 구분 적용

-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56개 도시(16 City Council and 40 Municipal council Areas)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

※ '20.2.1.부터 발효된 「최저임금시행령 2020」에 따라 16개 시의회 및 40개 자치구의회 구역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시별 생활물가 차이 반영)

※ 기본급(Basic Wages)의 형태가 아닌 건(Piece)·무게(Tonnage)·과제(Task), 출장(Trip) 또는 커미션(Commission)을 근거로 급여가 산정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56개 도시: 1,200링깃, 그 외 지역: 1,100링깃)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장관령으로 관보에 게재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청(Department of Labour)에서 최저임금 관련 관보 게재, 신문, 방송, 온라인 미디어 등 언론을 통해 주로 홍보하며,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한 별도의 교육은 미 실시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청에서 최저임금제 이행의 지도, 감독, 영향평가 등을 수행

○ 노동청의 근로감독 주기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로 피고용인의 신고를 통해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음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형벌 규정

- 최저임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구속도 가능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최초 위반 시 근로자 일인당 1만 링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지불 임금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지불토록 할 수 있음
 - 법규위반이 지속 시 유죄 선고 후 위반 기간 동안 매일 1천 링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규위반 반복 시 2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구속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최근 최저임금 통계

(단위: 링깃)

적용시기	지역	월당	시간당	주당 근무일수별 일당		
				6일	5일	4일
2020.2.1. 이후	56개 도시	1,200	5.77	46.15	55.38	69.23
	기타 지역	1,100	5.29	42.31	50.77	63.46
2019.1.1. ~ 2020.1.31.	전국	1,100	5.29	42.31	50.77	63.46
2016.7.1. ~ 2018.12.31.	말레이반도	1,000	4.81	38.46	46.15	57.69
	Sabah주, Sarawak주, Labuan금융특구	920	4.42	35.38	42.46	53.08

- 일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12개월 / 52주×8시간×6일

- 시간 최저임금= 일 최저임금×주 근무 일수(6일) / 주 근무 시간(48시간)

- 개정된 「최저임금령 2020」 시행에 따른 노동국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조사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음
 - 인적자원부 산하 노동국에서 '19년 실시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조사 결과('19.1~2월, 7,695건) 조사 대상의 98%가 '19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사항

- '16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개정
 - (말레이반도) 1,000링깃, (사바주, 사라왁주, 라부안 금융특구) 920링깃
- '18년 최저임금 인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삭제 등을 위해 2차례 개정
 - (전국) 1,100링깃
- '20년 도시별 생활물가 차이를 반영하여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포함한 56개 도시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기존 대비 9% 인상)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20.2.1. 시행)
 - (56개 도시) 1,200링깃, (기타 지역) 1,100링깃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22.2월 Saravanan 인적자원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을 1,200→1,500링깃으로 인상 예정이라고 언급

□ 관련 홈페이지

- 인적자원부 최저임금제 홈페이지: <http://minimumwages.mohr.gov.my>

(문 의)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노재희 2등서기관

(연락처) +6-012-611-9124, jhno17@mofa.go.kr

* 제출일: '22.3.3.

29. 베트남

국 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Vietnam)	
언 어	베트남어	
면 적	33만 km ²	
인 구	9,600만 명(2019)	
수 도	하노이(Ha Noi)	
주 요 도 시	호찌민, 하이퐁, 다낭, 껀터	
종 교	무교(86.3%), 불교(4.8%), 카톨릭(6.1%) 등	
교 육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중등까지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동(Dong)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406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3,498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2.58% (출처: 베트남 통계청)
	교 역	수출: 3,363억 달러 (출처: 베트남 통계청) 수입: 3,322억 달러
	실 업 률	3.22% (출처: 베트남 통계청)
	물가상승률	1.84% (출처: 베트남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vnm-hanoi.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노동법 제정 이전

- 최저임금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1986년 최초 도입
- 1993년부터는 국내기업에도 최저임금제도 시행
 - 외국인 투자기업과는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

2) 노동법 제정 이후

- 1994년 제정된 「노동법」에 최저임금 관련 근거 조항 마련
- '13년까지 최저임금은 행정기관이 결정
 - 노동보훈사회부가 경제·사회지표, 노사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여 총리실에 제출하면 시행령으로 최종 공포
- '13년 개정 노동법('12.6.18. 공포)에서는 국가임금위원회가 결정
 -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공표
- '19년 개정 노동법('21.1.1. 시행)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 및 조정방식 등 규정

2 관련 법

- 노동법(45/2019/QH14, '19.11.20.)
 - 최저임금의 정의, 결정단위, 조정, 국가임금위원회 등 규정
- 임금에 관한 시행령(121/2018/ND-CP)
 - 국가임금위원회의 기능, 임무, 조직 구조 등 규정
- 국가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총리결정서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맹, 농장, 가구, 개인, 기관·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90/2019/ND-CP)

- '20.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대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규정 ('21년은 동결되어, 시행령 효력 지속)
- 공무원 등의 공공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38/2019/ND-CP)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최저임금 규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연맹, 농장, 가구, 개인, 기관·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활동 중인 기업(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연맹, 농장, 가구, 개인 및 기타 조직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기관·외국인 및 국제조직
 -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적용 제외
 -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 공무원 등의 최저임금은 관련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함
- 특례 대상
 - 수습근로자: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만,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함(노동법 제28조)
 -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소임금 수준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한 7% 높아야 함
 -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
 - 해당 근로자의 최소임금 수준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임금보다 최소한 5% 높아야 함
 - 특별히 과중·유해·위험한 근로환경을 가진 업무 또는 직책의 최소임금 수준은 최소한 7% 높아야 함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임금위원회

- 노동보훈사회부 대표 5인, 베트남노동총연맹 대표 5인, 중앙사용자조직 대표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하며, 3인의 부위원장은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부회장, 베트남협동조합연맹 부의장으로 함
 - 총리는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위원을 임명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5년
- 위원회에는 지역별 최저임금 계획 및 적용지역 구분을 연구·조사하는 기술부서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을 둠
 - 기술부서는 노사정 실무자급 대표 15명, 연구기관·대학 등 10명, 총 25명으로 구성
 - ※ 3~7월 세미나 등을 통해 각 의견 제시 → 기술부서 논의는 합의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안은 노사정 입장에 따라 복수로 제시되기도 함
 - 사무국 기능은 노동보훈사회부의 관련 부서(노사임금국)가 수행

2) 결정방법 및 절차

□ 정부가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 노사가 각각 국가임금위원회에 인상안을 제시
 - 정부대표(노동보훈사회부)는 각 인상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
 - 이를 토대로 수차 회의를 거쳐 결정*된 최종 권고안을 총리실에 제출
 - *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
- 정부 내 논의과정을 거쳐 총리가 시행령으로 최종 공포
 - ※ 통상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정 없이 수용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매년 시행령 개정
 - 다만, '22년은 코로나19 등으로 '21년과 동일하게 '20년 최저임금('19.11월 발표)을 그대로 유지(90/2019/ND-CP)
- 결정시기: 11월경 시행령으로 최종 공포
- 시행시기: 차년도 1.1.

4) 결정기준

-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노동시장 임금수준
 - 생계비
 - 통계청에서 격년으로 조사·발표하는 '주민생활상황통계' 활용
 - 근로자 1인당 부양가족 1인*을 기준으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
 - * 맞벌이 및 자녀 2명인 가정이 일반적이라 근로자 1인당 부양가족 1인으로 산정
 - 식료품 구매비용, 주거비용, 전기·수도세 등 요금, 아이 1명 양육에 드는 비용 등
 - 사회·경제적 상황
 - GDP성장률 및 금년 GDP성장률 예측치,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생산성, 기업 설립 및 파산 수치 등 경제상황 지표 등 사용
 - 기획투자부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제사회상황보고서'를 통해 관련 지표 파악
 - 노동시장 임금수준
 - 매년 노동보훈사회부에서 2,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소득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 지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
 - * 법상 근로시간 상한(주 48시간 이내, 월 최소 4일의 휴일) 범위 내에서 기업 내규, 근로계약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6) 결정과정의 공개

- 국가임금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 확정 시 기자간담회에서 결정과정에 대해 브리핑
- 정부에 최종 권고안 제출 시 회의록 첨부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기본급 외 상여금, 복리후생비(현물, 현금) 등 산입 제외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1) 지역별 구분

- 63개 지역(5개 직할시 및 58개 성)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적용
 - 사업장, 지점이 위치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여러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에 있는 공업단지 등은 가장 높은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2) 업종별 최저임금

- 업종별 최저임금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03년 섬유·봉제 산업에서 결정한 것이 유일
 - ※ 업종별 최저임금은 업종별 노사단체가 교섭을 통해 정하며,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됨 (노동법 제91조 제3항)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노동법(제91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월 최저임금만을 4개 지역별로 결정
 - 최저임금은 시행령 형식으로 매년 발표
 -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대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등 규정*
 -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협동조합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맹, 농장, 가구, 개인, 기관·조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90/2019/ND-CP, 2019.11.15.)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별도의 교육·홍보는 없으나, 국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최종권고안 확정 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결정 과정에 대해 브리핑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 감독국 또는 시·성의 노동보훈사회국의 근로감독관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이 발견되면 벌금 부과, 영업정지,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미지급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 조치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 2,000만~7,500만 동의 벌금*
 - * 1~10명 근로자 대상 위반 시: 2천만~3천만 동, 11~50명 위반 시: 3천만~5천만 동, 51명 이상 위반 시: 5천만~7천5백만 동

2)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 등 개별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은 노사조정관과 인민법원이 가짐 (노동법 제200조)
- 노사조정관은 모든 군·현·성에 속한 시에 두며, 법원에 의한 해결을 구하기에 앞서 노사조정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노사조정관 조정전치주의, 노동법 제201조 제1항)
 - 노사조정관의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노사조정관이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인민법원에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노동법 제201조 제4항)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22년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동결
- 기존 시행령(90/2019/ND-CP, 2019.11.15.)은 부칙에 따라 계속 유효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만 동,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지역	235	270	310	350	375	398	418	442	442	442
2지역	210	240	275	310	332	353	371	392	392	392
3지역	180	210	240	270	290	309	325	343	343	343
4지역	165	190	215	240	258	276	292	307	307	307
평균 인상률	-	-	14.2	12.4	7.3	6.5	5.3	5.5	동결	동결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19.11월 노동법 개정 후 작년('21.1.1.)부터 개정 노동법 시행
- 최저임금 관련 주요 변경사항은 ①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고용률 및 실업률, 노동생산성, 기업들의 지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②국가임금 위원회 내에 전문가를 포함

3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22년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동결
 -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VGCL)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되어야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거절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경제성장률) '21년 GDP 성장률은 2.58%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 5년간 GDP성장률(%): ('17)6.81→('18)7.08→('19)7.02→('20)2.91→('21)2.58
- (교역 현황) 전년 대비 수출은 19% 증가한 3,363억 달러, 수입은 26.5% 증가한 3,322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은 22.6% 증가한 6,685억 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실업률) '22.4월 강력한 방역조치의 여파로 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불완전고용률 모두 악화
 - 노동시장은 '20.4월 첫 봉쇄조치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실정
- (물가상승률) 국제 유가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로 인한 통화량 증가의 영향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4% 증가에 그치며 과도한 물가 상승은 억제된 것으로 평가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노동사회과학원: <http://ilssa.org.vn>
- 기획투자부(MPI): <http://www.mpi.gov.vn>
- 통계청: <http://www.gso.gov.vn>

(문 의) 주베트남대사관 참사관 안동욱

(연락처) (84-4)3831-5111, doahn03@mofa.go.kr

* 제출일: '22. 3. 4.

30. 우즈베키스탄

국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언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면적	44.9만 km ²	
인구	3,527만 명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주요 도시	사마르칸트, 부하라, 페르가나, 히바, 안디잔 등	
종교	이슬람교 88%(수니파 70%), 그리스정교 9%, 기타 3%	
교육	12년(유치원1년, 초등4년, 기본중등5년, 중등2년)	
화폐단위	숨(soum)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678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1,983달러 (출처: 통계위원회)
	GDP성장률	7.4% (출처: IMF)
	교역	수출 166억 달러 수입 254억 달러 (출처: 통계위원회)
	실업률	9.4% (출처: 노동부)
	물가상승률	9.98% (출처: 통계위원회)
대사관 웹사이트	overseas.mofa.go.kr/uz-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1995년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 도입
 - 최저임금제도는 독립(1991.9.1.) 이후인 1992년부터 대통령령(1992.3.26., UP-366)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1995.12.21. 노동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을 법적으로도 보장
 - ※ 독립 전에는 소비에트 노동법에 따른 최저임금(루블화) 적용, 우즈벡 화폐인 솜(soum)화에 따른 최저임금은 1994.8.1.부터 적용
 - 이후 매년 1~2차례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변경 고시
 - 제도 운영과정에서 최저임금이 각종 행정수수료 및 벌금 등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되면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목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함
 - * 노동허가수수료: 최저임금의 10배, 거주등록 위반 시 벌금: 최저임금의 100배 등
- 이에 「2012년 정부예산 및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대통령 결의('11.12.30., PP-1675)를 통해 최저급여액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동 기준은 노동법에도 명문화('12.9.10., ZRU-329)
 - 총최저급여액은 내각이 고시하는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Unified wage rate scale, URS)의 1등급 계수를 최저임금에 곱하여 계산
 - * 정부(공공)부문에서 적용되는 임금요율
- '19.9.1.부터 최저임금과 별도로 기본추산금액(행정수수료·과태료·연금 등의 산출기준액)과 연금산출기준액을 정하도록 제도 개선('19.5.21., 대통령령 UP-5723)
 -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는 하향 조정(2019.9.16., 내각령 No.775), 기본추산금액**과 기본연금산출액 신설
 - * 최저임금 인상: (~'19.8월)223,000솜→('19.9.1.)634,880솜(184.7%↑)
 - ** 기본추산금액 신설('19.9.1.): 223,000솜, 기본연금산출액 신설('19.9.1.): 238,610솜

2 | 관련 법

노동법 제153조, 제155조

- 제153조(임금액의 설정) 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최대액은 제한되지 않는다.
- 제155조(최저임금) 해당기간 동안 근무규칙과 의무를 완수한 근로자에 대한 월 급여는 단일 급여 등급별 계수의 1등급 계수에 따라 법으로 정한 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에는 정상 근로시간 이외 근무한 추가임금, 초과수당,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지역별 임금조정계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령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에 대한 내각령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 수습, 상시·시간근로, 내국인·외국인, 장애인 등 고용 특성과 근로자의 지위에 관계 없이 적용

-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등에도 적용

적용 제외

○ 적용 특례 또는 면제 대상 없음

II |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대통령 및 내각

- 대통령령으로 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 노동법에는 최저임금 결정절차(논의 시작 시기, 심의기간, 시행시기 등)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부처(재무부, 경제부, 노동부, 통계위원회, 조세위원회 등)와 전국노조연합의 의견을 고려하여, 통상 1년에 두 차례 고시하고 있음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정기적인 갱신 시기는 없으며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매년 1~2회)로 갱신

4) 결정기준

- 생계비(Cost of Living) 변화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기준 도출방법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음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 불가)
- 주 6일 근무의 경우 일 7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결정과정의 공개: 미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정상적인 근로시간 이외 근무한 추가임금, 이익금(increments), 초과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인센티브 등
 - 식사, 숙소 등 현물급여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구분 없음)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대통령령으로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대통령령 개정 시 정부 홈페이지, 입법정보 사이트에 게시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조건 준수, 의무보험 가입 등 노동법령 이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노동부 산하 국가노동감독청(State Labour Inspectorate)과 노조에서 담당(노동법 제9조)
 - 또한 검찰총장(General Procurator)과 그 소속 검사들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형벌 규정

- 국가노동감독청 소속 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노동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행정책임법 제49조, 제255조)
- 검찰 조사결과 임금지급 기간 미준수 등이 확인되면 관련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 사법적 권리구제

-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제소할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송비용 전액 부담
-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검찰, 국가노동위원회에 청원도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최근 최저임금 통계

○ '22년 최저임금: 월 822,000숨

- '19.5.21. 기본추산금액 신설로 인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됨(인상률 184.7%)

(단위: 월급, 숨)

적용일자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일자	최저임금	인상률(%)
2021.09.01.	822,000	10.0	2017.01.12.	172,240	15.0
2021.02.01.	747,300	10.0	2016.01.10.	149,775	15.0
2020.02.01.	679,330	7.0	2015.01.09.	130,240	10.0
2019.09.01.	634,880	184.7	2014.12.15.	118,400	10.0
2019.01.08.	223,000	10.0	2014.09.01.	107,635	12.0
2018.01.11.	202,730	10.0	2013.12.15.	96,105	5.0
2018.07.15.	184,300	7.0	2013.08.15.	91,530	15.0

출처: 정부포털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19.5.21. 대통령령(UP-5723)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기본추산금액, 기본연금산출액을 구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 최저임금·기본추산금액·기본연금산출액('19년 개정)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최저임금 (minimum wage)	223,000숨	634,880숨	노사관계 분야에 적용, 공식 급여 금액을 결정
기본추산금액 (basic estimated value)	-	223,000숨 (신설)	행정수수료·과태료 및 관세 부과 기준금액
기본연금산출액 (basic amount of calculating the pension)	-	238,610숨 (신설)	연금 산출 기준금액

○ '19.9.16. 내각령(No.775) 개정을 통해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는 하향 조정

< 단일 급여등급별 계수('19년 개정) >

등급	급여등급별 계수	
	개정 전	개정 후
1등급	2.847	1.000
2등급	2.997	1.053
3등급	3.148	1.106
...
22등급	10.240	3.597

통합임금을 표는 정부부문에서 적용되는 임금요율이며, 일부 업종(보건, 교육 등)의 업종별 임금요율 표는 정부가 승인하여 적용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22.1.12.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은 6.2%로 평가하면서 '22년 5.6%, '23년 5.8%로 전망
- '22.1.28. '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목표를 설정
 - (1인당 GDP) 5년 내 1.6배 증가('21년 1,983달러)
 - (연평균 경제성장률) '26년까지 6.5% 달성
 - (인플레이션율) '23년 5% 이하 달성('21년 9.98%)
 - (재정적자) '23년부터 GDP의 3% 이하 유지
 - 대외채무 450억 달러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정부포털: my.gov.uz
- 입법정보사이트: www.lex.uz
- 통계위원회: www.stat.uz
- 노동부: www.mehnat.uz

(문 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허인수

(연락처) +998-71-252-3151~3(108), isheo20@mofa.go.kr

* 제출일: '22.3.3.

31. 이스라엘

국 명	이스라엘(State of Israel)	
언 어	히브리어, 아랍어	
면 적	2만 km ²	
인 구	943만 명	
수 도	예루살렘(Jerusalem)	
주 요 도 시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	
종 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교 육	3~6세 유치원 및 초중고 12년 의무교육	
화 폐 단 위	NIS(New Israel Shekel)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4,521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1인당 GDP	47,310달러 (출처: 중앙은행)
	GDP성장률	8.1% (출처: 중앙은행)
	교 역	수출 488억 달러 수입 843억 달러 (출처: 중앙은행)
	실 업 률	4.4% (출처: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3.1% (출처: 중앙은행)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isr.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도입배경

- 이민자로 정착한 유대인들이 활발한 노조활동을 전개하면서 1920년 근로자총연맹(Histadrut) 결성

발전과정

- 1980년대까지 근로자총연맹 및 산하 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주도
 - 1983년 근로자총연맹 가입자는 160만 명으로 당시 총인구의 33%, 전체 근로자의 85% 차지
- 1980년대 이후 근로자총연맹의 가입자 감소로 영향력이 약해지고 1987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제 도입
 - '17년 근로자총연맹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당시 총인구의 9%, 전체 근로자의 18% 차지

2 관련 법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

도제법(Apprenticeship Law)

- 특정 전문분야 견습생의 임금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견습생의 임금은 노동부(최근 경제부가 협력)가 결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국가 포함)와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없음

□ 특례 대상

-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 및 장애인 임금은 고용증진을 위해 경제부장관이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 노동사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불 가능
 -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최저임금규정 1987)

	16세 미만	16세 이상 17세 미만	17세 이상 18세 미만
최저임금 대비 지급 비율	70%	75%	83%

- 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규정 2002)

	정상능력 대비 장애인 작업능력 비율					
	19~30%	30~40%	40~50%	50~60%	60~70%	70~80%
최저임금 대비 지급 비율	30%	40%	50%	60%	70%	80%

정신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국가의 출연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최저임금 적용

- 견습생(최저임금규정 1987): 최저임금의 60% 지급
 - ※ 견습생 또는 청소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최저임금의 100%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 제안은 경제부장관, 근로자총연맹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근로자총연맹(Histadrut)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Israel Business Organizations Directorate)의 단체협약을 기초로 의회에서 심의·승인
 - 근로자총연맹은 임명한 55명의 지도위원회가 임금협상단을 구성

2) 결정방법 및 절차

- 최저임금안 제안(통상 6월)→근로자총연맹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 협상→단체협약 체결→의회 심의→정부 이송→장관 고시
 - 최저임금 조정은 최저임금법 개정형식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4월

4) 결정기준

- 생계비, 물가지수, 기타 임금 관련 지표 등을 협상을 통해 결정
 - 생계비
 - 연간 물가상승률이 8% 이상일 때 인상 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04년에 결정
 -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이 8% 미만이어서 기준에 포함된 사례 없음
 - 물가지수통계: 월·분기·년 통계
 - 임금통계: 월·분기·년 통계
 - 노동력통계: 월·분기·년 통계
 - 실업률(고용률): 15~24세, 25~64세

5) 결정단위

- 시급 및 월급 단위(월 182시간 근로 기준)

6) 결정과정의 공개

- 의회 심의는 일반 법안심사과정과 유사하며 근로자총연맹과 이스라엘기업인협회 간 협상 과정은 미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여 또는 종합급여
 - 생활비 보전수당(종합급여 미포함 시)
 - ※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상승 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보전수당
 - 기타 고용의 결과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고정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대근무수당, 1개월 추가수당, 연례수당
 - 고용자가 지불 또는 보전한 고용인의 출장비(숙박비 및 교통비)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지역·업종별 구분 없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노동사회부 장관이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경제산업부의 노동법 집행 관리국(Administration for Enforcement of Labour Laws)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형벌 규정

-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역 1년 미만 또는 22만 NIS 이하 벌금 부과
 - 1인에 대한 위반 1건당 매월 5,000NIS(월급제) 또는 매일 200NIS(월급제가 아닌 경우, 월급제이나 근무일이 12일 미만인 경우) 벌금 부과
 - 최저임금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확정판결을 2회 이상 받은 사용자는 가장 최근의 판결일로부터 1년간 정부기관 입찰에서 배제

2) 사법적 권리구제

- 경제산업부 출장소 구제신청 또는 노동법원 제소
 - 노동법원은 사용자에게 미지불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토록 사용자에게 명령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18.4.1. 결정 최저임금 유지 중

(단위: NIS, %)

연도	일급		시급	월급	인상률
	주5일 근무	주6일 근무			
2018.4.1. ~ 현재	244.62	212	29.12	5,300	-
2017.12.1. ~ 2018.3.31	244.62	212	28.49	5,300	6.0
2017.1.1. ~ 2017.11.30.	230.77	200	26.88	5,000	3.6
2016.4.1. ~ 2016.12.1.	222.70	193	25.94	4,825	3.8
2015.4.1. ~ 2016.3.31.	214.61	186	25.00	4,650	8.1
2012.10.1. ~ 2015.3.31.	198.46	172	23.12	4,300	4.9
2011.7.1. ~ 2012.9.30.	189.23	164	22.04	4,100	5.39
2011.4.1. ~ 2011.6.30.	179.55	155.61	20.92	3,890.25	1.0
2008.7.1. ~ 2011.3.31.	177.70	154.00	20.70	3,850.18	3.77

주5일 근무자는 1일 8.4시간 근무, 주6일 근무자는 1일 7시간 근무(주 42시간, 월 182시간 근로 기준)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21.11월 정부는 '25년까지 최저임금을 6,000NIS까지 인상계획 발표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국민권리 보호 단체: www.kolzchut.org.il
- 경제산업부: www.economy.gov.il
- 국세청: www.tax.co.il
- 통계청: www.cbs.gov.il

(문 의) 주이스라엘대사관 2등서기관 권도연

(연락처) 972-9-959-6815, israel@mofa.go.kr

* 제출일: '22.3.29.

32. 인도네시아

국 명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언 어	인도네시아어	
면 적	191만 km ²	
인 구	2억 7,300만 명	
수 도	자카르타(Jakarta)	
주 요 도 시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등	
종 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가톨릭(3%), 기타(3%)	
교 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초등 6년, 중등 3년)	
화 폐 단 위	루피아(IDR)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조 1,500억 달러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4,350달러 (출처: 통계청)
	GDP성장률	3.69%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2,315.4억 달러 수 입 1,961.9억 달러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6.49%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1.87%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모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한 임금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운영

2) 발전과정

-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상당 기간 형식적으로 운영
- 1989년부터 최저생계비, 노동시장 조건 등과 연동되어 산출되고 지역의 경제적 조건도 고려
- 1999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 장관령'에 따라 인력이주부 장관이 주·시·군 최저임금을 결정
- '03년 신노동법을 제정, 최저임금제도 정비
 - 주·시·군 최저임금결정권이 주지사로 이양
 - ※ 주·시·군 임금위원회가 추천한 최저임금안을 주지사가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지역 정합성 제고
 - 최저임금 지급 유예제도 도입하고 장관령으로 시행규칙 마련
- '15년 기존의 임금 관련 규정을 총망라한 '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정
 - 최저임금 결정공식을 신설하여 각 지방정부가 임의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 마련
- '18년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제정
- '20.11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다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이 통과되며, 최저임금 등 노동법 규정 개정
 - 업종별 최저임금 폐지 등 최저임금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최저임금 적용 유예제도 삭제 등
- '21.2월 최저임금, 임금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금 지급에 관한 정부령' 발표
 - 최저임금 조정 산식, 시·군 최저임금 확정 요건 등 규정

2 | 관련 법

- 노동법(No 13, 2003년)
 - 최저임금 기준, 결정절차 및 결정권자, 최저임금 이하 지급금지 등 규정
- 임금위원회에 관한 대통령 결정(No. 107, 2004년)
 - 중앙 및 각 지방 임금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법(No. 11, 2020년)
 - 기존 노동법(No. 13, 2003년)을 수정하며 최저임금의 기준, 종류, 결정절차 및 결정권자 등 규정
- 임금 지급에 관한 정부령(No. 36, 2021년)
 - 개정된 노동법 시행을 위한 하위 정부령으로 임금위원회의 구성, 적용범위, 최저 임금 조정 산식 등 규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
- 적용 제외
 - 노동법에는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으나 정부령에서 영세기업과 소기업은 자본액, 연매출에 따라 최저임금 규정 미적용 가능(노사 합의 필요)
- 특례제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제도
 - 최저임금 적용이 힘든 기업의 경우 주지사의 결정을 얻어 최저임금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최저임금 유예기간은 최장 12개월이며 유예기간 중에는 전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됨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임금위원회

- 구성: 정부대표, 사용자대표, 노조대표로 구성되며 학계 및 전문가위원은 필요에 따라 임명 (비율은 2:1:1, 위원 총수는 홀수여야 함)

※ 대부분 정부 10명, 노조 5명, 사용자 5명, 대학 및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인니경총이 대표함

- 기능: 국가 임금정책에 대한 자문, 지역 최저임금 결정 기준 제시

□ 지방임금위원회(주 임금위원회, 시·군 임금위원회)

- 구성: 지방정부대표, 노조대표, 사용자대표, 학계 및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비율은 각각 2:1:1이고, 위원 총수는 홀수를 유지)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현실적으로 수시 교체)

- 기능: 지방정부의 장에게 차년도 최저임금액을 제안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정부가 공표하는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임금위원회의 토의 및 인상액 추천을 거쳐 주지사가 결정·고시함

- 최저임금 인상률을 인력이주부 장관이 회람(surat edaran) 형태로 공표

- '15년 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정으로 임금위원회의 추천안보다 공식화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따른 주지사의 결정권이 우선시 됨

□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절차

①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공포

② 주 임금위원회는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우선 결정한 이후 차년도 최저임금액을 의결하여 주지사에게 추천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사정 각 주체가 최저임금안을 추천

• 시·군 최저임금이 더 중요하므로 노사정 대립은 심하지 않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됨

- ③ 주지사는 주 임금위원회가 추천한 최저임금액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주 최저 임금을 결정
 - 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주지사를 구속하지 않으나, 대부분 추천금액대로 결정
- ④ 각 시·군 임금위원회도 위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추천하며 시장·군수는 추천금액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주지사에게 추천
- ⑤ 주지사가 시·군 최저임금 결정

□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절차

- ① 지방임금위원회에서 '중점업종 조사'를 통해 중점업종 결정
- ② 지역별 중점업종 사용자단체(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와 노조의 합의*로 최저 임금안을 결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 중점업종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합의는 지방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법령에 노사합의가 결정 근거로 명시되어 있음
- ③ 시장·군수를 거쳐 주지사가 결정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주 최저임금은 11.21.까지, 시·군 최저임금은 11.30.까지 공표
- 시행시기: 차년도 1.1.

4) 결정기준

- 주 최저임금과 시·군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 1인당 월평균 소비수준, 평균 가구원 수, 가구당 평균 근로자 수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 결정
 - 다만, 현행 주 최저임금 또는 시·군 최저임금이 각각의 상한선보다 높을 경우 현행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확정해야 함
 - 과거에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산한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정하였으나,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중 큰 수치 중 하나를 조정된 현행 최저임금액과 곱한 값을 차년도 인상분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적용한 산출공식에 지역별 적정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 결정

※ '15년 제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에 따라 산출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방임금위원회에서 지역별 적정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을 주지사에게 제안

○ 임금에 관한 정부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출공식

- 차년도 최저임금(UMn)

$$= \text{당해년도 최저임금(UMt)} + \text{UMt} \times \{ \text{당해연도 물가상승률(Inflasi t)}^* + \text{당해년도 국내총생산 증가률(PDBt)}^{**} \}$$

* 당해연도 물가상승률: 전년도 9월~당해 연도 9월까지 물가상승률

**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전년도 3~4분기와 당해 연도 1~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

- '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는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률 8.51%^{*}를 적용했으나, 5개 주는 상회, 5개 주는 하회하는 인상률^{**}을 적용

* '19년 경제성장률 5.12% 및 물가상승률 3.39%의 합.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주지사에게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인상률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운영

** (상회) Gorontalo 16.98%, Maluku 10.35%, Central Kalimantan 9.0% 등

(하회) Special rignon of West Papua 6.82%, DKI Jakarta 8.28% 등

○ 적정생계비 구성항목은 임금에 관한 정부령에 의해 국가임금위원회에서 매5년마다 재심사 후 결정하고 각 지방임금위원회의 조사팀이 직접 조사·산출

- 시장가격조사 항목에는 7개 분야(식음료, 의류, 주택, 교육, 의료, 교통, 여가 및 저축)의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장관령에 의해 '13년 최저임금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

- 적정생계비 조사는 매월 첫째 주에 실시하며, 종교명절 및 라마단(금식월) 등 시장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기를 정해야 하며,

- 응답자는 시장에서 항목별 품목별로 소매상 3명씩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실제 흥정을 통해 구매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임

※ 현장조사 시 어느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조사할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노사정 간 의견차가 있으며 통상 월~목요일 오전 8~10시간대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음

□ 시·군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산식에 따라 확정 가능

- 최근 3년간 시·군 평균 경제성장률이 주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거나

- 최근 3년간 시·군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감한 수치가 (+)이거나 주보다 높은 경우

조정 산식	$UM(t+1) = UM(t) + \{Max(경제성장률(t), 인플레이션(t)) \times \frac{UM(t) \text{ 상한선} - UM(t)}{UM(t) \text{ 상한선} - UM(t) \text{ 하한선}} UM(t)\}$
(상한선)	$UM(t) \text{ 상한선} = \frac{1\text{인당 평균소비액} \times \text{평균 가구원 수}}{\text{가구당 평균 근로자 수}}$
(하한선)	상한선의 50%

- 시·군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동기 대비 최근 3년 평균치의 물가·고용·임금 수준에 따라 조정한 주 최저임금을 차년도 시·군 최저임금으로 확정

결정 산식	$UMK(t+1) = \frac{UMK(f1) + UMK(f2) + UMK(f3)}{3}$
(구매력 평가)	$UMK(f1) = \frac{\text{시/군 PPP}}{\text{주 PPP}} \times UMP(t)$ · PPP(purchasing power parity, rasioparitas daya beli): 구매력 평가지수
(인력 고용)	$UMK(f2) = \frac{1 - \text{시/군 TPT}}{1 - \text{주 TPT}} \times UMP(t)$ · TPT(unemployment rate, tingkat pengangguran terbuka): 실업률
(중위 임금)	$UMK(f3) = \frac{\text{시/군 Median Wage}}{\text{주 Median Wage}} \times UMP(t)$ · Median Wage: 중위임금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회의내용도 비공개가 원칙이며 최저임금 논의 결과만 노동부 장관, 주지사 및 주의회에 보고함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서 사본으로 배포함
 - 최저임금 설정의 기준으로 결정된 적정생계비와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주지사가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 후 외부에 공개함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상여금, 시간외수당, 현물급여 등
 - 비고정 수당
 - 정부령에 기본급과 비고정 수당으로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 만큼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국가최저임금: 구분 없음
 - 주별로 시·군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구분
- 지역별 구분
 - 주 최저임금(UMP), 시·군 최저임금(UMK),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으로 구분
 - 주 최저임금은 시·군 최저임금의 하한 역할(자치시·군이 없는 자카르타는 예외)만 하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군 최저임금
 - 시·군 최저임금 결정 시 주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는 시·군 최저임금이 적용
- 업종별 구분
 - 업종별 최저임금은 주 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중점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 과거 주 업종별 최저임금,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이 있었으나, '20년 유니버스법에 따른 노동법 개정으로 삭제
 - 다만, 정부령을 통해 '20.11.2. 이전에 확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①업종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결정서한이 만료되거나, ②해당 지역 주 또는 시·군 최저임금이 업종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확정될 때까지 유효

- 주지사는 '20.11.2. 이후에 확정된 주 및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을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지토록 경과규정 마련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주지사가 회람 형태로 공표

- 시·군 최저임금은 주지사가 같은 날 하나의 문서로 월 단위 최저임금만 고시(시간당 최저임금액은 표시되지 않음)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홍보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근로감독 기관

- 중앙정부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국이 근로감독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권 행사 가능
 - 주정부의 노동청 및 시·군정부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포함한 근로감독을 시행함
- 지방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은 지방정부 소속이나 중앙정부의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규율을 받음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수시로 방문하여 조사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임금을 줄이거나 삭감할 경우 행정 제재 부과
 - 서면경고, 사업제한*, 생산장비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 사업 중지의 행정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 * 사업제한은 특정기간 동안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제한 또는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장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사업허가 발급 지연
-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있을 경우 노사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 노사분규 해결법(No 2, 2004년)에 의하면 노사분규 발생 시 노사협상을 우선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분쟁해결 신청
 - 노동청에서는 노사에 대해 알선 또는 조정의 방법 중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시도
 - 알선 또는 조정을 통한 노사 합의 시 합의문은 관할 노동법원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짐
 - 알선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중재절차에 회부됨
 - 중재절차는 노동청에 등록된 중재인에 의해 시행되며, 합의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노동법원에 등록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됨

2) 형벌 규정

- 최저임금 지급규정 위반은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징역 1~4년 또는 벌금 1억~4억 루피아 부과
- 주로 근로자나 노조 신고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이때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형사 절차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됨

3)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법원은 일반법원에 속한 특별법원으로 해고, 권리 및 이권 분쟁, 단일회사 내 노조 간 다툼사건을 관할하며,
 - 민사소송절차를 따르고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특별판사와 일반판사로 구성되며 2심은 대법원임
 - ※ 노동법 위반 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 관할임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지역별로 최저임금 설정(18곳 중 11개 지역에서 인상)

○ (지역별 인상률) 1% 이하 6곳, 1%대 3곳, 3%대 1곳, 5%대 1곳, 동결 7곳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월급, 루피아, %)

주 또는 시-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카르타수도특별주	3,100,000	3,355,750 (8.25)	3,648,035 (8.71)	3,940,973 (8.03)	4,267,349 (8.28)	4,416,186 (3.48)	4,641,854 (5.1)
서부자바주 반둥군 (Kab. Bandung)	2,275,715	2,463,461 (8.25)	2,678,029 (8.71)	2,893,075 (8.03)	3,139,275 (8.51)	3,241,930 (3.27)	3,241,930 (0.0)
서부자바주 반둥시 (Kota Bandung)	2,626,940	2,843,662 (8.25)	3,091,346 (8.71)	3,339,581 (8.03)	3,623,779 (8.51)	3,742,276 (3.27)	3,774,861 (0.87)
서부자바주 벵카시시 (Kota Bekasi)	3,327,160	3,601,650 (8.25)	3,915,354 (8.71)	4,229,757 (8.03)	4,589,709 (8.51)	4,782,936 (4.21)	4,816,921 (0.71)
서부자바주 벵카시군 (Kab. Bekasi)	3,261,375	3,530,438 (8.25)	3,837,940 (8.71)	4,146,126 (8.03)	4,498,962 (8.51)	4,791,844 (6.50)	4,791,844 (0.0)
서부자바주 보고르시 (Kota Bogor)	3,022,765	3,272,143 (8.25)	3,557,147 (8.71)	3,842,786 (8.03)	4,169,807 (8.51)	4,169,807 (0.0)	4,330,250 (3.84)
서부자바주 보고르군 (Kab. Bogor)	2,960,325	3,204,551 (8.25)	3,483,667 (8.71)	3,763,406 (8.03)	4,083,670 (8.51)	4,217,206 (3.27)	4,217,206 (0.0)
서부자바주 까라완군 (Kab. Karawang)	3,330,505	3,605,272 (8.25)	3,919,291 (8.71)	4,234,010 (8.03)	4,594,325 (8.51)	4,798,312 (4.43)	4,798,312 (0.0)
서부자바주 수카부미시 (Kota Sukabumi)	1,834,175	1,985,494 (8.25)	2,158,431 (8.71)	2,331,753 (8.03)	2,530,183 (8.51)	2,530,183 (0.0)	2,562,434 (1.27)
서부자바주 수카부미군 (Kab. Sukabumi)	2,195,435	2,376,558 (8.25)	2,583,557 (8.71)	2,791,016 (8.03)	3,028,532 (8.51)	3,125,445 (3.19)	3,125,445 (0.0)
서부자바주 수방군 (Kab. Subang)	2,149,720	2,327,072 (8.25)	2,529,760 (8.71)	2,732,900 (8.03)	2,965,468 (8.51)	3,064,218 (3.32)	3,064,218 (0.0)
반튼주 땅그랑시 (Kota Tangerang)	3,043,950	3,295,075 (8.25)	3,582,077 (8.71)	3,869,717 (8.03)	4,199,029 (8.51)	4,262,015 (1.50)	4,285,799 (0.56)
반튼주 땅그랑군 (Kab. Tangerang)	3,021,650	3,270,936 (8.25)	3,555,835 (8.71)	3,841,368 (8.03)	4,168,268 (8.51)	4,230,793 (1.50)	4,230,793 (0.0)
반튼주 질레곤시 (Kota Cilegon)	3,078,057	3,331,997 (8.25)	3,622,215 (8.71)	3,913,078 (8.03)	4,246,081 (8.51)	4,309,773 (1.50)	4,340,254 (0.70)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시 (Kota Surabaya)	3,045,000	3,296,212 (8.25)	3,583,313 (8.71)	3,871,053 (8.03)	4,200,479 (8.51)	4,300,479 (2.38)	4,375,479 (1.74)
중부자바주 스마랑시 (Kota Semarang)	1,909,000	2,125,000 (11.3)	2,310,087 (8.71)	2,498,588 (8.15)	2,715,000 (8.66)	2,810,025 (3.50)	2,835,021 (0.88)
중부자바주 살라티가시 (Kota Salatiga)	1,450,953	1,596,000 (9.99)	1,735,930 (8.76)	1,875,325 (8.03)	2,034,915 (8.51)	2,101,457 (3.27)	2,128,523 (1.28)
중부자바주 즈빠라군 (Kab. Jepara)	1,350,000	1,600,000 (18.5)	1,739,360 (8.71)	1,879,031 (8.03)	2,040,000 (8.56)	2,107,000 (3.28)	2,108,403 (0.06)

출처: 해당 지역 최저임금 결정 회람 참조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령 개정사항
 - '20.10월 노동법(2003년 13호) 일부 개정
 - '21.2월 임금 지급에 관한 정부령(2021년 36호) 제정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개정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 조정산식은 예전에 비해 낮은 인상률이 나와서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폐지 등을 주장
 - 자카르타수도특별주 주지사는 '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0.83%(4,453,953루피아)으로 발표했으나 얼마 후 인상률을 5.1%(4,641,854루피아)로 수정 발표
 - 주지사는 '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3%임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 국면에서 산식에 따른 인상률 0.83%는 공정함을 훼손하기에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
 - 노동부는 추가 인상에 유감을 표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라 설명
 - ※ 서면경고로 행정 제재를 받으며 2회 연속 시 3개월 직무 정지,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영구 제명
- 관련 홈페이지
 - 노동부 <http://kemnaker.go.id>
 - 노동부 법령 <http://jdih.kemnaker.go.id>

(문 의)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고용노동관
(연락처) +62-21-2967-2555, junhlee19@mofa.go.kr

* 제출일: '22.3.4.

33. 일본

국 명	일본(Japan)	
언 어	일본어	
면 적	38만 km ²	
인 구	1억 2,534만 명	
수 도	도쿄(Tokyo)	
주 요 도 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종 교	신도, 불교, 기독교	
교 육	의무교육 9년(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화 폐 단 위	엔(Yen)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5조 7,450억 달러
	1인당 GDP	40,048달러(2020)
	GDP성장률	1.7%(실질)
	교 역	수출 83조 931억 엔 수입 84조 5,652억 엔
	실 업 률	2.8%
	물가상승률	-0.2%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47년 노동기준법에서는 행정관청이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 및 의견에 근거하여 일정사업 혹은 직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1956년 시즈오카현 노동국장은 각 업계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장려(이후 통조림업계가 최저임금 결정)
 - 1959년 동 사례의 성공에 따라 업계 간 규율에 근거한 최저임금법 제정

2) 발전과정

□ 1959년 최저임금법 제정 및 시행

- 최저임금은 ‘업자 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 ‘업자 간 협정에 따른 지역별 최저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
 - *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간 협정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결정, 노동대신이나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기준국장은 해당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 심의회 의견에 기초하여 개정 권고
- 지역별 최저임금제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격차가 커짐에 따라, 1963.10월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제시함
 - 업종 두 가지(A, B), 지역 세 가지(갑, 을, 병)로 분류
- 1968.6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업자 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폐지
 -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유지
- 1976년 전국 47개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1977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최저임금의 전국적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도도부현을 임금 실세와 생계비 격차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개정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발표, 1978년부터 실시
- 1989년 ‘新산업별최저임금’ 시행
 - 종래 산업별 최저임금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소분류 및 세분류 단위로 결정

- '07.12월 법체계를 정비하여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의무화
 -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활보호에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폐지

2 | 관련 법

- 최저임금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지역별 최저임금) 각 도도부현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그 사용자
 -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처 해당 지역별 또는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적용
 - (특정 최저임금) 특정 산업의 정규직 근로자 및 그 사용자
- 적용 제외
 - 1인 사용자(자영업자), 동거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무소에 고용되는 자 및 가사사용인
-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
 -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아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비율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하여 현저히 노동능력이 낮은 자
 - 시용(試用) 기간 중에 있는 자
 - ※ 시용 기간이란 사용자가 고용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으로 근로자를 수습사원 또는 견습사원 등으로 칭함
 - 직업훈련을 받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 가볍고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자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지방최저임금심의회

○ 구성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노사공익위원 각 6명, 총 18명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노사공익위원 각 5명, 총 15명(단, 도쿄·오사카는 각 6명, 총 18명)

○ 임면권자 및 절차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후생노동대신,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도도부현 노동국장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관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중에서 임명

○ 임기: 2년,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

○ 회의개최 및 결정방식

- 위원 2/3 이상 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3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 개최 및 의결 불가

-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2) 결정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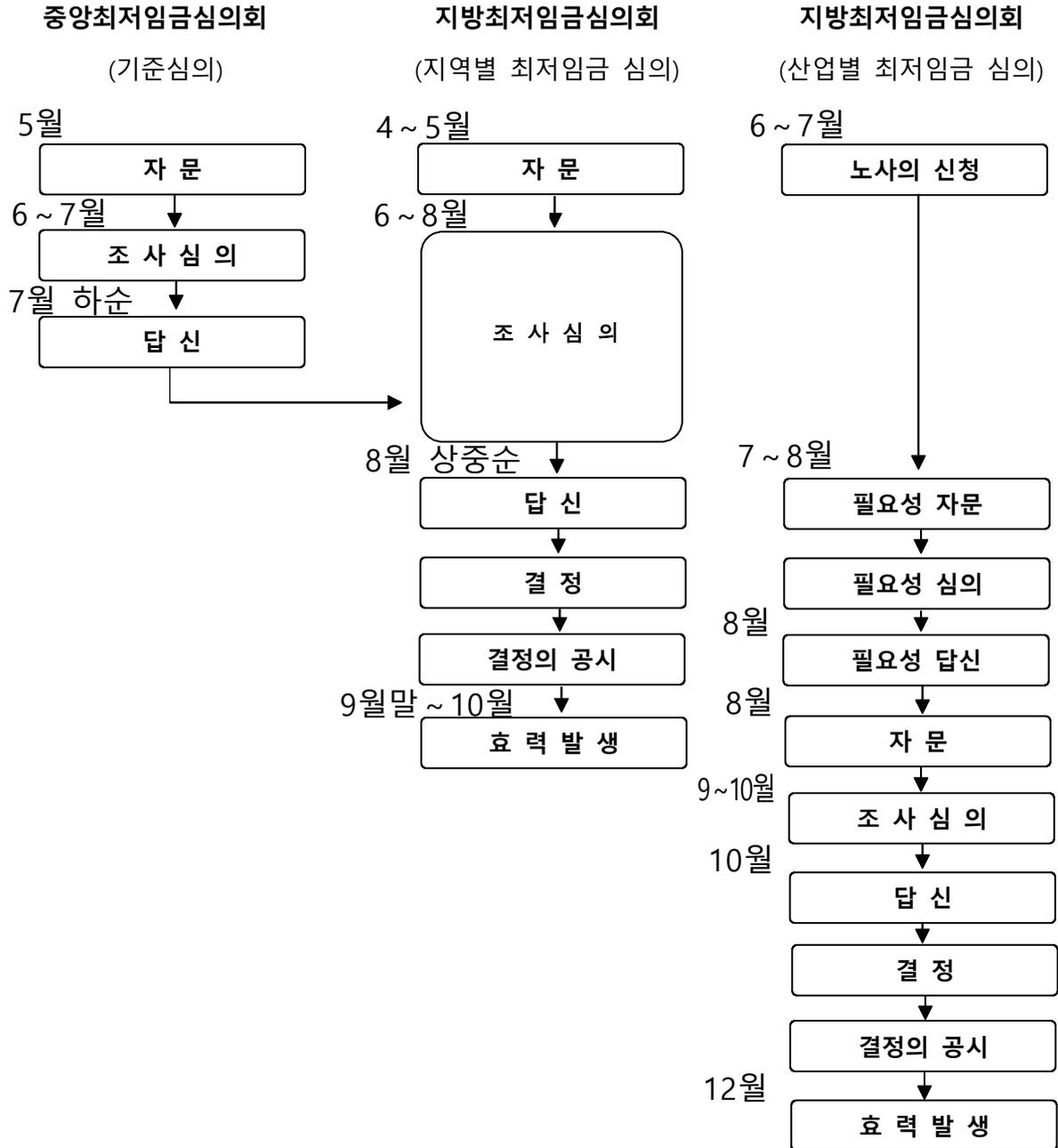
□ 지역별 최저임금

○ 후생노동 대신이 매년 5월경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부회가 '조사심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매년 7월경 제시

- 대개 47개 도도부현을 네 가지 등급(A, B, C, D)으로 나누어 제시하나, '09년에는 등급별 목표치를 제시하는 대신 생활보호 수준과 괴리가 컸던 지역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

- 중앙최저임금심의회로부터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에 대한 '답신'을 받은 후생노동 대신은 이를 공시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개정 기준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동 의견을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기준으로 공표
-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법률에 따라 전문부회를 설치하여 조사·심의를 진행
- 전문부회에서 지역의 임금실태조사, 생활보호에 관한 시책조사, 참고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최저임금액 심의
 - 합의(전원일치)나 의결*(採決)을 통해 확정, 심의 결과를 본 심의회에 보고
 - * 의결(採決, 裁決)이란 의장이 의안의 채택 가부를 물어 결정함을 뜻함
- 본 심의회는 전문부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차 의논 및 의결, 심의결과인 '답신'을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송부
- 이를 기초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역별 최저임금액 결정
 - 일반적으로 9월경 결정되고, 한 달 후(10월 중순경)부터 효력 발생
-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산업별 최저임금의 개정에 대한 요청을 해당 노사로부터 받으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 전문부회 설치
 -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산업 관련자가 위원으로 참여
 - 산업별 전문부회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의 노동국장에게 '답신' 송부
 -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공시
 -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최저임금액을 상회해야 함(최저임금법 제16조)

< 최저임금 결정의 흐름 >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갱신주기: 1년

-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
 - 특정(산업별) 최저임금은 변동사항 있을 경우 수시로 갱신

4)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통상 사업별 임금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 결정
 - 거시경제지표: GDP(국민경제계산), 실업률(노동력조사), 유효구인배율(직업안정업무통계), 소비자물가지수 등
 - 임금지표: 현금급여 총액, 파트타임 시급(이상 매월 근로통계조사), 임금교섭(春投) 결과(민간주요기업 춘계 임금인상집계 등)
 - 생활보호지표: 최저임금 실수령액(세후) 대비 청년단신세대 급부액
 - ※ 12~19세 단신세대 생활부조[扶助]기준금액의 지역별 인구 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치를 합산하여 산출
 - ※ 관련법 제9조 제3항에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보호에 관한 시책과의 정합성을 배려하도록 한다'고 규정
 - 최저임금 적용실태: 영향률, 미만율 등
 -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며, 각 도도부현에서 조사 후 후생노동성에서 집계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 '07년 법령 개정을 통해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정해져 있던 최저임금액 표시 단위를 시급으로 통일

6) 결정과정의 공개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중앙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및 각 도도부현 노동국 소관 하에 회의 일시 및 요령을 공개하고 외부방청(인원 수 제한)을 허용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중앙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록 및 자료 등을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매월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
 - 정기급여 중 '소정 급여'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사 및 그 외 현물급여'
 - '식사 및 그 외의 현물급여'는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실제 비용을 넘지 않게 평가하여 산입하고, 입주근로자의 경우 식사 외 입주생활에 수반되는 이익* 등은 미산입
 - * 식사를 제공 받는 것 외에 주택임대료, 광열비, 생활용품 등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나, 식사 이외의 이익은 임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 노동협약 또는 노사공제협정으로 현물급여 등의 평가액을 정하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되, 금액이 부적당한 때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평가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임시로 지불되는 임금(결혼수당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불되는 임금(상여 등)
 - 소정의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잔업수당 등)
 - 소정의 노동일 이외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중 통상 노동시간의 임금 계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심야수당 등)
 - 해당 최저임금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을 것으로 정한 임금(현행 규정에서는 정·개근 수당, 통근수당(교통비) 및 가족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지역내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구분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높은 쪽의 최저임금 적용
- 지역별 최저임금: 산업이나 직종과 관계없이 도도부현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해 적용되며, 47개 도도부현별로 책정

-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특정 산업 또는 직업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노사 측의 신청 시 최저임금심의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책정

구분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역할/기능	- 모든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을 보장	- 기업 임금수준 설정 시 노사 간의 협의 체제를 보완
적용대상	- 산업 또는 직업 불문 모든 근로자 - 도도부현 별로 적용	- 산업 또는 직업별로 적용* * 일본표준산업 분류의 小 / 細 분류별 - 해당 산업의 특유 /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결정방식	- 행정기관 결정 후 기업에 의무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결정 필수)	- 노사 측의 신청 절차를 거쳐 신설·개정·폐지 - 신설·개정·폐지는 노사 측이 발의
효력	- 형사효력: 50만 엔 이하 벌금 노동기준법 제24조 위반 시, 법조 경합(法條競合) - 민사효력: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규정한 노동계약 무효화	- 형사효력: 최저임금법 상에서의 형사 효력은 없음, 노동기준법 제24조 임금 전액지불 위반의 벌칙(노동기준법 제120조, 30만 엔 이하 벌금) 적용 - 민사효력: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규정한 노동계약 무효화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보도기관 및 시정촌 홍보지, 각종 단체 기관지 등을 통해 홍보
 -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홍보 홈페이지(<https://pc.saiteichingin.info>) 별도 존재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및 효력발생 연월일을 작업장 内 게시판 등을 통해 주지할 것을 의무화(최저임금법 제8조)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최저임금 중점감독'

- 매년 10월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발효 후, 차년 1~3월 중점감독을 통해 준수 여부 조사
- 각 도도부현 노동국 산하 노동기준감독서의 노동기준감독관 소관
- 감독 대상 사업장은 각 노동기준감독서에서 ①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②과거 위반율이 높은 업종, ③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정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노동기준감독관은 감독 조사 후 위반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 등에 대해 '문서 지도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 서류 송치 조치

- 최저임금 위반 상황(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자 수 및 비중, 계약형태, 성비, 위반이 있었던 주요 업종 및 건수 등) 및 향후 대응 방침 등을 포함한 감독지도 결과를 공표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사법적 권리구제

○ 형사효력

- (지역별 최저임금) 위반 시 50만 엔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40조)

※ 노동기준법 제24조 위반 시, 법조경합(法條競合)

※ 법조경합이란 한 가지 또는 다수의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한 가지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뜻함

- (특정 최저임금) 위반 시 30만 엔 이하 벌금(노동기준법 제24조)

○ 민사효력(지역별 및 특정 최저임금 모두 적용)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규정한 노동계약 무효화

○ 위반 시 구제 절차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방노동기준감독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1/2022년 최저임금

-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1.10월~'22.9월 최저임금 시급을 930엔으로 전국 일률 권고('19년 대비 28엔 인상)
 - ※ 기존에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4개(A, B, C, D)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권고하였으나,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률 인상 단행
 - '21.10월 지역별 최저임금은 최저 820엔(D.고치현·오키나와현)~최고 1,041엔(A.도쿄도)

< 2016~2021년 등급별·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액 >

등급	지역(도도부현)	'17년	'18년	'19년	'21년
A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26엔	27엔	28엔	28엔
B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도야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시가현, 교토부, 효고현, 히로시마현	25엔	26엔	27엔	28엔
C	홋카이도현, 미야기현, 군마현, 니가타현, 이시가와현, 후쿠이현, 기후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오카야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후쿠오카현	24엔	25엔	26엔	28엔
D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에히메현, 고치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오키나와현	22엔	23엔	26엔	28엔

출처: 후생노동성

'20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최저임금 기준이 시급으로 통일된 '02년 이후 5번째)

□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엔)

적용시기	최저임금 (시급, 전국 가중 평균액)	인상률(%)
2021.10월 ~ 2022.9월	930	3.10
2020.10월 ~ 2021.9월	902	-
2019.10월 ~ 2020.9월	901	3.09
2018.10월 ~ 2019.9월	874	3.07
2017.10월 ~ 2018.9월	848	3.04
2016.10월 ~ 2017.9월	823	3.13
2015.10월 ~ 2016.9월	798	2.31
2014.10월 ~ 2015.9월	780	2.09
2013.10월 ~ 2014.9월	764	2.00
2012.10월 ~ 2013.9월	749	1.63

출처: 후생노동성

'20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인상액 결정)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21년 최저임금 결정 동향

-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1년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을 28엔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02년 이후 최대 상승
 - 전국 가중 최저임금 평균이 상승(920→930엔, 3.10% ↑)
 - 정부는 사측의 부담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업무개선 조성금 제도를 확충할 예정

- (주요 쟁점) 사측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노측의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한 임금인상 주장이 대립
 - 소위원회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전원 동의로 채택됨이 관례이나, 이번에는 양측 의견 불일치가 지속되어 이례적으로 사측 위원(총 3명) 중 2명이 반대, 1명이 결석한 채로 채택
 - (사측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휴업요청 등으로 경제활동이 억제된 상황에서 업황 회복은 요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도산·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
 - 코로나19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숙박업·요식업, 교통업·운수업 등 일부 업종 및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 여력을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보다 사업의 존속과 고용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
 - (노측 주장) 전 세계 및 일본의 경기회복세,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 수준,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긴급소액대출금액이 리먼 쇼크의 50배에 달하며, 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언급
 -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의 확충, 지역 간 최저임금격차 문제의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
 - (공익위원 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20년과 심의전제가 상이하며, 최저임금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 등을 이유로 전국 일률 28엔 인상 제시
 - 또한, 산업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이 관찰되고 있으며, 3%의 인상률은 고용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
 - (정부 방침)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달성한다는 성장 전략으로 최저임금의 3% 인상('16년), 전국평균 1,000엔 조기 달성('19년)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 추진해 왔으며, 노사측도 이러한 방침을 따르며 매년 3%의 인상이 계속된 것이 최근 수년간의 흐름
 - 스가 당시 총리의 임금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 '20년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 미제시로 최저 임금 인상액이 1엔(인상률 0.1%)에 그친 점, 중의원 선거를 의식해 서민의 생활보호를 강조하고자 한 점 등이 전국 일률 28엔 인상 결정에 영향

□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 미만율

- '16년 최저임금 미만율(2.7%)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종전 수준으로 점차 돌아가는 중

○ 영향률

- '07~'19년(2.2%→16.3%)까지 상승하였으나, '20년 최저임금액 인상률 영향 등으로 4.7%를 기록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만율(%)	1.6	1.5	1.4	1.2	1.1	1.2	1.6	1.6	1.7
영향률(%)	1.6	1.5	1.6	1.5	2.2	2.7	2.7	4.1	3.4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만율(%)	2.1	1.9	2.0	1.9	2.7	1.7	1.9	1.6	2.0
영향률(%)	4.9	7.4	7.3	9.0	11.0	11.8	13.8	16.3	4.7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문 의)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김보람

(연락처) 81-3-3452-7611, borkim09@mofa.go.kr

* 제출일: '22.3.9.

34. 중국

국 명	중국(China)	
언 어	중국어	
면 적	9.6억 km ² (2019)	
인 구	14.5억 명	
수 도	베이징(Beijing)	
주 요 도 시	상해, 심천, 광저우, 천진, 남경 등	
종 교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교 육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화 폐 단 위	위안(CNY)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4조 7,227억 달러(2020) (출처: The World Bank)
	1인당 GDP	10,500달러(2020) (출처: The World Bank)
	GDP성장률	8.1% (출처: 국가통계국)
	교 역	수출 3.36조 달러 (출처: 중국 국세청) 수입 2.69조 달러
	실 업 률	5.1% (출처: 국가통계국)
	물가상승률	0.9% (출처: 국가통계국)
대사관 웹사이트	www.overseas.mofa.go.kr/cn-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78년 개혁개방에 따른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민영기업 대폭 증가 등으로 소득 양극화와 저임금근로자 및 빈곤 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정부는 저임금에 따른 빈곤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2) 발전과정

□ 논의 단계

- 최저임금 도입 논의는 공산당 발전과 함께 시작
 - 공산당은 1922년 노동법안대강(勞動法案大綱)을 마련할 당시 최저임금법의 제정 필요성 논의, 1949년 정협* 공동강령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이 포함
 - * 정협은 양회(인민대표자회의와 정협) 중 하나로 공산당 원로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협의체
-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 임금분배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시작
 - 1956년 중앙정부가 임금을 결정하는 등급임금제 실시 → 1978년 개혁개방에 따라 기업의 임금분배 자주권이 확대되는 등 등급임금제 폐지
- 198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는 등 최저임금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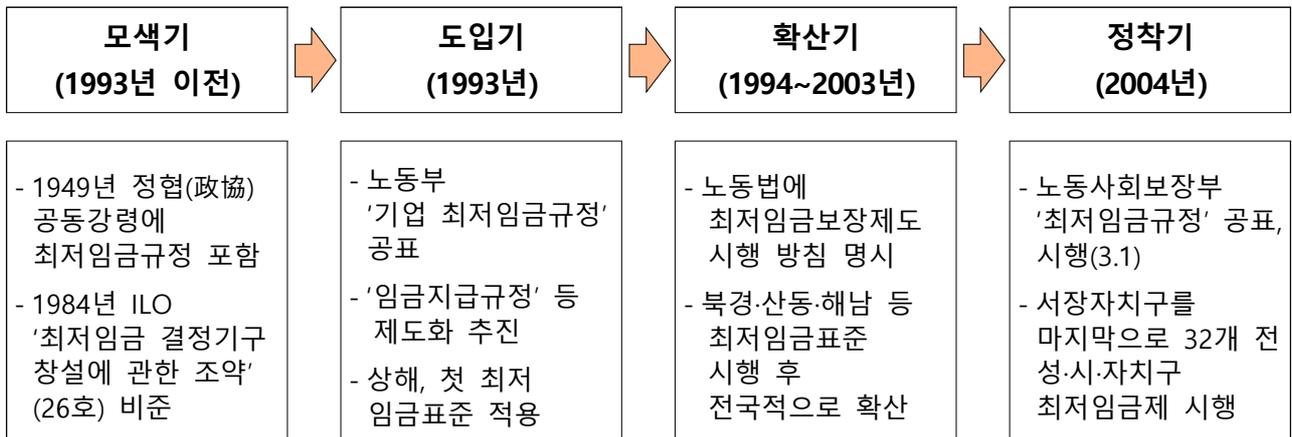
□ 도입 및 발전 단계

- 1993년 「기업최저임금규정」과 「임금지급규정」 등을 제정, 상하이에서 중국 최초로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당시 210위안)
 -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8조에 최저임금보장 근거 규정을 마련
 - ※ 북경시(당시 210위안), 산둥성(170위안), 해남성(280~180위안) 등이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
- '04.3월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최저임금규정」을 시행
 - ※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보완, 최저임금 조정주기 등을 명시

- '04.11월까지 32개 전 성·시·자치구로 확대되면서, 전국적 시행

※ 중국의 지방조직 체계는 크게 성·직할시·자치구 - 현·향 - 진으로 구성되며, 통상 32개 성·시는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를 의미함

중국 최저임금제도 경과



2 관련 법

○ 「중국 노동법(주석령, 1994.7.5.)」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

- 하위 규정(부문 규정)으로 「최저임금규정(노동사회보장령, '04.3.1.)」에 최저임금 결정 방법 및 기준 등 규정

제48조(최저임금보장) 국가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정하며, 국무원에 등록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제49조(최저임금기준의 참고사항) 최저임금기준을 정하고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①근로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계비, ②사회평균임금수준, ③노동생산성, ④취업상황, ⑤지역 간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 「최저임금규정」(노동사회보장부령 제21호, '04.1.20. 공포)

- 성·시별 「최저임금기준」은 최저임금규정 제7조에 따라 각 성·시별 제정, 운영 가능

○ 「노동계약법」(주석령 제73호, '12.12.28. 개정)

- 비전일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

· 비전일제(시급 보수계산을 위주로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매일 4시간, 매주 누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형식)는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노동계약법 제3절)

- ① 사회보험 가입 의무 없음
- ② 서면계약 작성 의무 없음
(전일제는 고용일부터 1월 이내에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 지급 등 불이익 부과)
- ③ 당사자는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노동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경제보상금(근속기간 1년당 1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음
- ④ 2명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계약 체결 가능
(후에 체결된 노동계약이 선행 체결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⑤ 시용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 ⑥ 임금지불 주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노동보장감찰조례(국무원령 제423호, '04.10.26. 공포)

○ 「임금총액구성규정」(노동부발령 제489호, 1994.12.6. 공포)

제3장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제11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무원이 발표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발명상여금, 자연과학상여금, 과학기술진보상여금과 합리적인 건의 및 기술개선에 대한 상여금 및 운동선수, 코치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2. 노동보험과 근로자의 복지 관련 비용
* 최저임금규정에서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과거 기업최저임금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근로자보험”이 제외되고,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등”으로 수정
3. 이직휴양, 정년퇴직, 퇴직인원의 대우에 관한 각종 지출
4. 노동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출
5. 원고료, 강의료 및 기타 전문작업보수
6. 출장 식사보조금, 직업전근로로 인한 여비와 정착비
7. 자기공구, 가축을 가지고 기업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공구, 가축 등의 보상비용
8. 임대차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임차자 위험성의 보상 수입
9. 당해 기업 주식과 채권을 매입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식(배당금 포함)과 이자
10. 근로계약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시 기업이 지급한 의료보조금, 생활 보조금 등
11. 임시근로자 고용으로 임금 외에 노동력 제공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비
12. 가정부에게 지급한 비용과 주문 가공방법에 의하여 청부 단위에 지급하는 하청 비용
13. 노동에 참가한 재학생에게 지급한 보조금
14. 가족계획에 따른 외동자녀 보조금

< 중국의 법체계 >

법체계	내용
헌법	전국인민대표회의 제정
법률	전국인민대표회의 또는 전문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정(통상 주석령)
행정법규	국무원(총리실)에서 제정 (보통 국무원령으로 발표)
부문 규정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예: 최저임금규정 노동사회보장부령 제21호)
지방성 법규	지방 인민대표회의 또는 해당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지방정부 규정	지방정부 또는 그 관할 부서에서 제정
주해	시행령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최저임금규정 제2조)

- 기업, 민간비영리기관, 자영업자,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시용기간, 숙련기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노동법 주해 제57조)

적용 제외

- 「최저임금규정」에는 적용 제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노동법 주해」(1995, 노동부발령 309호)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농촌근로자, 현역군인, 가정정보 등을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진기업 종사자 및 농민공은 최저임금 적용
 - ※ 향진기업은 향·진(농촌지역) 소속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 경영·생산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 ※ 농민공(Migrant worker)은 농촌에 호적을 둔 자로서 비농업에 종사하거나 도시지역에 취업된 근로자를 의미

특례 대상

-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한 병가기간 내의 근로자
 - 지역별 최저임금의 80%를 하회할 수 없음(노동법 주해 제59조)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이하 성·시)가 결정하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제도는 미운영

2) 결정방법 및 절차

결정방법

- 지방정부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검토를 거쳐 공포

결정절차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지방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은 공회·기업가협회와 함께 연구하여 지역 최저임금 초안을 마련 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중앙정부)에 제출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초안 접수 후 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의견을 청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초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수정의견이 없는 경우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검토를 거친 최저임금표준을 각급 인민정부에 보고
- 인민정부의 비준허가를 거친 후 공포
 - 비준 허가 후 7일 내 지역공보와 1종 이상의 지역신문에 발표
- 노동행정기관은 발표 후 10일 이내에 결정된 최저임금 표준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제출

3) 갱신주기 및 결정·시행시기

갱신주기: 3년

- 「최저임금규정」 제11조는 최소 2년 내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6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조정주기를 3년으로 변경
 - 실제 최저임금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필요시 갱신

결정·시행시기: 별도 규정 없음

4) 결정기준

- 월 최저임금 표준(기준)은 각 지역별 취업자와 그 부양인의 평균생활비용, 도시주민의 소비가격지수,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비용 및 주택공적금, 근로자 평균소득,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및 조정요소를 기초로 산정
 - 중국은 '11년부터 5대 보험(양로·의료·실업·생육·공상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고, 추가로 주택공적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5개 보험, 1개 공적금)
-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기준)은 공표된 월 최저임금 표준에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본양료 보험료와 기본의료 보험료를 고려하고, 취업안정성과 근로조건, 근로강도와 복지 등에 있어서 비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취업자의 차이를 적당히 고려

□ 심의 참고자료(결정기준의 도출방법)

- 산정공식은 $M(\text{최저임금표준}) = f(C, S, A, U, E, a)$
 - C: 도시지역 1인당 생활비용
 - S: 근로자 개입납부의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 A: 근로자 평균임금
 - U: 실업률
 - E: 경제발전수준
 - a: 조정요소

※ 최저임금표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비 중 법: 도시주민 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1인당 수입이 가장 낮은 가구 일정비율을 빈곤 가구로 정하고, 빈곤가구의 1인당 생활비용 지출수준을 계산하여 취업자 1명의 부양계수를 곱한 뒤, 조정수치를 더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 엔겔계수법: 국가 영양학회 제공 연도 표준음식 기준 및 표준음식물 섭취량에 따라 표준 식료품의 시장가격을 구한 뒤, 최저 식료품비 지출기준을 산출하여 엔겔계수를 나누어 얻은 최저생활비용 표준수치에 취업자 1명에 해당하는 부양계수를 곱하고 조정수치를 더하여 최저임금으로 결정

【산정 예시】 최저임금규정 최저임금표준 계산방법(2004년 기준)

(예시) 특정 지역 최저수입세대원의 매달 1인당 생활비용 지출이 210위안, 취업자 1명에 해당하는 부양계수가 1.87, 최저 식료품비용이 127위안, 영겔계수는 0.604, 평균임금이 900위안일 경우:

① 비중법으로 이 지역 최저임금표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표준 = 210위안×1.87+a=393위안+a(元)

② 영겔계수법으로 지역 최저임금표준을 계산하면,
 최저임금표준 = 127위안÷0.604×1.87+a=393위안+a(元)

- 위 ①과 ②에서 조정계수(a)는
 각 지역에서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실업·의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을 고려한 수치
-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표준은 월 평균임금의 40~60%로서 상기 지역 사례 지역의 경우 월 최저임금표준은 360~540위안
-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월 최저임금표준÷20.92÷8)×(1+부동계수)]
- 이 중 부동계수는 취업안정성, 근로조건, 노동강도와 복지 등에 있어서의 비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감안한 수치

- 월 최저임금 기준을 산출한 후,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근로자 월 평균임금, 사회구제금 및 실업보험금 기준, 취업상황, 경제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정을 통해 산출

5) 결정단위

- 월급(174시간 기준*) 및 시급 단위

* 중국 법정임금 계산 기준: 월 임금계산일은 21.75일, 일 노동시간은 8시간

6) 결정과정의 공개

-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 등 규정은 없음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약정한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

- 유급휴가, 가족친지방문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기간 및 법정 근로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정상노동시간으로 간주
- (상여금) 장려금, 절약상여금, 노동경시대회 상여금, 기관·공공기관의 장려임금, 기타 상여금, 완료된 작업에 대해 작업량 단가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등의 상여금
- (각종 수당) 근로자의 노동을 보상하는 수당, 보건성수당, 기술성수당, 연공성 수당 및 기타 수당 및 물가보조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임금규정」 제12조에 따른 아래의 임금
 -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근로)
 - 중근(2교대 근무), 야근, 고온, 저온, 갭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 작업 환경 및 조건에서의 근무수당
 - 국가법률, 법규, 정책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 * 근로자보험(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 「임금총액 구성규정」 제11조에 따른 임금
 - (복지비용) 복지비용으로 제공되는 숙소 등에 대한 현물 및 현금
 - (인센티브) 발명상여금, 기술개발상여금, 운동선수나 코치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출장 식사보조금, 여비, 정착비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 노동법 제38조는 주 1회 이상 휴식일을 보장토록 하고 있을 뿐 유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무급주휴* 부여)
 - * 월 최저임금 계산 시에도 주휴를 제외한 174시간으로 근로시간 산정

3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구분
 - 국가 최저임금은 없고, 지방정부(성·자치구·직할시)별 최저임금제도 구분
 - 32개 성·시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결정
 - 대부분의 성·시는 관할 구역 내 경제·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4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
 - ※ 지역별 최저임금이 2개(충청), 3개(흑룡강성 등 15개 지역), 4개(하북성 등 10개 지역)

- 주로 대도시 지역(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칭하이, 티벳)은 관할 구역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을 발표
- 지역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성·시는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완화하거나 통합
 - ※ 흑룡강성: 7개('08년) → 3개(현재), 칭하이성 4개('04년) → 1개(현재)

□ 업종별 구분

- 업종 등에 따른 차등화된 최저임금 기준은 없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최저임금은 각 성·시별로 정하여 발표
 - 성·시는 관할 구역을 2~4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고시

Ⅲ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성·시 등 각 인민정부의 노동행정기관이 최저임금 이행상황을 검사·감독(최저임금규정 제4조)
- 연간 및 중장기 감독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며, 신고에 따른 수시 감독도 진행
 - 노동조합인 공회(工會)는 기업이 최저임금 표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에게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근로자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제기 가능

- 노동행정기관은 「노동보장 감찰규정」에 따라 처리(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36조 등)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근로감독 근거 및 벌칙
 - 사용자가 위법하게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이 기간을 한정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을 명령(노동계약법 제85조)
 - 노동행정기관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50~500%* 배상금 지급의무 부과
 - * 노동계약법 제85조 50~100%, 최저임금규정(04) 제13조 100~500%
 - 노동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2천~2만 위안 과징금 부과(노동보장 감찰조례 제30조)

2) 형벌 규정

-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 성립 시 형사책임을 추궁
 - 拒不支付勞動報酬罪(거부지부노동보수죄, 형법 제276조)는 자산을 빼돌리는 등 근로자 보수 지급을 회피하거나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부과

3) 사법적 권리구제

- 노동중재신청(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제37조 등)
 -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노동행정기관에 노동중재 신청 → 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처리
- 법원 소송제기
 - 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노동법 제83조)
 - 다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노동중재로 사건이 최종 종결
 - * 대상 금액이 지역 최저임금의 12개월 환산액 이하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현황

(단위: '22.1월, 위안)

성, 시 (지역)	전일제 월 최저임금	비전일제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	실시 시기
1.북경시	2,320	25.3	2021.8.1
2.천진시	2,180	22.6	2021.7.1
3.하북성	1,900/1,790/1,680/1,580	19/18/17/16	2019.11.1
4.산서성	1,880/1,760/1,630	19.8/18/17.2	2021.10.1
5.내몽고자치구	1,980/1,910/1,850	20.8/20.1/19.5	2021.12.1
6.길림성	1,880/1,760/1,640/1,540	19/18/17/16	2021.12.1
7.요녕성	1,910/1,710/1,580/1,420	19.2/17.2/15.9/14.3	2021.9.1
8.흑룡강성	1,860/1,610/1,450	18/14//13	2021.4.1
9.상해시	2,590	23	2021.7.1
10.강소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1.절강성	2,280/2,070/1,840	22/20/18	2021.8.1
12.안휘성	1,650/1,500/1,430/1,340	20/18/17/16	2021.12.3
13.복건성	1,800/1,720/1,570/1,420	18.5/18/16.5/15	2020.1.1
14.강서성	1,850/1,730/1,610	18.5/17.3/16.1	2021.4.1
15.산둥성	2,100/1,900/1,700	21/19/17	2021.10.1
16.하남성	2,000/1,800/1,600	19.6/17.6/15.6	2022.1.1
17.호북성	2,010/1,800/1,650/1,520	19.5/18/16.5/15	2021.9.1
18.호남성	1,700/1,540/1,380/1,220	17/15/13.5/12.5	2019.10.1
19.광둥성	2,300/1,900/1,720/1,620	22.2/18.1/17/16.1	2021.12.1
20.심천시	2,360	22.2	2022.1.1
21.광시자치구	1,810/1,580/1,430	17.5/15.3/14	2020.3.1
22.해남성	1,830/1,730/1,680	16.3/15.4/14.9	2021.12.1
23.중경시	1,800/1,700	18/17	2019.1.1
24.사천성	1,780/1,650/1,550	18.7/17.4/16.3	2018.7.1
25.귀주성	1,790/1,670/1,570	18.6/17.5/16.5	2019.12.1
26.운남성	1,670/1,500/1,350	15/14/13	2018.5.1
27.서장자치구	1,850	18	2021.7.1
28.섬서성	1,950/1,850/1,750	19/18/17	2021.5.1
29.감숙성	1,820/1,770/1,720/1,670	19/18.4/17.9/17.4	2021.9.1
30.청해성	1,700	15.2	2020.1.1
31.닝샤자치구	1,950/1,840/1,750	18/17/16	2021.9.1
32.신강자치구	1,900/1,700/1,620/1,540	19/17/16.2/15.4	2021.4.1

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각 성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최근 5년간 지역별 최저임금 변화(일부 성은 성내 지역·도시별로 상이)

성	시행시기	최저임금 기준									
		전일제(위안/월)					비전일제(위안/시간)				
1. 북경	'16.9.1	1,890 (시급 10.86)					21				
	'17.9.1	2,000 (시급 11.49)					22.7				
	'18.9.1	2,120					24				
	'19.7.1	2,200					24				
	'21.8.1	2,320					25.3				
2. 천진	'16.7.1	1,950					19.5				
	'17.7.1	2,050					20.8				
	'21.7.1	2,180					22.6				
3. 하북	'16.7.1	1,650	1,590	1,480	1,380	17	16	15	14		
	'19.11.1	1,900	1,790	1,680	1,580	19	18	17	16		
4. 산서	'15.5.1	1,620	1,520	1,420	1,320	17.7	16.6	15.6	14.5		
	'17.10.1	1,700	1,600	1,500	1,400	18.5	17.4	16.3	15.2		
	'21.10.1	1,880	1,760	1,630		19.8	18	17.2			
5. 내몽고	'15.7.1	1,640	1,540	1,440	1,340	13.3	12.5	11.7	10.9		
	'17.8.1	1,760	1,660	1,560	1,460	18.6	17.6	16.5	15.5		
	'21.12.1	1,980	1,910	1,850		20.8	20.1	19.5			
6. 길림	'15.12.1	1,480	1,380	1,280		13.5	12.5	11.5			
	'17.10.1	1,780	1,680	1,580	1,480	17	16	15	14		
	'21.12.1	1,880	1,760	1,640	1,540	19	18	17	16		
7. 요녕	'16.1.1	1,530	1,320	1,200	1,020	15	13	10.8	9.5		
	'18.1.1	1,620	1,420	1,300	1,120	16	14	11.8	10.6		
	'19.11.1	1,810	1,610	1,489	1,300	18.3	16.3	15	13.2		
	'21.9.1	1,910	1,710	1,580	1,420	19.2	17.2	15.9	14.3		
8. 흑룡강	'15.10.1	1,480	1,450	1,270	1,120	1,030	14.2	14	11.5	10.8	10
	'17.10.1	1,680	1,450	1,270			16	13	12		
	'21.4.1	1,860	1,610	1,620			18	14	13		
9. 상해	'16.4.1.	2,190					19				
	'17.4.1.	2,300					20				
	'18.4.1.	2,420					21				
	'19.4.1.	2,480					22				
	'21.7.1	2,590					23				
10. 강소	'16.1.1	1,770	1,600	1,400			15.5	14	12		
	'17.7.1	1,890	1,720	1,520			17	15.5	13.5		
	'18.8.1	2,200	1,830	1,620			18.5	16.5	14.5		
	'21.8.1	2,280	2,070	1,840			22	20	18		
11. 절강	'15.11.1	1,860	1,660	1,530	1,380		17	15.2	13.8	12.5	
	'17.12.1	2,010	1,800	1,660	1,500		18.4	16.5	15	13.6	
	'21.8.1	2,280	2,070	1,840			22	20	18		
12. 안휘	'15.11.1	1,520	1,350	1,250	1,150		16	14	13	12	
	'18.11.1	1,550	1,380	1,280	1,180		18	16	15	14	
	'21.12.3	1,650	1,500	1,430	1,340		20	18	17	16	
13. 복건	'15.8.1	1,500	1,350	1,250	1,150		16	14.3	13	12	
	'17.7.1	1,700	1,650	1,500	1,380	1,280	18	17.5	16	14.6	13.6
	'20.1.1	1,800	1,720	1,570	1,420		18.5	18	16.5	15	

성	시행시기	최저임금 기준							
		전일제(위안/월)				비전일제(위안/시간)			
14. 강서	'15.10.1	1,530	1,430	1,340	1,180	15.3	14.3	13.4	11.8
	'18.1.1	1,680	1,580	1,470		16.3	15.8	14.7	
	'21.4.1	1,850	1,730	1,610		18.5	17.3	16.1	
15. 산둥	'16.6.1	1,710	1,550	1,390		17.1	15.5	13.9	
	'17.6.1	1,810	1,640	1,470		18.1	16.4	14.7	
	'18.6.1	1,910	1,730	1,550		19.1	17.3	15.5	
	'21.10.1	2,100	1,900	1,700		21	19	17	
16. 하남	'15.7.1	1,600	1,450	1,300		15	13.5	12	
	'17.10.1	1,720	1,570	1,420		16	14.5	13	
	'18.10.1	1,900	1,700	1,500		19	17	15	
	'22.1.1	2,000	1,800	1,600		19.6	17.6	15.6	
17. 호북	'15.9.1	1,550	1,320	1,225	1,100	16	15	14	12.5
	'17.11.1	1,750	1,500	1,380	1,250	18	16	14.5	13
	'21.9.1	2,010	1,800	1,650	1,520	19.5	18	16.5	15
18. 호남	'15.1.1	1,390	1,250	1,130	1,030	13.5	11.9	11.4	10.7
	'17.7.1	1,580	1,430	1,280	1,130	15	13.4	12.4	11.6
	'19.10.1	1,700	1,540	1,380	1,220	17	15	13.5	12.5
19. 광둥	'15.5.1	1,895	1,510	1,350	1,210	18.3	14.4	13.3	12
	'18.7.1	2,100	1,720	1,550	1,410	20.3	16.4	15.3	14
20. 심천	'17.6.1.	2,130				19.5			
	'18.7.1.	2,200				20.3			
	'22.1.1	2,360				22.2			
21. 광서	'18.2.1	1,680	1,450	1,300		16	14	12.5	
	'20.3.1	1,810	1,580	1,430		17.5	15.3	14	
22. 해남	'16.5.1.	1,430	1,330	1,230		12.6	11.7	11.3	
	'18.12.1.	1,670	1,570	1,520		15.3	14.4	14	
	'21.12.1	1,830	1,730	1,680		16.3	15.4	14.9	
23. 중경	'16.1.1	1,500	1,400			15	14		
	'19.1.1	1,800	1,700			18	17		
24. 사천	'15.7.1	1,500	1,380	1,260		15.7	14.4	13.2	
	'18.7.1	1,780	1,650	1,550		18.7	17.4	16.3	
25. 귀주	'17.7.1	1,680	1,570	1,470		18	17	16	
	'19.12.1	1,790	1,670	1,570		18.6	17.5	16.5	
26. 운남	'15.9.1	1,570	1,400	1,180		14	13	12	
	'18.5.1	1,670	1,500	1,350		15	14	13	
27. 저장	'15.1.1	1,400				13			
	'18.1.1	1,650				16			
	'21.7.1	1,850				18			
28. 섬서	'17.5.1	1,680	1,580	1,480	1,380	16.8	15.8	14.8	13.8
	'19.5.1	1,800	1,700	1,600		18	17	16	
	'21.5.1	1,950	1,850	1,750		19	18	17	
29. 감숙	'15.4.1	1,470	1,420	1,370	1,320	15.5	15	14.4	13.9
	'17.6.1	1,620	1,570	1,520	1,470	17	16.5	15.9	15.4
	'21.9.1	1,820	1,770	1,720	1,670	19	18.4	17.9	17.4

성	시행시기	최저임금 기준							
		전일제(위안/월)				비전일제(위안/시간)			
30. 청해	'17.5.1	1,500				15.2			
	'20.1.1	1,700				15.2			
31. 녕하	'15.11.1	1,480	1,390	1,320		14	13	12	
	'17.10.1	1,660	1,560	1,480		15.5	14.5	13.5	
	'21.9.1	1,950	1,840	1,750		18	17	16	
32. 신강	'15.7.1	1,670	1,470	1,390	1,310	16.7	14.7	13.9	13.1
	'18.1.1	1,820	1,620	1,540	1,460	18.2	16.2	15.4	14.6
	'21.4.1	1,900	1,700	1,620	1,540	19	17	16.2	15.4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중국은 '06년 이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크게 인상
 - '11년에는 12.5 계획(제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13% 인상계획을 발표
 - '13.2월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15년까지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권고(소득분배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의견)
-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하락으로 임금인상 부담이 커졌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 가중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분배정책이 약화
 - '16년 발표한 13.5 계획에서는 명시적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를 제외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년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방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
 - '20년 최저임금이 조정(인상)된 지역은 복건성, 광시성, 청해성 등 3개 지역이나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조정 결정
 - 코로나19 이후 신규로 최저임금을 조정한 지역은 없고, 상해, 북경, 선전 등 지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동결
- '21.7월 발표한 '제14차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제14차 계획 기간 동안 공동번영을 보다 적극적,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

- 최전선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다양한 산업 및 그룹의 임금 분배에 대한 사전 지침을 강화할 예정
- 코로나19 상황의 완화와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21년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인상폭도 커짐
- '21년 기준 32개 성·시 중 21개 성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은 60~300위안
 - '22.1.1. 기준으로 하남, 심천 등 2개 성도 최저임금을 인상
-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월급을 기준으로 상해의 최저임금이 2,590위안(한화 466,200원, 1위안 180원 기준)으로 가장 높고, 상해, 북경, 심천, 절강 등 9개 지역이 2,000위안을 초과
 - 이에 더하여 하남은 '22.1.1부터 2,000위안에 진입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보험, 병가수당 등도 함께 인상될 예정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www.mohrss.gov.cn
 -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data.stats.gov.cn

(문 의) 주중대사관 고용노동관 허윤선

(연락처) 86-10-8531-0842, hys05@korea.kr

* 제출일: '22.3.4.

35. 캄보디아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언 어	크메르어	
면 적	18만 km ²	
인 구	1,555만 명(2019)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주 요 도 시	프놈펜, 바탐방, 시하누크빌, 시엠립	
종 교	불교 97.1%, 이슬람교 2.0%, 기독교 0.3% 등(2019)	
교 육	총의무교육 9년(초등교육 6년, 하급 중등교육 3년)	
화 폐 단 위	리엘(Riel)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262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1,713달러(2019) (출처: IMF)
	GDP성장률	2.2% (출처: IMF)
	교 역 (2020)	수 출 177.2억 달러 수 입 192.9억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실 업 률	0.33%(2020) (출처: World Bank)
	물가상승률	2.8% (출처: IMF)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kh-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임금 수준 보장 등을 위해 노동법상 최저임금제도 도입(1997년)

□ 발전과정

- 「노동법(Labor Law)」 최저임금제도 명문화(1997년)
 - 근로자의 생계유지비 및 경제발전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토록 규정(노동법 제107조 제2항)
- 특별법 「최저임금법」(Law on Minimum Wage) 공포('18년)
 - 최저임금 결정기준(사회적, 경제적 등) 및 절차 등 규정

2 관련 법

□ 노동법

- 임금제도(최저임금 포함) 규정

□ 최저임금법

- 국가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Prakas on the Minimum Wage)

- 섬유,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 근로자에게 적용될 차년도 최저임금 공포(매년 9월)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에서 규정한 섬유, 의류, 신발 등 봉제산업 근로자
 - 최저임금법은 노동법 적용 대상인 전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은 봉제산업 등 특정 업종 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임금 대상을 공포
 - 최저임금 해당 업종 근로자에게는 외국인, 장애인 등도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적용 제외

- 별도 법규의 적용을 받는 군·경·항공 및 해운 인력 등

특례 대상

- 수습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 공포 시 정규직 근로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각각 고시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국가최저임금위원회

-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노동직업훈련부에 권고하고,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내각(총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고시
 - 위원회는 정부, 사용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최소 48명으로 구성*(각 1/3)
 - * '21년은 총 51명으로 구성(각 17명)
 - 위원장 및 사무처는 노동직업훈련부에서 담당하고 부위원장(2명)은 사용자 및 근로자 측에서 각각 1명 선출
 - ※ 최저임금법에서 위원회 위원 선출, 구성, 운영 등을 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2) 결정방법 및 절차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여 노동직업훈련부에 권고

-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는 각각 노동직업훈련부에 권고할 최저임금 수준 제시
- 노동직업훈련부에 권고할 최저임금 수준을 만장일치가 원칙인 회의를 통해 결정
 - 두 차례 회의에서 미합의 시 과반수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함

- 노동직업훈련부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전 내각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총리가 결정권을 행사
 - '22년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월 192달러를 권고하였으나, 훈센 총리는 2달러를 가산한 194달러로 결정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매년 갱신(최저임금법 제13조)
- 결정시기: 매년 9월경(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으로 공포)
 - '22년 최저임금은 '21.9.28. 결정(Prakas No. 264/21)
- 시행시기: 차년도 1월(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으로 공포)

4) 결정기준

- 최저임금법은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회적 기준 및 경제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공표되지 않음
 - 사회적 기준: 가족상황, 물가상승률, 생계비
 - 경제적 기준: 생산성,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상황, 업종 수익성

5) 결정단위

- 월급 단위(월 208시간 근로 기준)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노동직업훈련부에 사전 신청하면 국가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외부방청 가능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 및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및 최저임금 수준이 공개되지만 구체적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 관련 법령 조문은 없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노동법상 임금 구성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건강보험료, 법정가족수당, 여비,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혜택
 - 노동법에서 최저임금과 별도로 언급된 수당
 - 초과급, 수수료, 수당, 상여금 및 보상금, 이익배분, 사례금, 현물급여가치,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을 넘어서는 가족수당, 연가비 또는 연가보상비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국가 단일 최저임금으로 지역별, 업종별 구분 없음
 -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은 봉제산업 등 특정 업종 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임금 대상을 공포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노동직업훈련부 홈페이지에 「노동직업훈련부 장관령」으로 고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정부의 보도자료 배포, 사용자의 작업장·채용사무실 최저임금 게시 등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법」 제344조는 노동조사관(Labour Inspector) 또는 유사한 기구가 최저임금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사관은 수시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노동국(General Department of Labour) 내 노동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노동직업훈련부 자체 조사 및 심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4천만 리엘 이하의 과태료 처분(최저임금법 제24조)

2) 형벌 규정

-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61~90일 임금 수준의 벌금형이나 6일~1달 징역형 처분(노동법 제369조)

3)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이자를 포함한 지불임금 차액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제24조)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대상: 섬유, 의류 등 봉제산업 정규직 근로자)

- 월 194달러(수습근로자 월 192달러)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저임금	80	100	128	140	153	170	182	190	192	194
인상률	31.1	25.0	28.0	9.4	9.3	11.1	7.1	4.4	1.1	1.0

주: 봉제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 기준

출처: 노동직업훈련부

2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1)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특별법 「최저임금법」 공포('18년)

- 최저임금 결정기준(사회적, 경제적 등) 및 절차 등 규정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시행령」시행('18.9월)

- '19.1.1.부터 월 2회 임금지급

「근속수당(Seniority Indemnity) 지급에 대한 시행령」('18.9월)

※ 직물, 봉제, 신발업계는 '19.6월부터, 여타업종은 '21년부터 시행

- 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계약종료 시 급여의 5%에 상당하는 퇴직금 지급
-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해고 시 보상금(연 15일 급여)은 연 2회(6월 및 12월) 분할하여 사전 지급

「노동조합법」개정('20.1월)

- 단결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수 노조의 노동중재위원회 접근성 제고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142.5%)했지만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증대
 - 국가최저임금위원회는 경쟁력 저하를 감안하여 '22년 최저임금을 '21년(192달러)과 동일하게 권고하였으나
 - 훈센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향후 선거 등을 고려하여 194달러로 결정

(문 의) 주캄보디아대사관 김범서 주재관

(연락처) 855-23-211-900, bsekim21@mofa.go.kr

* 제출일: '22.3.4.

36. 태국

국 명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언 어	타이어(공용어)	
면 적	51.4만 km ²	
인 구	6,617만 명	
수 도	방콕(Bangkok)	
주 요 도 시	치앙마이, 나콘라차시마, 송클라, 푸켓	
종 교	불교(95%), 이슬람교(4.3%), 기독교(1%), 기타(1%)	
교 육	총 9년 의무교육(초등 6년, 중등 3년) (단, '09년부터 유아(3년), 초등(6년), 중고등(6년) 총 15년간 공립학교 학비 면제)	
화 폐 단 위	바트(Baht)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5,056억 달러
	1인당 GDP	7,256달러
	GDP성장률	1.6%
	교 역	수 출 2,315억 달러 수 입 2,070억 달러
	실 업 률	1.64%
	물가상승률	1.2%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tha.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970년 이후 방콕을 중심으로 섬유공장이 증가하면서 계엄령하에서도 노동쟁의가 증가
 - 특히,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중심으로 공산주의 영향력이 확산
 - 이를 막고 노동운동에 대한 유화책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최저임금제도 등 도입

2) 발전과정

- 1971년 쿠데타 이후 혁명군이 공포한 「혁명단 포고 제103호(Revolutionary party decree no. 103, March of 1972)」에 따라 제정
- 1972년 4월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내무부 고시」에는 임금위원회 구성·권한, 심의 의결 방법,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등 규정이 포함
- 1972년 내무부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담당하다가, 1994년부터 노동부로 이관
- 1998년 제정된 「노동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에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2 관련 법

- 「노동보호법(2008)」
 - 고용·해고, 급여, 최저임금, 복지, 작업장의 안전·보건 등 근로기준에 대해 규정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인종,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적용

- 적용 제외
 - 중앙 및 지방공무원
 - 국영기업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 근로자
 - 경작, 어업, 산림업, 가축업 등 농축수산업 근무 근로자
 - 가사 근로자 및 비영리사업 근무 근로자
- 특례 대상
 - 기술직종은 경력에 따른 임금기준 별도 적용
 - 15세 이상 시간제 학생근로자 별도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임금위원회(Wage Committee)
 - 구성
 - 정부대표(노동부 사무차관 등) 5명, 사용자대표 5명, 근로자대표 5명 등 총 15명
 - 정부대표는 당연직,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내각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재임명도 가능
 - 기능
 - 최저임금액 및 기초 최저임금액 결정, 임금 관련 정책을 정부에 건의
 - 학생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준 결정
- 지역최저임금위원회
 - 구성
 - 각 지역 근로보호복지국(Department of Labour Protection and Welfare) 공무원 10인 이하로 구성
 - ※ 민간위원은 없음

○ 기능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될 최저임금 기초자료 작성 및 중앙정부에 제출, 임금 및 근로자 복지에 관한 분쟁 해결 등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최저임금 심의 시 의사정족수는 2/3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고 사용자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적어도 2명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
 - 최저임금 심의 시 정족수에 미달하여 재소집할 경우 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의 최소 2명 이상 참석과 관계없이 전체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
 - 이는 최저임금액에 불만이 있는 노사위원 어느 일방이 회의를 거부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자 도입
- 통상 회의는 과반수 위원이 참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적어도 1명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다수결로 의결

□ 결정절차

- 중앙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각료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 중앙임금위원회는 기초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각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 송부
 - 지역최저임금위원회는 중앙임금위원회에서 통보한 기초 최저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지역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중앙임금위원회에 동 임금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중앙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요청한 임금 수준을 심사한 후 중앙임금위원회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
 - ※ 일반적으로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요청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됨
 - 중앙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내용은 노동부장관을 통해 각료회의에 제출되고, 최종적으로 각료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특정한 조정주기는 없으나 매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연중에도 최저임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매년 조정되는 것은 아님
 - ※ 최저임금 동결은 10회(1976, 1984, 1988, 1997~1999, 2014~2016, 2019), 두 차례 인상은 4회(1974, 1989, 1995, 2008)
 - 학생근로자 최저임금은 '12년 이후 갱신 없이 현재까지 적용

4) 결정기준

- 중앙임금위원회는 現임금수준, 생계비, 생활수준, 생산비용, 물가, 기업 효율성, 노동생산성, GDP, 경제·사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노동보호법 제87조)
 - 물가는 상승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20년 이후 동결
 - 생계비는 77개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실태생계비를 조사하여 산출
 - 기술직종에 대한 임금기준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해당 직종의 기술, 능력,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지역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래 3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및 각 부처에서 작성된 최신 자료 활용
 - 근로자의 생활비: 현재 근로소득, 생활비, 인플레이션, 서비스 및 생산비용, 생활수준, 노동생산성
 - 근로자 소득증가 능력: 생산원가, 비즈니스 능력, 노동생산성 지표
 - 경제·사회 여건: GDP(국가/지역), 경제적 및 사회적 상태

5) 결정단위

- 일급 단위(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
 - 15세 이상 시간제 학생근로자의 경우 시급 단위로 결정

6) 결정과정의 공개

- 최저임금 발표 후 위원회의 회의내용, 참석인원 등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
 - 단, 녹취내용과 회의록 등은 미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으나 관행상 일반적인 근로에 따라 수령하는 기본임금을 의미
 -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는 사회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주휴수당,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현물 등), 기타 수당은 산입하지 않음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주간휴일
 -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간 휴일 간의 간격은 6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 주간 휴일기간에도 기본급은 지급하여야 함(일용직, 시급, 도급근로자 제외)
 - 기본급여
 -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시급, 일급, 월급 또는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피고용인 간에 합의된 금액
 - 기본급여에는 실제 일하지 않았으나, 노동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 포함

3 | 최저임금의 구분

- 지역별 구분 적용
 - 전체 77개(방콕+76개 지역)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 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초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며, 지역최저임금에 없는 경우에는 기초최저임금으로 적용
 - 법률상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된 바 없음
- 기술직종에 대한 임금 적용사항
 - 기술직종은 직종별 수준별(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별도 적용
 - 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기초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

- 15세 이상 시간제 학생근로자
 - 15세 이상 학생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임금기준 적용
 - 대학생도 포함되며, 연령 상한 없음
 - 학생(대학생 포함)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하루 최대 4시간, 학기 중 휴일에는 하루 최대 6시간, 방학 중에는 최대 7시간, 주당 최대 36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4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노동부 및 관련 홈페이지
 - 지역별 관서 게시판
- 홍보
 - 노동부 및 관련 홈페이지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1) 근로감독 기관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부 소속의 86개 지방복지사무소(방콕 10개, 지방 76개)가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단속
 - 복지사무소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보고
 - ※ 노동부(Ministry) 산하에 고용국·기술개발국·근로보호복지국(Department)와 사회보장청(Office)이 있으며, 복지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노동부 산하 4개 지방사무소: 고용, 노동, 복지, 사회보험사무소
 - 복지사무소: 노동기준에 따른 노동보호, 산업안전 보건, 노사관계 및 복지증진 등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형벌 규정

- 근로자가 신고한 경우 노동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불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형사책임을 지게 됨
-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고 병과 또한 가능

□ 사법적 권리구제

- 최저임금제도 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구제요청 가능
- 노동법원 제소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2020년부터 동결

□ 과거 최저임금 통계

- 지역별 최저임금('06~'20)

(단위: 일급, 바트)

연번	지역명	최저임금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18.4	'20.1
1	방콕	184	191	194	203	203	206	215	300	300	310	325	331
2	논타부리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331
3	나콘빠툼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331
4	빠툼타니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331
5	사뭇쁘라칸	184	191	194	203	203	206	215	300	300	310	325	331
6	사뭇사켄	184	191	194	203	203	205	215	300	300	310	325	331
7	푸껫	181	186	193	197	197	204	221	300	300	310	330	336
8	춘부리	166	172	175	180	180	184	196	273	300	308	330	336
9	사라부리	163	168	170	179	179	184	193	269	300	308	320	325
10	나콘라차시마	158	162	165	170	170	173	183	255	300	308	320	325
11	라용	155	161	165	173	173	178	189	264	300	308	330	335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연번	지역명	최저임금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18.4	'20.1
12	프라야콘스라 야유타야	155	160	165	173	173	181	190	265	300	308	320	325
13	차창사오	153	160	165	173	173	180	193	269	300	308	325	330
14	라농	155	160	163	169	169	173	185	264	300	300	310	315
15	팡아	155	159	162	168	168	173	186	259	300	308	320	325
16	크라비	151	156	160	165	165	170	184	257	300	308	320	325
17	페차부리	150	156	160	164	164	168	179	250	300	305	315	320
18	치앙마이	155	159	159	168	168	171	180	251	300	308	320	325
19	롭부리	151	155	158	163	163	170	182	254	300	305	320	325
20	찬타부리	150	155	158	163	163	167	179	250	300	305	318	323
21	칸차나부리	151	155	157	165	165	169	181	252	300	305	315	320
22	라차부리	147	154	156	164	164	167	180	251	300	305	310	315
23	싱부리	147	152	156	161	161	165	176	246	300	300	310	315
24	사뭇송크람	150	154	155	160	160	163	172	240	300	305	318	323
25	스라캐우	147	154	155	160	160	163	172	241	300	305	315	320
26	프란친부리	147	152	155	163	163	170	183	255	300	308	318	324
27	뜨랑	148	152	154	157	157	162	175	244	300	300	310	315
28	양통	148	152	154	161	161	165	174	243	300	305	315	320
29	뤄이	144	150	154	162	162	163	173	241	300	305	315	320
30	프라차우브키리칸	147	152	152	160	160	164	172	240	300	305	315	320
31	송크라	144	152	152	157	157	161	176	246	300	308	320	325
32	람퐁	145	149	152	156	156	160	169	236	300	305	310	315
33	우돈타니	145	150	150	157	157	159	171	239	300	305	315	320
34	츄폰	145	149	150	158	158	160	173	241	300	300	310	315
35	트랏	145	149	150	156	156	160	169	236	300	305	320	325
36	콘깐	144	148	150	154	154	157	167	233	300	308	320	325
37	나콘스리탐마랏	144	148	150	155	155	159	174	243	300	300	310	315
38	부리남	144	148	150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5	320
39	사똘	144	148	150	155	155	159	173	241	300	305	310	315
40	농카이	144	148	150	157	157	159	169	236	300	305	320	325
41	봉간	-	-	-	-	-	-	-	236	300	305	315	320
42	나콘나옥	143	147	150	156	156	160	170	237	300	305	318	323
43	나콘사완	143	147	150	155	155	158	166	232	300	305	315	320
44	파타룽	143	147	150	155	155	159	173	241	300	305	315	320
45	페차분	143	147	150	155	155	155	163	232	300	305	315	320
46	수라타니	143	147	150	155	155	159	172	240	300	308	320	325
47	우타이타니	142	146	150	158	158	158	166	234	300	305	310	315
48	람빵	145	149	149	154	154	156	165	230	300	305	310	315
49	수코타이	145	149	149	151	153	153	165	230	300	305	310	315
50	수판부리	145	149	149	154	154	158	167	233	300	305	320	325
51	캠핑페츠	143	147	149	156	156	158	168	234	300	305	310	315
52	차이낫	142	146	149	154	154	158	167	233	300	305	315	320
53	칼라신	144	148	148	155	155	157	167	233	300	305	318	323

연번	지역명	최저임금											
		'06년	'07년	'08.1	'08.6	'08.11	'10.1	'11.1	'12.4	'13.1	'17.1	'18.4	'20.1
54	나콘파놈	144	148	148	153	153	155	164	229	300	305	315	320
55	나라티왓	144	148	148	153	153	160	171	239	300	300	308	313
56	파타니	144	148	148	155	155	159	170	237	300	300	308	313
57	알라	144	148	148	155	155	160	172	240	300	300	308	313
58	피사누록	143	147	148	152	152	153	163	227	300	305	315	320
59	묵다한	142	146	148	152	152	155	165	230	300	305	318	323
60	사콘나콘	142	146	148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8	323
61	농부아룸푸	142	146	148	154	154	156	165	230	300	305	310	315
62	딱	143	147	147	151	151	153	162	226	300	305	310	315
63	우트라라딧	143	147	147	149	152	153	163	227	300	305	315	320
64	마하사라캄	142	146	147	151	151	154	163	227	300	305	310	315
65	야소톤	142	146	147	155	155	157	166	232	300	305	315	320
66	로이에드	142	146	147	154	154	157	166	232	300	305	315	320
67	매홍선	141	145	147	151	151	151	163	227	300	305	310	315
68	수린	141	145	147	151	151	153	162	226	300	305	315	320
69	차이야폼	142	146	146	148	152	156	165	230	300	305	310	315
70	치앙라이	142	146	146	157	157	157	166	232	300	305	310	315
71	스리사켓	142	146	146	150	150	152	160	223	300	305	310	315
72	피чит	141	145	146	150	150	151	163	227	300	305	310	315
73	프래	140	144	146	150	150	151	163	227	300	305	310	315
74	암나차론	141	145	145	153	153	155	163	227	300	305	310	315
75	우본라차타니	141	145	145	154	154	160	171	239	300	305	320	325
76	파야오	140	144	144	150	150	151	159	222	300	305	315	320
77	난	140	143	144	151	151	152	161	225	300	305	315	320
평균		149	154	155	161.9	161.9	165.2	175.8	245.2	300	305	316	321

○ 기술표준에 따른 임금

- '21.1.5. 임금위원회 고시(제10호)

(단위: 일급, 바트)

구 분	최 저 임 금		
	Level 1	Level 2	Level 3
분야 1. 기계 직종(10개)			
1.1 자동차 페인트	440	515	585
1.2 자동차 판금	465	560	650
1.3 자동차 정비	400	490	585
1.4 자동차유리 보수	375	440	기술표준 없음
1.5 디젤엔진 정비	400	490	585
1.6 소형냉방기계 정비	400	490	585
1.7 전동지게차 운전원	430	기술표준 없음	기술표준 없음
1.8 엔진지게차 운전원	430	기술표준 없음	기술표준 없음
1.9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 및 휠 밸링싱 기사	415	기술표준 없음	기술표준 없음
1.10 오토바이 정비기사	415	미지정	기술표준 없음

구 분	최 저 임 금		
	Level 1	Level 2	Level 3
분야 2. 서비스 직종(6개)			
2.1 태국음식 요리	440	565	기술표준 없음
2.2 타이마사지	485	640	795
2.3 종합건강증진, 핸드 테라피	540	715	기술표준 없음
2.4 종합건강증진, 아로마 테라피	595	790	기술표준 없음
2.5 종합건강증진, 하이드로 테라피	625	825	기술표준 없음
2.6 종합건강증진, 다이어트 테라피	680	900	기술표준 없음
분야 3. 전기, 전자, 컴퓨터 직종(10개)			
3.1 마이크로컴퓨터 정비	440	550	660
3.2 실내전기기사	440	550	660
3.3 전기산업기사	440	550	660
3.4 가정 및 소형에어컨 기술자	440	550	660
3.5 전자 기술자(텔레비전)	440	550	기술표준 없음
3.6 실외전기기사	450	미지정	미지정
3.7 전기통신기사(마이크로파 및 위성방송)	450	미지정	기술표준 없음
3.8 PLC기사(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450	540	미지정
3.9 MICE기사(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450	미지정	미지정
3.10 태양광 설치기사	450	미지정	기술표준 없음
분야 4. 산업직종(10개)			
4.1 컴퓨터, 기계설계	510	585	740
4.2 매그용접	440	550	660
4.3 티그용접	505	680	855
4.4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 용접	510	기술표준 없음	기술표준 없음
4.5 파이프 조립	440	미지정	기술표준 없음
4.6 금속사출금형 제작	530	미지정	기술표준 없음
4.7 선반공	460	540	630
4.8 CNC 선반 기술자	470	555	675
4.9 와이어컷팅 기술자	480	미지정	미지정
4.10 수동 금속 아크 용접기사	465	550	630
분야 5. 건설 직종(7개)			
5.1 건설목공	425	545	670
5.2 벽돌공	380	515	645
5.3 미장	425	545	670
5.4 알루미늄건설기계공	405	525	645
5.5 테라조작업	440	미지정	미지정
5.6 석고미장	440	미지정	미지정
5.7 콘크리트지붕 작업	440	565	685
분야 6. 예술산업 직종(5개)			
6.1 수선공	345	410	550
6.2 보석기술자	440	605	825
6.3 목공예	370	425	480
6.4 속 치장자	355	410	465
6.5 가구 페인트	385	495	미지정
분야 7. 전기, 전자 직종(4개)			
7.1 전기, 조명(장치) 조립	400	475	미지정
7.2 전자제품 모터 조립	410	490	미지정
7.3 전기전자 기계정비	455	540	미지정
7.4 보안시스템기술자	440	530	미지정
분야 8. 부속물 및 부품 직종(4개)			

구 분	최 저 임 금		
	Level 1	Level 2	Level 3
8.1 자동차부품 선반	440	530	미지정
8.2 미그매그자동차부품용접	440	530	미지정
8.3 자동차부품기계정비	440	530	미지정
8.4 자동차부품 자동선반기술	440	530	미지정
분야 9. 자동차 직종(5개)			
9.1 자동차바디스프레이도장	440	530	미지정
9.2 자동차보디실러스프레이도장	440	530	미지정
9.3 자동차품질보증담당	440	530	미지정
9.4 자동차보디스푹용접사	440	530	미지정
분야 10. 보석 직종(4개)			
10.1 보석세공사	465	605	미지정
10.2 보석용접사	465	605	미지정
10.3 엑세서리작업자	465	605	미지정
10.4 엑세서리외 보석상감작업	465	605	미지정
분야 11. 물류 직종(4개)			
11.1 도로화물운송주선자	460	550	미지정
11.2 10톤이하 지게차관리자	400	475	미지정
11.3 재고품관리자	385	465	미지정
11.4 창고운영자	375	455	미지정
분야 12. 기계 및 금속 직종(4개)			
12.1 기계설계기안	510	605	미지정
12.2 기계 및 금속 티그용접사	550	660	미지정
12.3 전달기계기술자	495	595	미지정
12.4 유압기계기술자	510	605	미지정
분야 13. 냉방기 및 냉각기 직종(4개)			
13.1 냉방기 및 냉각기 파이프용접사	440	535	미지정
13.2 대형냉방기계기술자	425	520	미지정
13.3 소형냉방기계기술자	425	520	미지정
13.4 냉방기계조립자	410	505	미지정
분야 14. 금형 직종(4개)			
14.1 자동밀링머신기술자	495	595	미지정
14.2 EDM기계기술자	475	570	미지정
14.3 와이어컷EDM기계기술자	475	570	미지정
14.4 금형연마작업자	420	505	미지정
분야 15. 철 직종(4개)			
15.1 전기아크녹임	515	620	미지정
15.2 LF정련기작업	535	640	미지정
15.3 철주조작업	490	600	미지정
15.4 철열처리작업	470	575	미지정
분야 16. 플라스틱 직종(4개)			
16.1 플라스틱사출기계	405	480	미지정
16.2 플라스틱봉투사출	405	480	미지정
16.3 플라스틱사출모형	405	480	미지정
16.4 플라스틱봉투송풍기정비	440	515	미지정
분야 17. 가구 직종(4개)			
17.1 가구재료준비	350	380	미지정
17.2 가구제작자동기계작업자	395	455	미지정
17.3 가구조립	365	415	미지정
17.4 가구페인트	375	415	미지정

구 분	최 저 임 금		
	Level 1	Level 2	Level 3
분야 18. 신발 직종(4개)			
18.1 신발설계	395	435	미지정
18.2 신발깔창작업	405	450	미지정
18.3 신발재봉	405	450	미지정
18.4 신발조립(지원)	385	415	미지정

2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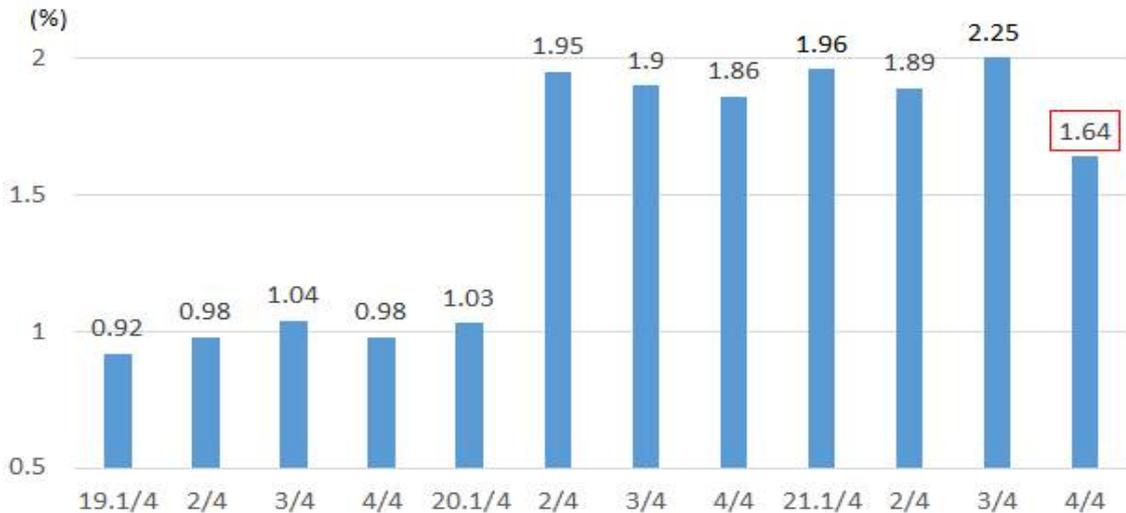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21년 4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 직전분기 대비 2.1% 증가하여 '21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상치(1.2%)를 상회

□ 실업률

- '21년 4분기 실업률은 직전분기(2.25%) 대비 하락한 1.64%를 기록

분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 '20년은 0.9%로 하락하였으나 올해 4월 이후 전년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증가세

※ 올해 7, 8월 물가상승률은 전기·수도·교육비 보조정책에 일부 기인

- '21년 4분기 2%대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세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식료품 및 음식 가격 상승 등으로 '22.1월 3%를 초과

- (근원물가) 신선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Core inflation rate)는 '22.1월 0.52%로 직전분기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단위: %)

기간	2019	2020	2021										2022
			3	4	5	6	7	8	9	10	11	12	1
소비자물가	0.71	-0.90	-0.08	3.41	2.44	1.25	0.45	-0.02	1.68	2.38	2.71	2.17	3.23
근원물가	0.52	0.29	0.09	0.30	0.49	0.52	0.14	0.07	0.19	0.21	0.29	0.29	0.52

자료: 무역경제지표국

□ 수출입

- '21년 수출은 전년대비 17.10% 증가한 2,712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9.78% 증가한 2,676억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최대 실적으로 나타남

(단위: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2017	2,366		2,215		151
2018	2,530	6.93	2,482	12.05	48
2019	2,463	-2.65	2,363	-4.79	100
2020	2,316	-5.97	2,062	-12.74	254
2021	2,712	17.10	2,676	29.7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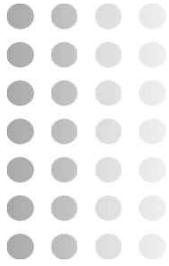
자료: 중앙은행

□ 관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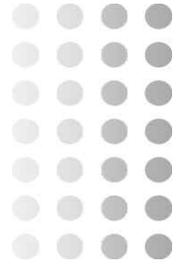
- 노동부: www.mol.go.th

(문 의)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경관 김영임
(연락처) 66-2-247-7537, yikim22@mofa.go.kr

* 제출일: '22.3.4.



37. 터키



국 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언 어	터키어	
면 적	78.6만 km ²	
인 구	8,556만 명	
수 도	앙카라(Ankara)	
주 요 도 시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밀, 부르사, 안탈라 등	
종 교	이슬람교 90% 이상(수니파 다수), 기타	
교 육	초중고등(12년 의무교육제도 4+4+4시스템)	
화 폐 단 위	터키 리라(TL)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7,201억 달러 (출처: 세계은행)
	1인당 GDP	8,538달러 (출처: 세계은행)
	GDP성장률	9.1%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2,714억 달러 수 입 2,252억 달러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11.4%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17.14% (출처: 통계청)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tur-ankara.mofa.go.kr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을 최초로 입법한 이래, 호주, 영국 등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터키에서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제기

2) 발전과정

- 1936년 제정된 구 노동법에 근거가 명시되었으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다가 1951년 시행령 제정으로 발효
- 1951~1967년 주별 최저임금제를 시행, 1966년 모든 주에서 시행
- 1982년 개정 헌법에 근로자와 공무원의 최저임금 규정
- 2003년 노동법 개정으로 현 최저임금제도를 확정하고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를 노동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규정

2 관련 법

- 노동법 제39조(No. 4857, 2003.6.10.)
- 최저임금 시행령('04.1.8.)

3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고용계약에 따른 모든 근로자 및 모든 사용자
- 적용 제외
 - 없음(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

□ 특례 대상

- ‘석탄 및 갈탄 채굴업’의 최저임금은 ‘석탄 법’에 의해 법정 최저임금의 최소 2배로 규정,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2배 이상으로 결정
 - ‘22년 기준 광산업 종사자 최저임금은 월 8,506.8TL
- 정식 취업자가 아닌 견습생(학생)은 생활수당을 제외한 실수령 최저임금액의 30%를 임금으로 지급
 - 견습생 범위의 근로자는 일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공분야에 따라, 졸업 시 필수조건으로 견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학생근로자에 해당
-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근로소득 납세액의 본인부담분 감액 적용
 - 감액 규모는 갱신되는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2년 감액분은 아래와 같음
 - ① 1등급 장애인(장애율 80% 이상): 월 300TL
 - ② 2등급 장애인(장애율 60~79%): 월 175TL
 - ③ 3등급 장애인(장애율 40~59%): 월 75TL

Ⅱ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최저임금산정위원회(비상설기구)

- 구성: 총 15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임명)
 - 노동부 2명, 국가통계원 1명, 재무부 1명, 개발부 1명
 -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을 보유한 노동조합 대표 5명
 -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을 보유한 사용자단체 대표 5명
- 기능: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 최소 2년에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매년 12월에 열림

2) 결정방법 및 절차

- 15명 위원 중 최소 10명 이상 위원 참석 시 개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득표수가 같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최저임금산정위원회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정 내용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효력 발생

3) 결정기준

- 근로자의 필수불가결한 1일 최저생계비(식료품, 주택, 의류, 보건, 교통, 문화비 등)를 충족시키는 생계비('04.8.1.자 시행령)
 - 당해년도의 소비자물가 인상률(물가지수),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도 기준에 포함
- 심의 참고자료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당해년도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지표가 활용되며, 최저임금산정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 및 대학과 협업이 가능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4) 결정단위

- 일급 단위(1일 7.5시간 근로 기준)
 - 월 단위로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1일 7.5시간)의 경우 일급에 30일치를 월급으로 지급
 - 풀타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급에서 시급으로 계산(일 7.5시간)하여 지급

5)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자료는 비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수당*
 - * 연료수당, 중식수당, 명절수당, 자녀학비 등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생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 수당, 성과급, 현물급여
 - * 최저임금과 함께 기혼 여부 및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용자 부담분 세금을 인하여 지급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1주 45시간(통상)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는(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최소 24시간의 유급휴가를 얻을 자격을 가지며,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
 - 노동부에서 최저월급을 월 30일 기준으로 발표
 - ※ 노동법 No. 4857 제46조 “노동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법정 주휴일 이전에 근무한 경우, 7일의 기간 내에 중단 없이 최소 24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해당 휴일의 경우 근로의무 없이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 '13년까지 16세 이상과 이하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였으나, '14년 시행령 개정으로 연령별 최저임금제도 폐지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 방법
 - 관보를 통해 일급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일급 기준으로 고시하며, 노동부에서 최저생활수당·소득세 등과 함께 산출하여 월 기준 최저임금을 별도로 고시함
 - 1일 7.5시간 근로 기준, 월 30일 근로 기준

- ▶ '21.12.17. 관보
- '21.12.4.~16.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된 최저임금산정위원회 회의 결과, 참여자 전원동의로 '22년(1.1.~12.31.) 1일 기준 최저임금은 166.80TL로 정한다.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최저임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공익광고 방영 및 홍보자료 배포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가족고용사회보장부 산하 지도감독청
 - 지도감독청이 사업장들에 대해 정기 및 불시 교육 및 감독
 - 터키 실제 실업률이 사실상 20%(공식 발표 실업률은 10% 내외)를 상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반 신고율이 높지 않음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불한 사용자에게는 '22년 1인당 매월 429TL의 행정벌금(과태료) 부과
 - '20년 289TL → '21년 315TL(9.1% ↑) → '22년 429TL(36.2% ↑)

2) 형벌 규정

-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근로자는 다른 사유와 관계없이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과 함께 퇴직금도 요구 가능
 - 노동법상 일반 근로자가 희망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
- 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용자는 판결에 따라 최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3) 사법적 권리구제

- 1950년 「노동법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노동법원(특별법원)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와 노사분쟁 해결을 담당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일급 기준 166.80TL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 '05~'15년 평균상승률은 5% 내외였으나 '16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단위: 월급, TL, %)

연도		최저임금(25.5일치 임금)	상승률
2022	연중	4,253	18.9
2021	연중	3,577.5	21.6
2020	연중	2,943	15.0
2019	연중	2,558.4	26.1
2018	연중	2,029.5	14.2
2017	연중	1,777.5	7.9
2016	연중	1,647	29.4
2015	하반기	1,273	6.0
	상반기	1,201	5.9
2014	하반기	1,134	5.9
	상반기	1,071	4.8
2013	하반기	1,021.5	4.4
	상반기	978.6	

- '07~'16년 물가인상률의 반영을 위해 연2회 결정했으나 '16년부터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임금으로 결정
- '14년부터 청소년(16세 미만)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13上 839.1, '13下 877.5)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근 현안 및 이슈

- 최저임금산정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구성되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
 - 정부 5인, 사용자 5인, 근로자 5인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 구조에서 10인 이상의 참여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이상, 근로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대두

- '22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8.9% 증가되었지만 실질임금은 '21년에 비해 낮음

○ 최저임금과 더불어 급여 인상 등을 통하여 실질임금을 높이려고 노력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실업률

- '22년 경제성장, 인프라 사업과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한 고용증가가 가속화되어 127만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실업률이 '20년 13.2% → '22년 12% 감소가 예측됨

관련 홈페이지

○ 가족노동사회보장부 www.aile.gov.tr

○ 사회보장청 www.sgk.gov.tr

(문 의) 주터키대사관 조민경 실무관

(연락처) +90 312-468-4822(106), mkcho22@mofa.go.kr

* 제출일: '22.3.29.

38. 필리핀

국 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언 어	타갈로그어(Tagalog), 영어	
면 적	30.0만 km ²	
인 구	1억 1,200만 명	
수 도	마닐라(Manila)	
주 요 도 시	마닐라, 세부, 다바오 등	
종 교	가톨릭교(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교 육	12학년	
화 폐 단 위	필리핀 페소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3,754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3,628달러 (출처: 세계은행)
	GDP성장률	5.6% (출처: 통계청)
	교 역	1,550억 달러(2020)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6.6%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4.5% (출처: 중앙은행)
대 사 관 웹 사 이 트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서 출발
 - 정당한 근로자 몫에 대한 보장, 경제성장 결과의 공유와 산업의 전국 분산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추진

□ 발전과정

- Quirino 정부의 첫 최저임금제도(RA 602) 마련(1951.4.6.)
 - 임금위원회(Wage Board)를 설치하고 농업·비농업으로 분류하여 이원화된 최저임금 고시
- 임금현실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 RA 6727): 1989~현재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NWPC)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지역사무소격인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RTWPB)가 각 지역에 적합한 최저임금 마련
 - 국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별화

2 관련 법

- 임금현실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 RA 6727)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
- 지방소규모기업법(Barangay Micro Enterprises Act(BMBEs), RA 9178)
 -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
- 국내근로자법(Domestic Workers Act, RA 10361)
 - 가사도우미, 정원사, 요리사, 세탁부 등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민간부문 기업·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별도의 법령 적용
-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적용 제외

- 자연재해 영향을 받은 사업장
- 지방 소규모 사업장(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s)
 - 지방정부 재무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소득세 면제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산규모 300만 페소 이하의 소기업
- 도매업, 서비스업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 지역임금생산성이사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사업체
- 경영상 손실을 입은 사업장(distressed establishment)
 - 법인(corporation/corporative)이 자본부족 또는 1년 회계기준 손실 발생 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비법인(single proprietorship/partnership)이 2년 회계기준 손실 발생 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비주식, 비영리단체가 2년 회계기준 손실 발생 시, 손실 정도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법정관리/청산에 들어간 은행

특례 대상

- 견습생(Apprentices and Learners) 등은 최저임금의 75% 이하를 지급해서는 안 됨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 노동부 부설기관으로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 마련과 기술적·행정적 관리 감독
- 위원회 구성(7명)
 - 의장은 노동고용부 장관이, 부의장은 국가경제개발청 장관이 맡음
 - 근로자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사용자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NWPC 사무국 총장 1명
- *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후보자 중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

□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TWPB)

-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 위원회 구성(7명)
 - 의장은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장이, 부의장은 국가경제개발청 지부장, 교역산업부 지부장이 맡음
 - 근로자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사용자측 2명(대통령 임명*, 5년 임기)
- *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후보자 중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

2) 결정방법 및 절차

□ 결정방법

- RTWPB에서 다수결에 의해 지역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NWPC에서 검토한 후 임금법령(Wage Order) 발령

□ 결정과정

절차	담당기관 및 역할
1. 최저임금 검토 개시	- 두 가지 경우 발안 · RTWPB의 자발적 결정 또는 NWPC의 지시 · RTWPB의 청원 접수, 15일 이내에 검토
2. 청원 접수 사실 및 공청회 실시에 대한 공지	- RTWPB에서 공청회 개최 15일 전에 공고
3. 청원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 접수	- 어떤 단체도 RTWPB에 반대 청원 제기 가능
4. 공청회(Public Hearing) 및 토론(Consultation)	- RTWPB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 반대의견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공청회 개최
5. 최저임금 결정	- NWPC가 RTWPB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 라인 발령 - RTWPB에서 새로운 임금명령(Wage Order) 마련 - NWPC는 RTWPB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진행절차 등을 검토
6. 임금명령 시행세칙 마련	- RTWPB는 새로운 임금명령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NWPC의 권고를 받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RTWPB와 노동부장관 서명
7. 임금명령 및 시행세칙 발령	- RTWPB에서 최종 공청회 30일 이내에 임금명령 발령
8. 임금명령에 대한 항소 접수	- 공표 후 10일 이내에 RTWPB에 제기 가능 - NWPC에서 60일 내로 항소 내용의 인용 여부 결정
9. 적용면제	- 임금명령에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제기, 적용면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측은 청원 가능 - RTWPB에서 적용면제 검토 및 결정
10. 임금명령 갱신	- 임금명령 발효 후 12개월 내에는 원칙적으로 청원 제기 불가

3) 갱신주기 및 결정 · 시행시기

□ 갱신·결정시기

- 최저임금 결정 이후 12개월 이내 인상 청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 석유제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가격 급등 등의 강력한 환경변화 발생이 RTWPB에 의해 판단되고 NWPC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이러한 환경변화 시 NWPC에서는 기발령한 Wage Order를 검토
- RTWPB에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시행시기

- 공식적으로 게시된 후 15일 이후부터 시행

4)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임금수준, 생산성(productivity), 지역별·산업별 기타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RTWPB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
 - 생활임금 수요(Demand for living wage):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임금조정, 생계비 지수 변화, 근로자 및 가족의 필요, 생활수준 개선
 - 지불능력(capacity to pay): 사측의 자본투자에 대한 적정보수(fair return of the capital invest), 사측의 임금지불능력(capacity to pay of employers), 생산성
 - 비교가능한 임금·소득(comparable wages and incomes): 일반적 임금수준(prevaling wage level)
 - 사회경제발전의 필요 요건(requiremen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지방 투자촉진, 일자리창출 및 가계 수입 효과, 수입과 부의 동등한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 심의 참고자료

- 빈곤선(국가통계조정의회, NSCB)
- 일반(평균)임금(Labor Force Survey 통해 도출)
- 사회경제지표(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 고용률, 지역내총생산 등)
 - ※ 통계청, 재무부 혹은 노동부, 기타 연구소 등의 자료 활용

5) 결정단위

- 일급 단위
 - ※ 월급 및 연봉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 판단
- 가사근로자(Domestic workers)는 월급으로 결정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외부방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RTWPB는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근로자 그룹, 사용자 그룹, 지자체 공무원,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 RTWPB는 공청회 관련 일자, 장소, 시간과 목적 등을 공청회 10일 전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와 SNS 계정, 지역신문에 게재

□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공청회 관련 회의록 등은 요청에 의해 공개
- 위원회 최종 결정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정사항은 임금법령 절차 규정에 따라 공포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최저임금은 기본임금(Basic Wage)으로 구성
 - 기본임금은 근로자가 일상 근로일 또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인센티브, 보너스, 초과근무수당, 이익공유금(Profit sharing Payments), 13월의 월급(13th Month Payment) 등 정규 급여(Regular Salary)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 급여
 - ※ 노동법상 본 연봉의 1/12을 연말 보너스 지급해야 함
- 유급주휴(주휴수당): 있음
 - 정직원 수 10명 이하 소규모 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정규 공휴일에도 일급과 동일한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함
 - ※ Presidential Decree No.441, BookIII, Title II, ChapterIII, Article 94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은 없고 지역내에서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나누고 RTWPB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각 지역 내에서도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함
 - ※ 농업, 비농업, 제조업, 사립 병원, 도매업, 가사근로자 등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RTWPB에서 임금법령을 게재
 - 지역의 최소 1개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이후 효력 발생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NWPC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안내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지역사무소
 - 최저임금 이행은 노동고용부의 지역사무소가 집행하며 RTWPB에서 이를 관리 감독
 - 최저임금 관련 분쟁(Complaints)은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에 제기되고 30일 동안의 의무적인 조정기간(Conciliation and Mediation Process)을 거침
- 국가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노동고용부 소속 준사법기관으로 최저임금 관련 분쟁 해결 담당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분쟁조정기간

- 최저임금 관련 분쟁은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하며, 관련 분쟁은 30일 조정기간을 거침
 - 최저임금 위반 시 피해근로자는 국립조정이사회(NCMB)에 권리구제를 신청 → NCMB 화해·조정 →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건은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C)로 이첩되어 담당판사가 결정

□ 사법적 권리구제

- 조정 실패 시 사건은 NLRC로 이송되며, 최종 위법 판결 시 사용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2.5만~10만 페소 벌금 또는 2~4년 징역에 처할 수 있음(국령 6727호)
- 사용자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도 발생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NCR(Natioanl Capital Resion, 수도 마닐라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기준 '18.11월 고시된 최저임금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NCR 기준)

(단위: 페소)

구분	2013~2014	2015	2016	2017	2018~현재
시 급	55.9	57.8	59.1	61.7	64.8
일 급	466	481	491	512	537
시행일	2013.10.4.	2015.4.4.	2016.6.2.	2017.10.5.	2018.11.22.

2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임금현실화법(RA 6727)과 관련한 개정 동향은 없음
-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은 '20.3~5월 17.7%까지 기록했지만 최근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21.12월 6.6%까지 하락
- 국제유가,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8년 이후 줄곧 인상된 바 없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노동계를 중심으로 NCR 기준 현재 일급 500~537페소에서 750페소까지 인상 필요성 제기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2021년 GDP 성장률: 5.6%(통계청)
 - 아시아개발은행은 '22년 필리핀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하며 경제성장률 6.0% 예상('21.9월 기준 5.5%에서 상향 조정)
-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www.nwpc.dole.gov.ph

(문 의) 주필리핀대사관 이영신 1등 서기관

(연락처) +63-2-8856-9210, yslee09@mofa.go.kr

* 제출일: '22.3.7.

오세아니아



39. 뉴질랜드

국	명	뉴질랜드(New zealand)				
언	어	영어, 마오리어				
면	적	26만 km ²				
인	구	513만 명				
수	도	웰링턴(wellington)				
주	요	도	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종	교	기독교(37.0%), 힌두교(2.6%), 이슬람교(1.3%), 불교(1.1%)				
교	육	만 6세~16세 의무교육(primary, intermediate, secondary)				
화	폐	단	위	뉴질랜드 달러(NZ\$)		
주요 경제 지표 (2021)	G D P	1,778억 달러	(출처: 통계청)			
	1인당 GDP	34,780 달러	(출처: 통계청)			
	GDP성장률	4.9%	(출처: 통계청)			
	교	역	수 출 424억 달러 수 입 469억 달러	(출처: 통계청)		
	실	업	률	3.2%	(출처: 통계청)	
	물	가	상	승	률	5.9%
대	사	관	웹	사이트	https://www.overseas.mofa.go.kr/nz-k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1890년 호주에서 해양근로자 투쟁(1890 Maritime Strike*)이 발생하자 뉴질랜드 해양 근로자들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동조파업 실시
 - * Maritime Strike: 1890년 호주 증기선 사용자 연합(Steamship Owners' Association)이 해기사 근로자 연합(Marine Officers' Association)과의 임금 협상을 거부하자 투쟁 발생
- 근로자 파업으로 인해 교역과 교통네트워크가 붕괴되자 정부는 노사분쟁에 대한 해법으로 1894년 「산업조정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을 제정하고, 국가중재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2) 발전과정

- 국가중재재판소(National arbitration court)에 제소 시 소송당사자인 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해당 업종 내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과 사용자를 대표
 - 지역조정위원회(Local conciliation board)에서 1차 조정을 실시하며, 실패 시 국가중재재판소에서 진행
 - 국가중재재판소는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있으며, 노사 양측 모두 판결에 구속되므로 대부분 지역조정위원회에서 합의
 - ※ 조정 및 중재기간 중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불법
- 1936년 「산업조정중재법」 개정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은 폐지되었으며, 국가중재재판소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의 70% 수준으로 감액 적용)
 - 특정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닌 모든 21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명령(Order)의 형태로 규정
- 1983년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1983)」을 제정하여 20세 이상 모든 남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
- 1991년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 1991)」을 제정하여 최저임금 결정 기관을 내각으로 변경
- 1994년 16~19세 근로자에 대한 청소년 최저임금법 도입

- '03년 훈련생(training) 최저임금 도입
- '08년 「최저임금법(Minimum Wage(New Entrants)Amendment Act)」을 제정하여 청소년 및 훈련생 등 신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적용

2 | 관련 법

- 1894년 「산업조정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 1983년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1983)」
- 2000년 「고용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 감독 관련 사항 규정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16세 이상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외국인 동일 적용)

적용 제외

- 「최저임금법」 제9조에서 정한 다음의 근로자

- ① 「1938년 마오리 거주 개정법(Maori Housing Amendment Act 1938)」, 「1981년 뉴질랜드 철도공사법(New Zealand Railways Corporation Act 1981)」, 「1971년 방위법(Defence Act 1971)」, 「1959년 우체국법(Post Office Act 1959)」, 「1962년 국가공무법(State Services Act 1962)」, 또는 기타 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수습계약의 적용을 받는 수습사원
- ② 수감자(inmates of any charitable institution)
- ③ 「가정·공동체 지원(출장비 지급)을 위한 법률(Home and Community Support (Payment for Travel Between Clients) Settlement Act 2016)」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이 아래의 필요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제외허가를 발급한 경우

- 장애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격하고 명백하게 제한될 것
-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최저임금 적용 특례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것

□ 특례 대상

- 아래의 요건의 하나라도 충족하는 신규근로자(i ~ iii) 및 훈련생 근로자(iv)는 성인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특별 최저임금으로 별도 고시

- i)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16~17세 근로자
- ii) 6개월 이상 사회보장기금을 받고, 사회보장기금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의 업장(현 근무지 포함)에서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19세 근로자
- iii) 고용계약에 따라 연간 40학점 이상의 산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16~19세 근로자
- iv) 고용계약에 따라 연간 60학점 이상의 산업훈련을 받아야 하는 20세 이상 근로자
 - 상기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경우 성인 최저임금을 적용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내각

- 별도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내각에서 의결로 결정
 - 다만 의회에서 야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의를 하기도 하며, 의회 내 감사원장(Auditor - General) 사무국이 특정 직업(교사 등)의 최저임금 및 급여 평가 등을 시행하기도 함

2) 결정방법 및 절차

- 노사관계안전장관(Minister for 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은 매년 12.31. 최저임금 검토보고서(Minimum wage Review)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권고안을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의회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매년 4월 변경된 최저임금을 발효
 - 최저임금 검토보고서는 기업혁신고용부에서 작성하며, 기업협회·노동조합·관련 정부 기관(재무부, 사회개발부 등) 및 관련 비정부기관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매년 12.31.까지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 시행시기: 매년 4.1.

4) 결정기준

- 결정기준
 - 소비자물가지수 등 인플레이션, 임금상승률, 고용성장 또는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저임금근로자 소득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영향, 실업률도 결정기준으로 검토
- 심의 참고자료
 - 기업혁신고용부의 최저임금 검토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노동시장(소득) 통계, △재무부의 재정정보고서에 담겨있는 임금성장 통계 등을 참고
 - 통계청의 노동시장(소득) 통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과의 비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근로자 수, 고용 저하 효과, 전반적 임금 상승에 미치는 효과, 인플레이션 및 국내총생산에 미칠 영향 등
 - 재무부의 임금성장 통계: 산업별·지역별 임금성장 영향 등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내각의 최저임금 의결과정은 외부방청 및 공개가 허용되지 않으나, 의결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혁신고용부의 최저임금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함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숙소(board or lodging)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을 경우 그 공제금액
 - 공제되는 금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를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식비는 임금의 15%, 숙박비는 임금의 5% 이상을 공제할 수 없음
 - ※ 식사 또는 숙소비용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과 공제액 차감 후 지급되는 현금 급여액의 총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됨
- 근로와 관계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해당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공제금액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해당 공제 합의는 근로계약과 별도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휴가비(paid annual holidays)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숙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혁신고용부는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개의 급여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초과근무수당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지역별·산업별 구분 적용 없음)
 - 「최저임금법」 제4(A)조에 따라 신규근로자 및 훈련생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대비 20% 감액 적용
 - 신규근로자와 훈련생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각각 따로 고시하나, 제도 도입('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동일한 인상률로 결정됨

< 신규 근로자 >	< 훈련생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사용자와 함께 6개월 미만 근무한 16세 및 17세 근로자 - 18세 및 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사회보장기금 수급 • 1명의 사용자에게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현재 근무 기간 6개월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에 따라 1년에 최소 40학점 이상의 산업연수를 받아야 하는 16세에서 19세 사이 근로자 - 고용계약에 따라 1년에 최소 60학점 이상의 산업연수를 받아야 하는 20세 이상 근로자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노사관계안전장관이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문 형식으로 고시
 - 발표문에는 최저임금액과 함께 일자리에 미칠 영향, 국내총생산에 미칠 영향과 실업률 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고용청(Employment New Zealand) 홈페이지에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구제 방법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
 - 이외에도 각 산업계 협회와 기업혁신고용부 등 정부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홍보

III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혁신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진상을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다양한 조치 할 수 있음

2 |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 행정벌 규정

- 근로감독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이행서약(enforceable undertaking), 시정조치(improvement notice)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관련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 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법인인은 2만 NZ\$, △개인인은 1만 NZ\$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7.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최저임금을 포함한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6~24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Stand-down 제도를 시행함

□ 형벌 규정

-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금전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함
- '16년부터 임금 착취 등 심각한 위반사항일 경우 벌금이, 개인은 1만 NZ\$에서 최대 5만 NZ\$로 증액, 법인은 2만 NZ\$에서 최대 10만 NZ\$로 증액 또는 경제적 이익의 3배로 강화

□ 사법적 권리구제

-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은 고용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전문 사법 기관으로써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관련 심각한 위반사항은 고용법원에 제소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성인 21.20NZ\$, 신규근로자 및 훈련생 16.96NZ\$
- 인플레이션, 임금성장률,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코로나19 등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단위: 시급, NZ\$)

적용시기	성인		신규 근로자 및 훈련생	
	시급	인상률	시급	인상률
2022. 4. 1	21.20	6.0%	16.96	6.0%
2021. 4. 1	20.00	5.8%	16.00	5.8%
2020. 4. 1	18.90	6.8%	15.12	6.8%
2019. 4. 1	17.70	7.3%	14.16	7.3%
2018. 4. 1	16.50	4.8%	13.20	4.8%
2017. 4. 1	15.75	3.3%	12.60	3.3%
2016. 4. 1	15.25	3.4%	12.20	3.4%
2015. 4. 1	14.75	3.5%	11.80	3.5%
2014. 4. 1	14.25	3.6%	11.40	3.6%
2013. 4. 1	13.75		11.00	

출처: 기업혁신고용부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수혜 근로자는 30만 명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주 40시간)의 주당 소득은 48NZ\$, 연간 소득은 2,500NZ\$ 증가 예상
 - '21년 16~64세 최저임금 근로자는 1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8% 차지
- 정부(노동당)는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 최저임금 주요 영향(출처: 기업혁신고용부)

지 표	내 용
성인 최저임금(시급)	21.20NZ\$
성인 최저임금(주급) (gross weekly income)	848NZ\$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6.0%
평균(중간값)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	76.4%
구직자 수당 대비 최저임금 비율	269.4%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접적 영향 받는 근로자 수	30만 명
고용 저하 효과로 영향 받는 근로자 수	3,900~6,400명
거시적 임금 상승	2.78억~3.89억 NZ\$
물가상승률/GDP 상승효과	0.09~0.12%
정부의 연간 추가 비용	4.3천만~5.3천만 NZ\$

□ 최근 현안 및 이슈

- Ardern 총리는 '18~'21년 최저임금을 6% 내외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여 선거공약 달성('21년까지 최저임금 20NZ\$)
- '22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야당 및 기업 인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사단체 (Council of Trade Unions)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그간 요구해 온 생활임금* 수준(22.75NZ\$)으로 인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함
 - *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뉴질랜드 가족·사회정책 센터(New Zealand Family Centre Social Policy Unit)에서 매년 독립적으로 산정

□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 경제 지표(단위: %)						
GDP 성장률	5.1	0.8	4.9	2.2	2.3	2.3
실업률	4.0	3.2	3.3	3.6	3.8	4.1
물가상승률	3.3	5.1	3.1	2.7	2.4	2.2
GDP 대비 경상수지	-3.3	-5.8	-5.4	-4.8	-4.4	-4.0
2. 재정 전망(단위: 억 NZ\$)						
재정수지 ¹	-46	-208	-8	21	59	82
순부채	1,021	1,363	1,579	1,655	1,506	1,379
GDP 대비 부채비율(%)	(30.1)	(37.6)	(40.1)	(39.9)	(34.6)	(30.2)
순자산	1,515	1,273	1,314	1,393	1,515	1,664

재정수지(OBEGAL: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 관련 홈페이지

- 노동부 www.employment.govt.nz
- 고용관계국 www.era.govt.nz

(문 의) 주뉴질랜드대사관 민경진 전문관

(연락처) +6444739073, researcher2-nz@mofa.go.kr

* 제출일: '22.3.7.

40. 호주

국명	커먼웰스 오브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	
언어	영어	
면적	8백만 km ²	
인구	2.5천만 명	
수도	캔버라(Canberra)	
주요 도시	시드니(Sydney), 멜번(Melbourne), 브리스번(Brisbane), 퍼스(Perth) 등 * 6개의 자치주와 2개의 특별구로 연방 구성	
종교	기독교 58%, 무교 33%, 이슬람교 3%, 불교 3%, 힌두교 2% 등	
교육	의무교육: 6~15세(일부 주는 6~16세) * 초등학교(Primary School): 1~6학년(일부 주는 1~7학년) * 중학교(Secondary School): 7~10학년(일부 주는 7~11학년) * 고등학교(Senior Secondary School 혹은 College): 11~12학년	
화폐단위	호주 달러(Australian Dollar)	
주요 경제 지표 (2021)	GDP	1조 6,100억 달러 (출처: IMF)
	1인당 GDP	62,620달러 (출처: IMF)
	GDP성장률	3.5% (출처: IMF)
	교역	수출 4,590억 호주 달러 (출처: 통계청) 수입 3,425억 호주 달러
	실업률	4.2% (2022)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3.5%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1) 도입배경

- 전통적으로 호주는 산별 노사관계가 발달하여 국가최저임금 없이 산별 노사협약으로 해당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규율
 - 산별 노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취약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됨
 - 빅토리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

2) 발전과정

□ 주(州) 단위 최저임금제도 도입

- 1896년 빅토리아주 「공장법」(The Factories Act) 제정
 - 최저임금제도의 근거 마련 및 6개 제조업*에 Wage Board 설치
 - * 제빵, 신발·의류·가구 제조업 등
 - 1902년 New South Wales주, Western Australia주로 확대

□ 산업별 최저임금제도(Award) 도입

- 1904년 「조정중재법」(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제정
 - 연방조정중재법원이 산업별로 체결한 노사협약(Award)을 승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 ※ 하베스터 판결(Harvester Judgment, 1907)
 - 연방조정중재법원은 ‘남성 가장과 부인 및 세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개념적 최저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생계임금을 정한다.’고 판시
 - 판결 이후 임금이 포함된 노사협약을 연방조정중재법원으로부터 공인받도록 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
 - 1956년 「조정중재법」 개정으로 연방조정중재법원에서 분리된 연방조정중재위원회가 산업별 최저임금(Award) 공인업무를 담당

□ 국가최저임금제도 도입

- 1966년 산업별 최저임금제도(Award)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최저임금 최초 도입
- 1996년 「사업장노사관계법」(Workplace Relation Act)을 제정하여 개별계약제도(노조 가입 없이 근로자 개인과 고용계약 체결)를 도입하는 등 규제 완화
- '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제정
 -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 산하의 전문가 패널(Minimum Wage Panel)이 최저임금을 결정
 - 국가최저임금 결정 외에 Award의 현대화(Award modernization) 작업을 추진하여 Award가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기능하도록 조치

2 | 관련 법

-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 제2편 근로조건(Term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중 제3장 산업별 최저임금(Modern awards), 제4장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s), 제6장 최저임금(Minimum wage)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적용 대상

- 국가시스템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법인, 연방정부, 개인 등 모든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
 - ※ 사용자가 동시에 근로자인 자영업자(sole trader)나, 자영업자가 합작 설립한 법인(2명 이상이 근로하고 있으나, 동 근로자들이 기업에 대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여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은 주정부 최저 임금제도를 적용

□ 적용 제외

- 주법에 따라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주정부, 공공기관 등) 및 소속 근로자
- 주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과 그 기관의 완전소유(전액 출자 및 완전 통제) 자회사 및 소속 근로자

- 주법에서 국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거나, 주정부 장관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 및 국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

□ 특례 대상

- 장애인, 21세 미만 청소년,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은 특별 최저임금으로 별도 고시

▶ 특별 국가최저임금(1)

-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

▶ 특별 국가최저임금(2)

-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수준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능력(%)에 따라 국가최저임금 감액 적용

▶ 특별 국가최저임금(3)

- 21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연령에 따라 국가최저임금 감액 적용

▶ 특별 국가최저임금(4)

- 21세 미만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숙련도(연차)에 따라 국가최저임금 감액 적용

▶ 특별 국가최저임금(5)

- 훈련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학력, 훈련기간에 따라 국가최저임금 감액 적용

-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는 국가최저임금의 25%를 가산(Casual loading: 임시직 수당)하여 지급하도록 고시

< 호주의 고용형태 >

고용 형태	정규직	full-time	유급휴가(병가) 및 유급휴일 규정 적용
		part-time	유급휴가(병가) 및 유급휴일 규정 적용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임시직(Casual)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 규정 미적용 - 단 시급의 25%를 가산하여 지급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공정근로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Minimum Wage Panel)

- 패널은 대표 1인, 상임 3인, 비상임 3인(산업계, 노동계, 사회정책, 경제계 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정부에서 임명)
 - 전문가패널의 대표는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이 겸직

- 상임은 공정근로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므로 정치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정성과 적정성 유지
- 비상임은 5년 임기의 외부전문가그룹(5명) 중에서 위원장이 매년 선정
 - ※ 산업계, 노동계, 경제계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으나, 노사단체가 직접 상임·비상임 패널로 참여하거나 추천할 권한이 없음

2) 결정방법 및 절차

□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 노사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는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서(submission)를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3월)
- 제출된 초안에 대해 제출단체 간 회람 후 추가 의견 제출(4월)
- 전문가패널 주관 공청회 개최(5월)
 -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나 기관이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함
- 전문가패널의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6월 초)
 -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
- 전문가패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보고서 형태의 결정서를 발간하는데, 동 결정서에 결정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기록
 - 관련 통계 등 각종 근거자료,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주요 고려지표 등을 제시
- 금년도 7.1.부터 차년도 6.30.까지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시행

□ 산업별 최저임금(Modern awards)

- 기본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해당하므로 전국 단위의 산별 노사가 먼저 합의한 후 공정근로위원회에 합의안 제출
- 공정근로위원회는 노사합의의 진정성, 공정근로법 위반 여부,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요구 또는 승인 여부 결정
 - ※ 산업별 최저임금은 결정 즉시 공표해야 하며, 승인일 이후 첫 번째 급여지급일부터 적용
- '17년도까지는 4년마다 모든 산업별 최저임금을 심층 검토하였으나,
 - '18년 법 개정(Fair Work Reform Act 2018)하여 국가최저임금 인상 등 사유 발생 시 수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

□ 기업별 협약(Enterprise agreements)

- 협상 개시 전(Prior to bargaining):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협상 시작 공지와 관련 용어 및 절차 등 설명
- 협상 개시(Commence bargaining): 사용자는 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에게 제출
 - * 산업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협약의 범위, 유효기간, 용어 정의, 분쟁 조정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 포함
- 협상 진전(Developing the terms of the Agreement): 협약은 협약의 범위, 유효기간, 용어 정의, 분쟁조정제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포함
- 표결(Vote on the Agreement): 사용자는 표결 8일 전에 협상이 완료된 협약안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표결방식 등을 공지
- 협약 제출: 표결을 통과한 협약은 체결 후 14일 이내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 첨부)
 - ※ 기업별 협약의 표결 관련 절차, 정족수 등은 공정근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협약 승인: 공정근로위원회는 협약 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며, 협약은 승인 후 7일부터 효력이 발생
 - * 사용자의 억압 없이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는지 여부, 공정근로법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 기준 하회 여부, 기타 불법적 요소 포함 여부 등

3) 갱신 · 결정 ·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결정시기: 전문가 패널의 내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통상 6월경)

□ 시행시기: 금년도 7.1. ~ 차년도 6.30.

※ 호주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저임금도 매년 7.1.자로 갱신

4) 결정기준

□ 결정기준

- 경제적·사회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적 고려: 경제성장률, 기업수익성, 기업의 생성·소멸률,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등

- 사회적 고려: 저소득 근로자의 필요, 소득분배 상황 및 근로자 임금 수준,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 기타: 장기적인 안정성, 지속가능성

□ 심의 참고자료

○ 통계자료

- 국내 경제, 생산성, 기업경쟁력,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동향, 생계비용, 육아비용,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등 통계자료 활용
-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생계비 관련 통계산출
 - 생계비 및 가구당 소득은 단신가구, 편부·편모와 1~2인 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와 1~2인 자녀, 외벌이 부부와 1~2인 자녀 가구로 나누어 소득통계 작성
 - 소득구간별 가계부채, 지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금융 압박정도(Financial Stress)를 수치화

○ 연구용역

- 전문가패널은 Minimum wage research group*을 구성,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연구를 직접 수행 또는 타 기관에 위탁

<Minimum wage research group>

공정근로위원회의 Workplace and Economic Research Section(의장)과 호주산업상공회의소, 호주산업그룹, 호주사회복지위원회, 호주노동조합, 연방 및 주정부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산업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특성과 제도의 성과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며, 주요 조사내용은 중소기업의 특성과 관련한 시계열 데이터임

5) 결정단위

○ 시급 및 주급 단위(주단 38시간)로 고시

- ※ 공정근로법 제295조(국가최저임금명령의 내용)은 시급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award free employee)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최저임금의 몇 %)을 명시토록 정하고 있음

6) 결정과정의 공개

□ 외부방청 허용 여부

-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 외에는 외부방청 및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녹취나 속기록 등도 작성하지 않음
 - 공청회 및 최종 결정문 발표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자료공개 여부 및 범위

- 공청회 자료(최저임금 심의 시 노사단체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 자료 등)와 최종 발표문은 모두 공개하나,
 - 일부 비공개회의 자료는 전문가패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정상 근로시간에 지불해야 하는 기본임금
- 임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Casual loading)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인센티브 급여/보너스/특별급여(incentive-based payments and bonuses)
- 추가 부담금(loadings), 금전적 공제금, 비용지원(monetary allowances)
- 숙식비 및 현물급여(an allowances in kind)
- 정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국가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 기업별 최저임금으로 구분

- 최저임금 체계
 - 기업별 협약은 산업별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없으며, 산업별 최저임금은 국가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없음(기업별 협약>산업별 최저임금>국가최저임금)
 - '19년 전체 근로자의 20%가 국가최저임금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40%가 기업별 협약, 40%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 임금 결정 체계 >

결정단위	방 식	결정주체	적용 대상
연 방	국가최저임금	공정근로위원회 (전문가 패널)	Award·협약 비적용 근로자
산업별	산업별 최저임금	전국 단위 노사단체 (공정근로위원회 승인 필요)	공정근로위원회가 승인한 Modern Award가 적용되는 산업 해당 근로자
기업별	기업협약	기업 단위 노사 (노조 또는 근로자집단)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
개인별	근로계약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해당 근로자

1)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 국가최저임금은 산업별 최저임금이나 기업별 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대상
 - 장애인, 청소년, 수습 청소년, 직업훈련생은 특별최저임금으로 고시됨
 -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는 국가최저임금의 25%를 가산(Casual loading: 임시직 수당)하도록 고시

2) 산업별 최저임금(Modern award)

-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함
 - 이 협약에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분쟁해결 절차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포함
- 공정근로위원회의 공인을 받게 되면 법규적 효력을 가짐
- 산업별 최저임금은 기존의 州별·산업별 최저임금을 '09년 공정근로법 제정에 따라 현대화한 것으로 州별 구분을 없애고 전국(연방) 단위의 산업별로 개편
 - 각 산업별 최저임금마다 직종별(업무 내용, 숙련도 등 반영)로 10~14개 정도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음

3) 기업별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Enterprise agreements)

- 기업별 노사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에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4) 지역별 구분

- 서부호주 지역 최저임금은 별도법(Western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적용
 - ※ '21~'22년 서부호주주 성인의 최저임금은 주급 779.0호주달러(시급 20.5호주달러)으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책정
- 국가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주정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근로자, 1인 기업 등)의 경우, 주정부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통상 주정부별 최저임금은 국가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

5) 연령별 구분

- 국가최저임금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별로 별도의 특별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음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고시방법

- 공정근로위원회는 매년 6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가최저임금명령(National Minimum wage Order)을 고시
- 내용
 - 주급(주 38시간 기준)으로 결정하며, 시급 최저임금을 병기
 - 임시직 추가급여는 백분율(25%)로 공시
 - 장애인, 21세 미만 청소년·수습근로자, 훈련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 대상 특별국가 최저임금(Special National Minimum wage)은 별도 고시
 - 산업별 최저임금도 홈페이지에 공표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온라인 홍보
 - Fair Work Infoline, Small Business Helpline, 기관 웹사이트(fairwork.gov.au), Facebook, Twitter, LinkedIn, YouTube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
 -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우수사례(Best Practice Guides), 고용관계 기록 및 장부 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제공 및 국가 최저임금이나 산업별 최저임금에 따른 계산 지원
- 노사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 또는 현장조사 활동 전개
 -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외에도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프랜차이즈 본사, 그 밖에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도 연계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사용자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공정 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이 관장
- 공정근로옴부즈만은 공정근로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정근로위원회 산하 독립적 행정기구로 직원은 약 800명이며 이 중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감독관(Inspector)은 약 200명
- 일반적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감독)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출입권 및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음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행정벌 규정

- 공정근로옴부즈만에 신고가 접수되면 ‘자율적 해결 우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을 지원
 - ‘20~’21 회계연도 기준, 법 위반 신고 후 해결 건수는 18,696건이지만 소송 등을 통해 강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진 경우는 76건으로 대부분 자율적으로 해결

- 자율적 해결에 실패하면 공식적인 조사(Investigation)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Infringement Notice), 이행명령(Compliance Notice), 소송제기(Litigation) 또는 강제개선조치(Enforceable Undertaking) 시행
 - 과태료 부과(Infringement Notice):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또는 임금명세서 (pay slip)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Compliance Notice): 우리나라의 시정명령과 유사, 불이행 시 소송으로 진행됨
 - ※ 사용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정근로옴부즈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더해 법원명령으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2) 형벌 규정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용자에게 대한 형사처벌은 없음

3) 사법적 권리구제

-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 등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송(Litigation) 또는 강제개선조치(Enforceable Undertaking) 등을 추가 시행
 - 소송(Litigation): 사용자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공정근로옴부즈만이 직접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 소송당사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이이만 피해배상액(미지급 임금)은 피해근로자에게 귀속됨(손해전보에 그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음)
 -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민사집행벌(Civil Penalty) 부과
 - 민사집행벌은 일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국고로 귀속되며, 그동안 과태료는 미지급액을 한도로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중대위반에 대한 10배 가중제도를 도입
 - 강제개선조치: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이행토록 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행정조치
 - 미지급 임금의 지급,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외부인에 의한 임금지급 상황 점검 등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1~2022년 최저임금

□ 주급 772.6호주달러(시급 20.33호주달러)

○ '21.6.25. 공정근로위원회는 전년보다 2.5% 인상된 '21.7월~'22.6월 최저임금 발표(주 38시간 근로기준)

- 장애인이면서 ①직종별 최저임금 또는 ②기업, 기관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가 근로역량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을 때는 특별 국가 최저임금 1*(Special national minimum wage 1)을, 일반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 국가 최저임금 2(Special national minimum wage 2)를 적용

* 특별 국가 최저임금 1은 일반 최저임금과 차이가 없음

- 만 21세 미만 청소년은 특별 국가 최저임금 3(Special national minimum wage 3)을 적용

2)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호주달러)

구분	2013년 ('12.7.1~ '13.6.30)	2014년 ('13.7.1~ '14.6.30)	2015년 ('14.7.1~ '15.6.30)	2016년 ('15.7.1~ '16.6.30)	2017년 ('16.7.1~ '17.6.30)	2018년 ('17.7.1~ '18.6.30)	2019년 ('18.7.1~ '19.6.30)	2020년 ('19.7.1~ '20.6.30)	2021년 ('20.7.1~ '21.6.30)	2022년 ('21.7.1~ '22.6.30)
주급	606.40	622.20	640.90	656.90	672.70	694.90	719.20	740.80	753.80	772.60
시급	15.96	16.37	16.87	17.29	17.70	18.29	18.93	19.49	19.84	20.33

출처: 공정근로위원회

회계연도: 당해연도 7.1.~차년도 6.30.

Casual Loading: Casual Worker(임시직근로자)는 최저임금의 25%를 추가 지급

2 | 최근 법·제도 변경사항

□ 최근 5년간(2017~2021) 법령 개정사항

○ 2018년

- 직종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의 매 4년 재검토 의무 폐지
- 가족폭력으로 인한 휴가(무급) 지급 조항 삽입

○ 2020년

- 일부 직군*에 대해 개정 Modern awards 적용하나 문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폭 수정이며 주요 내용의 개정은 없었음

* 알루미늄업, 동물 관련 서비스업, 대학교 근로자 등

3 | 최저임금 관련 동향

1) 최근 현안 및 이슈

□ 독립계약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 대법원 판례

- 사용자와 운전기사(독립계약자)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20년간 일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두고 근로자는 파트너십 계약이었으나, 실제 근로환경은 피고용을 주장(근로계약)하며 국가근로기준(최저임금, 개인연금, 휴가 등) 미지급 임금의 지급요청 소송 제기
- 이에 대법원은 실제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법적 사실만을 근거로 해당 계약을 파트너십 계약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근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 호주운송노동조합 등은 근로계약 시 협상력이 동일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리함에도 파트너십 계약의 체결가능성 등을 법원이 고려치 않았다고 비판

2) 최저임금 관련 경제지표 동향

□ 실업률

- '22.1월 기준,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2%로 이전보다 낮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함
- 고용참여율은 전월대비 0.1%p 증가하여, 전체 고용시장이 소폭 확대
- 다만, 노동시간은 전월대비 8.8% 하락하고, 불완전고용률은 소폭(0.1%p) 증가

구 분	'21.12월	'22.1월	전월 대비 증감	전년동월 대비 증감
실업률	4.2%	4.2%	-	-2.2%p
불완전고용률*	6.6%	6.7%	0.1%p	-1.6%p
노동참가율**	66.1%	66.2%	-	0.1%p

자료: 통계청

* 불완전고용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제인구 중 원하는 수준의 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 중인 상태의 고용

** 노동참가율: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근로 의지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비율

□ 물가

- '21년 4분기 소비자물가는 3.5% 상승
-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은 경기회복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문제로 인한 공급부족이 상승의 주요 원인
-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이 경기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고 언급

3) 관련 홈페이지 및 참고사항 등

- 공정근로위원회 www.fwc.gov.au
- 공정근로옴부즈맨 www.fairwork.gov.au

(문 의) 주호주대사관 조성태 경제·통상 연구원
(연락처) +61-2-6270-4148, biz-au@mofa.go.kr

* 제출일: '22.3.3.

아프리카



41.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명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언어	영어 및 아프리카스, 기타 9개 흑인 부족어	
면적	121만 km ²	
인구	6,014만 명	
수도	프리토리아(행정), 케이프타운(입법), 블룸폰테인(사법)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프리토리아, 블룸폰테인	
종교	기독교(79.8%), 이슬람(1.5%), 힌두교(1.2%)	
교육	초·중등(의무 9년), 고등(3년)	
화폐 단위	란드(Rand)	
주요 경제 지표 (2020)	GDP	3,354억 달러 (출처: World Bank)
	1인당 GDP	5,655달러 (출처: World Bank)
	GDP성장률	-7% (출처: 중앙은행)
	교역	수출 931억 달러 수입 783억 달러 (출처: World Bank)
	실업률	28.74% (출처: 통계청)
	물가상승률	3.3% (출처: 통계청)
대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I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 최저임금제도 연혁

□ 도입배경

- 남아공 정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명으로 지정한 저임금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매년 발표하고 최저임금 지급 준수를 권고형태로 시행하다가, '19년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

* 저임금 취약근로자: 가사근로자, 농장근로자, 도소매업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사설 경비업 근로자, 택시운수업종사 근로자, 견습공,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등

□ 발전과정

- 1998.12.1. 이전에는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함
- 1997년 노동조합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97)에 최저임금을 규정함
- 2000년 이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 명령으로 가사, 농장, 도소매, 건설, 사설경비, 택시운수업, 견습공, 15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을 권고
- '17년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가 마련한 최저임금법안(National Minimum Wage Bill, 2017)이 국회를 통과하여, '19.1.1.부터 시행
- '19.1.1. ~ 현재
 -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19.1.1.부터 일부 예외적 적용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됨

2 관련 법

-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No.9 of 2018)

3 |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

적용 제외

-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외비밀첩보국 직원
- 자원봉사자

특례 적용

- 최저임금법 부칙 1(Schedule 1) 제2조에서 농장근로자,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 정원사, 운전사, 유모 등),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Expanded public work programme) 참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규정
 - 국가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날(2019.1.1.)로부터 18개월 안에 농장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최저임금액을 권고해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농장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4조)
 - 농장근로자는 '21.3.1.부터, 가사근로자는 '22.3.1.부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견습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부칙(Schedule) 2에서 학습수당(Learnership allowances)을 별도로 규정

최저임금 지불면제

-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용자단체의 신청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최저임금 지불을 면제할 수 있음
- 신청 시 ①면제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②지불가능한 임금을 제시해야 하며, ③기타 조건을 명시해야 함
 - 면제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의 규정한 최저임금의 90% 이하의 금액은 허용하지 않음

II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1 최저임금의 결정

1) 결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
 - 국가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국가최저임금위원회
 - 구성
 -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외 12명으로 구성(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비정부단체에서 각각 3인 지명, 장관이 노동시장 및 근로조건 전문가 3인 임명)
 - 기능
 - 국가최저임금을 검토·조정하여 권고, 최저임금의 영향 조사·보고, 법시행 후 3년 내 국가 최저임금의 중간목표 설정 등
 - 국가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위원회의 행정, 위원회의 연구 수행, 국가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등 수행

2) 결정방법 및 절차

- 최저임금의 조정에 대한 권고를 위해 국가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검토 시작
- 검토보고서(Review report)에 일반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및 권고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권고안이 동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재검토 요청
- 장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국가최저임금의 조정을 결정하고, 최저임금법 부칙 1, 2의 최저임금을 수정 및 고시
- 고시 후 7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

3) 갱신주기 및 시행시기

- 갱신주기: 1년
- 시행시기: 매년 3월 1일

4) 결정기준

-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조정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 및 고려해야 함 (최저임금법 제7조)
 - 인플레이션, 생활비와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할 이유
 - 임금수준 및 단체협상 결과
 - 국내총생산(GDP)
 - 노동생산성
 -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용자들의 능력(ability of employers to carry on their businesses successfully)
 - 신생기업,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운영
 - 권고된 임금조정으로 인해 향후 고용창출 또는 고용에 미칠 영향
 - 기타 관련 요인들

5) 결정단위

- 시급 단위

6) 결정과정의 공개

- 결정과정 공개 여부
 - 비공개(외부방청을 허용하지 않음)
- 자료 공개 여부 및 범위
 - 결정과정 자료는 비공개이지만, 국가최저임금위원회가 장관에 제출한 '최종 검토 및 권고 보고서'는 관보로 공개

2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기본급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교통비, 설비·장비 사용비, 일식비
 - 식사 또는 숙소 등 현물급여
 - 보너스(상여금), 선물, 팁
 - 기타 규정에 의거한 급여 등
- 유급주휴(주휴수당): 없음*

* 기본근로조건법 제20조(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1일 연속적(consecutive days, 3주 연속, 또는 근무일로 환산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주거나, 또는 17일 근무 후 1일, 또는 17시간 근무 후 1시간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 다만 공휴일은 유급휴가에 미포함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미근무의 경우 토·일요일 또한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음

3 | 최저임금의 구분

- 전국 단일 최저임금(지역별, 산업별 구분 없음)
 - 다만,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와 기술개발법에 따른 학습수당은 구분

4 | 최저임금의 고시방법 및 홍보

- 고시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 국가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 검토 및 권고 보고서와 함께 공표
- 최저임금 관련 교육·홍보
 - 고용노동부, 노동1심법원(CCMA), 노동조합 등 홈페이지에 게시

Ⅲ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및 권리구제

1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 근로감독 기관

○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Labour Inspector)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사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 지급 발견 시 시정명령(compliance order) 발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CCMA(노사분쟁 화해조정중재위원회, 노동 1심법원 해당)에 제소 가능

2 최저임금 위반 시 권리구제

1) 형벌 규정

-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명단 공표
 - 시정명령(compliance order)를 받은 사용자에게 대해 지급임금액과 최저임금 차액의 2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2회 이상 위반 시 지급임금액과 최저임금 차액의 3배 또는 근로자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분기별로 최저임금 미준수 사용자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

2) 사법적 권리구제

- 고용노동부 사무차관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CCMA에 요청하여 시정명령을 중재명령(arbitration award)으로 전환
 - CCMA의 중재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강제집행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킴
- 연봉이 211,596.3란드 이하인 근로자('21.3.1.기준)는 CCMA에 바로 최저임금 미준수를 제소할 수 있고, 이상인 근로자는 금액에 따라 관할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

IV 주요 통계 및 최근 동향

1 최저임금 현황

1)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23.19란드

- 고용노동부 장관은 '21.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5%)에 1.9%를 더한 6.9% 인상을 결정
- 예외 근로자
 - 확장된 공공사업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 시급 12.75란드
 - 견습 계약(lear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견습생의 최저 주급 수당(allowance)은 아래와 같음

NQF level (국가역량체계 등급)	Credits already earned by learner (취득한 학점)	Minimum allowance per week (최저 주급 수당)
Level 1 to 2	0 ~ 120	R349.04
	121 ~ 240	R698.05
Level 3	0 ~ 120	R349.04
	121 ~ 240	R657.38
	241 ~ 360	R1,076.19
Level 4	0 ~ 120	R349.04
	121 ~ 240	R698.11
	241 ~ 360	R1,076.19
	361 ~ 480	R1,570.63
Level 5 to 8	0 ~ 120	R349.04
	121 ~ 240	R756.20
	241 ~ 360	R1,131.44
	361 ~ 480	R1,593.94
	481 ~ 600	R2,036.00

- '직종별 근로조건'(Sectoral Determination)에 따른 최저임금*

- * 고용기본조건법 51조 3항에 의거, 최저임금법 시행 당시 최저임금보다 '직종별 근로조건(Sectoral Determination)'에 따른 최저임금이 높은 경우, 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 최저임금이 인상 되는 경우 동일하게 인상분을 적용

(단위 : 란드)

지역	시간	기간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1. 도소매 근로자 (Wholesale and retail sector)					
도시지역	주 27시간 초과	2022.2.1.-2023.1.31. (General Assistant 부터 Manager까지 세부 15개 직책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17.98 - 40.92	-	-
	주 27시간 이하		17.36 - 39.51	781.73-1,778.05	3,387.38-7,704.32
비도시 지역	주 27시간 초과	2022.2.1.-2023.1.31. (General Assistant 부터 Manager까지 세부 15개 직책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	16.80 - 35.50	-	-
	주 27시간 이하		16.14 - 34.02	762.57-1,531.16	3,148.28-6,634.56
2. 계약직 청소 근로자 (Contract cleaning sector)					
대도시*	시간 구분 없음	2022.2.1.-2023.1.31.	25.52	-	-
과줄루 나탈주			과줄루나탈주 지역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나머지 지역			23.27	-	-

* 대도시: Cape Town, East Rand Metro, Johannesburg, Tshwane, Nelson Mandela, Emfuleni, Merafong, Mogale City, Metsimaholo, Randfonteing, Stellenbosch, Westonaria

2)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통계

(단위: 시급, 란드)

구분	시급	인상률	비고
2019	20.00	-	'19.1.1.부터 시행
2020	20.76	3.8%	
2021	21.69	4.5%	
2022	23.19	6.9%	

출처: 고용노동부

2 | 최저임금 관련 동향

높은 실업률

- '21년 3분기 노동력조사보고서에서 실업률은 34.9%로 '08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도 4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공무원 및 국유기업 근로자 임금(이하 '공공임금') 삭감

- 정부는 향후 3년간 공공임금을 삭감을 제시하고, 중기적으로 연평균 0.8%의 인상을 제공하여 공공임금 동결을 발표

관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www.labour.gov.za/DOL

(문 의)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서광욱 선임연구원
(연락처) +27-12-762-3898, ksuh@mofa.go.kr

* 제출일: '22.2.28.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202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식
상임위원	양정열
사무국장	정원희
책임편집인	윤정화
편집인	이현욱
	이인희
	남호현

발행일 2022년 6월

※ 본 책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 관련 문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44-202-8417)